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2025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2025.11.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출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25.11.25.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 목차

I. 과업의 이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연구수행체계 7

II. 주요 성과분석

1.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11
 2. 허용기준 조정 결과 14
 3. 지역별 주요성과 19

III. 유산구역 조정안(군·구별)

1. 강화군 45
 2. 중구 77
 3. 미추홀구 81
 4. 연수구 85
 5. 서구 87

IV. 허용기준 조정안(군·구별)

1. 강화군 93
 2. 중구 134
 3. 미추홀구 140
 4. 남동구 148
 5. 계양구 160
 6. 서구 166

V. 종합결론

1. 과업의 주요성과 183
 2. 향후 정책제언 186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I . 과업의 이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수행체계 및 추진경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문화유산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면단위 역사문화환경 관리체계의 강화’

- 점단위 유산 보존관리체계, 면단위 역사문화환경 관리체도로 전환
→ 역사문화환경 관련 법 제정(역사문화권정비법 등) 및 제도개선 가속화
- 2006년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정 이후, 가칭, ‘허가간주제(2018.07.13.)’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총량 관리제’(2020.05.27.) 등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 개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필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 또는 조정 후 10년 이내 유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 필요
-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행정관리 효율 저하

◇ 개별 국가유산의 특성 및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형’ 관리방식의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 필요

-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유산 특성 및 지역 여건 변화 고려
 - 국가유산 및 입지환경의 변화정도 및 민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기고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제시
 - 행정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1.2 연구의 목적

- 시지정유산의 체계적인 보호환경 조성
- 역·보지역 내 유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기준제시 → 규제의 합리화 도모

1.3 연구의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 개선
- 국가유산 중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배경

국가유산 관리 패러다임 전환, '역사문화환경 관리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역량' 제고 필요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라 유산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역사문화환경 관련 법 제정(역사문화권 등) 및 제도개선 가속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개선을 위하여 '국가유산 분야 규제 혁신 추진계획' 수립(2022), 국민 편의 제고 도모
※ 3대 분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규제, 매장유산 조사, 문화유산 주변 거주 주민 불편 해소)
- 점단위 국가유산중심 보존관리체계에서 **면단위 역사문화환경 정비개념으로 확대, '선택과 집중형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도모 추세**

체계적인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필요

보호구역 지정 또는 조정 10년 도래 유산 적정성 검토 필요

제도취지 반영
합리적 기준 마련

주변환경 고려
합리적 조정 필요

유산 보존가치, 재산권 고려
적정성 검토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행정관리 효율저하

관리체계
디지털화
전환

기고시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 필요

개별유산 특성 및
지역여건 변화 고려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 도모

규제순응도
제고 필요

행정만족도 개선
민원경감
적극 도모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 제시

행정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목적

시지정유산의 체계적인 보호환경 조성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산의 가치 및 재산권을 고려하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 합리적인 보호구역 조정안 마련
- 시지정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 도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시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규정된 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한 **개별 유산 특성 및 입지여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행위기준 마련**
-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 행정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 합리화 도모**

효과

지역 정체성 강화

시지정유산의 보호 및 역사문화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주민 만족도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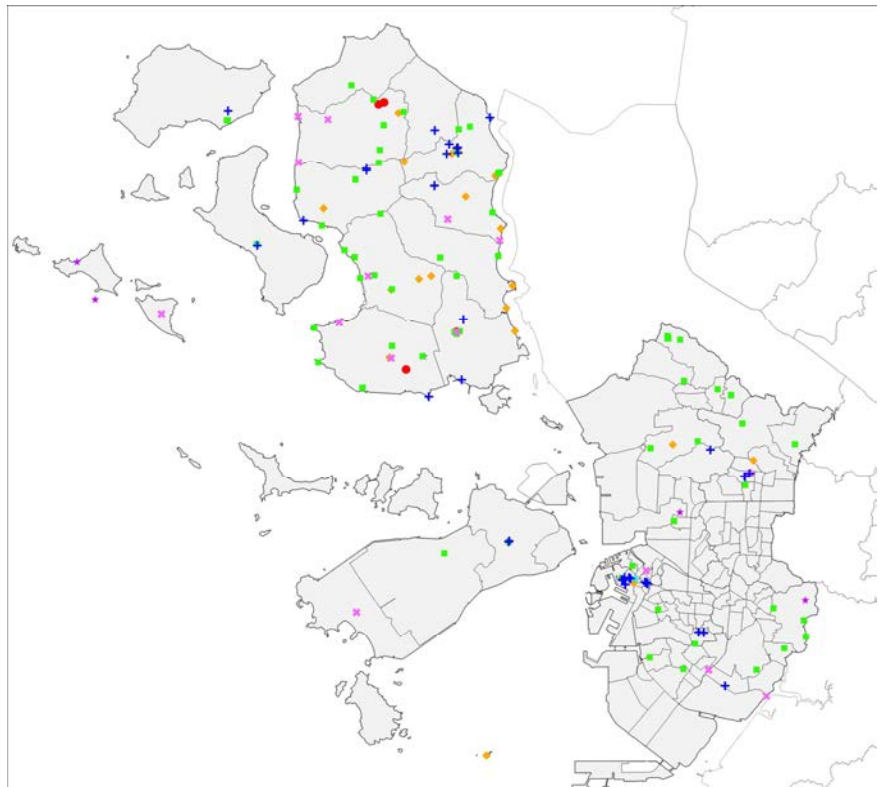
- 과업수행기간 : 2024.11.26.~2025.11.25.(착수일로부터 365일)

■ 공간적 범위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대상 : 총 113개소(유산구역 총면적 2,146,178㎡)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허용기준 조정대상 : 총 34개소(역·보지역 총면적 78,268,417.51㎡)
 -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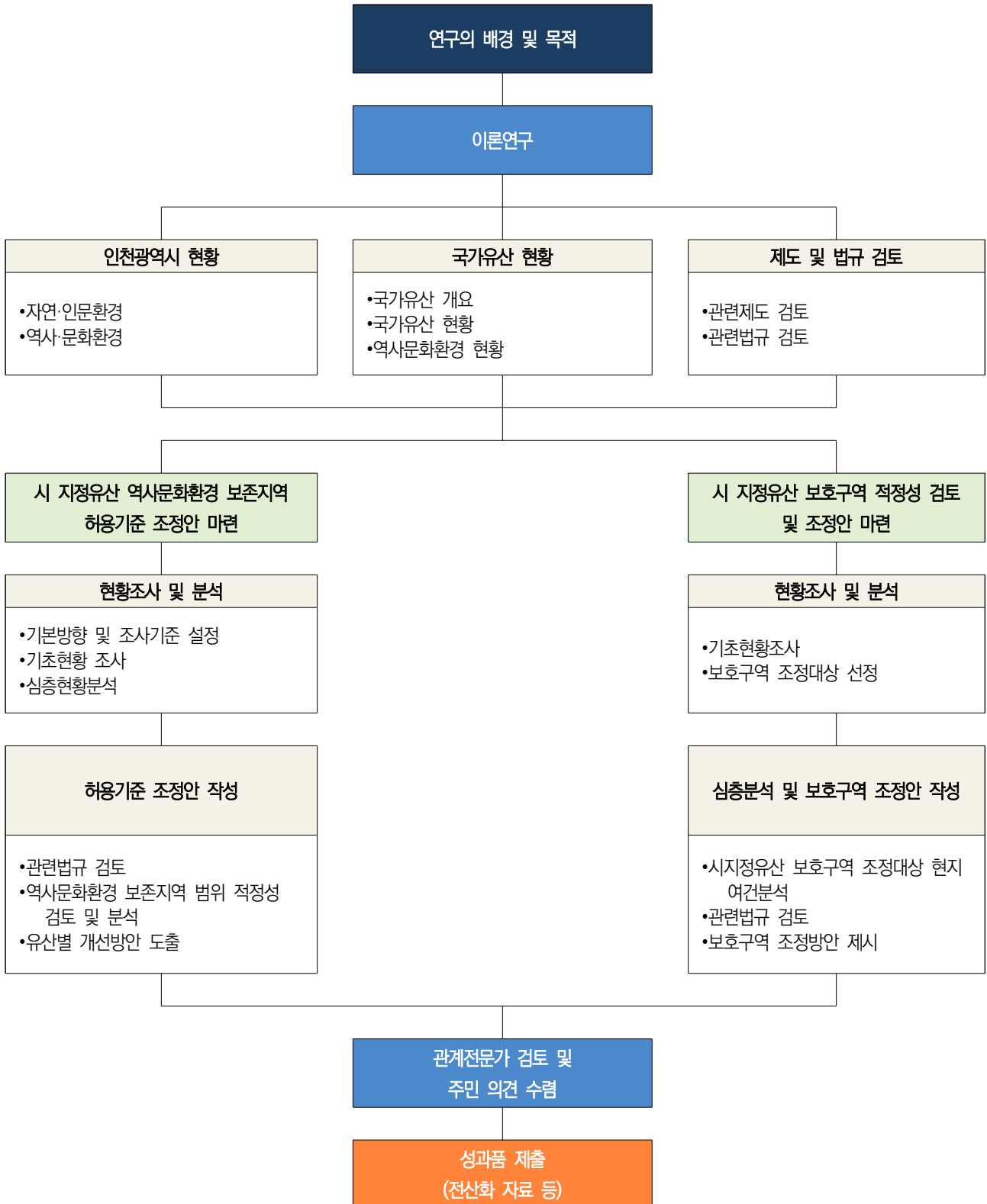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마련
-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
- 행정절차(주민의견 청취,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이행 및 관련자료 작성



▶검토대상 시지정유산(113개소)
분포현황도

2.2 연구의 방법



3. 연구수행체계

■ 연구추진 공정표

2024.11.26.~2025.11.25.(착수일로부터 365일)

구분	기간		2024년			202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서론																											
과업의 이해																											
범위 및 방법																											
주요 개념 및 용어정의																											
인천광역시 일반현황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문화환경																											
관련 법규 및 계획검토																											
관련 주요 법령 검토																											
관련계획 검토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분석																											
기초현황조사																											
현장조사																											
현지여건분석																											
허용기준안 작성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기초현황조사																											
조정대상 선정																											
심층조사 및 현지여건분석																											
조정방안 작성																											
결론 및 제언																											
종합결론																											
정책제언																											
성과품작성 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 <p>● 계약/착수</p> </div> <div style="width: 20%;"> <p>◆ 착수 / 자문 회의</p> </div> <div style="width: 20%;"> <p>◆ 중간/자문 회의</p> </div> <div style="width: 20%;"> <p>◆ 최종 보고</p> </div> <div style="width: 20%;"> <p>● 준공</p> </div> </div>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Ⅱ. 주요 성과분석

1.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2. 허용기준 조정 결과
3. 지역별 주요성과

II

주요 성과분석

1.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113개소 중 22개소(19.5%)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113개소(유형 문화유산(34), 기념물(58), 자연유산(3), 민속문화유산(2), 문화유산 자료(16)) 중 22개소(유형문화유산(7), 기념물(13), 문화유산자료(2))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대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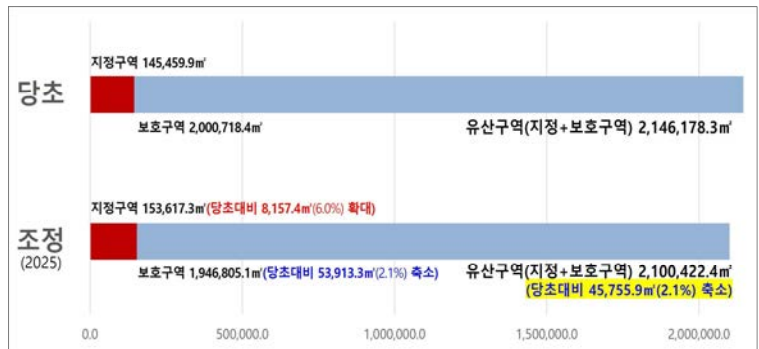
범례 : 축소▼/확대▲

연번	종별	유산명칭	소재지	상세주소	조정사항	
					지정	보호
1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11	-	▲
2	기념물	강화 장곶돈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3 외	-	▲
3	기념물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	▼	▲
4	기념물	강화 용진진		강화군 선원면 자산리 215 외	▼	▲
5	기념물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외	-	▼
6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1 외	-	▼
7	유형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	▲
8	기념물	교동읍성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외	▲	▼
9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외	-	▲
10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		강화군 내가면 연촌길 181	-	▲
11	기념물	강화 미루지돈대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70-2	▲	-
12	기념물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27-1 외	-	▼
13	기념물	이건창 묘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55-27	-	▼
14	기념물	황형 묘		강화군 강화읍 월곡리 산72-1	▼	-
15	유형문화유산	강화유수부 이아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	▼
16	유형문화유산	구 인천우체국	중구	중구 제물량로 183	▼	▲
17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중구 용유로 380번길 21	▲	▼
18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미추홀구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외	▲	▲
19	기념물	문학산성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외	▲	▼
20	문화유산자료	원인재	연수구	연수구 경원대로 322	-	▲
21	기념물	류사눌 묘	서구	서구 경서동 산200-1	-	▲
22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서구 대곡로 356 외	-	▲

■ 조정 결과, 지정구역 8,157.4㎡ 확대, 보호구역 53,913.3㎡ 축소(당초 대비 유산구역 45,755.9㎡ 축소)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113개소의 당초 유산구역의 면적은 총 2,146,178.3㎡(지정구역 145,459.9㎡/보호구역 2,000,718.4㎡)
- 조정대상 22개소의 유산구역 조정 및 해제 결과, 유산구역 면적이 총 2,100,422.4㎡(지정구역 153,617.3㎡/보호구역 1,946,805.1㎡)로 축소
 - 당초 대비 지정구역은 8,157.4㎡ 확대, 보호구역은 41,639.5㎡ 축소되어 유산구역 총면적 32,921.3㎡ 축소

구분	당초	조정	증감
유산 구역	2,146,178.3㎡	2,100,422.4㎡	45,755.9㎡ (2.1%) 축소
지정 구역	145,459.9㎡	153,617.3㎡	8,157.4㎡ (5.6%) 확대
보호 구역	2,000,718.4㎡	1,946,805.1㎡	53,913.3㎡ (2.7%) 축소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유산구역(지정·보호) 면적비교(상 : 당초/하 : 조정(2025))

- 조정대상 22개소 중 유산구역(조정+보호구역) 총 면적의 확대대상은 7개소, 축소대상은 7개소 현상유지 대상은 8개소로 현상유지 대상은 기존 고시범위 내에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 유산구역 면적 확대대상(7) : 인천향교, 원인재,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강화 장곶돈대, 강화 삼암돈대, 강화 보문사 석실, 강화 적석사 사적비
 - 유산구역 면적 축소대상(7) : 문학산성, 류사눌 묘, 대곡동 고인돌군,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유수부 이아
 - 유산구역 면적 현상유지(8) : 구 인천우체국, 남북동 조병수 가옥,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 용진진, 교동읍성, 이건창 묘, 강화 미루지돈대, 황형묘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유산구역 조정대상(22개소) 지역별 분포현황

구분	합계	유산구역 확대	유산구역 축소	현상유지
합계	22	7	7	8
강화군	15	5	4	6
중구	2	-	-	2
미추홀구	2	1	1	-
연수구	1	1	-	-
서구	2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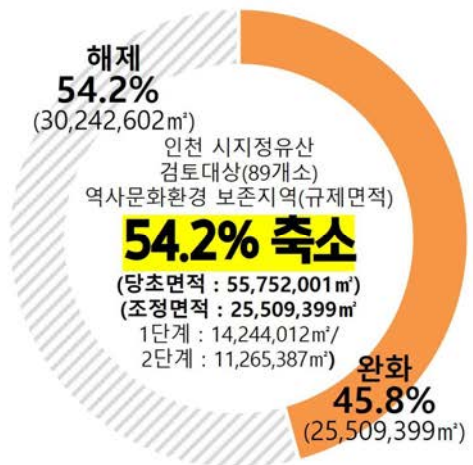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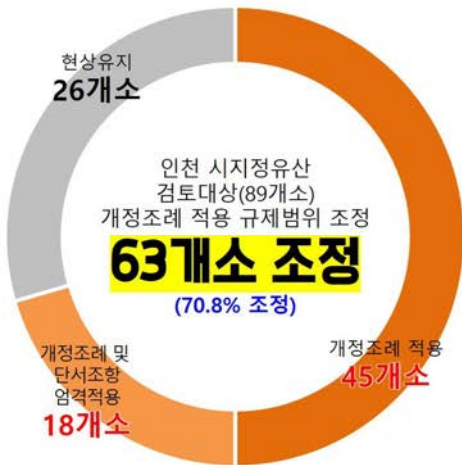


▶유산구역 조정 예시(7개 유형)
 -위로부터 보호구역 신규지정(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지정구역 축소(구 인천우체국), 보호구역 축소(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보호구역 해제(강화 우수부 이아), 지역구역 확대-축소(인천 향교), 오류수정(문학산성)

2. 허용기준 조정 결과

■ 조례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조정

- 개정조례(녹지 및 도시 외 지역 500m→300m) 반영 결과 시지정 유산 검토대상(89개소)중 63개소(70.8%) 규제범위 조정
 - 조정 대상(89개소) 중63개소(1단계 34개소/2단계 29개소) 역·보지역 규제범위 완화(개정조례 적용 45개, 개정조례 및 단서조항(주·상·공200m) 엄격적용 18개)
- 개정 조례 반영 결과, 규제면적 54.2%(30,242,602㎡) 감소
 - 조례개정(2024.2)에 따라 조정대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당초면적(총 55,752,001㎡) 대비 45.8%(25,509,399㎡)로 감소
 - 대상 지역(군·구) 중 강화군 소재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면적 최대감소(20,984,157㎡, 전체 감소면적(30,242,602㎡) 대비 69.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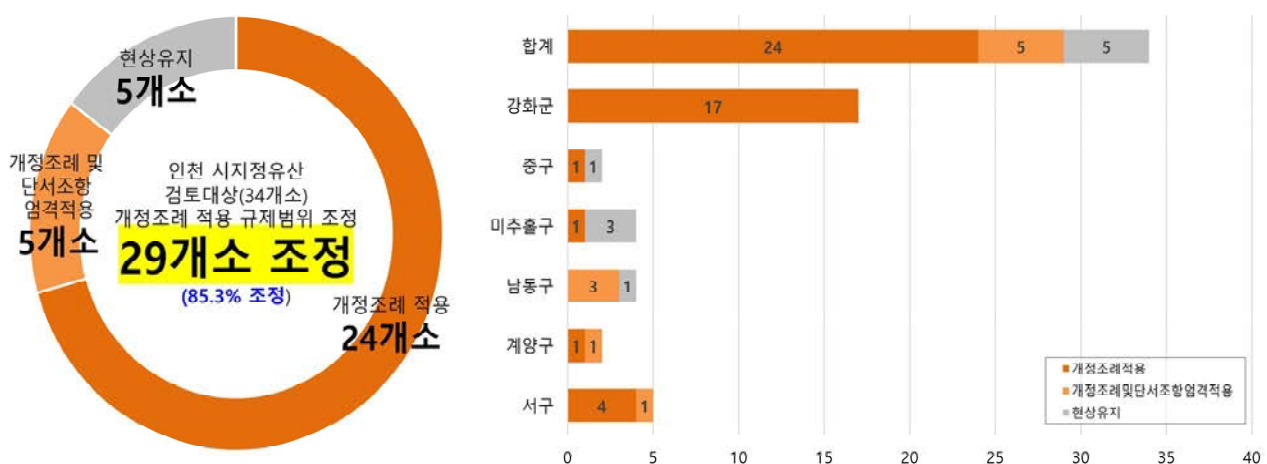
▲시지정유산 검토대상(89개소) 군·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비교분석(조례 개정 전·후)

- 개정 조례(녹지 및 도시 외 지역 500m→300m) 반영 결과, 시지정 유산 검토대상(34개소) 중 29개(85.3%) 규제범위 감소
- 검토 대상(34개소 중 29개소 문화유산(85.3%) 역·보지역 규제범위 감소(개정조례 적용 24개소, 개정조례 및 단서조항(주·상·공 200m) 엄격적용 5개소)
- 강화군 소재 검토대상 시지정유산의 허용기준 전체 개선(17개소, 입지특성 고려(녹지 및 도시외 지역))

▼조례개정에 따른 군·구별 역·보지역 규제범위 조정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개소)	조정(개소)			현상 유지	비고
		소계	개정조례 적용	조례개정 및 단서조항 적용		
합계	34	29	24	5	5	
강화군	17	17	17	0	0	-입지특성(녹지 및 도시 외 지역)에 따른 범위 조정(17개소)
중구	2	1	1	0	1	
미추홀구	4	1	1	0	3	-25년 1개소 허용기준 신규작성
남동구	4	3	0	3	1	
계양구	2	2	1	1	0	
서구	5	5	4	1	0	



▲조례개정에 따른 검토대상(34개) 규제범위 조정현황(좌: 전체, 우: 군·구별)

■ 개정 조례 반영 결과, 규제면적 53.6% 해제(24.2km²→11.2km²)

- 개정된 조례를 반영하여 검토대상의 시지정유산의 역·보지역 면적 당초(24,289,013m²) 대비 53.6%(13,023,626m²) 감소
-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역·보지역 면적 대폭 감소(8,683,298m², 전체 감소면적(13,023,626m²) 대비 66.6% 차지

▼군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면적 조정 전후 비교표

(단위 : 개소, km²)

구분		합계	강화군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개소		34	17	2	4	4	2	5
시지정 유산 면적	현행	24.2	15.1	1.1	0.5	2.3	1.6	3.6
	조정	11.2	6.4	0.5	1.1	1.3	0.4	1.5
	감소	13.0	8.7	0.6	-0.6	1.0	1.2	2.1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구역별 면적 변화비교

(단위 : m²)

구분	기고시면적 합계 (34개소)	합계 (34개소)	조정(2025년)			현상유지 (5개소)	개선정도		비고
			소계 (29개소)	개정조례 적용 (24개소)	개정조례/ 단서조항 적용 (5개소)		완화면적	변동율(%)	
합계 (34개소)	24,289,013	11,265,387 (34)	10,063,933 (29)	8,785,977 (24)	1,277,956 (5)	1,201,454 (5)	13,023,626	▼53.6	
강화군 (17개소)	15,071,383	6,388,084 (17)	6,388,084 (17)	6,388,084 (17)	-	-	8,683,298	▼57.6	
중구 (2개소)	1,102,780	533,096 (1)	326,653 (1)	326,653 (1)	-	206,444 (1)	569,684	▼51.7	
미추홀구 (4개소)	550,871	1,139,332 (4)	588,056 (1)	588,056 (1)	-	551,276 (3)	-588,461	▲106.8	신규 작성
남동구 (4개소)	2,276,511	1,253,229 (4)	809,494 (3)	-	809,494 (3)	443,735 (1)	1,023,282	▼44.9	
계양구 (2개소)	1,656,692	459,994 (2)	459,994 (2)	289,266 (1)	170,728 (1)	-	1,196,698	▼72.2	
서구 (5개소)	3,630,777	1,491,652 (5)	1,491,652 (5)	1,193,918 (4)	297,734 (1)	-	2,139,125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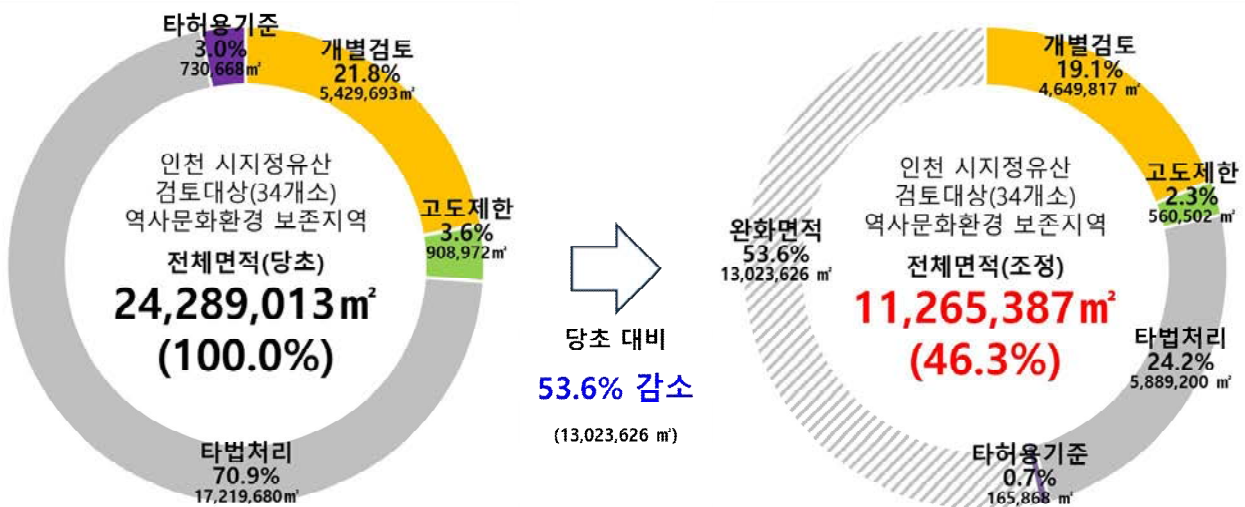
■ 검토대상 시지정유산의 허용기준 구역별 면적 변화

- 개별검토구역 : 당초 대비 14.4% 감소(5,429,693㎡→4,649,817㎡)
→유산특성(왜소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완충구역 최적화
- 고도제한구역 : 당초 대비 38.3% 감소(908,972㎡→560,502㎡)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차등화
- 타법처리구역 : 당초 대비 65.8% 감소(17,219,680㎡→5,889,200㎡)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범위 완화로 대폭 감소, 일체적 관리차원에서 주변 입지특성 및 개발정도 고려
- 군집유산고려 : 당초 대비 77.3% 감소(730,668㎡→165,868㎡)
→복합 또는 군집유산 허용기준 추가 고려,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범위 완화 반영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의 허용기준 구역별 개선면적

(단위 : ㎡, %)

구군	당초면적	완화면적									
		소계	완화율	개별검토		고도제한		타법처리		타허용기준	
				면적	완화율	면적	완화율	면적	완화율	면적	완화율
합계	24,289,013	13,023,626	53.6	779,876	14.4	348,470	38.3	11,330,480	65.8	564,800	77.3
강화군	15,071,383	8,683,298	57.6	944,060	21.7	147,610	28.3	7,026,828	74.3	564,800	77.3
중구	1,102,780	569,684	51.7	59,833	24.7	11,380	100.0	498,470	58.7	-	0.0
미추홀구	550,871	-588,461	-106.8	-109,479	-56.4	80,492	43.9	-559,474	-322.9	-	0.0
남동구	2,276,511	1,023,282	44.9	-158,349	-39.1	66,108	80.6	1,115,523	62.3	-	0.0
계양구	1,656,692	1,196,698	72.2	6,492	14.9	30,777	100.0	1,159,429	73.3	-	0.0
서구	3,630,777	2,139,125	58.9	37,318	20.1	12,103	15.3	2,089,704	62.1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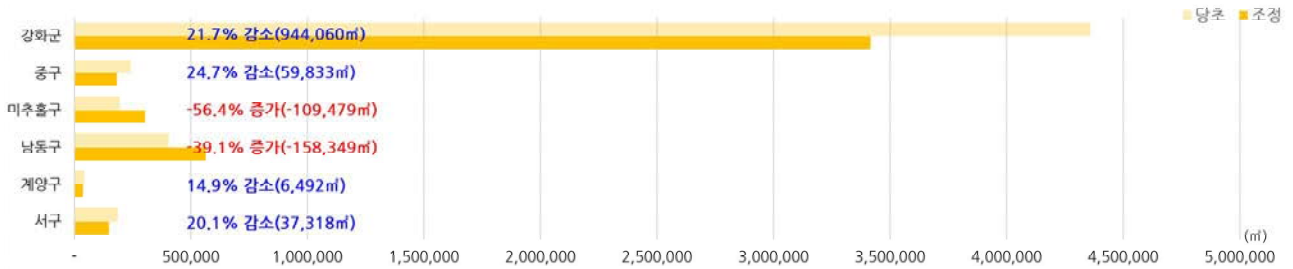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구역별 면적변화(좌:당초, 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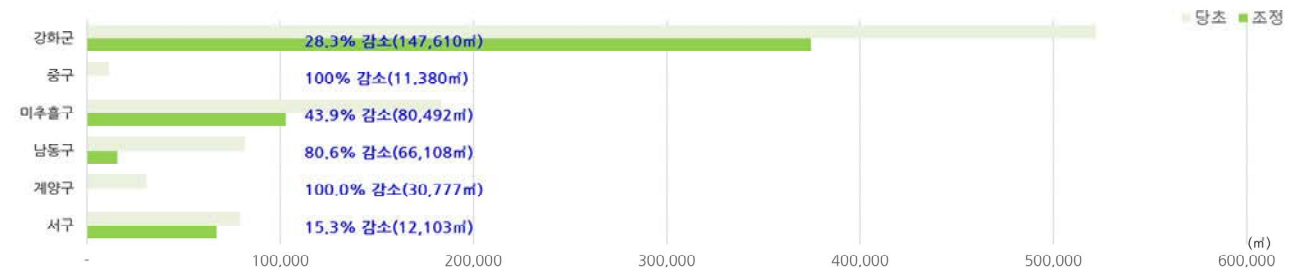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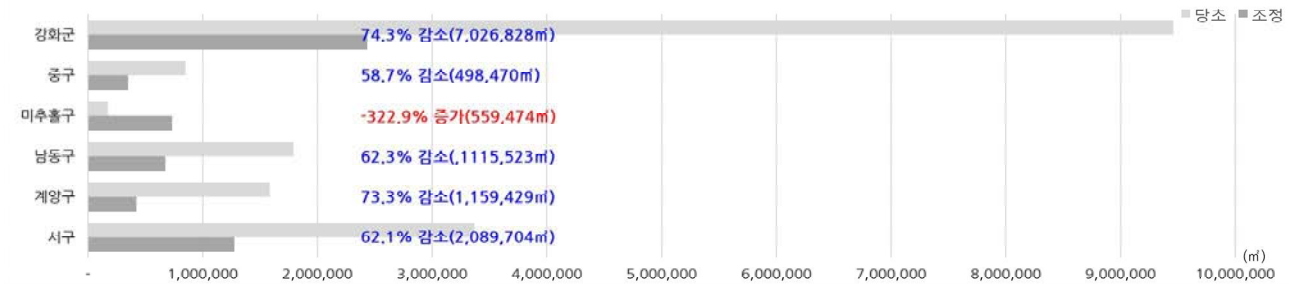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구역별 면적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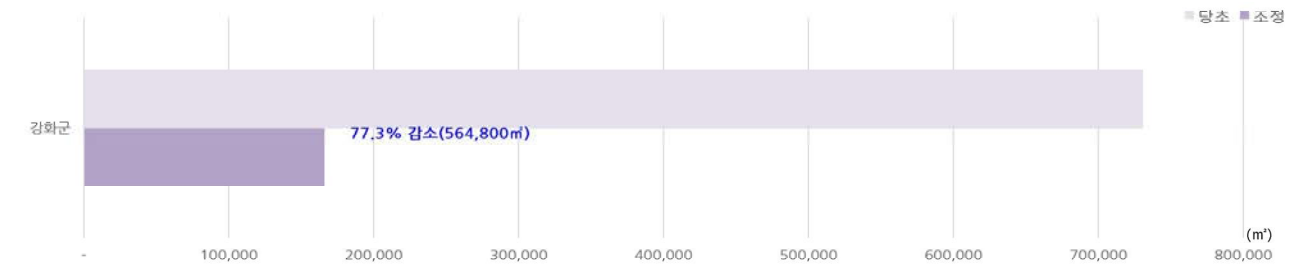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상 「개별검토구역」의 변화정도(군구별)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상 「고도제한구역」의 변화정도(군구별)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상 「타법처리구역」의 변화정도(군구별)



▲검토대상 시지정유산(34개소)의 허용기준 상 「타허용기준구역」의 변화정도(군구별)

2. 지역별 주요성과

2.1 강화군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63개소)

- 고시특성 : 대부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강화 보문사 마애 관음보살좌상 신규고시 필요
- 조정대상 :
 - 유산구역 신규지정 및 조정(9개소) : 유산 및 경관보호 고려
 - 보호구역 지정해제(1개소) : 관리효율성 고려
 - 오류수정(5개소) : 필지변동사항 반영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63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1	강화 용흥궁		○(담장기준)	X	현상유지	
2	강화 총렬사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3	강화 연미정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4	강화유수부 동헌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5	강화유수부 이아		●(유산기준)	○(필지기준)	보호-해제	
6	강화 보문사 석실		X	○(경계부정합)	오류수정(필지)	
7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X	X(중첩)	신규지정-측량	
8	강화 보문사 향나무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9	강화 보문사 맷돌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10	교동향교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1	강화 석수문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12	강화향교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3	강화 적석사 사적비		●(유산기준)	○(적석사필지)	오류수정(필지)	
14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유산기준)	X	보호-신규	
15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6	강화 고대섭 가옥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7	이규보 묘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8	강화 오상리 고인돌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19	강화 봉천대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20	강화전성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1	교동읍성		○(대상미포함)	●(필지기준)	지정-확대	
22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3	강화 갑곶-류산책장 석축로		●(필지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24	허유전 묘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25	강화 인산리 석실분		○(축대기준)	X	보호-신규	
26	강화 능내리 석실분		○(묘역기준)	X	현상유지	
27	이건창 묘		●(유산기준)	○(묘역경계)	오류수정(고시오류)	
28	강화 이건창 생가		○(마당포함)	X	현상유지	
29	강화 대산리 고인돌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30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경계부정합)	●(조례기준)	현상유지	
31	김상용 순절비		○(보호각)	X(완충공간확보)	현상유지	
32	양현수 승전비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33	강화 용진진		○(돈대포함)	X	보호-신규	
34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X	○(해제요청)	보호-축소	
35	강화 삼거리고인돌군		X	●(필지기준)	현상유지	
36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X	○(해제요청)	보호-축소	
37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X	●(필지기준)	오류수정(단순수정)	
38	강화 교산리 고인돌군		X	●(필지기준)	현상유지	
39	강화 수사해방학당 터		○(조례기준초과)	X	현상유지	
40	정제두 묘		○(조례기준초과)	X	현상유지	
41	황형 묘		○(조례기준초과)	X	오류수정(고시오류)	
42	강화 정족산성진 터		●(필지/유산)	X(중첩)	현상유지	
43	강화 정족산사고지		●(필지/유산)	X(중첩)	현상유지	
44	강화 전등사 대조루		●(필지/유산)	X(중첩)	현상유지	
45	강화 철종 외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46	강화 원충사 터		X	●(필지기준)	현상유지	
47	강화 참성단 마애중수비		●(유산기준)	○(조례기준초과)	현상유지	
48	강화 서도 중앙교회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49	김취려 묘		○(조례기준초과)	X	현상유지	
50	강화 후애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51	강화 삼암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보호-확대	
52	강화 분오리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53	강화 장곶돈대		○(경계부정합)	X	보호-신규	
54	강화 계룡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55	강화 망양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56	강화 건평돈대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57	강화 굴암돈대		○(경계부정합)	○	현상유지	
58	강화 미루지돈대		○(경계부정합)	●(필지기준)	오류수정(단순수정)	
59	강화 북일곶돈대		●(유산기준)	X	현상유지	
60	강화 선수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61	강화 망월돈대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62	강화 화도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63	강화 무태돈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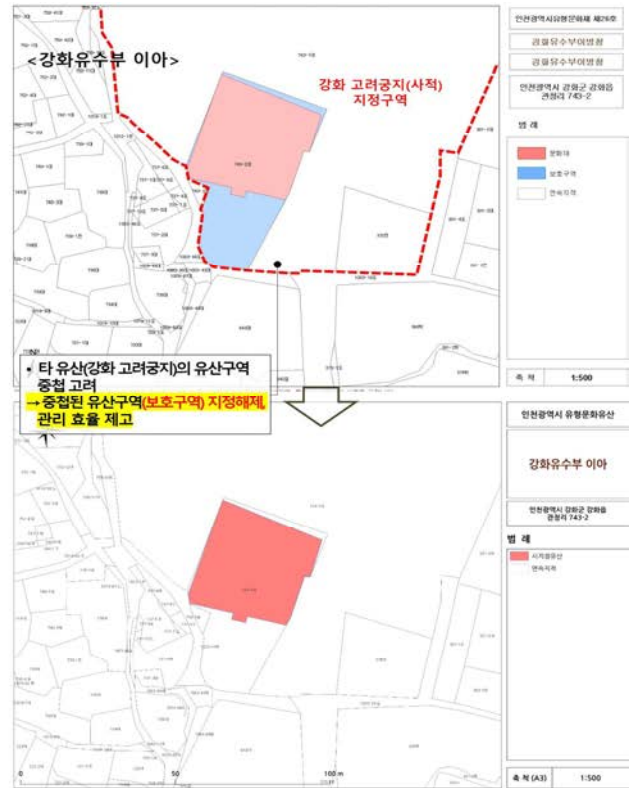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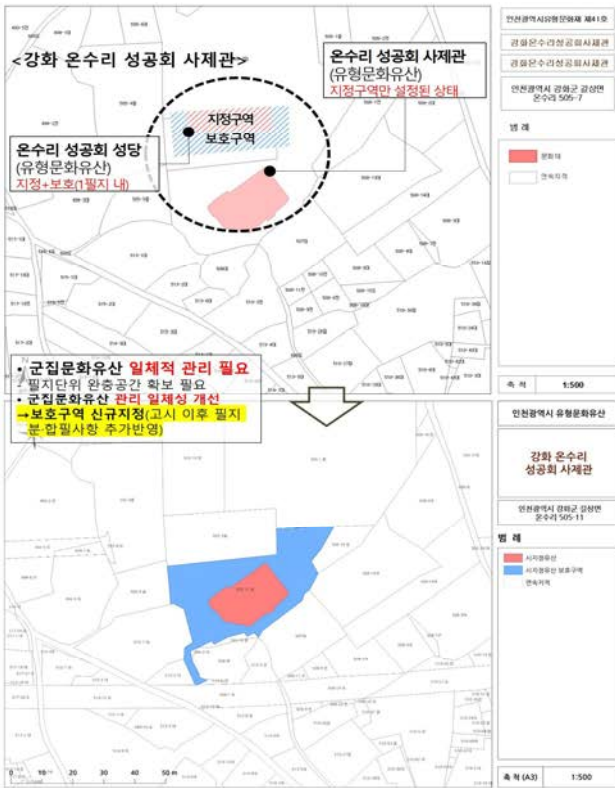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17개소)

- 입지특성 : 비도심 면단위 유산 다수
- 규제범위 : 강화군 소재 조정대상 전체 조정(500m→300m)
- 유형특성 :
 - 성(돈대) : 해안선 입지, 내륙으로 농지개간 또는 산지가 위치, 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이 낮음. 대체로 경관일체성 보존 고려, 개별검토구역 비중 다수(300m 이내), 일부 개발현황 고려, 고도제한구역 설정
 - 일반묘역(허유전 묘, 이규보 묘) : 비도심입지, 배면으로 산지, 주위로 농지와 일부 주거지 위치. 반경 200m이내로 개별검토구역과 개발현황을 고려한 고도제한구역 설정
 - 기타 : 구릉지 입지, 역·보지역내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아 개발가능성이 낮음. 대체로 주변 경관일체성 보존을 위한 개별검토구역 비중 다수(300m이내)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 500m→300m축소,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필요
 - 성(돈대) : 강화돈대 특수성 고려, 조망성 보존, 기존 허용기준 준용, 도시계획 상 높이기준과 고도제한구역 높이기준 정합성 제고
 - 일반묘역 : 허용기준 상 고도제한구역과 도시계획 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합성 고려
 - 기타 : 200m내 집중관리및국가유산과 중첩되어 있는 유산은 중첩유산 구역(4구역) 설정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 규모, 식물관련 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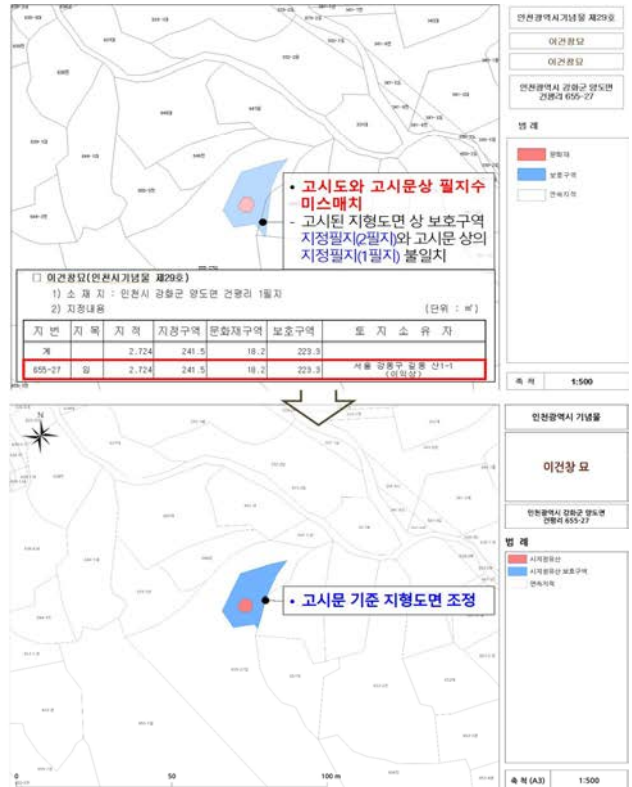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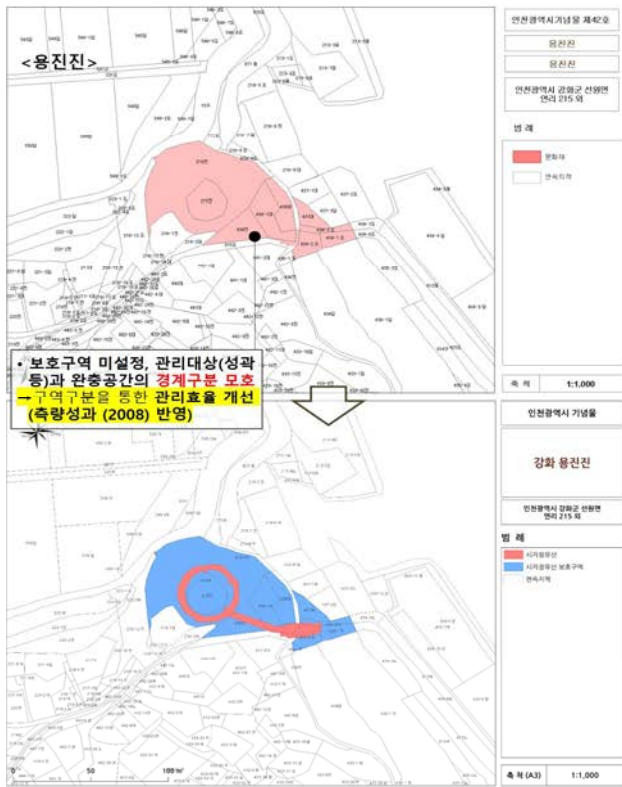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17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규제범위		규제정도						기타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강화 보문사 석실	-	● (500→300)	-	-	● (개별/고도)	● (타허용감소)	● (건축규모/건축선/색상)	● (경사지붕/사전협의)	●(거리)	●	
2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 좌상	-	● (500→300)	-	-	● (개별/고도)	● (타허용감소)	● (건축규모/건축선/색상)	● (경사지붕/사전협의)	●(거리)	● (강화 보문사 석실)	
3	강화 보문사 향나무	-	● (500→300)	-	-	● (개별/고도)	● (타허용감소)	● (건축규모/건축선/색상)	● (경사지붕/사전협의)	●(거리)	● (강화 보문사 석실)	
4	강화 보문사 맷돌	-	● (500→300)	-	-	● (개별/고도)	● (타허용감소)	● (건축규모/건축선/색상)	● (경사지붕/사전협의)	●(거리)	● (강화 보문사 석실)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기타	
			규제범위		규제정도						경계조정	통합고시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5	강화 적석사 사적비	-	● (500→300)	-	-	● (개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경사지붕/ 사전협의)	●(거리)	-	
6	이규보 묘	-	● (500→300)	-	-	● (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7	강화 봉천대	-	● (500→300)	-	-	● (개별)	● (타허용조정)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8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	-	● (500→300)	-	-	● (개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9	허유전 묘	-	● (500→300)	-	-	● (개별/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10	강화 인산리 석실분	-	● (500→300)	-	-	-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11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	● (500→300)	-	-	● (개별/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적용범위)	●(거리+필지)	-	
12	강화 원충사 터	-	● (500→300)	-	-	● (개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13	강화 삼암돈대	-	● (500→300)	-	-	● (개별/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필지)	-	
14	강화 계룡돈대	-	● (500→300)	-	-	● (개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15	강화 건평돈대	-	● (500→300)	● (고도)	● (개별)	● (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16	강화 망월돈대	-	● (500→300)	● (타법)	-	● (개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높이기준)	● (사전협의/ 적용범위)	●(거리+필지)	-	
17	강화 무태돈대	-	● (500→300)	-	-	● (고도)	-	● (건축규모/ 건축선/색상)	● (경사지붕/ 사전협의/ 적용범위)	●(필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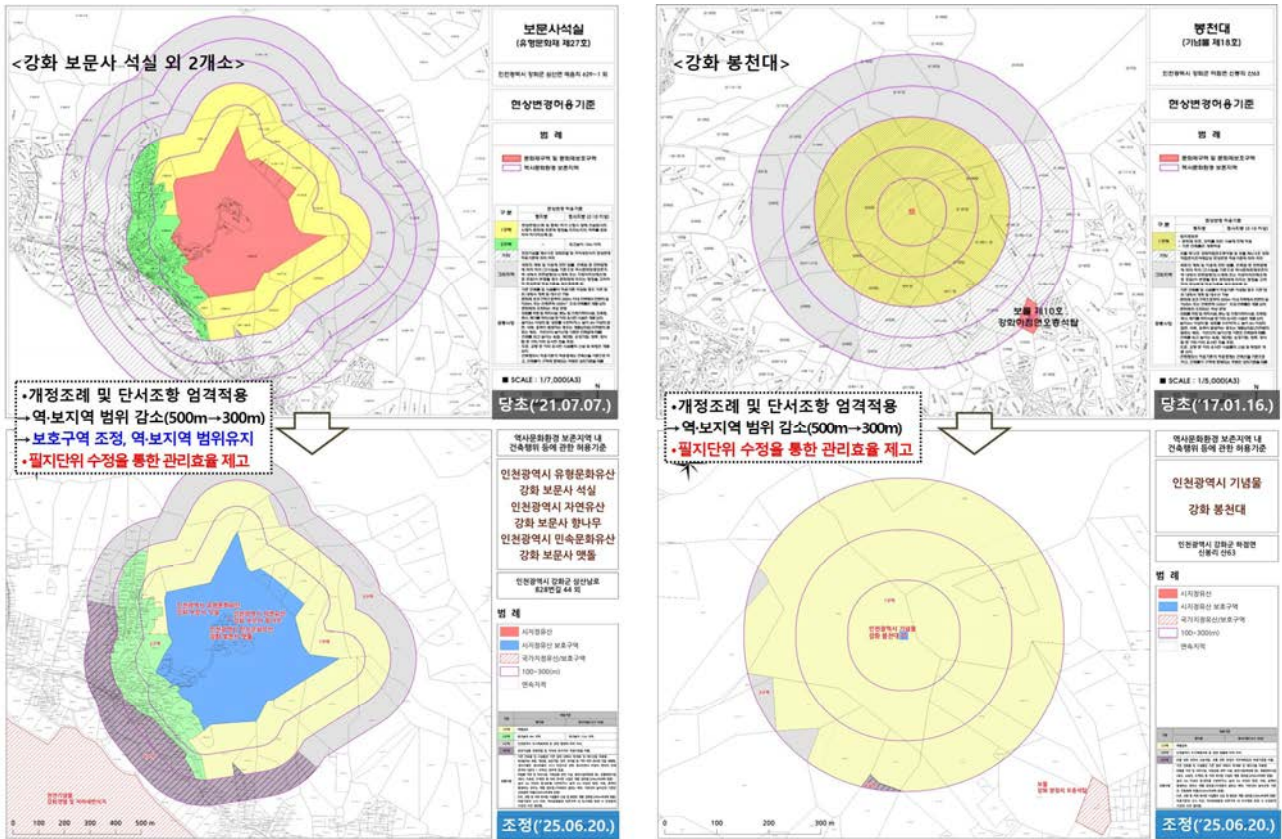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예시 : 군집유산간 일체적 관리 고려,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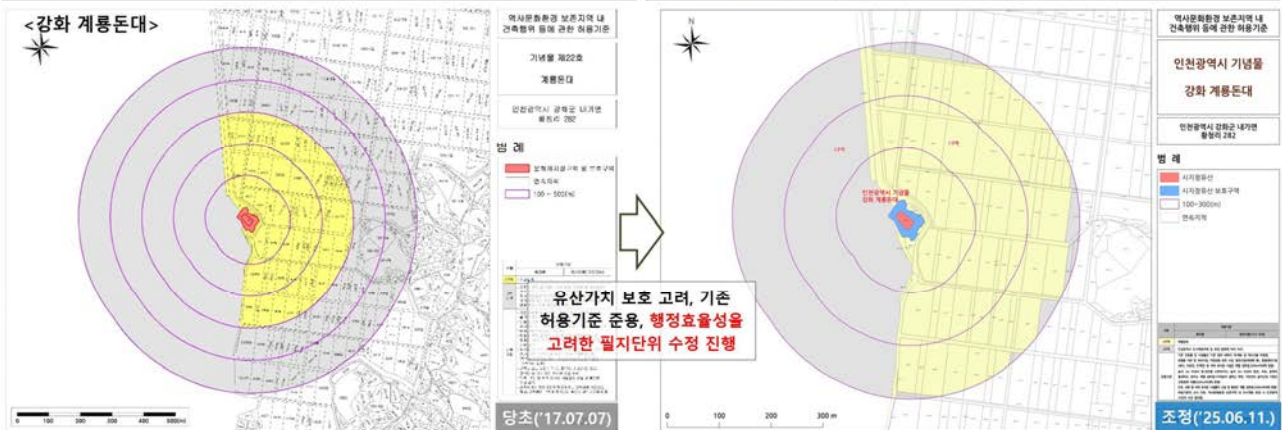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예시 : 관리대상과 완충구역 경계 명확화(측량결과 반영)/고시(고시도/고시문상) 정합도 개선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 : 개정된 조례기준 엄격적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개선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 : 유산(돈대)의 가치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유산의 유형별 일관성 있는 관리 도모

2.2 중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13개소)

- 고시특성 : 대부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설정(11), 지정구역만 설정(삼목도 선사 유적/용궁사 느티나무)
- 조정대상 :
 - 용궁사 : 유산구역 조정 필요, 인천시문화유산위원회 4월 심의 가결 (지정구역 축소 및 보호구역 확대)
 - 구 인천우체국 : 기연구결과(2024)반영, 역사적 가치가 낮은 신축건물 (별관) 지정구역 축소
 - 남북동 조병수 가옥 : 유산구역 내 통합관리방안 마련(지정구역 확대, 위원회 의견수렴)

▼중구 소재 시지정유산(13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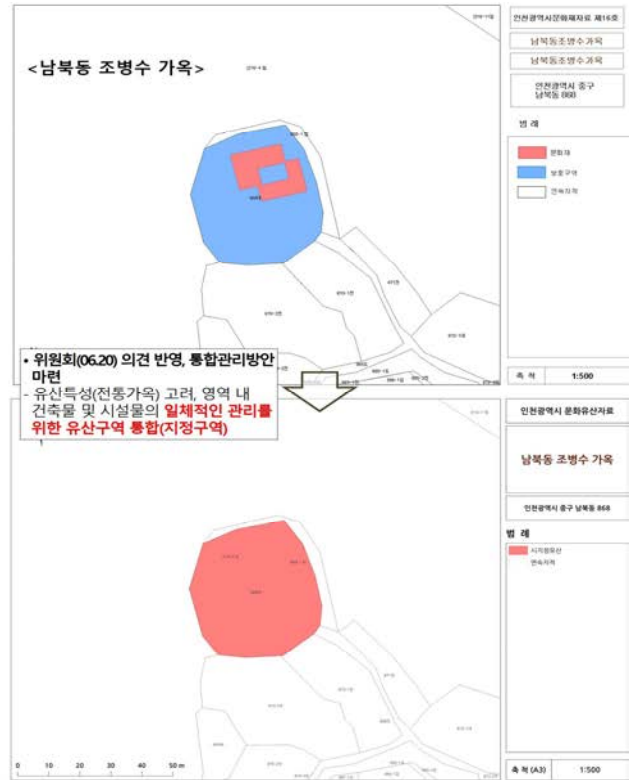
연번	유산명칭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인천 구 일본제1은행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	구 인천우체국	○(신축건물포함)	●(필지기준)	지정-축소	
3	용궁사	○(산축건물포함)	○(확대필요)	지정-축소/보호-확대	중구 자체추진
4	용궁사 느티나무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중구 자체추진
5	구 제물포구락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6	인천 구 일본제58은행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7	인천 흥예문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8	인천 구 일본제18은행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9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0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11	삼목도 선사 유적	○(공원기준)	X	현상유지	
12	인천 용동 큰우물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13	남북동 조병수 가옥	●(유산기준)	●(필지기준)	지정-확대/보호-축소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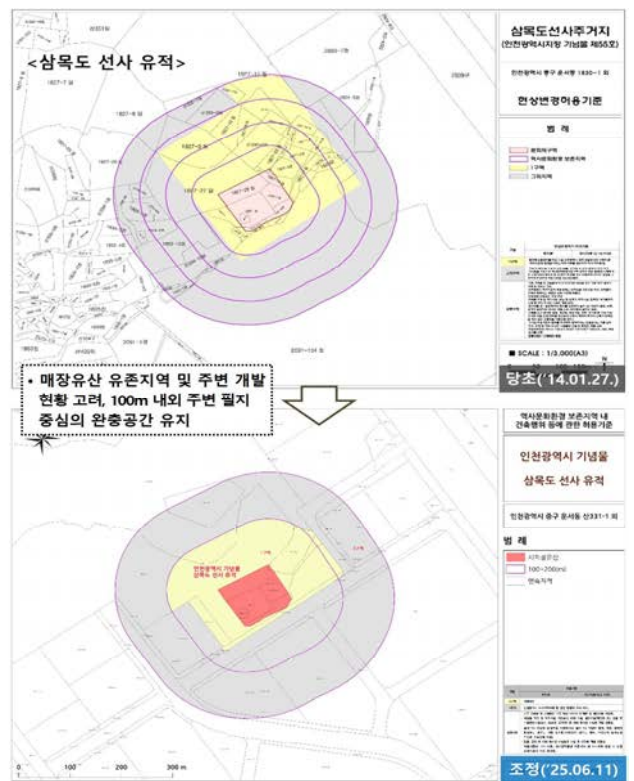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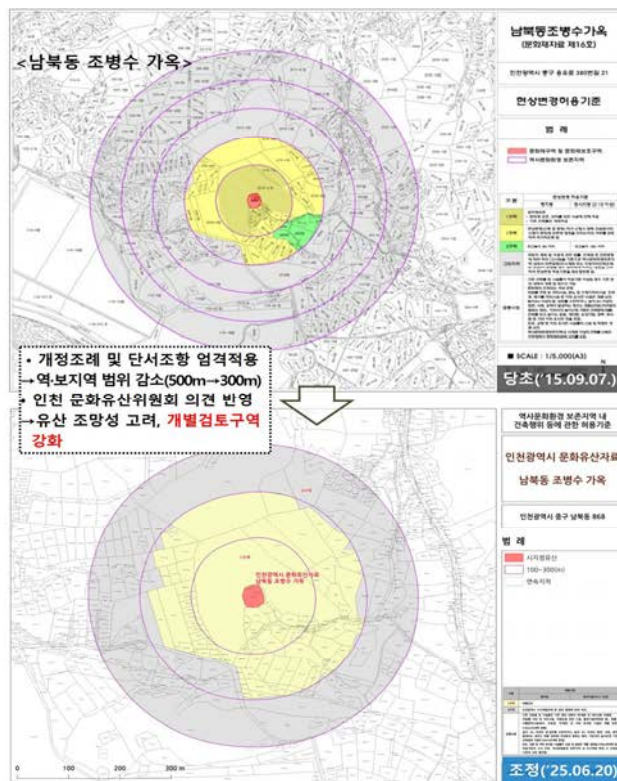
- **입지특성** : 비도심 면단위(1) 및 점단위(1) 유산 분포
- **규제범위** : 삼목도 선사 유적 유지(200m), 남북동 조병수 가옥 조정(500m→300m)
- **유형특성** :
 - **선사유적** : 지정구역 중심으로 공원조성, 남측 방면으로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위치. 물류단지로 인한 200m 구역설정, 지정구역 및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고려한 개별검토구역 설정
 - **전통가옥** : 비도심에 위치,배후 산지와 정면 농지 위치, 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 낮음. 반경 200m 이내 경관 일체성 및 조망성보존을 위한 개별검토구역 설정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500m → 300m축소,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 **선사유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및 산업지역 등 고려, 기존 허용기준 준용
 - **전통가옥** : 지표(조망/마루선)와 도시계획 조례 정합성을 고려한 고도제한구역 조정, 필지단위 정합성 고려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규모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중구 소재 시지정유산(2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규제범위		규제정도				기타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삼목도 선사 유적		-	-	● (타법)	-	● (개별)	-	● (높이기준 /색상/ 지표조사)	● (사전협의/ 도로,교량)	● (필지)	-
2	남북동 조병수 가옥		-	● (500→300)	-	● (개별)	● (개별)	-	● (색상/ 건축규모)	● (사전협의/ 적용범위)	● (필지)	-



▲중구 소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예시 : 유산의 가치특성 고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구역 조정 도모



▲중구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

2.3 동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5개소)

- 고시특성 : 대부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설정 양호(4), 지정 구역만 설정(송현 배수지 제수변실)
- 조정대상 : 현상유지
 -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 : 규모(점단위) 및 주변지역현황(공원 조성)고려, 완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현상유지 가능

▼동구 소재 시지정유산(5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인천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	인천 구 여선교사 합숙소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3	인천 영화초등학교 구 본관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4	화도진 터	X	●(필지기준)	현상유지		
5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	●(유산기준)	X(완충공간 확보양호)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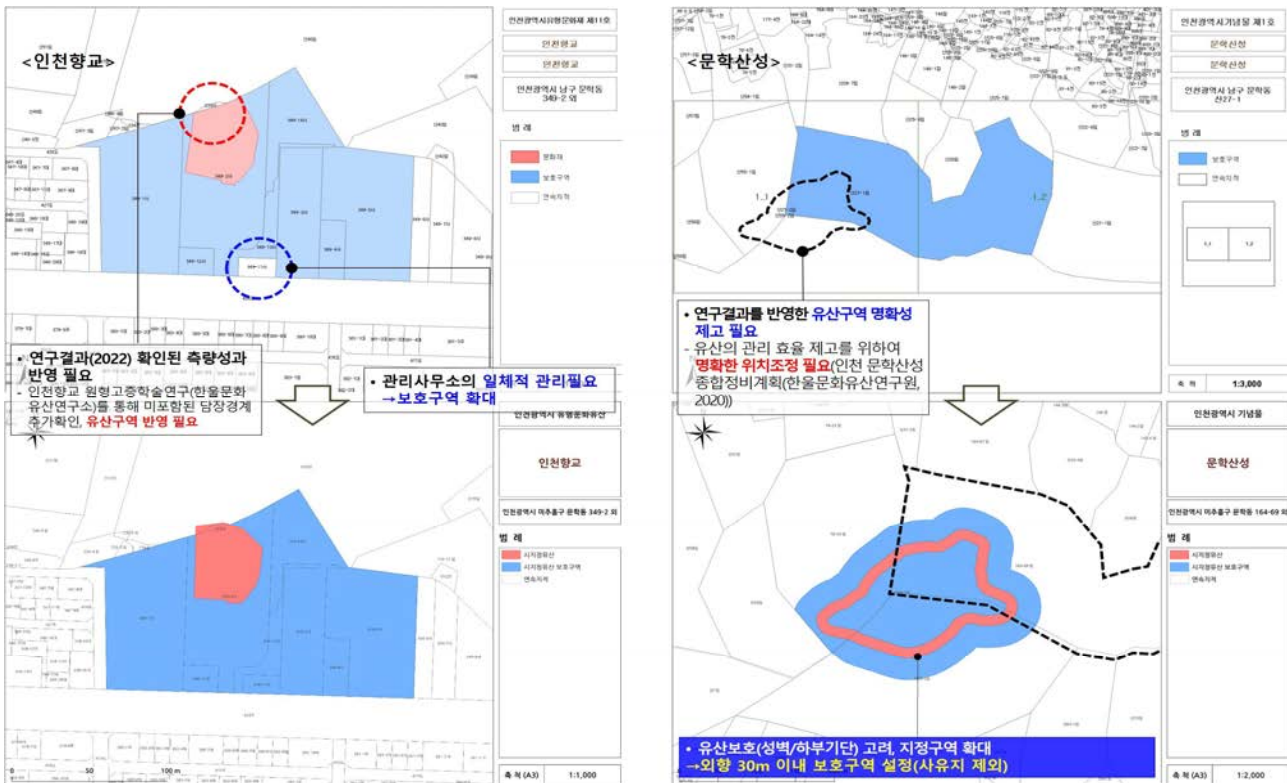
2.4 미추홀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4개소)

- 고시특성 : 대부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설정(3), 보호구역만 설정(문학산성)
- 조정대상 :
 - 문학산성 : 학술조사 결과(2020)를 반영한 유산구역 조정방안 검토(위치/범위 등)
 - 인천향교 : 학술조사 결과(2024)를 반영한 의견수렴(유산구역 확대)

▼미추홀구 소재 시지정유산(5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인천도호부 관아	●(유산기준)	●(필지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	인천향교	○(연구결과반영)	○(일체적 관리고려)	○(일체적 관리고려)	지정-확대/보호-확대	
3	문학산성	X(연구결과반영)	○(위치조정필요)	○(위치조정필요)	오류수정(연구결과 반영)	
4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유산기준)	●(필지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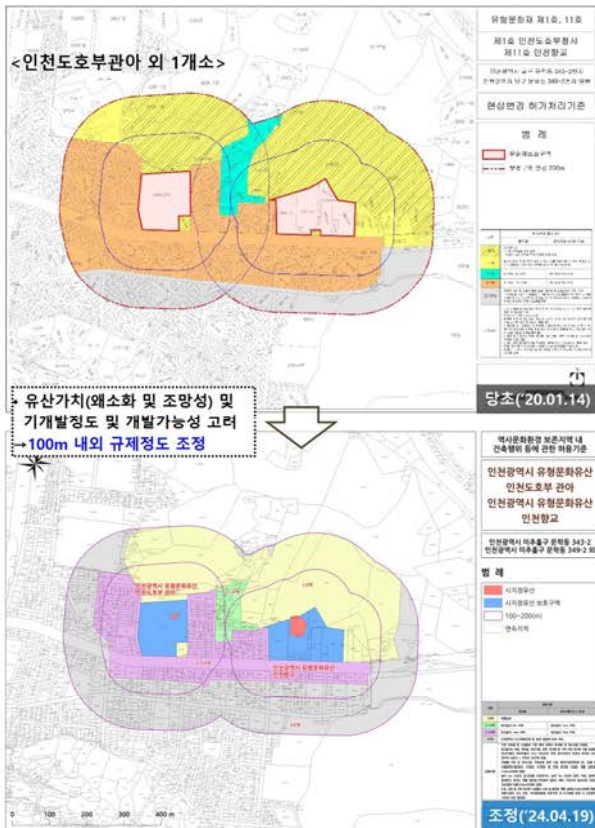
▲미추홀구 소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예시 : 학술연구 성과 반영, 유산의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유산구역 조정 도모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4개소)

- 입지특성 : 도심 면단위(3) 및 점단위(1)
- 규제범위 : 문학산성 신규 작성대상(300m), 이외 유산은 200m
- 유형특성 :
 - 성(산성) : 문학산 정상 위치, 북측 300m 부근 주거지역 확인, 산지로 인한 기개발정도 낮음(신규)
 - 사우 : 도심지 위치, 주위로 주거지 밀집 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이 높음. 100m 이내 일체성을 고려한 개별검토구역 설정, 이외 타법처리구역 설정
 - 기타 : 도심지 위치, 배면으로 구릉, 정면으로 주거지 위치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 높음. 배면 구릉지 개별검토구역, 정면 주거지 고도제한구역 설정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500m → 300m축소,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 성(산성)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 축소(500m→300m) 및 200~300m 사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척,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필요
 - 사우 : 주거지역 내 위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왜소화를 고려한 최소한의 관리 검토
 - 기타 : 도시계획 조례 정합성 고려, 고도제한구역 높이조정 및 필지단위 조정을 통한 규제 예측가능성 향상, 최소한의 관리를 통한 형평성 제고 고려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 규모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미추홀구 소재 시지정유산(4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규제정도								기타	
			규제범위		구역조정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제척	축소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인천도호부 관아	-	-	● (고도)	-	● (개별/고도)	-	● (색상/건축높이 (10층))	● (경사지붕/사전협의/적용범위)	● (필지)	● (인천향교)	
2	인천향교	-	-	● (고도)	-	● (개별/고도)	-	● (색상/건축높이(10층))	● (경사지붕/사전협의/적용범위)	● (필지)	● (인천도호부 관아)	
3	문학산성	●	-	● (신규)	-	● (신규)	-	-	-	● (거리·필지)	-	
4	이윤생·부인 강씨 정려	-	-	-	● (개별/고도)	● (개별/고도)	-	● (색상/건축높이 (10층))	● (경사지붕/사전협의/적용범위)	● (필지)	-	



▲미추홀구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 : 학술연구결과에 따른 보호구역 조정사항 반영, 유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공간 확보 도모

2.6 남동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7개소)

- 고시특성 : 대체로 구역구분 양호, 일반묘역 보호구역 미지정또는 지정구역 과다 등 확인
- 조정대상 : 일반묘역의 관리효율 고려, 현상유지

▼남동구 소재 시지정유산(7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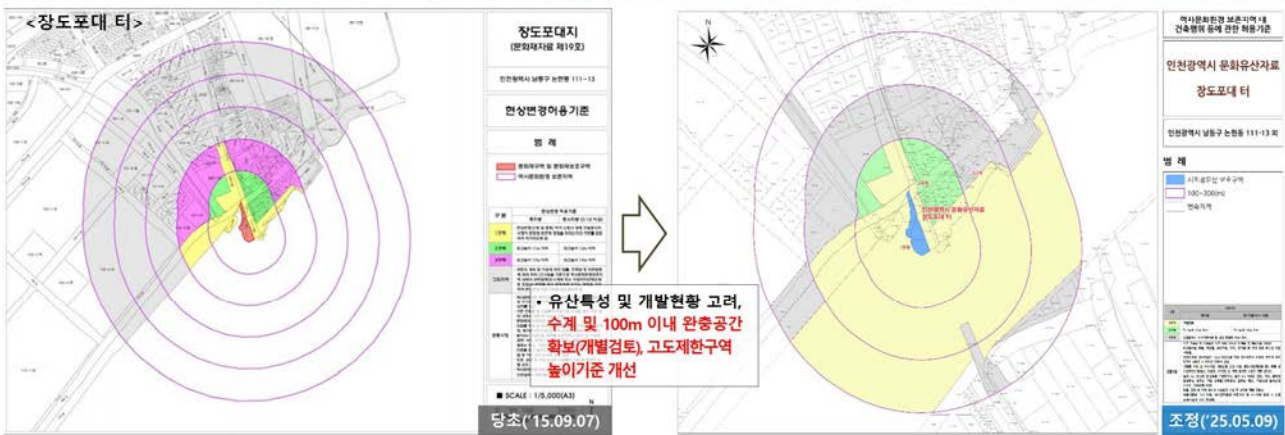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1	논현포대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2	김재로 묘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3	조정만 묘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4	이여발 묘		○(묘역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5	월성박씨 종중 묘역		○(묘역기준)	X	현상유지	
6	이승훈 묘		○(묘역기준)	X	현상유지	
7	장도포대 터		X	●(필지기준)	현상유지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4개소)

- 입지특성 : 도심 내 면단위(3) 및비도심면단위(1)유산
- 규제범위 : 월성박씨 종중묘역 유지(200m), 논현포대/김재로 묘/장도포대 터 조정(500m→300m)
- 유형특성 :
 - 성(포대) :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이 높음. 반경 300m 내 공원및도로를 중심으로 개별검토구역 설정, 이외 고도제한 또는 타법처리구역 설정
 - 일반묘역 : 구릉지 위치, 김재로 묘 주위로 산지, 월성박씨 종중묘역 주위로 주거시설 밀집. 반경 100m 이내집중관리, 월성박씨 종중묘역반경 200m 역·보지역설정 및 일부제척(주거지역)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 500m→300m 축소 및 200m~300m 사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척,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 성(포대) : 주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위치해 200~300m 부근 역·보지역제척, 주변 기개발정도가 높아, 최소한의 관리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고 고려
 - 일반묘역 : 경관 일체성을 고려한 위요 산지 개별검토구역 설정이외타법처리구역 설정
 - 장도포대 터, 김재로 묘 : 역·보지역내 경기도 지역 일부 포함, 허용기준 조정 시 경기도 지자체 공고 필요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규모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남동구 소재 시지정유산(4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규제범위		규제정도						기타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논현포대		●	● (500→300)	-	-	● (개별)	-	● (높이기준/색상/지표조사)	● (사전협의/적용범위)	● (필지)	-
2	김재로 묘		●	● (500→300)	-	-	● (개별)	-	● (높이기준/색상/건축규모)	● (사전협의/적용범위)	● (필지)	-
3	월성박씨 종중 묘역		●	-	●	● (개별)	● (개별)	-	● (높이기준/색상/건축규모)	● (사전협의/적용범위)	● (거리)	-
4	장도포대 터		●	● (500→300)	-	● (개별)	● (개별)	-	●	● (경사지붕/사전협의/적용범위)	● (거리+필지)	-



▲남동구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장도포대 터(문화유산자료))

2.7 계양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8개소)

- 고시특성 : 대부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설정(5), 지정구역만 설정(어사대, 옥은지, 계산동 은행나무)
- 조정대상 : 복합형 유산 다수, 유산기준 지정구역 설정 대체로 양호, 현상유지

▼계양구 소재 시지정유산(8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비고	
			고시현황			개선방향
			지정구역	보호구역		
1	부평도호부 관아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2	계산동 은행나무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3	옥은지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4	어사대	●(유산기준)	X(중첩)	현상유지		
5	부평향교	●(유산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6	영신군 이이 묘	○(묘역경계)	●(조례기준)	현상유지		
7	이찰·이울 형제 정려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8	이선봉 묘역	○(묘역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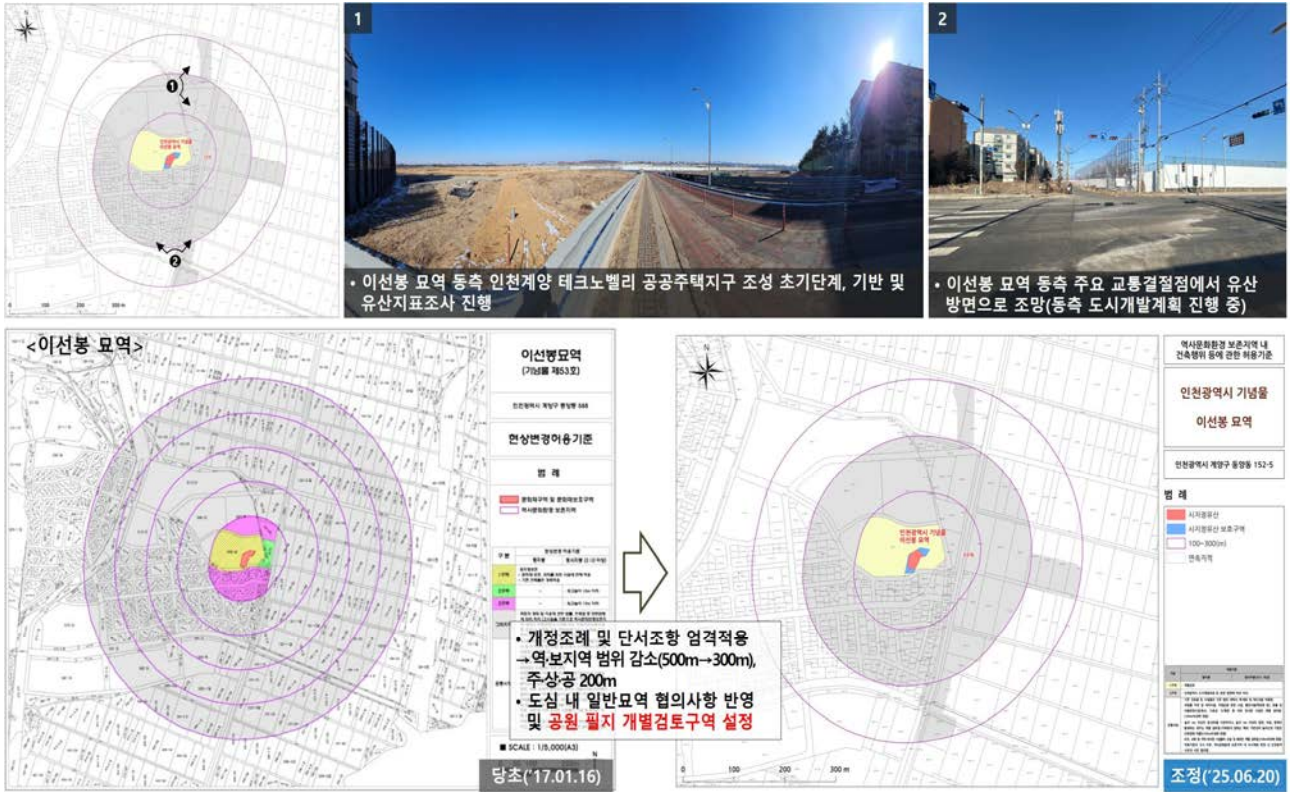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2개소)

- 입지특성 : 도심(1) 및 비도심(1) 면단위유산 분포
- 규제범위 : 계양구 소재 조정대상 전체 규제범위 조정 필요 (500m→300m)
- 유형특성 :
 - 일반묘역 : 도심에 위치, 서측 중·고층 주거지, 동측 농경지 형성, 기개발 정도 및 개발가능성 높음. 반경 100m 이내 공원필지로 개별검토구역과 인접하여 고도제한구역 설정, 100m 외곽 타법처리구역 설정
 - 사우 : 비도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위치 기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 낮음. 반경 100m 이내로 개별검토구역과 일부 고도제한구역 설정, 이외 타법처리구역 설정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 규제범위(500m→300m) 축소 및 200m~300m 사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척,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필요
 - 일반묘역 : 100m 이내 근린공원 개별검토구역을 통한 완충공간 설정 이외 타법처리구역 설정, 주변 200~300m 사이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하여 역·보지역 제척
 - 사우 : 주변 기개발정도가 낮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최소한의 개별검토구역 설정 후 타법령을 통한 관리 방안 고려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규모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계양구 소재 시지정유산(2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조정 구분	허용기준								기타	
			규제범위		규제정도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이찰·이울 형제 정려		-	● (500→300)	-	-	● (개별/고도)	-	● (개발사업/색상/건축선)	● (경사지붕/사전협의)	● (필지)	-
2	이선봉 묘역		●	● (500→300)	-	-	● (고도)	-	● (개발사업/색상/건축선)	● (사전협의)	● (거리)	-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계양구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이선봉 묘역(기념물))

2.8 서구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10개소)

- 고시특성 :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다수(6), 지정구역만 설정 (일반묘역 4개소)
- 조정대상 :
 - 대곡동 고인돌군 : 필지변동 반영
 - 류사눌 묘 : 측량오류수정

▼서구 소재 시지정유산(10개소)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연번	유산명칭	조정구분	유산구역		개선방향	비고
			고시현황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심즙 신도비	●(유산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2	류사눌 묘	▲(불일치)	▲(불일치)	오류수정(측량)		
3	조서강 묘	○(묘역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4	대곡동 고인돌군	○(추가지정)	○(필지변동)	오류수정(필지변동)		
5	평산신씨 종중 묘역	○(묘역기준)	X	현상유지		
6	한백륜 묘역	○(묘역기준)	●(조례기준)	현상유지		
7	김안정 묘 및 묘비	○(묘역기준)	X	현상유지		
8	정희량 유허	○(집터기준)	X	현상유지		
9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묘역기준)	X	현상유지		
10	의령남씨 종중 묘역	○(묘역기준)	●(필지기준)	현상유지		

■ 허용기준 조정대상 검토결과(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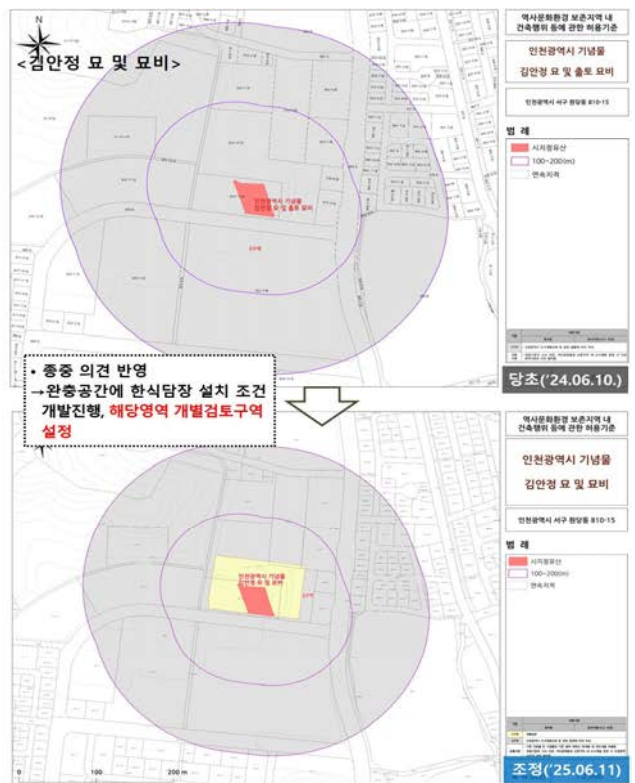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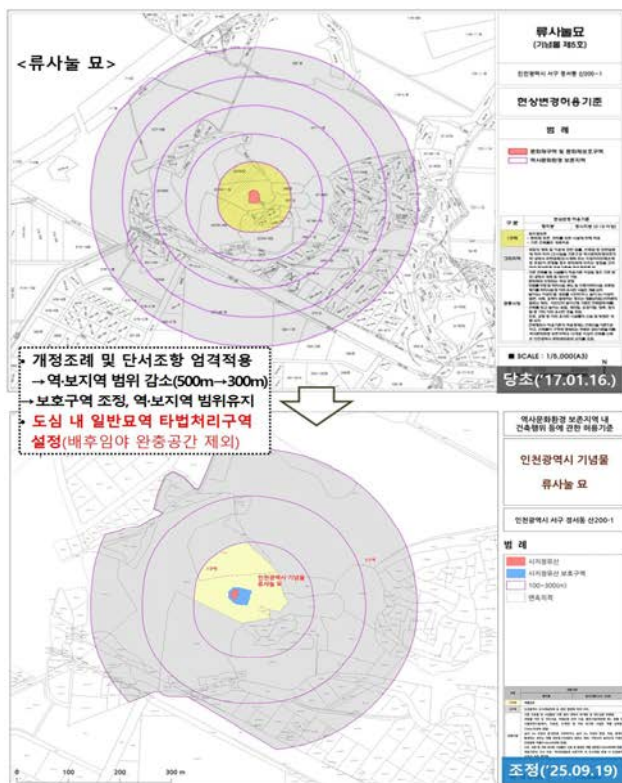
- 입지특성 : 비도심 면단위유산 다수(4), 점단위(1)
- 규제범위 : 서구 소재 조정대상 전체 조정(500m→300m)
- 유형특성 :
 - 일반묘역 : 대체로 비도심에 위치, 류사놀 묘 주위로 공업지역이 위치. 대체로 반경 100m 이내 개별검토 구역을 통하여 관리, 일부 개발현황을 고려한 고도제한구역 설정
 - 지석묘 : 비도심입지, 유산 주위로 마을 및 일반공업지역 위치, 평산신씨 종중묘역과 매우 인접. 반경 100m 이내로 유산과 인접하여 개별검토 구역과 개발현황을 고려한 고도제한구역 설정
 - 사우 : 비도심 구릉지 입지, 인접지역 비닐하우스와 예비군훈련장 위치 (반경 100m 이내 개별검토구역으로 관리)
- 고시특성(고시문) : 공통사항 상 모호한 표현(색상 등) 적용한계, 적용범위 구체화 필요(거리별/구역별)
- 조정방향 :
 - 고시도 : 시지정유산 역·보지역규제범위 500m → 300m축소 및 200m~300m 사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척,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구분 명확화 필요
 - 일반묘역 : 류사놀 묘는 위요산지 개별검토구역 설정을 통한 완충공간 확보 이외 타법처리구역 설정, 주변 200~300m 사이 공업지역 제척,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과 평산신씨종중묘역은 기존 허용기준 준용
 - 지석묘 : 변경 필지에 따른 구역조정 및 도로 이면지역 타법처리 고려 및 인접유산 통합고시 고려
 - 사우 : 100m 이내로 관리되고 있어 기존 허용기준 준용
 - 고시문 : 공통사항 상 적용한계가 있는 표현(색상 등)삭제, 협의사항(건축규모삭제) 반영, 고도제한구역 표준화된 높이기준 적용, 적용범위 구체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서구 소재 시지정유산(5개소) 허용기준 조정 검토 결과

연번	유산 명칭	허용기준									
		규제범위		규제정도						기타	
		제척	축소	구역조정				공통사항		경계조정	통합고시
개별	고도			타법	타허용	항목삭제	항목추가				
1	심즙 신도비	-	● (500→300)	-	-	● (개별)	-	● (고도제한/ 색상/건축선/ 건축규모)	● (사전협의/ 적용범위)	● (필지)	-
2	류사놀 묘	●	● (500→300)	-	-	● (개별)	-	● (고도제한/ 색상/건축선/ 건축규모)	● (사전협의/ 적용범위)	● (거리)	-
3	대곡동 고인돌군	-	● (500→300)	-	● (개별)	● (개별/고도)	-	● (높이기준/ 색상)	● (고도제한/ 사전협의/ 적용범위)	● (필지)	●
4	평산신씨 종중 묘역	-	● (500→300)	-	● (개별)	● (개별/고도)	-	● (높이기준/ 색상)	● (고도제한/ 사전협의/ 적용범위)	● (필지)	●
5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	● (500→300)	-	● (개별)	-	-	● (높이기준/ 색상)	● (고도제한/ 사전협의/ 적용범위)	● (필지)	-



▲서구 소재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예시 : 고시오류 수정 및 지적변동사항 반영, 제도 정합성 제고



▲서구 소재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예시 : 유산의 가치 및 규모를 고려한 최소한의 완충공간 확보 도모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Ⅲ. 유산구역 조정안

(군·구별)

1. 강화군
2. 중구
3. 미추홀구
4. 연수구
5. 서구

Ⅲ 유산구역 조정안(군·구별)

1. 강화군

1.1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유형문화유산)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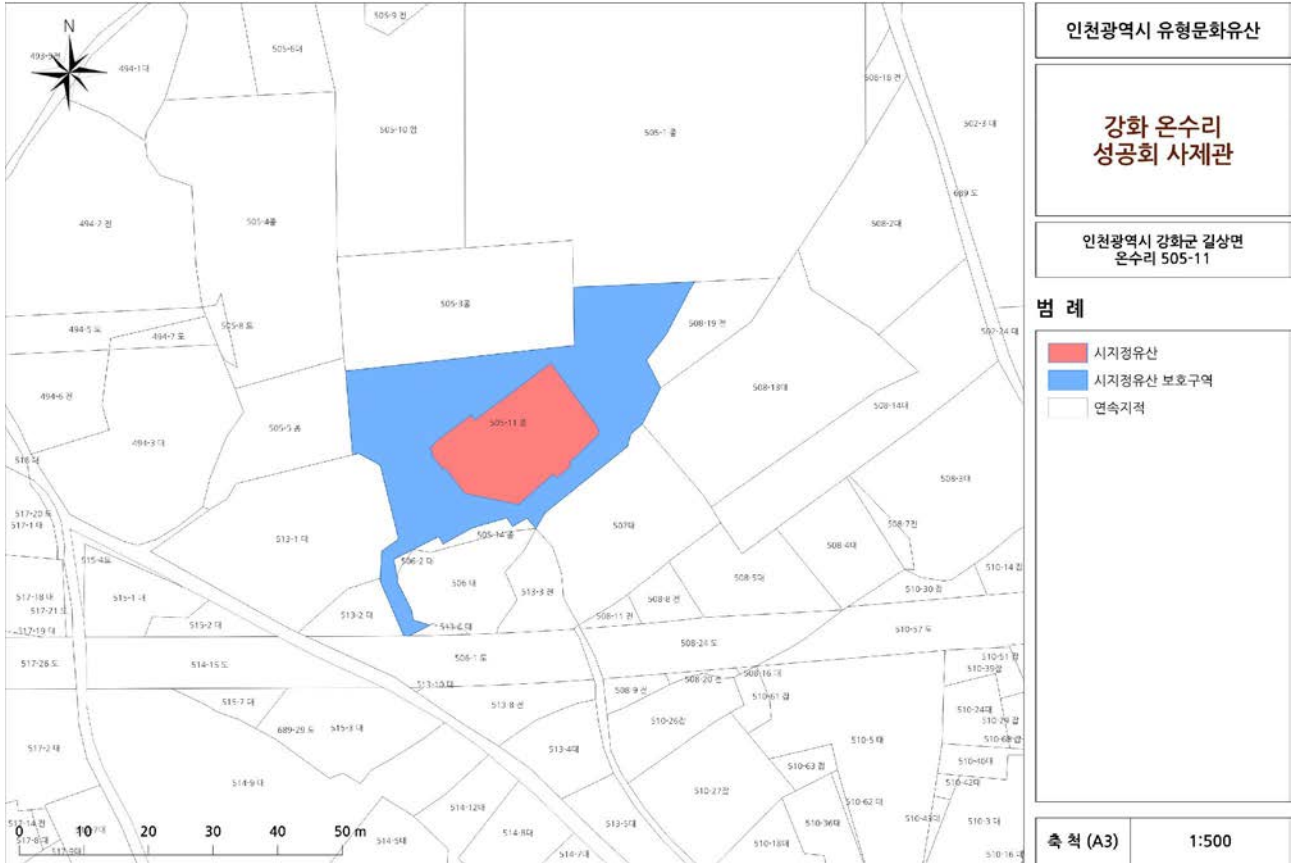
• 군집유산 일체적 관리 고려, 보호구역 신규지정

-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은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으로 사제관의 담장을 경계로 지정구역만 설정되어 있음.
- 단, 군집유산인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의 경우, 유산구역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군집유산의 일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완충공간 확보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필지변동사항(필지분할)을 반영하여, 유산이 위치한 필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하여 군집유산간 일체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구 인천우체국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213</td> <td>314.9</td> <td>314.9</td> <td>-</td> <td>-</td> </tr> <tr> <td>온수리 505-7</td> <td>임</td> <td>4,213</td> <td>314.9</td> <td>314.9</td> <td>-</td> <td>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213	314.9	314.9	-	-	온수리 505-7	임	4,213	314.9	314.9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242</td> <td>1,242</td> <td>314.9</td> <td>927.1</td> <td>-</td> </tr> <tr> <td>온수리 505-11</td> <td>종교용지</td> <td>1,242</td> <td>1,242</td> <td>314.9</td> <td>927.1</td> <td>재단법인(○) ○○재단</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927.1㎡증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242	1,242	314.9	927.1	-	온수리 505-11	종교용지	1,242	1,242	314.9	927.1	재단법인(○) ○○재단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213	314.9	314.9	-	-																																						
온수리 505-7	임	4,213	314.9	314.9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242	1,242	314.9	927.1	-																																						
온수리 505-11	종교용지	1,242	1,242	314.9	927.1	재단법인(○) ○○재단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특성 : 근대유산(점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군집문화유산(강화 온수리성공회 성당) : 유산구역(지정+보호) 구분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미설정) →군집문화유산의 일체적인 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구역 : 현상유지 보호구역 : 신규지정(필지(505-11)), 완충공간 확보 →군집문화유산과의 관리 일체성 개선(일관성 및 형평성 고려) →고시 이후, 필지변동사항(분필 및 합필)추가반영(실효성 확보) ※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증가 ((당초)241,511㎡→(조정)250,131㎡, 약 3.7% 증가)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온수리	505-11	종교 용지	1,242	1,242	314.9	927.1	(재단법인)대한 ○○○○○재단
합계				1,242	1,242	314.9	927.1	

1.2 강화 장곶돈대(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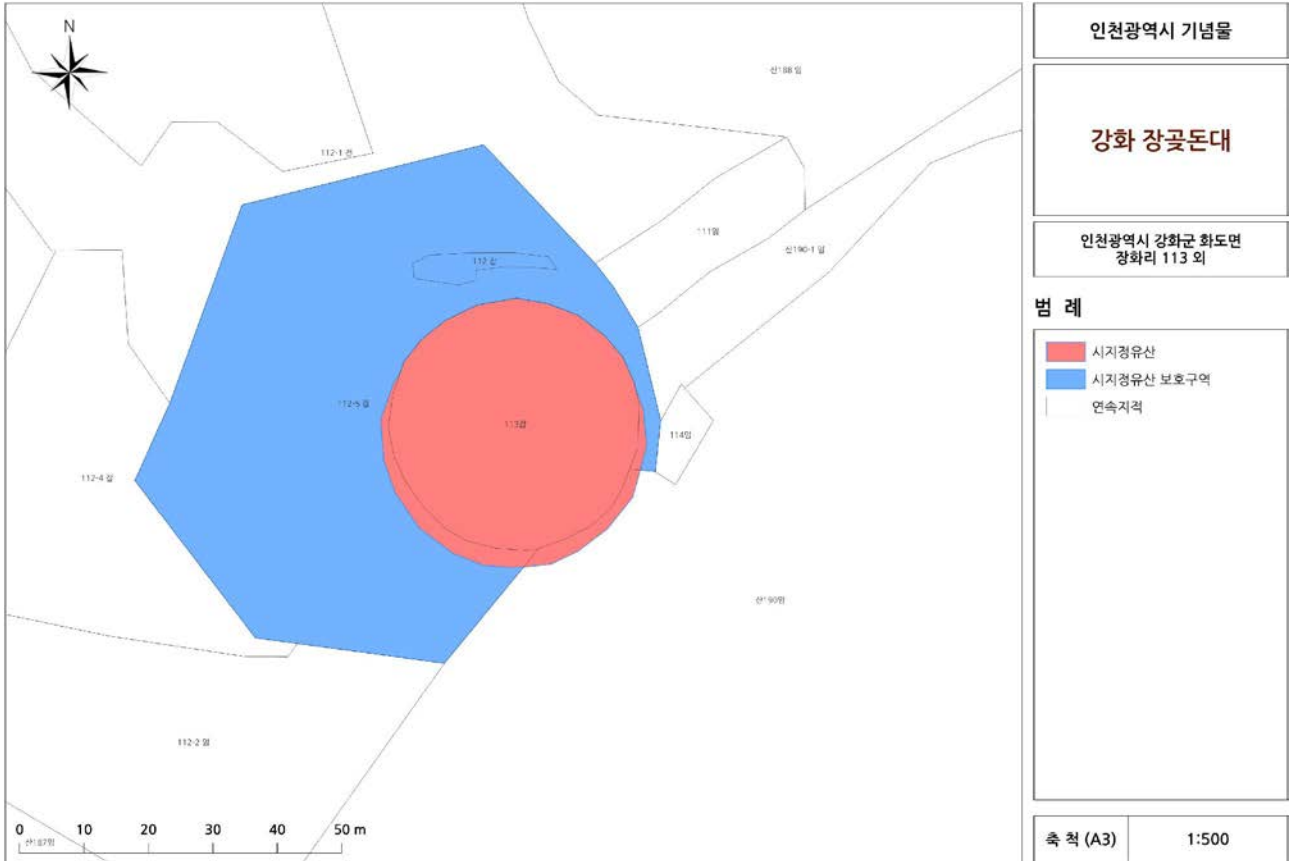
• 경관 및 주요망축 보호고려, 서해방면 보호구역 신규지정

- 강화 장곶돈대는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돈대를 중심으로 지정구역만 설정되어 있음.
- 돈대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해안방면의 조망이 중요한 유산으로 서측 해안방면으로의 조망성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완충공간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서측 주요망축 상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조망성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함.

▼강화 장곶돈대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지정구역-연속지적 경계부정합 기고시 측량조사 결과 3개 필지에 걸쳐 구역지정</p>	<p>• 유산의 주요망축(서해) 경관보호 고려 -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일체적 관리 개선 - 보호구역 신규지정 대상 필지현황 : 112/112-5번지 (국유지(국방부))</p> <p>• 지정구역-연속지적 경계정합성 제고 필요 - 필지정리(합필) 추가 제언 - 유산구역 동측 필지는 개인소유로 보호구역 추가 제한</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7,445</td> <td>1,328.6</td> <td>1,328.6</td> <td>-</td> <td>-</td> </tr> <tr> <td>장화리 113</td> <td>잡</td> <td>1,180</td> <td>1,180</td> <td>1,180</td> <td>-</td> <td>재경경제부</td> </tr> <tr> <td>산189</td> <td>임</td> <td>3,372</td> <td>99.1</td> <td>99.1</td> <td>-</td> <td>국방부</td> </tr> <tr> <td>산190</td> <td>임</td> <td>12,893</td> <td>49.5</td> <td>49.5</td> <td>-</td> <td>사유지</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445	1,328.6	1,328.6	-	-	장화리 113	잡	1,180	1,180	1,180	-	재경경제부	산189	임	3,372	99.1	99.1	-	국방부	산190	임	12,893	49.5	49.5	-	사유지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6,390</td> <td>4,459.5</td> <td>1,328.6</td> <td>3,130.9</td> <td>-</td> </tr> <tr> <td>장화리 113</td> <td>잡</td> <td>1,180</td> <td>1,180</td> <td>1,180</td> <td>-</td> <td>기획재정부</td> </tr> <tr> <td>112-5</td> <td>잡</td> <td>3,167</td> <td>3,167</td> <td>99.1</td> <td>3,067.9</td> <td>국방부</td> </tr> <tr> <td>산190</td> <td>임</td> <td>11,980</td> <td>49.5</td> <td>49.5</td> <td>-</td> <td>김○○</td> </tr> <tr> <td>112</td> <td>잡</td> <td>63</td> <td>63</td> <td>-</td> <td>63</td> <td>국방부</td> </tr> </tbody>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 text-align: center;">당초대비 보호구역 3,130.9m²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390	4,459.5	1,328.6	3,130.9	-	장화리 113	잡	1,180	1,180	1,180	-	기획재정부	112-5	잡	3,167	3,167	99.1	3,067.9	국방부	산190	임	11,980	49.5	49.5	-	김○○	112	잡	63	63	-	63	국방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445	1,328.6	1,328.6	-	-																																																																									
장화리 113	잡	1,180	1,180	1,180	-	재경경제부																																																																									
산189	임	3,372	99.1	99.1	-	국방부																																																																									
산190	임	12,893	49.5	49.5	-	사유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390	4,459.5	1,328.6	3,130.9	-																																																																									
장화리 113	잡	1,180	1,180	1,180	-	기획재정부																																																																									
112-5	잡	3,167	3,167	99.1	3,067.9	국방부																																																																									
산190	임	11,980	49.5	49.5	-	김○○																																																																									
112	잡	63	63	-	63	국방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진·보·돈(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미설정) - 지정구역 : 돈대외벽 하부기석기준 측량조사 → 지정구역과 연속지적 경계 부정합으로 인한 관리효율 저해 우려 → 유산의 주요망축(서해) 경관보호 및 완충공간 확보 고려, 서측 인접필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 → 지적정비 제언을 통한 지정구역-연속지적 상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 • 보호구역 : 신규지정(인접필지(112/112-5(국유지))) →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유산 경관보호 및 완충공간 확보 ※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가 증가하는 대상이나, 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되어 변동없음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장화리	113	잡	1,180	1,180	1,180	-	기획재정부
2		112-5	잡	3,167	3,167	99.1	3,067.9	국방부
3		산190	임	11,980	49.5	49.5	-	김○○
4		112	잡	63	63	-	63	국방부
합계				16,390	4,459.5	1,328.6	3,130.9	

1.3 강화 인산리 석실분(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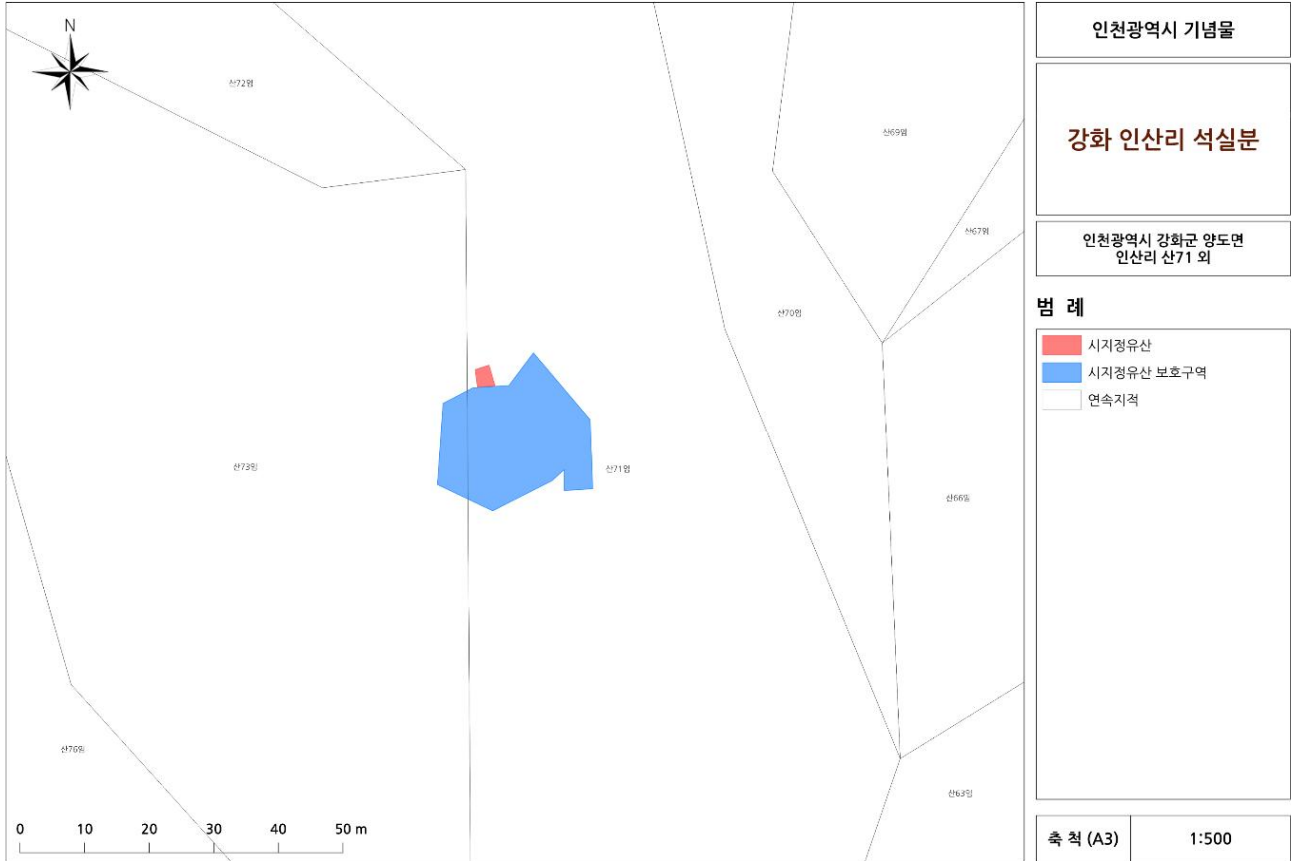
• 관리효율 개선 고려, 구역구분을 통한 관리대상 명확화

- 강화 인산리 석실분은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석실분 및 석축붕괴지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관리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확인됨.
- 따라서, 기존의 유산구역 범위 내에서 관리대상(석실분)과 완충공간(석축붕괴지점)을 구분하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각각 조정하여 관리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강화 인산리 석실분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2,628.0</td> <td>402.6</td> <td>402.6</td> <td>-</td> <td>-</td> </tr> <tr> <td>인산리 산71</td> <td>임</td> <td>23,702.0</td> <td>339.8</td> <td>339.8</td> <td>-</td> <td>신○○</td> </tr> <tr> <td>산73</td> <td>임</td> <td>8,926.0</td> <td>62.8</td> <td>62.8</td> <td>-</td> <td>신○○</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2,628.0	402.6	402.6	-	-	인산리 산71	임	23,702.0	339.8	339.8	-	신○○	산73	임	8,926.0	62.8	62.8	-	신○○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2,628.0</td> <td>402.6</td> <td>7.5</td> <td>395.1</td> <td>-</td> </tr> <tr> <td>인산리 산71</td> <td>임</td> <td>23,702.0</td> <td>339.8</td> <td>7.5</td> <td>332.3</td> <td>신○○</td> </tr> <tr> <td>산73</td> <td>임</td> <td>8,926.0</td> <td>62.8</td> <td>-</td> <td>62.8</td> <td>신○○</td> </tr> </tbody>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유산구역 면적 유지(지정구역 감소, 보호구역 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2,628.0	402.6	7.5	395.1	-	인산리 산71	임	23,702.0	339.8	7.5	332.3	신○○	산73	임	8,926.0	62.8	-	62.8	신○○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2,628.0	402.6	402.6	-	-																																																				
인산리 산71	임	23,702.0	339.8	339.8	-	신○○																																																				
산73	임	8,926.0	62.8	62.8	-	신○○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2,628.0	402.6	7.5	395.1	-																																																				
인산리 산71	임	23,702.0	339.8	7.5	332.3	신○○																																																				
산73	임	8,926.0	62.8	-	62.8	신○○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능·원·묘(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미설정) - 지정구역 : 석실분 및 정면 석축붕괴지점기준 구역설정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축소조정(유산구역 내 석실분 기준) • 보호구역 : 신규지정(기고시범위 내)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유산 경관보호 및 완충공간 확보 도모 ※기고시범위 내 구역구분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상유지!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인산리	산71	임	23,702.0	339.8	7.5	332.3	신○○ 외 1인
2		산73	임	8,926.0	62.8	-	62.8	신○○
합계				32,628.0	402.6	7.5	395.1	

1.4 강화 용진진(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 관리효율 개선 고려, 구역구분을 통한 관리대상 명확화
 - 강화 용진진은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 구역으로만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유산이 위치한 필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경계가 모호함.
 - 따라서, 기존의 유산구역 범위 내에서 측량결과를 반영, 관리대상(성곽)과 완충공간을 구분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화하고 관리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강화 용진진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지도	<p>• 보호구역 미설정, 관리대상(성곽 등)과 완충공간의 경계구분 모호</p>	<p>• 구역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개선(측량성과 (2008) 반영)</p>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9,145</td> <td>5,503.2</td> <td>5,503.2</td> <td>-</td> <td>-</td> </tr> <tr> <td>215</td> <td>전</td> <td>502</td> <td>502</td> <td>502</td> <td>-</td> <td>국(산림청)</td> </tr> <tr> <td>216</td> <td>전</td> <td>2,889</td> <td>2,889</td> <td>2,889</td> <td>-</td> <td>국(산림청)</td> </tr> <tr> <td>434-1</td> <td>도</td> <td>192</td> <td>192</td> <td>192</td> <td>-</td> <td>강화군</td> </tr> <tr> <td>434-2</td> <td>도</td> <td>245</td> <td>245</td> <td>245</td> <td>-</td> <td>강화군</td> </tr> <tr> <td>434-3</td> <td>도</td> <td>120</td> <td>120</td> <td>120</td> <td>-</td> <td>강화군</td> </tr> <tr> <td>438-1</td> <td>대</td> <td>486</td> <td>486</td> <td>486</td> <td>-</td> <td>국(재무부)</td> </tr> <tr> <td>437</td> <td>대</td> <td>215</td> <td>215</td> <td>215</td> <td>-</td> <td>배○○</td> </tr> <tr> <td>438</td> <td>대</td> <td>331</td> <td>331</td> <td>331</td> <td>-</td> <td>노○○</td> </tr> <tr> <td>439</td> <td>전</td> <td>469</td> <td>469</td> <td>469</td> <td>-</td> <td>강화군</td> </tr> <tr> <td>815</td> <td>도</td> <td>3,696</td> <td>54.2</td> <td>54.2</td> <td>-</td> <td>국(건설부)</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9,145	5,503.2	5,503.2	-	-	215	전	502	502	502	-	국(산림청)	216	전	2,889	2,889	2,889	-	국(산림청)	434-1	도	192	192	192	-	강화군	434-2	도	245	245	245	-	강화군	434-3	도	120	120	120	-	강화군	438-1	대	486	486	486	-	국(재무부)	437	대	215	215	215	-	배○○	438	대	331	331	331	-	노○○	439	전	469	469	469	-	강화군	815	도	3,696	54.2	54.2	-	국(건설부)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9,145</td> <td>5,503.2</td> <td>859.7</td> <td>4,643.5</td> <td>-</td> </tr> <tr> <td>215</td> <td>전</td> <td>502</td> <td>502</td> <td>-</td> <td>502</td> <td>강화군</td> </tr> <tr> <td>216</td> <td>전</td> <td>2,889</td> <td>2,889</td> <td>477.2</td> <td>2,411.8</td> <td>기획재정부</td> </tr> <tr> <td>434-1</td> <td>도</td> <td>192</td> <td>192</td> <td>3.3</td> <td>188.7</td> <td>강화군</td> </tr> <tr> <td>434-2</td> <td>도</td> <td>245</td> <td>245</td> <td>98.7</td> <td>146.3</td> <td>강화군</td> </tr> <tr> <td>434-3</td> <td>도</td> <td>120</td> <td>120</td> <td>21.7</td> <td>98.3</td> <td>강화군</td> </tr> <tr> <td>437</td> <td>대</td> <td>215</td> <td>215</td> <td>-</td> <td>215</td> <td>배○○</td> </tr> <tr> <td>438</td> <td>대</td> <td>331</td> <td>331</td> <td>0.2</td> <td>330.8</td> <td>강화군</td> </tr> <tr> <td>438-1</td> <td>대</td> <td>486</td> <td>486</td> <td>99.5</td> <td>386.5</td> <td>기획재정부</td> </tr> <tr> <td>439</td> <td>전</td> <td>469</td> <td>469</td> <td>104.9</td> <td>364.1</td> <td>강화군</td> </tr> <tr> <td>815</td> <td>도</td> <td>3,696</td> <td>54.2</td> <td>54.2</td> <td>-</td> <td>국도교통부</td> </tr> </tbody> </table> <p>당초 유산구역 면적 유지(지정구역 감소, 보호구역 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9,145	5,503.2	859.7	4,643.5	-	215	전	502	502	-	502	강화군	216	전	2,889	2,889	477.2	2,411.8	기획재정부	434-1	도	192	192	3.3	188.7	강화군	434-2	도	245	245	98.7	146.3	강화군	434-3	도	120	120	21.7	98.3	강화군	437	대	215	215	-	215	배○○	438	대	331	331	0.2	330.8	강화군	438-1	대	486	486	99.5	386.5	기획재정부	439	전	469	469	104.9	364.1	강화군	815	도	3,696	54.2	54.2	-	국도교통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9,145	5,503.2	5,503.2	-	-																																																																																																																																																																				
215	전	502	502	502	-	국(산림청)																																																																																																																																																																				
216	전	2,889	2,889	2,889	-	국(산림청)																																																																																																																																																																				
434-1	도	192	192	192	-	강화군																																																																																																																																																																				
434-2	도	245	245	245	-	강화군																																																																																																																																																																				
434-3	도	120	120	120	-	강화군																																																																																																																																																																				
438-1	대	486	486	486	-	국(재무부)																																																																																																																																																																				
437	대	215	215	215	-	배○○																																																																																																																																																																				
438	대	331	331	331	-	노○○																																																																																																																																																																				
439	전	469	469	469	-	강화군																																																																																																																																																																				
815	도	3,696	54.2	54.2	-	국(건설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9,145	5,503.2	859.7	4,643.5	-																																																																																																																																																																				
215	전	502	502	-	502	강화군																																																																																																																																																																				
216	전	2,889	2,889	477.2	2,411.8	기획재정부																																																																																																																																																																				
434-1	도	192	192	3.3	188.7	강화군																																																																																																																																																																				
434-2	도	245	245	98.7	146.3	강화군																																																																																																																																																																				
434-3	도	120	120	21.7	98.3	강화군																																																																																																																																																																				
437	대	215	215	-	215	배○○																																																																																																																																																																				
438	대	331	331	0.2	330.8	강화군																																																																																																																																																																				
438-1	대	486	486	99.5	386.5	기획재정부																																																																																																																																																																				
439	전	469	469	104.9	364.1	강화군																																																																																																																																																																				
815	도	3,696	54.2	54.2	-	국도교통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진·보·돈(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미설정) - 지정구역: 유산이 위치한 필지단위 지정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축소조정(유산구역 내 석조건축물 기준) • 보호구역 : 신규지정(기고시범위 내) →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역구분 →주변 지역여건(기개발정도)과 토지소유현황 고려, 기존 범위 내 구역구분 ※기고시범위 내 구역구분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상유지! 																																																																																																																																																																								

■ 유산구역 조정(안)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용진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215 외

범 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A3) 1:1,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지산리	215	전	502	502	-	502	강화군
2		216	전	2,889	2,889	477.2	2,411.8	기획재정부
3	연리	434-1	도	192	192	3.3	188.7	강화군
4		434-2	도	245	245	98.7	146.3	강화군
5		434-3	도	120	120	21.7	98.3	강화군
6		437	대	215	215	-	215	배○○
7		438	대	331	331	0.2	330.8	강화군
8		438-1	대	486	486	99.5	386.5	기획재정부
9		439	전	469	469	104.9	364.1	강화군
10		815	도	3,696	54.2	54.2	-	국토교통부
합계				9,145	5,503.2	859.7	4,643.5	



1.5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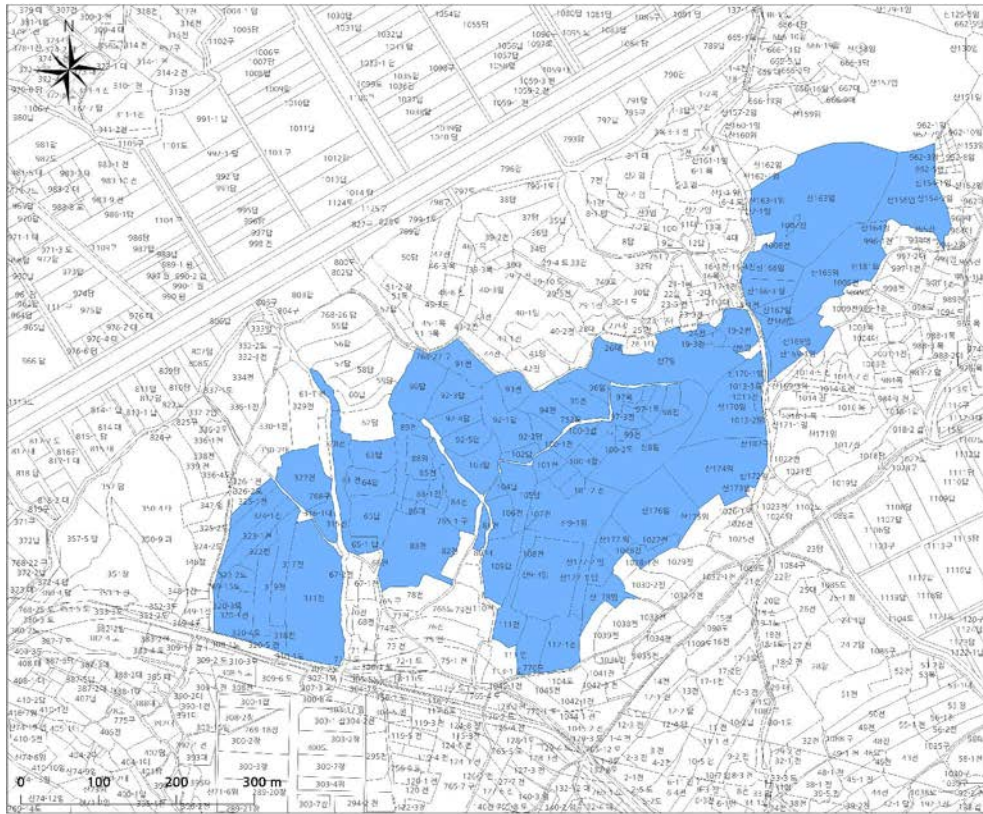
• 원지형 훼손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고려, 효율적 관리 도모

-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은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산구역은 전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해당 유산은 강화군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유산구역 내 일부 필지(351) 내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판단되어, 해당 필지는 구역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함.
- 현장조사 결과, 해당 필지는 현재 목장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한 원지형이 다수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유산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추가적으로 지형도면 고시 이후, 보호구역 내 필지의 분할 등이 확인되어 당초 87필지에서 90필지로 유산구역 조정이 필요함.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지정구역 미설정, 관리대상(고인돌)과 완충공간의 경계구분 모호</p>  <p>• 강화군 의견수렴, 보호구역 해제 검토 - 공장시설로 인한 원지형 훼손</p>	<p>• 유산구역 현상유지 → 고인돌'군'의 유산 특성 고려, 개별 고인돌 관리보다 군집형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추가 학술조사 제언</p>  <p>• 유산구역 내 도로필지 보호구역 추가 제언</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37,508</td> <td>237,508</td> <td>-</td> <td>237,508</td> <td>-</td> </tr> <tr> <td>부근리 351</td> <td>목장용지</td> <td>4,000</td> <td>4,000</td> <td>-</td> <td>4,000</td> <td>사유지</td> </tr> <tr> <td>그 외 86필지</td> <td>-</td> <td>233,508</td> <td>233,508</td> <td>-</td> <td>233,508</td> <td>공유지/사유지</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37,508	237,508	-	237,508	-	부근리 351	목장용지	4,000	4,000	-	4,000	사유지	그 외 86필지	-	233,508	233,508	-	233,508	공유지/사유지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33,508</td> <td>233,508</td> <td>-</td> <td>233,508</td> <td>-</td> </tr> <tr> <td>부근리 91 외 69필지</td> <td>-</td> <td>159,182</td> <td>159,182</td> <td>-</td> <td>159,182</td> <td>공유지/사유지</td> </tr> <tr> <td>상도리 1007 외 19필지</td> <td>-</td> <td>74,326</td> <td>74,326</td> <td>-</td> <td>74,326</td> <td>공유지/사유지</td> </tr> </tbody>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 text-align: center;">당초대비 보호구역 4,000m²축소</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33,508	233,508	-	233,508	-	부근리 91 외 69필지	-	159,182	159,182	-	159,182	공유지/사유지	상도리 1007 외 19필지	-	74,326	74,326	-	74,326	공유지/사유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37,508	237,508	-	237,508	-																																																				
부근리 351	목장용지	4,000	4,000	-	4,000	사유지																																																				
그 외 86필지	-	233,508	233,508	-	233,508	공유지/사유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33,508	233,508	-	233,508	-																																																				
부근리 91 외 69필지	-	159,182	159,182	-	159,182	공유지/사유지																																																				
상도리 1007 외 19필지	-	74,326	74,326	-	74,326	공유지/사유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고분군·지석묘(면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 미설정(보호구역만 설정) - 보호구역 : 고인돌군 출토지점 기준, 인접필지 구역설정 (매장유산 출토가능성 고려) →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필요 → 강화군 요청사항 반영, 일부필지(351)의원지형 훼손에 따른 보호구역 축소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미설정(추후 학술조사를 통한 고인돌군의 범위 확인 필요성 제언) • 보호구역 : 축소조정(원지형 훼손 지역(351번지) 지정해제) → 고인돌'군'의 유산특성 고려, 개별 고인돌의 관리보다 군집 형태의 지정구역 설정 필요 ※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의 일부가 축소되나, 중첩유산(사적 강화 부근리고인돌)의 역·보 지역과 중첩되어 변동없음 																																																								

■ 유산구역 조정(안)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외

범례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A3) 1: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부근리	19	대	412	412	-	412	강화군
2		19-2	전	2,045	2,045	-	2,045	강화군
3		19-3	전	252	252	-	252	강화군
4		61	전	2,826	2,826	-	2,826	강화군
5		61-1	전	615	615	-	615	강화군
6		63	답	2,301	2,301	-	2,301	강화군
7		64	답	2,132	2,132	-	2,132	강화군
8		65	답	3,177	3,177	-	3,177	강화군
9		65-1	답	661	661	-	661	강화군
10		81	전	621	621	-	621	강화군
11		83	전	8,658	8,658	-	8,658	강화군
12		84	전	2,678	2,678	-	2,678	강화군
13		85	전	1,203	1,203	-	1,203	김○○○
14		86	대	337	337	-	337	답○○○
15		86-1	전	860	860	-	860	남○○○
16		87	전	1,140	1,140	-	1,140	강화군
17		88	임	1,891	1,891	-	1,891	강화군
18		89	전	1,101	1,101	-	1,101	강화군
19		90	답	4,076	4,076	-	4,076	강화군
20		91	전	2,473	2,473	-	2,473	강화군
21		92-1	답	3,683	3,683	-	3,683	강화군
22		92-2	답	1,035	1,035	-	1,035	강화군
23		92-3	답	2,479	2,479	-	2,479	강화군
24		92-4	답	1,785	1,785	-	1,785	강화군
25		92-5	답	1,835	1,835	-	1,835	강화군
26		93	전	1,574	1,574	-	1,574	강화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27	부근리	94	전	2,063	2,063	-	2,063	강화군	
28		95	전	2,512	2,512	-	2,512	강화군	
29		96	임	1,421	1,421	-	1,421	황○○	
30		97	목장	1,035	1,035	-	1,035	서○○	
31		97-1	목장	194	194	-	194	서○○외1	
32		97-2	목장	871	871	-	871	서○○외1	
33		97-3	전	1,358	1,358	-	1,358	서○○외1	
34		98	전	1,904	1,904	-	1,904	서○○	
35		99	전	727	727	-	727	김○○	
36		100-1	전	1,329	1,329	-	1,329	강화군	
37		100-2	목장	825	825	-	825	강화군	
38		100-3	잡	648	648	-	648	강화군	
39		100-4	잡	996	996	-	996	강화군	
40		101	전	1,160	1,160	-	1,160	강화군	
41		101-1	전	644	644	-	644	박○○외1인	
42		101-2	전	645	645	-	645	박○○외1인	
43		102	답	833	833	-	833	강화군	
44		103	답	2,876	2,876	-	2,876	강화군	
45		104	답	456	456	-	456	강화군	
46		105	답	2,698	2,698	-	2,698	강화군	
47		106	전	1,593	1,593	-	1,593	강화군	
48		107	전	466	466	-	466	강화군	
49		108	전	919	919	-	919	강화군	
50		109	답	3,421	3,421	-	3,421	강화군	
51		111	전	1,805	1,805	-	1,805	강화군	
52		112-1	전	3,131	3,131	-	3,131	강화군	
53		112-2	전	2,377	2,377	-	2,377	강화군	
54		311	전	11,934	11,934	-	11,934	강화군	
55		315	전	1,309	1,309	-	1,309	강화군	
56		317	전	2,817	2,817	-	2,817	강화군	
57		318	전	1,025	1,025	-	1,025	강화군	
58		319	전	2,539	2,539	-	2,539	강화군	
59		320-1	전	2,514	2,514	-	2,514	강화군	
60		320-5	전	18	18	-	18	강화군	
61		321	전	1,974	1,974	-	1,974	강화군	
62		322	전	893	893	-	893	강화군	
63		323-1	전	2,334	2,334	-	2,334	강화군	
64		324-1	전	2,132	2,132	-	2,132	강화군	
65		325-1	전	982	982	-	982	강화군	
66		327	전	4,136	4,136	-	4,136	강화군	
67		산7	임	10,711	10,711	-	10,711	최○○외8인	
68		산8	임	7,041	7,041	-	7,041	김○○	
69		산9-1	임	8,727	8,727	-	8,727	강화군	
70		산9-3	임	7,339	7,339	-	7,339	김○○	
71		상도리	1007	전	212	212	-	212	강화군
72			1013	전	526	526	-	526	김○
73			1027	전	489	489	-	489	김○○
74			1028	전	754	754	-	754	김○○
75			산156	임	7,240	7,240	-	7,240	장○○
76			산163	임	19,707	19,707	-	19,707	강화군
77	산165		임	8,132	8,132	-	8,132	윤○○	
78	산166		임	2,230	2,230	-	2,230	강화군	
79	산166-3		임	1,935	1,935	-	1,935	강화군	
80	산167		임	1,289	1,289	-	1,289	김○○	
81	산168		임	517	517	-	517	지○○	
82	산168-1		임	220	220	-	220	차○○	
83	산169		임	3,804	3,804	-	3,804	차○○	
84	산170		임	6,048	6,048	-	6,048	김○	
85	산174		임	9,124	9,124	-	9,124	차○○외10인	
86	산176		임	7,438	7,438	-	7,438	김○○	
87	산177		임	1,520	1,520	-	1,520	임○○	
88	산177-1		임	662	662	-	662	전○○	
89	산177-2		임	496	496	-	496	한○○	
90	산178		임	1,983	1,983	-	1,983	김○○	
	합계			233,508	233,508	-	233,508		



1.6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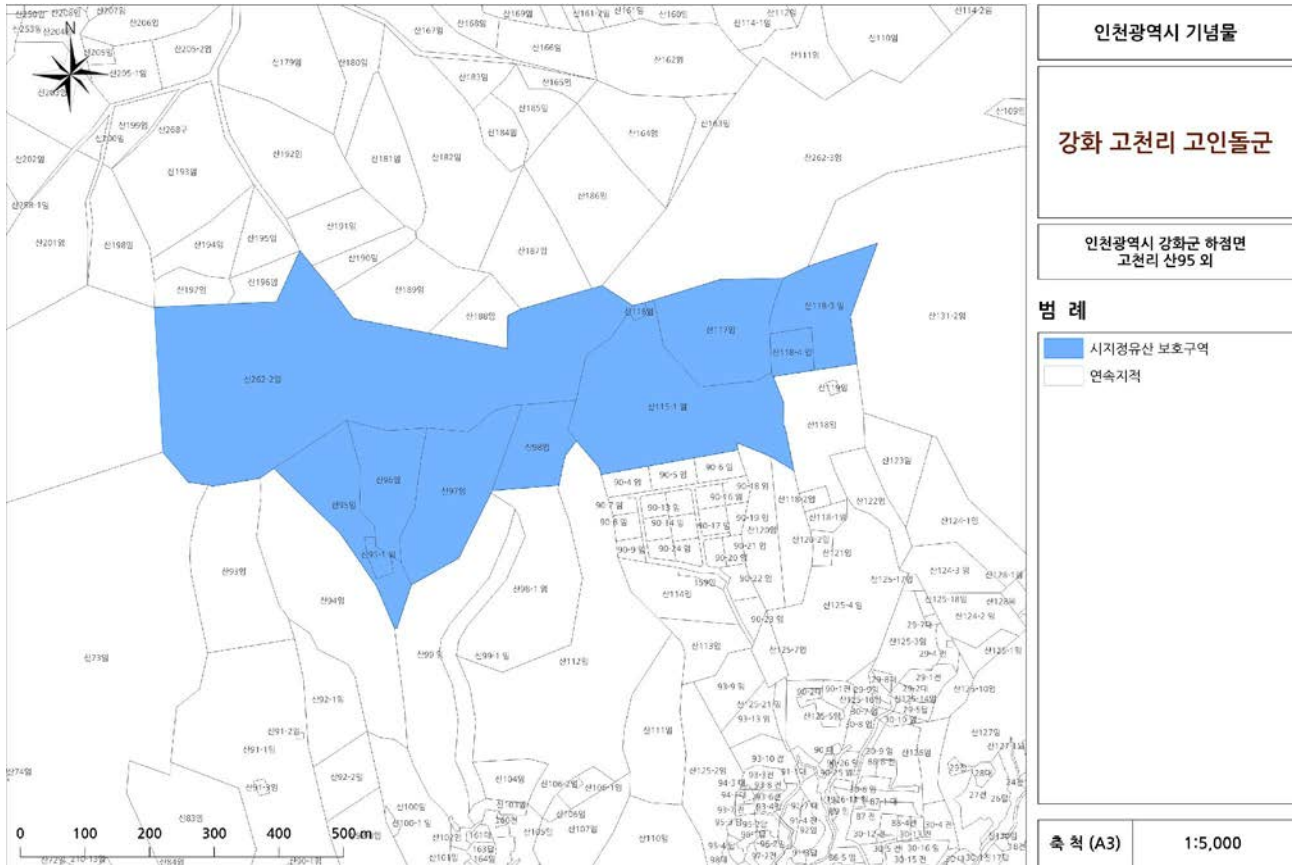
• 지형특성 고려, 효율적 관리 도모

-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은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으로만 설정되어 있음.
- 해당유산은 강화군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유산구역 내 일부필지(산93)의 입지특성을 고려, 보호구역 축소여부를 검토함
- 현장조사 결과, 해당 필지(산93)는 지형적으로 급경사지에 해당하여 고인돌 등 유산의 유존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유산구역에서 일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지형도면 고시 이후, 보호구역 내 필지의 분할 등이 확인되어 당초 10필지에서 11필지로 유산구역 조정이 필요함.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미설정, 관리대상(고인돌)과 완충공간의 경계구분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의견수렴, 보호구역 해제 검토 - 지형(급경사지)에 따른 매장유산 출토가능성 낮음 - 고시도 상 보호구역 필지 미반영(산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구역 현상유지 → 고인돌'군'의 유산 특성 고려, 개별 고인돌 관리보다 군집형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추가학술 조사 제언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95,299</td> <td>442,386.1</td> <td>-</td> <td>442,386.1</td> <td>-</td> </tr> <tr> <td>고천리 산 93</td> <td>임야</td> <td>28,165</td> <td>28,165</td> <td>-</td> <td>28,165</td> <td>강화군</td> </tr> <tr> <td>그 외 9필지</td> <td>-</td> <td>467,134</td> <td>414,221.1</td> <td>-</td> <td>414,221.1</td> <td>-</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5,299	442,386.1	-	442,386.1	-	고천리 산 93	임야	28,165	28,165	-	28,165	강화군	그 외 9필지	-	467,134	414,221.1	-	414,221.1	-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14,221</td> <td>414,221</td> <td>-</td> <td>414,221</td> <td>-</td> </tr> <tr> <td>고천리 산 96 외 10필지</td> <td>-</td> <td>414,221</td> <td>414,221</td> <td>-</td> <td>414,221</td> <td>-</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28,165m² 축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14,221	414,221	-	414,221	-	고천리 산 96 외 10필지	-	414,221	414,221	-	414,221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5,299	442,386.1	-	442,386.1	-																																													
고천리 산 93	임야	28,165	28,165	-	28,165	강화군																																													
그 외 9필지	-	467,134	414,221.1	-	414,221.1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14,221	414,221	-	414,221	-																																													
고천리 산 96 외 10필지	-	414,221	414,221	-	414,221	-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고분군 지석묘(면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 미설정(보호구역만 설정) - 보호구역 : 고인돌군 출토지점 기준, 인접필지 구역설정 (매장유산 출토가능성 고려)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필요 →강화군 요청사항 반영, 일부필지(산93)의 입지특성(경사지) 고려, 보호구역 축소 여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미설정(현상유지) • 보호구역 : 단순수정(필지변동사항 반영) →고인돌'군'의 유산특성 고려, 개별 고인돌의 관리보다 군집 형태의 지정구역 설정 필요 ※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고천리	산95	임	18,512	18,512	-	18,512	강화군
2		산95-1	임	1,620	1,620	-	1,620	이○○
3		산96	임	16,066	16,066	-	16,066	오○○외1인
4		산97	임	27,769	27,769	-	27,769	김○○
5		산98	임	12,768	12,768	-	12,768	강화군
6		산 115-1	임	50,572	50,572	-	50,572	강화군
7		산116	임	496	496	-	496	금택○○
8		산117	임	24,992	24,992	-	24,992	국(산림청)
9		산118-3	임	17,848	17,848	-	17,848	강화군
10		산118-4	임	4,570	4,570	-	4,570	강화군
11	삼거리	산262-2	임	239,008	239,008	-	239,008	강화군
합계				414,221	414,221	-	414,221	

1.7 강화 삼암돈대(유형문화유산)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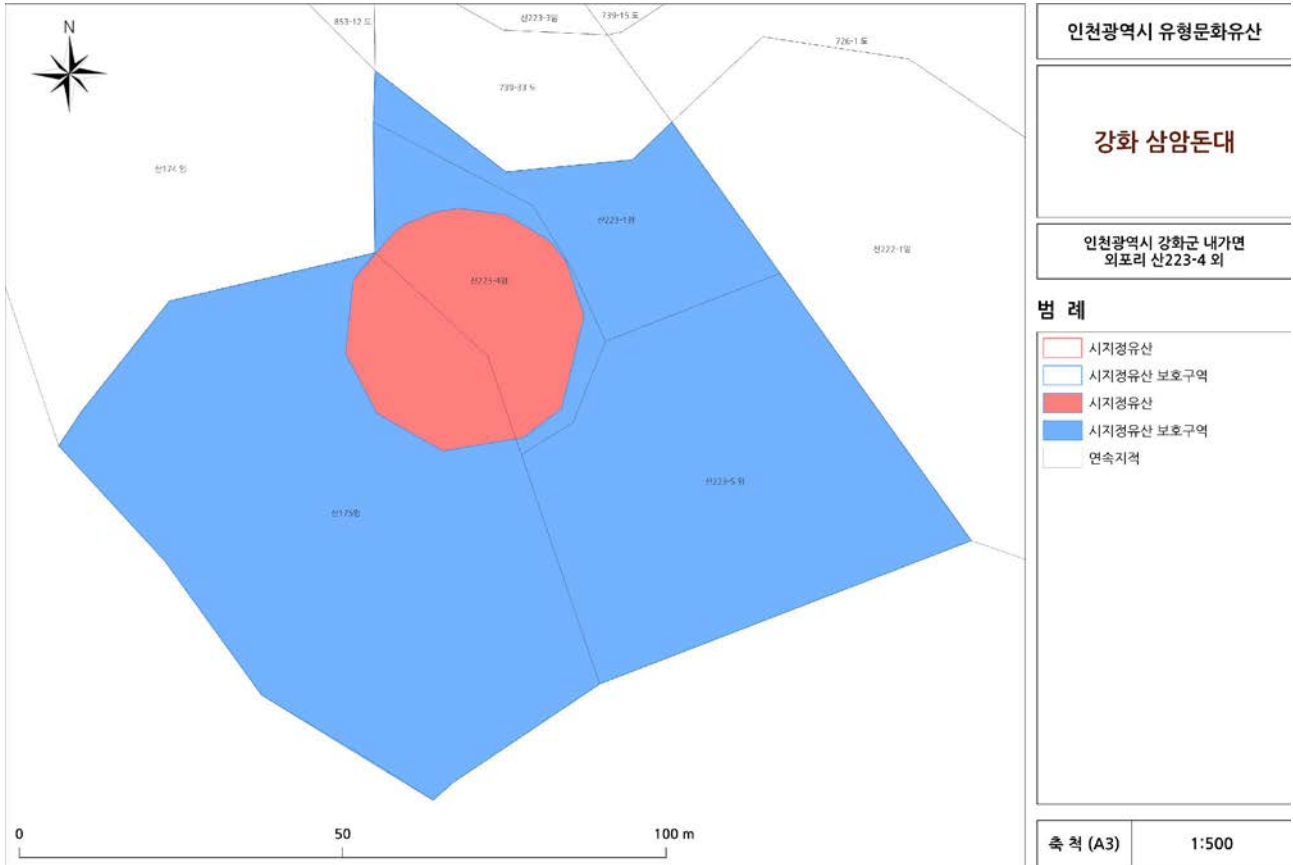
• 경관 및 주요망축 보호고려, 인접필지 보호구역 추가지정

- 강화 삼암돈대는 비도심에 위치한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은 성곽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은 성곽이 위치한 필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 유산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서측 해안방면으로의 조망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구역 주변으로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 보호구역 확대 대상지역 토지소유현황은 국유지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따라서, 유산의 조망성 보호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차원에서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강화 삼암돈대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지도	<p>• 유산 조망성 및 원지형 보존 필요 - 방어시설(돈대)로서의 특성 고려, 주조망축(서해) 경관보호 필요(산 175번지)</p>	<p>• 주변 경관보호 및 완충공간 확보(산175) • 지정구역 관리효율성 제고 고려, 지적조정(분필/합필) 추가검토</p> <p>• 토사유출 등 재해예방 차원 보호구역 추가 확대(위원회 의견(25.05) 반영) - 2필지(국유지) 추가(산223-1/산223-5)</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5,125</td> <td>1,521.1</td> <td>1,065.3</td> <td>455.8</td> <td></td> </tr> <tr> <td>외포리 산223-4</td> <td>임</td> <td>1,059</td> <td>1,059</td> <td>603.2</td> <td>455.8</td> <td>강화군</td> </tr> <tr> <td>황청리 산175</td> <td>임</td> <td>4,066</td> <td>462.1</td> <td>462.1</td> <td></td> <td>국(산림청)</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125	1,521.1	1,065.3	455.8		외포리 산223-4	임	1,059	1,059	603.2	455.8	강화군	황청리 산175	임	4,066	462.1	462.1		국(산림청)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8,648</td> <td>8,648</td> <td>1,065.3</td> <td>7,582.70</td> <td>-</td> </tr> <tr> <td>외포리 산223-1</td> <td>임</td> <td>881</td> <td>881</td> <td>-</td> <td>881</td> <td>강화군</td> </tr> <tr> <td>산223-4</td> <td>임</td> <td>1,059</td> <td>1,059</td> <td>603.2</td> <td>455.8</td> <td>강화군</td> </tr> <tr> <td>산223-5</td> <td>임</td> <td>2,642</td> <td>2,642</td> <td>-</td> <td>2,642</td> <td>강화군</td> </tr> <tr> <td>황청리 산175</td> <td>임</td> <td>4,066</td> <td>4,066</td> <td>462.1</td> <td>3,603.90</td> <td>국(산림청)</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7,126.9㎡ 증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648	8,648	1,065.3	7,582.70	-	외포리 산223-1	임	881	881	-	881	강화군	산223-4	임	1,059	1,059	603.2	455.8	강화군	산223-5	임	2,642	2,642	-	2,642	강화군	황청리 산175	임	4,066	4,066	462.1	3,603.90	국(산림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125	1,521.1	1,065.3	455.8																																																																			
외포리 산223-4	임	1,059	1,059	603.2	455.8	강화군																																																																		
황청리 산175	임	4,066	462.1	462.1		국(산림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648	8,648	1,065.3	7,582.70	-																																																																		
외포리 산223-1	임	881	881	-	881	강화군																																																																		
산223-4	임	1,059	1,059	603.2	455.8	강화군																																																																		
산223-5	임	2,642	2,642	-	2,642	강화군																																																																		
황청리 산175	임	4,066	4,066	462.1	3,603.90	국(산림청)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p>• 유산특성 : 진·돈(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돈대하부기석기준 지정구역 설정 양호 - 보호구역 : 돈대진입부주변 필지 보호구역 지정 →가치특성(돈대)을 고려한 주조망축(서해) 경관 보존관리 방안 필요</p>	<p>• 지정구역 : 현상유지(필지정리(분·합필)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추가검토) • 보호구역 : 서측+동측 인접필지확대(자문의견 반영, 산223-1/산223-5)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유산주변 원지형 보존(토사유출 등 재해예방) 및 주조망축 경관보호 도모 ※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p>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외포리	산223-4	임	1,059	1,059	603.2	455.8	강화군
2	황청리	산175	임	4,066	4,066	462.1	3,603.9	산림청
3	외포리	산223-1	임	881	881	-	881	강화군
4	외포리	산223-5	임	2,642	2,642	-	2,642	강화군
합계			-	8,648	8,648	1,065.3	7,582.7	

1.8 교동읍성(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 성벽 잔존구간 관리방안 고려

- 교동읍성은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지정구역은 성곽 중 남문 일원을 지정하였고, 보호구역은 성벽 잔존구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유산구역 내·외부로 마을이 조성되어 기개발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호구역 확대에 의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고시된 범위 내에서 구역구분 조정을 실시함.
- 따라서, 기존 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호구역 중 성벽 잔존구간을 지정구역으로 추가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하고자 함.

▼ 교동읍성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성벽 잔존구간 관리방안 강화 필요</p> <p>표기개선 - 범례</p>	<p>• 유산구역 내·외부 토지소유현황 고려, 추가지정 및 조정 최소화</p> <p>- 보호구역 내 성벽 잔존구간 지정구역으로 조정</p>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읍내리 -</td> <td></td> <td>24,981</td> <td>5,958.7</td> <td>129.4</td> <td>5,829.3</td> <td></td> </tr> <tr> <td>225-1</td> <td>대</td> <td>843</td> <td>843</td> <td>7.8</td> <td>835.2</td> <td>한○○</td> </tr> <tr> <td>228-1</td> <td>대</td> <td>199</td> <td>199</td> <td>-</td> <td>199</td> <td>김○○</td> </tr> <tr> <td>308</td> <td>대</td> <td>298</td> <td>298</td> <td>-</td> <td>298</td> <td>유○○</td> </tr> <tr> <td>309</td> <td>답</td> <td>522</td> <td>522</td> <td>4</td> <td>518</td> <td>조○○</td> </tr> <tr> <td>573</td> <td>도</td> <td>19,043</td> <td>20.7</td> <td>20.7</td> <td>-</td> <td>농림수산부</td> </tr> <tr> <td>575</td> <td>사</td> <td>1,339</td> <td>1,339</td> <td>-</td> <td>1,339</td> <td>문화재청</td> </tr> <tr> <td>576</td> <td>사</td> <td>843</td> <td>843</td> <td>-</td> <td>843</td> <td>문화재청</td> </tr> <tr> <td>577</td> <td>사</td> <td>1,438</td> <td>1,438</td> <td>37.9</td> <td>1,400.1</td> <td>재정경제부</td> </tr> <tr> <td>578</td> <td>사</td> <td>456</td> <td>456</td> <td>59</td> <td>397</td> <td>국방부</td> </tr> </tbody> </table> <p>(단위 : m²)</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읍내리 -		24,981	5,958.7	129.4	5,829.3		225-1	대	843	843	7.8	835.2	한○○	228-1	대	199	199	-	199	김○○	308	대	298	298	-	298	유○○	309	답	522	522	4	518	조○○	573	도	19,043	20.7	20.7	-	농림수산부	575	사	1,339	1,339	-	1,339	문화재청	576	사	843	843	-	843	문화재청	577	사	1,438	1,438	37.9	1,400.1	재정경제부	578	사	456	456	59	397	국방부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읍내리 -</td> <td></td> <td>24,981</td> <td>5,958.7</td> <td>2,722.7</td> <td>3,236.0</td> <td></td> </tr> <tr> <td>225-1</td> <td>대</td> <td>843</td> <td>843</td> <td>-</td> <td>843</td> <td>강화군</td> </tr> <tr> <td>228-1</td> <td>대</td> <td>199</td> <td>199</td> <td>-</td> <td>199</td> <td>강화군</td> </tr> <tr> <td>308</td> <td>대</td> <td>298</td> <td>298</td> <td>-</td> <td>298</td> <td>유○○외5인</td> </tr> <tr> <td>309</td> <td>답</td> <td>522</td> <td>522</td> <td>-</td> <td>522</td> <td>강화군</td> </tr> <tr> <td>573</td> <td>도로</td> <td>19,043</td> <td>20.7</td> <td>20.7</td> <td>-</td> <td>농림수산부</td> </tr> <tr> <td>575</td> <td>사</td> <td>1,339</td> <td>1,339</td> <td>1,334.8</td> <td>4.2</td> <td>국기유산청</td> </tr> <tr> <td>576</td> <td>사</td> <td>843</td> <td>843</td> <td>-</td> <td>843</td> <td>국기유산청</td> </tr> <tr> <td>577</td> <td>사</td> <td>1,438</td> <td>1,438</td> <td>1,240.4</td> <td>197.6</td> <td>국기유산청</td> </tr> <tr> <td>578</td> <td>사</td> <td>456</td> <td>456</td> <td>126.8</td> <td>329.2</td> <td>국기유산청</td> </tr> </tbody> </table> <p>(단위 : m²)</p> <p>당초 유산구역 면적 유지(지정구역 2,593.3m² 증가/보호구역 2,593.3m² 감소)</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읍내리 -		24,981	5,958.7	2,722.7	3,236.0		225-1	대	843	843	-	843	강화군	228-1	대	199	199	-	199	강화군	308	대	298	298	-	298	유○○외5인	309	답	522	522	-	522	강화군	573	도로	19,043	20.7	20.7	-	농림수산부	575	사	1,339	1,339	1,334.8	4.2	국기유산청	576	사	843	843	-	843	국기유산청	577	사	1,438	1,438	1,240.4	197.6	국기유산청	578	사	456	456	126.8	329.2	국기유산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읍내리 -		24,981	5,958.7	129.4	5,829.3																																																																																																																																																							
225-1	대	843	843	7.8	835.2	한○○																																																																																																																																																						
228-1	대	199	199	-	199	김○○																																																																																																																																																						
308	대	298	298	-	298	유○○																																																																																																																																																						
309	답	522	522	4	518	조○○																																																																																																																																																						
573	도	19,043	20.7	20.7	-	농림수산부																																																																																																																																																						
575	사	1,339	1,339	-	1,339	문화재청																																																																																																																																																						
576	사	843	843	-	843	문화재청																																																																																																																																																						
577	사	1,438	1,438	37.9	1,400.1	재정경제부																																																																																																																																																						
578	사	456	456	59	397	국방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읍내리 -		24,981	5,958.7	2,722.7	3,236.0																																																																																																																																																							
225-1	대	843	843	-	843	강화군																																																																																																																																																						
228-1	대	199	199	-	199	강화군																																																																																																																																																						
308	대	298	298	-	298	유○○외5인																																																																																																																																																						
309	답	522	522	-	522	강화군																																																																																																																																																						
573	도로	19,043	20.7	20.7	-	농림수산부																																																																																																																																																						
575	사	1,339	1,339	1,334.8	4.2	국기유산청																																																																																																																																																						
576	사	843	843	-	843	국기유산청																																																																																																																																																						
577	사	1,438	1,438	1,240.4	197.6	국기유산청																																																																																																																																																						
578	사	456	456	126.8	329.2	국기유산청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성(면단위), 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성벽 복원구간 중심 구역설정 - 보호구역 : 성벽 잔존구간 및 멸실구간중심 보호구역 설정 → 성벽 잔존구간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필요. 단, 유산구역 내·외부개발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유산구역 내 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확대조정(보호구역 북~동측 성벽 잔존구간 기준) • 보호구역 : 축소조정(성벽 잔존구간 제외, 기존 외곽경계 유지) → 지정구역 확대를 통하여 유산 관리방안 강화 → 교동읍성 인근에 토지소유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읍내리	225-1	대	843	843	-	843	강화군
2		228-1	대	199	199	-	199	강화군
3		308	대	298	298	-	298	유○○ 외5인
4		309	답	522	522	-	522	강화군
5		573	도로	19,043	20.7	20.7	-	농림축산식품부
6		575	사	1,339	1,339	1,334.8	4.2	국가유산청
7		576	사	843	843	-	843	국가유산청
8		577	사	1,438	1,438	1,240.4	197.6	국가유산청
9		578	사	456	456	126.8	329.2	국가유산청
합계				24,981	5,958.7	2,722.7	3,236.0	

1.9 강화 보문사 석실(유형문화유산)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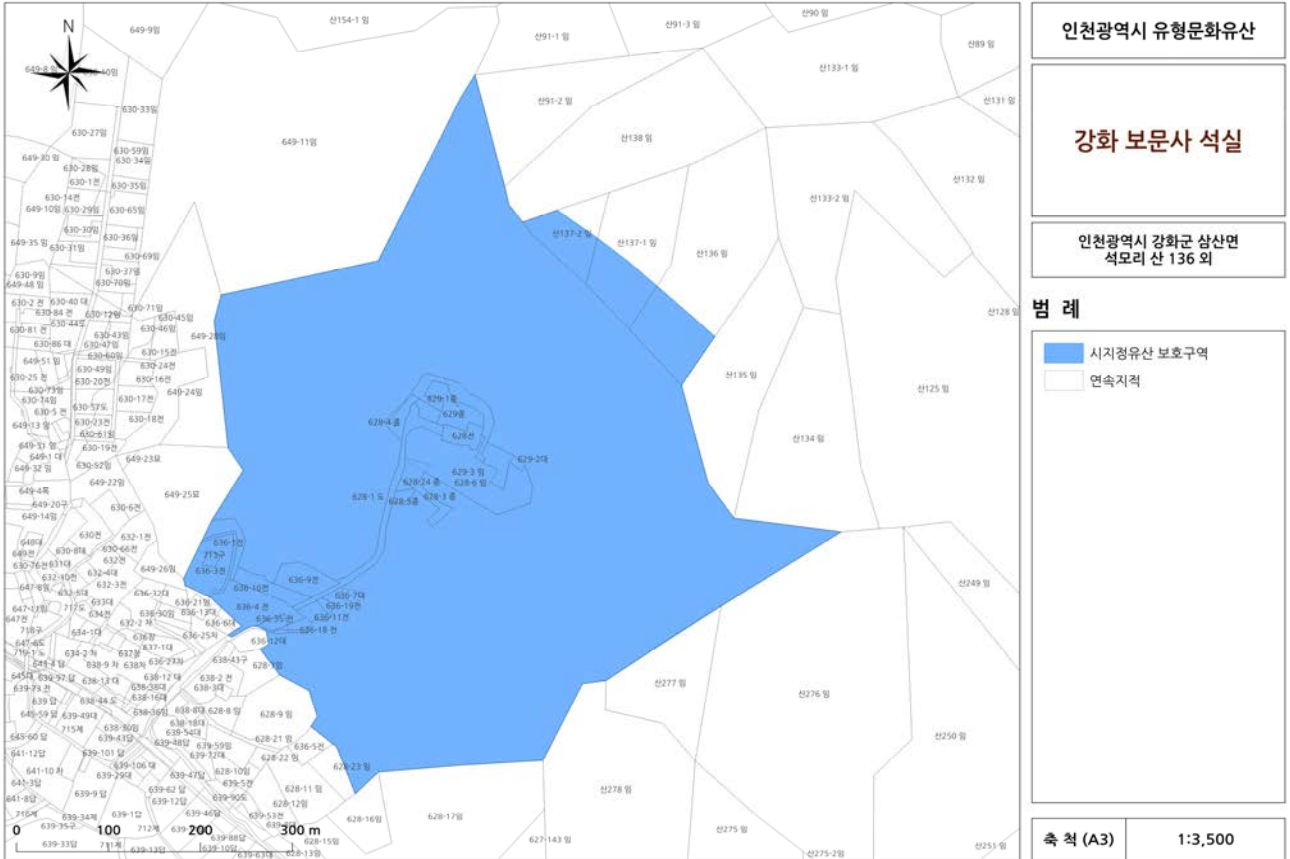
• 필지변동사항 반영, 관리효율성 제고

- 강화 보문사 석실은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보호구역으로만 설정되어 있음.
- 보호구역은 보문사 경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보호구역 내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강화 보문사 향나무, 강화 보문사 맷돌 등 관련 유산이 군집해 있음.
- 당초 고시 상, 유산구역은 필지단위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유산구역 서측 일대의 필지변동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한 조정이 필요함.

▼강화 보문사 석실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지적변동 사항 고려, 보호구역 외곽경계 조정 필요</p> <p>인선광역시(양양군)에 소재한 보문사 석실 보문사 석실 연천광역시(고양군) 산단면 석도리 산136-1외</p> <p>표기개선 종 별/주소/필지</p> <p>0.1 0.2 0.3</p> <p>속 차 1:5,000</p>	<p>• 보호구역 외곽경계 명확화(필지단위)</p> <p>인선광역시(양양군)에 소재한 보문사 석실 강화 보문사 석실 연천광역시(고양군) 산단면 석도리 산136-1외</p> <p>필 지</p> <p>시지정유산 보호구역 필지</p> <p>속 차(A3) 1:3,500</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14,304</td> <td>282,054.1</td> <td>-</td> <td>282,054.1</td> <td>-</td> </tr> <tr> <td>석모리 산136 외24필지</td> <td>-</td> <td>314,304</td> <td>282,054.1</td> <td>-</td> <td>282,054.1</td> <td>-</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14,304	282,054.1	-	282,054.1	-	석모리 산136 외24필지	-	314,304	282,054.1	-	282,054.1	-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14,092.6</td> <td>285,370.7</td> <td>-</td> <td>285,370.7</td> <td>-</td> </tr> <tr> <td>석모리 산136 외29필지</td> <td>-</td> <td>314,092.6</td> <td>285,370.7</td> <td>-</td> <td>285,370.7</td> <td>-</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3,316.6㎡ 증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14,092.6	285,370.7	-	285,370.7	-	석모리 산136 외29필지	-	314,092.6	285,370.7	-	285,370.7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14,304	282,054.1	-	282,054.1	-																																						
석모리 산136 외24필지	-	314,304	282,054.1	-	282,054.1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14,092.6	285,370.7	-	285,370.7	-																																						
석모리 산136 외29필지	-	314,092.6	285,370.7	-	285,370.7	-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사찰(면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 미설정(보호구역만 설정) - 보호구역 : 강화 보문사경내 필지 전역 보호구역 설정 →지정 이후 지적 필지변동 반영 필요 →지정대상 명확화를 통한 관리 효율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석굴 하부기단기준 지정구역 명확화 필요 (측량조사)) • 보호구역 : 필지단위 조정(필지변동사항 반영) →보호구역 필지단위 조정을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명확한 관리대상 구분을 위하여 현황측량 추가조사 필요 (석실 내부 하부기단측량)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석모리	산136	임	23,306	4,918.8	-	4,918.8	강화군
2		산137-1	임	11,405	3,794.3	-	3,794.3	강화군
3		산137-2	임	4,959	3,112.9	-	3,112.9	강화군
4	매음리	628-5	종교	278	278	-	278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5		628-6	임	245,851	245,851	-	245,851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6		628-24	종교	134	134	-	134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7		628-25	종교	976	976	-	97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8		638-43	구거	1,023.6	145.7	-	145.7	농림축산식품부
9		628	전	846	846	-	84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0		628-1	도로	2,209	2,209	-	2,209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1		628-2	종교	396	396	-	39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2		628-3	종교	940	940	-	940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3		628-4	종교	689	689	-	689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4		629	종교	1,488	1,488	-	1,488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5		629-1	종교	1,775	1,775	-	1,775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6		629-2	대	126	126	-	12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7	매음리	629-3	임	6,053	6,053	-	6,053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8		629-4	종교	895	895	-	895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19		636-1	전	876	876	-	87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0		636-2	전	216	216	-	216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1		636-3	전	2,194	2,194	-	2,194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2		636-4	전	2,752	2,752	-	2,752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3		636-35	전	325	325	-	325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4		636-36	전	41	41	-	41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5		636-7	대	241	241	-	241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6		636-9	전	1,632	1,632	-	1,632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7		636-10	전	1,212	1,212	-	1,212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8		636-11	전	479	479	-	479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29		636-18	전	224	224	-	224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30		636-19	전	174	174	-	174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31		713	구거	377	377	-	377	대한불교조계종(보문사)
합계				314,092.6	285,370.7	-	285,370.7	

1.10 강화 적석사 사적비(유형문화유산)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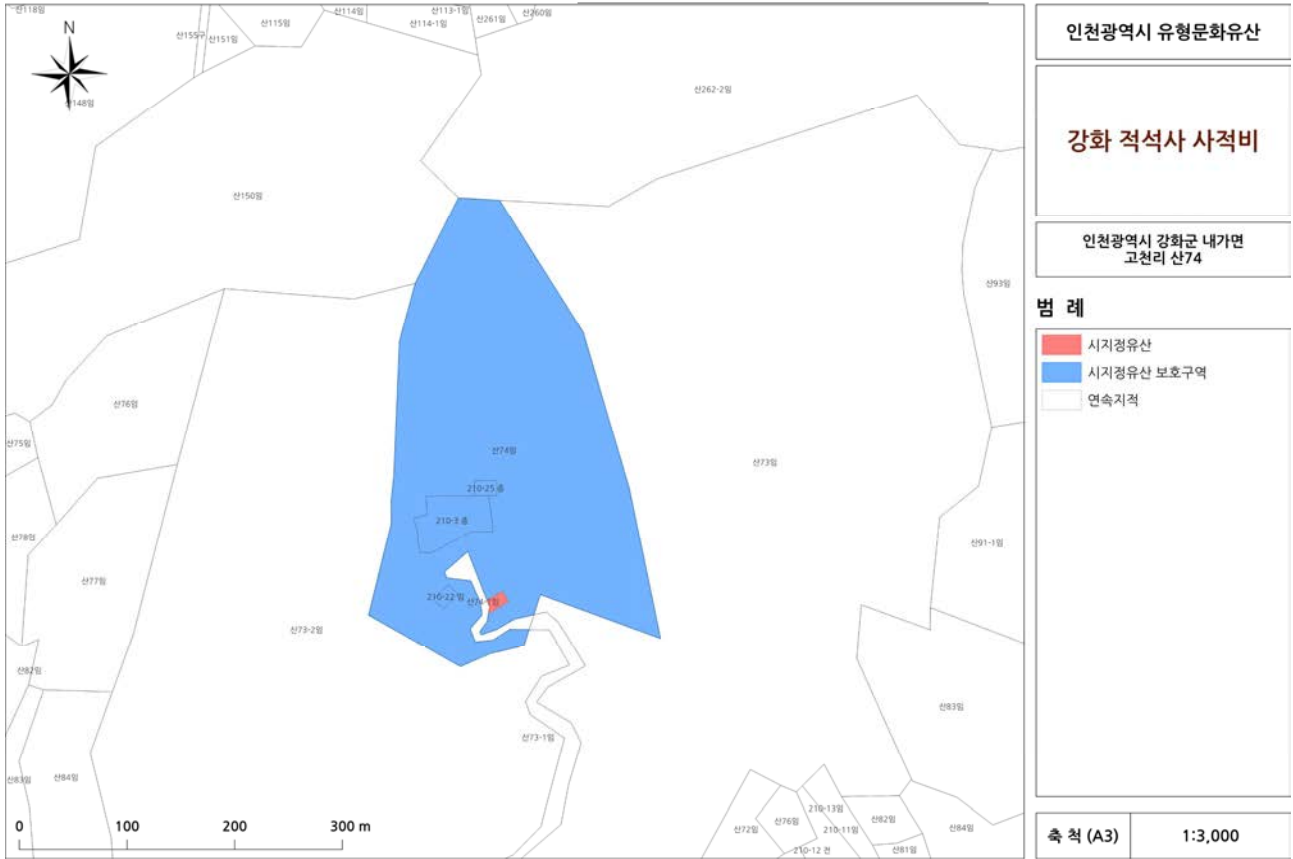
• 필지변동사항 반영, 관리효율성 제고

- 강화 적석사 사적비는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담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적석사 경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유산의 규모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유산이 위치한 적석사와의 일체적인 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위를 유지하고, 필지변동사항(분/합필)을 반영하여 유산구역의 경계를 현행화함.

▼강화 적석사 사적비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71,704</td> <td>71,704</td> <td>196.4</td> <td>71,507.6</td> <td></td> </tr> <tr> <td>고천리 산74</td> <td>임</td> <td>71,704</td> <td>71,704</td> <td>196.4</td> <td>71,507.6</td> <td>적석사</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1,704	71,704	196.4	71,507.6		고천리 산74	임	71,704	71,704	196.4	71,507.6	적석사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73,729</td> <td>73,729</td> <td>196.4</td> <td>73,532.6</td> <td></td> </tr> <tr> <td>산74</td> <td>임</td> <td>70,406</td> <td>70,406</td> <td>196.4</td> <td>70,209.6</td> <td>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td> </tr> <tr> <td>210-22</td> <td>임</td> <td>250</td> <td>250</td> <td>-</td> <td>250</td> <td>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td> </tr> <tr> <td>210-25</td> <td>종교</td> <td>294</td> <td>294</td> <td>-</td> <td>294</td> <td>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td> </tr> <tr> <td>210-3</td> <td>종교</td> <td>2,779</td> <td>2,779</td> <td>-</td> <td>2,779</td> <td>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유산구역 2,025m²증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3,729	73,729	196.4	73,532.6		산74	임	70,406	70,406	196.4	70,209.6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22	임	250	250	-	250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25	종교	294	294	-	294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3	종교	2,779	2,779	-	2,779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1,704	71,704	196.4	71,507.6																																																												
고천리 산74	임	71,704	71,704	196.4	71,507.6	적석사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3,729	73,729	196.4	73,532.6																																																												
산74	임	70,406	70,406	196.4	70,209.6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22	임	250	250	-	250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25	종교	294	294	-	294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210-3	종교	2,779	2,779	-	2,779	대한불교 조계종(적석사)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석비(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강화 적석사사적비 보호시설(담장) 기준 지정 구역 설정 - 보호구역 : 적석사 경내 필지 전체 보호구역 설정(조례기준 초과) →조례기준을 고려한 보호구역 범위 조정여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 • 보호구역 : 단순수정(필지변동사항 반영)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고천리	산74	임	70,406	70,406	196.4	70,209.6	대한불교조계종(적석사)
2		210-22	임	250	250	-	250	대한불교조계종(적석사)
3		210-25	종교	294	294	-	294	대한불교조계종(적석사)
4		210-3	종교	2,779	2,779	-	2,779	대한불교조계종(적석사)
합계				73,729	73,729	196.4	73,532.6	

1.11 강화 미루지둔대(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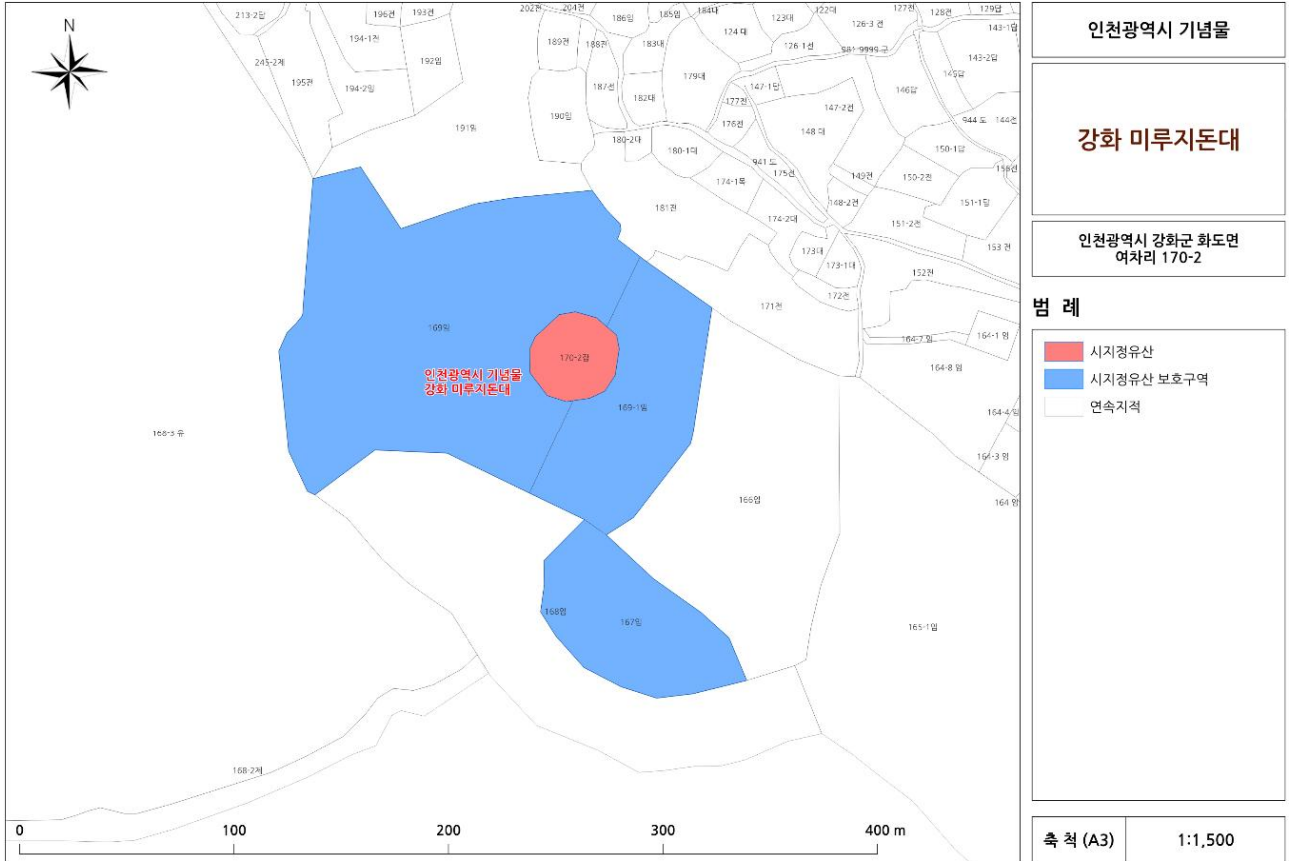
• 필지단위 미세조정을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 강화 미루지둔대는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성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주변 필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 대체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관리현황은 양호하나, 지정구역을 필지단위로 조정하여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추가적으로 검토함.

▼강화 미루지둔대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단위 : m²)</th> </tr>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8,203</td> <td>28,203</td> <td>1,120</td> <td>27,083</td> <td>-</td> </tr> <tr> <td>여차리 170-2</td> <td>잡</td> <td>1,369</td> <td>1,369</td> <td>1,120</td> <td>249</td> <td>재무부</td> </tr> <tr> <td>167</td> <td>임</td> <td>4,453</td> <td>4,453</td> <td>-</td> <td>4,453</td> <td>사유지</td> </tr> <tr> <td>169</td> <td>임</td> <td>16,761</td> <td>16,761</td> <td>-</td> <td>16,761</td> <td>사유지</td> </tr> <tr> <td>169-1</td> <td>임</td> <td>5,620</td> <td>5,620</td> <td>-</td> <td>5,620</td> <td>사유지</td> </tr> </tbody> </table>	(단위 : m ²)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8,203	28,203	1,120	27,083	-	여차리 170-2	잡	1,369	1,369	1,120	249	재무부	167	임	4,453	4,453	-	4,453	사유지	169	임	16,761	16,761	-	16,761	사유지	169-1	임	5,620	5,620	-	5,620	사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단위 : m²)</th> </tr>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8,203</td> <td>28,203</td> <td>1,369</td> <td>26,834</td> <td>-</td> </tr> <tr> <td>여차리 170-2</td> <td>잡</td> <td>1,369</td> <td>1,369</td> <td>1,369</td> <td>-</td> <td>기획재정부</td> </tr> <tr> <td>167</td> <td>임</td> <td>4,453</td> <td>4,453</td> <td>-</td> <td>4,453</td> <td>이○○</td> </tr> <tr> <td>169</td> <td>임</td> <td>16,761</td> <td>16,761</td> <td>-</td> <td>16,761</td> <td>이○○</td> </tr> <tr> <td>169-1</td> <td>임</td> <td>5,620</td> <td>5,620</td> <td>-</td> <td>5,620</td> <td>이○○</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yellow;">지정구역 필지단위 조정</p>	(단위 : m ²)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8,203	28,203	1,369	26,834	-	여차리 170-2	잡	1,369	1,369	1,369	-	기획재정부	167	임	4,453	4,453	-	4,453	이○○	169	임	16,761	16,761	-	16,761	이○○	169-1	임	5,620	5,620	-	5,620	이○○
(단위 : m ²)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8,203	28,203	1,120	27,083	-																																																																																														
여차리 170-2	잡	1,369	1,369	1,120	249	재무부																																																																																														
167	임	4,453	4,453	-	4,453	사유지																																																																																														
169	임	16,761	16,761	-	16,761	사유지																																																																																														
169-1	임	5,620	5,620	-	5,620	사유지																																																																																														
(단위 : m ²)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8,203	28,203	1,369	26,834	-																																																																																														
여차리 170-2	잡	1,369	1,369	1,369	-	기획재정부																																																																																														
167	임	4,453	4,453	-	4,453	이○○																																																																																														
169	임	16,761	16,761	-	16,761	이○○																																																																																														
169-1	임	5,620	5,620	-	5,620	이○○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진·보·돈(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돈대 하부기단 기준 지정구역 설정 (지적 불일치) - 보호구역 : 지정구역 인접필지 및 정비 및 활용계획을 고려한 추가 필지 확보 양호 →지정구역과 지적 필지정합성을 고려한 조정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지정구역 필지단위 조정(170-2번지) • 보호구역 : 현상유지 →지정구역 경계 필지단위 조정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여차리	170-2	잡	1,369	1,369	1,369	-	기획재정부
2		167	임	4,453	4,453	-	4,453	이○○
3		169	임	16,761	16,761	-	16,761	이○○
4		169-1	임	5,620	5,620	-	5,620	이○○
합계			-	28,203	28,203	1,369	26,834	

1.12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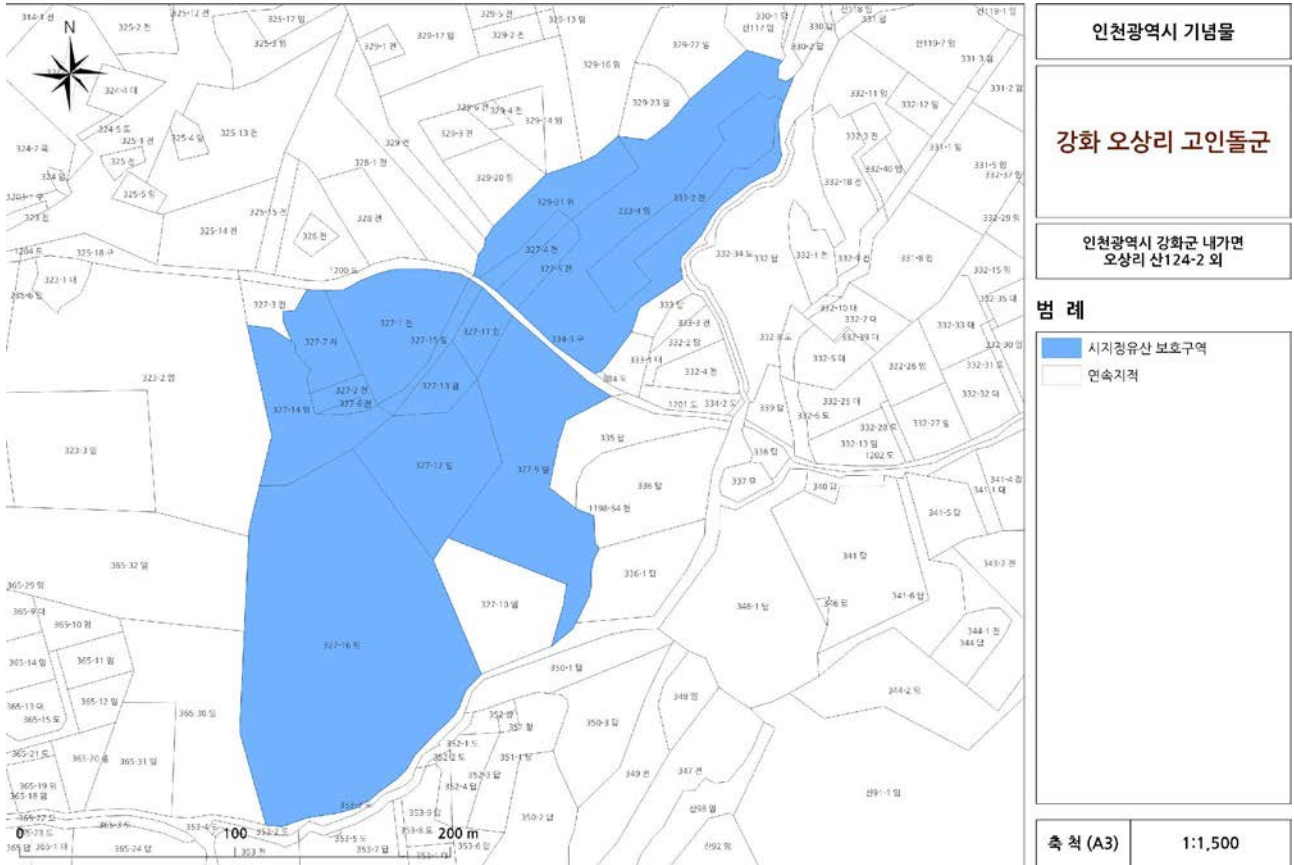
■ 유산구역 조정방안

- 필지단위 미세조정을 통한관리효율성 제고
 -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은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보호구역만 설정되어 있음.
 - 유산의 매장유산적 특성에 따라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지 기준으로 유산구역을 비교적 넓게 설정하였음.
 - 단, 유산구역 지정 이후, 필지변동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고시 현행화가 필요함.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9,185</td> <td>39,185</td> <td>-</td> <td>39,185</td> <td>-</td> </tr> <tr> <td>오상리 산124-2 외15필지</td> <td>-</td> <td>39,185</td> <td>39,185</td> <td>-</td> <td>39,185</td> <td>-</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9,185	39,185	-	39,185	-	오상리 산124-2 외15필지	-	39,185	39,185	-	39,185	-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38,638.3</td> <td>38,638.3</td> <td>-</td> <td>38,638.3</td> <td>-</td> </tr> <tr> <td>오상리 327-12 외15필지</td> <td>-</td> <td>38,638.3</td> <td>38,638.3</td> <td>-</td> <td>38,638.3</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 text-align: center;">당초대비 유산구역 546.7m² 감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8,638.3	38,638.3	-	38,638.3	-	오상리 327-12 외15필지	-	38,638.3	38,638.3	-	38,638.3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9,185	39,185	-	39,185	-																																						
오상리 산124-2 외15필지	-	39,185	39,185	-	39,185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38,638.3	38,638.3	-	38,638.3	-																																						
오상리 327-12 외15필지	-	38,638.3	38,638.3	-	38,638.3	-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고분군·지석묘(면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 미설정(보호구역만 설정) - 보호구역 : 고인돌군 입지특성 고려, 인접지역 매장유산 출토 가능성을 고려한 보호구역 설정 →보호구역의 필지변동사항을 반영한 정합성 제고 필요 →관리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고인돌군 중심 지정구역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미설정(현상유지) • 보호구역 : 단순조정(필지변동사항 반영) - 고인돌'군'의 유산특성 고려, 개별 고인돌의 관리보다 군집 형태의 지정구역 설정 필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오상리	327-1	전	2,423	2,423	-	2,423	최○○외 1인
2		327-2	전	301	301	-	301	강화군
3		327-4	전	364	364	-	364	조○○
4		327-5	전	516	516	-	516	이○○
5		327-6	전	91	91	-	91	우○○
6		327-7	주	994	994	-	994	강화군
7		333-2	임	1,864	1,864	-	1,864	이○○
8		329-21	임	1,488	1,488	-	1,488	김○○외 7인
9		327-11	임	584	584	-	584	강화군
10		327-13	임	634	634	-	634	강화군
11		327-15	임	381.9	381.9	-	381.9	강화군
12		333-4	임	5,554	5,554	-	5,554	이○○
13		327-9	임	4,937	4,937	-	4,937	강화군
14		327-12	임	2,925.4	2,925.4	-	2,925.4	강화군
15		327-14	임	2,093	2,093	-	2,093	조○○
16		327-16	임	13,488	13,488	-	13,488	유○○
합계				38,638.3	38,638.3	-	38,638.3	

1.13 이견창 묘(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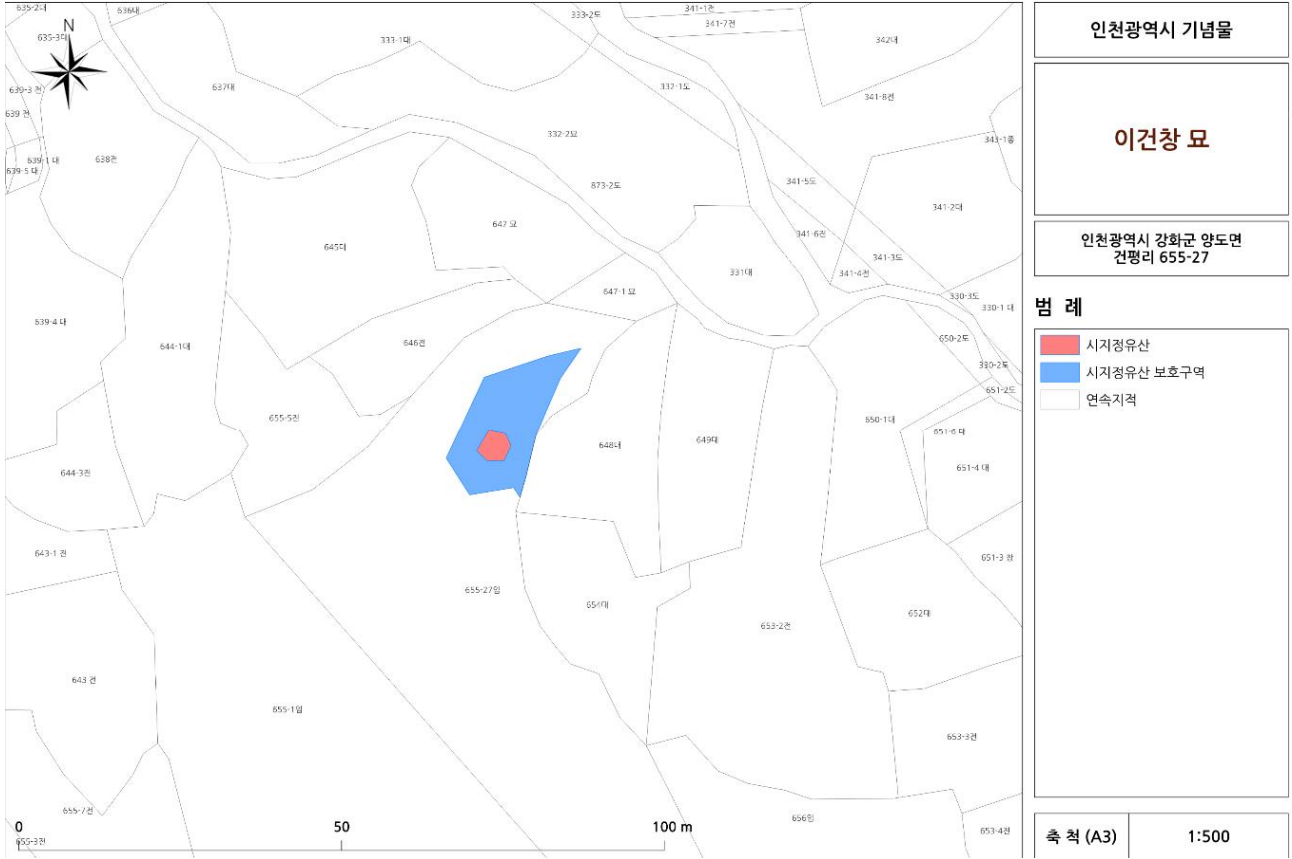
• 고시오류 수정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 이견창 묘는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봉분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주변 묘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단, 당초 고시문에서는 1개 필지를 유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고시도에서는 2개 필지를 지정하고 있어 고시상 오류를 확인함.
-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기준으로 1개 필지로 유산구역을 조정하여 고시도를 작성하였음.

▼이견창 묘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고시도와 고시문상 필지수 미스매치 - 고시된 지형도면 상 보호구역 지정필지(2필지)와 고시문 상의 지정필지(1필지) 불일치</p> <p>표기개선 범례</p>	<p>• 고시내용(고시도 고시문) 정합성 제고</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724</td> <td>241.5</td> <td>18.2</td> <td>223.3</td> <td></td> </tr> <tr> <td>건평리 655-27</td> <td>임</td> <td>2,724</td> <td>241.5</td> <td>18.2</td> <td>223.3</td> <td>사유지</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724	241.5	18.2	223.3		건평리 655-27	임	2,724	241.5	18.2	223.3	사유지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724</td> <td>241.5</td> <td>18.2</td> <td>223.3</td> <td></td> </tr> <tr> <td>건평리 655-27</td> <td>임</td> <td>2,724</td> <td>241.5</td> <td>18.2</td> <td>223.3</td> <td>사유지</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yellow;">고시오류 수정(고시도 수정)</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724	241.5	18.2	223.3		건평리 655-27	임	2,724	241.5	18.2	223.3	사유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724	241.5	18.2	223.3																																							
건평리 655-27	임	2,724	241.5	18.2	223.3	사유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724	241.5	18.2	223.3																																							
건평리 655-27	임	2,724	241.5	18.2	223.3	사유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능·원·묘(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봉분 기준 구역설정 - 보호구역 : 묘역 경계 기준 구역설정 →측량성과(2008)에 따른 구역설정, 단 고시도와 고시문상의 미스매치가 확인되어, 오류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 • 보호구역 : 축소조정(기고시범위 내 필지단위 조정) →기고시 오류사항 수정(필지단위 조정)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일부 축소 가능!!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건평리	655-27	임	2,724	241.5	18.2	223.3	강화군
합계				2,724	241.5	18.2	223.3	

1.14 황형 묘(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 고시오류 수정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 황형 묘는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묘역 및 사당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구역으로만 설정되어 있음.
- 단, 당초 고시문에서는 1개 필지를 유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고시도에서는 5개 필지를 지정하고 있어 고시상 오류를 확인함.
-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기준으로 유산구역을 조정하여 고시도를 작성하였음.

▼황형 묘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가. 고시내용 ○ 세양중을 별 번호, 인현구역시 기념물 제68호 ○ 문화재 상당 - 황형 묘 ○ 소재지 - 인현구역시 경좌산 강좌를 향하여 산72-1 ○ 조종자 - 상원(제2)당서 장부공과 향촌 ○ 지정내용</p>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56,281</td> <td>2,629</td> <td>2,629</td> <td>-</td> <td>.</td> </tr> <tr> <td>월곳리 산72-1</td> <td>임</td> <td>56,281</td> <td>2,629</td> <td>2,629</td> <td>-</td> <td>창원○○○ ○○○중중</td> </tr> </tbody> </table> <p>(단위 : m²)</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6,281	2,629	2,629	-	.	월곳리 산72-1	임	56,281	2,629	2,629	-	창원○○○ ○○○중중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56,426</td> <td>2,629</td> <td>2,629</td> <td>-</td> <td>.</td> </tr> <tr> <td>월곳리 산72-1</td> <td>임</td> <td>56,281</td> <td>2,484</td> <td>2,484</td> <td>-</td> <td>창원○○○ ○○○중중</td> </tr> <tr> <td>597</td> <td>대</td> <td>145</td> <td>145</td> <td>145</td> <td>-</td> <td>창원○○○ ○○○중중</td> </tr> </tbody> </table> <p>고시오류 수정(고시도 수정)</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6,426	2,629	2,629	-	.	월곳리 산72-1	임	56,281	2,484	2,484	-	창원○○○ ○○○중중	597	대	145	145	145	-	창원○○○ ○○○중중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6,281	2,629	2,629	-	.																																													
월곳리 산72-1	임	56,281	2,629	2,629	-	창원○○○ ○○○중중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56,426	2,629	2,629	-	.																																													
월곳리 산72-1	임	56,281	2,484	2,484	-	창원○○○ ○○○중중																																													
597	대	145	145	145	-	창원○○○ ○○○중중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고분군·지석묘(면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보호구역 미설정(지정구역만 설정) - 지정구역 : 묘역 및 사당 중심 유산구역 설정 → 고시문과 고시도의 불일치 확인(고시문1필지/고시도 5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고시문기준) • 보호구역 : 미설정 → 기고시오류사항 수정(필지단위 조정)을 통한 관리 효율 제고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경서동	산72-1	임	56,281	2,484	2,484	-	창원○○○○○○중중
2		597	대	145	145	145	-	창원○○○○○○중중
합계		-	-	56,426	2,629	2,629	-	

1.15 강화유수부 이아(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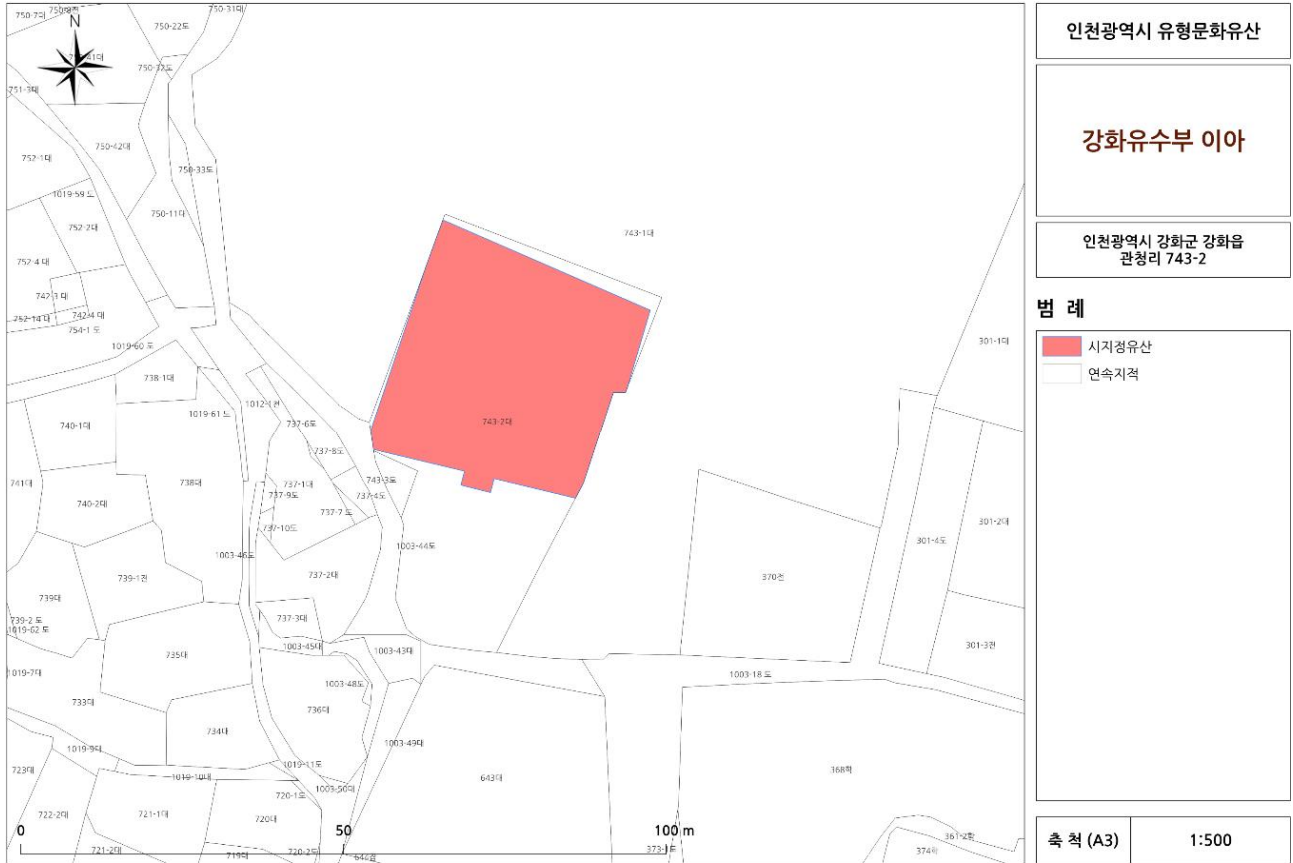
■ 유산구역 조정방안

- **군집유산의 효율적 관리 고려, 보호구역 지정해제**
 - 강화유수부 이아는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담장, 마당 등 건축물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단, 강화유수부 이아의 유산구역은 사적 고려공지의 유산구역 내 군집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함.

▼강화유수부 이아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765</td> <td>1,765</td> <td>1,244</td> <td>521</td> <td>-</td> </tr> <tr> <td>관청리 743-2</td> <td>대</td> <td>1,765</td> <td>1,765</td> <td>1,244</td> <td>521</td> <td>문화재청</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65	1,765	1,244	521	-	관청리 743-2	대	1,765	1,765	1,244	521	문화재청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765</td> <td>1,244</td> <td>1,244</td> <td>-</td> <td>-</td> </tr> <tr> <td>관청리 743-2</td> <td>대</td> <td>1,765</td> <td>1,244</td> <td>1,244</td> <td>-</td> <td>국가유산청</td> </tr> </tbody>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당초대비 유산구역 521㎡ 감소(보호구역 지정해제)</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65	1,244	1,244	-	-	관청리 743-2	대	1,765	1,244	1,244	-	국가유산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65	1,765	1,244	521	-																																						
관청리 743-2	대	1,765	1,765	1,244	521	문화재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765	1,244	1,244	-	-																																						
관청리 743-2	대	1,765	1,244	1,244	-	국가유산청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관아·객사(점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지정구역+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한식담장기준 지정구역 설정 - 보호구역 : 지정대상이 위치한 필지중심 보호구역 설정 → 유산 공간구성을 고려한 면단위 지정구역 적정, 단,인접유산(강화고려궁지)의 지정구역 내 중첩되어 보호구역 해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 • 보호구역 : 해제 → 중첩유산(사적 강화 고려궁지) 지정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성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관청리	743-2	대	1,765	1,244	1,244	-	국가유산청
합계				1,765	1,244	1,244	-	

2. 중구

2.1 구 인천우체국(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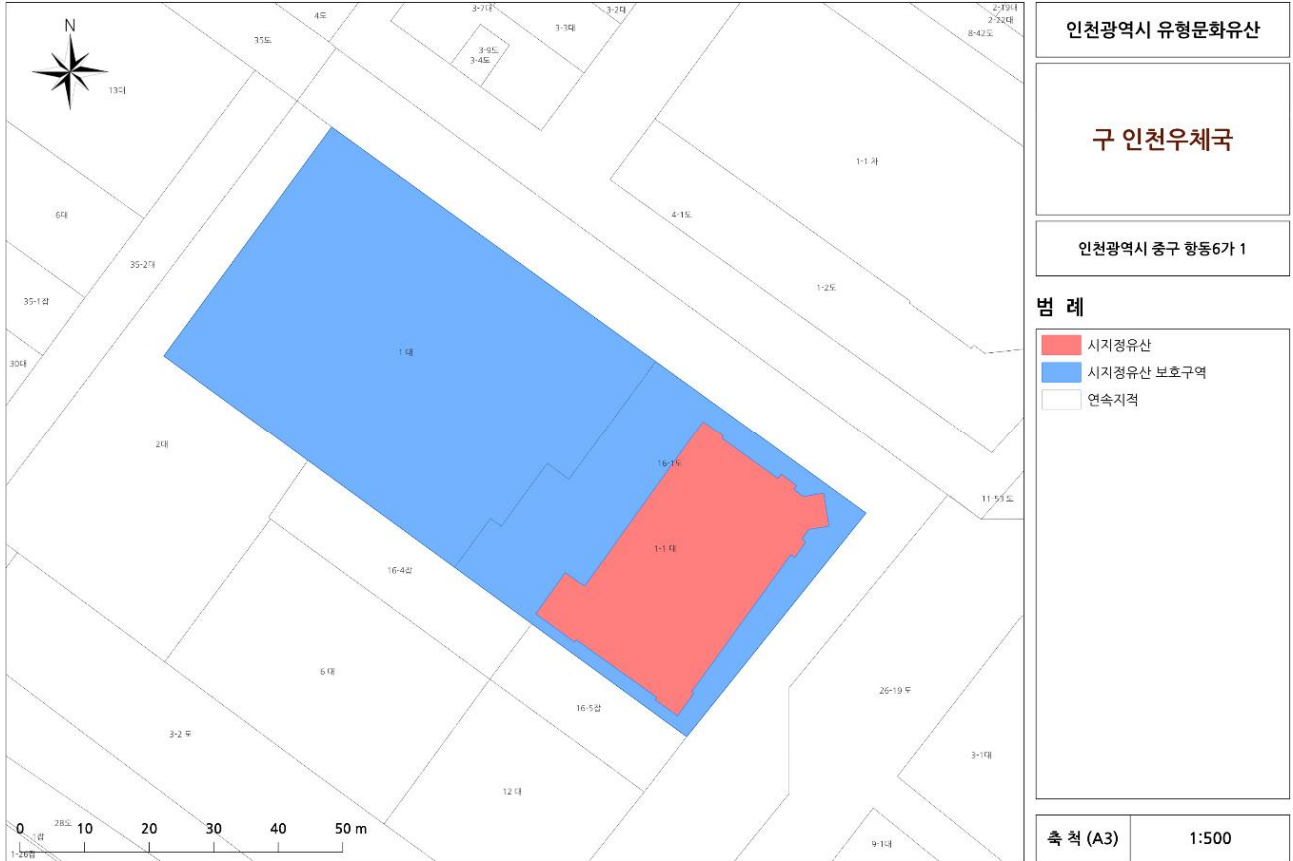
■ 유산구역 조정방안

- 기연구결과(2024) 반영, 역사적 가치가 낮은 신축건물(별관) 지정구역 축소
- 구 인천우체국은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점단위 유산으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산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단, 구 인천우체국 본관이 지정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신축된 별관이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 된 상태로, 2024년 「구 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용역」을 통하여 유산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별관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시설 부지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를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구 인천우체국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03.15) 결과 반영, 지정구역 일부 해제 반영필요</p> <p>• '구 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용역(2024)' 결과 접수, 별관 및 관리동 철거 계획 수립(철거사유 : 역사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약, 철거 후 주차시설로 활용 예정)</p>	<p>• 구 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계획(2024) 준용 - 별관 철거 등의 정비계획에 따른 관리효율성 제고 고려, 지정구역 해제</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483.6</td> <td>4,483.6</td> <td>1,122.9</td> <td>3,360.7</td> <td>-</td> </tr> <tr> <td>항동6가 1</td> <td>대</td> <td>4,483.6</td> <td>4,483.6</td> <td>1,122.9</td> <td>3,360.7</td> <td>지식경제부</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483.6	4,483.6	1,122.9	3,360.7	-	항동6가 1	대	4,483.6	4,483.6	1,122.9	3,360.7	지식경제부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483.6</td> <td>4,483.6</td> <td>940.5</td> <td>3,543.1</td> <td>-</td> </tr> <tr> <td>항동6가 1</td> <td>대</td> <td>2,632.9</td> <td>2,632.9</td> <td>-</td> <td>2,632.9</td> <td>주식회사 케이티</td> </tr> <tr> <td>1-1</td> <td>대</td> <td>1,850.7</td> <td>1,850.7</td> <td>940.5</td> <td>910.2</td> <td>인천광역시</td> </tr> </tbody> </table> <p>유산구역 면적 유지(지정구역 감소, 보호구역 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483.6	4,483.6	940.5	3,543.1	-	항동6가 1	대	2,632.9	2,632.9	-	2,632.9	주식회사 케이티	1-1	대	1,850.7	1,850.7	940.5	910.2	인천광역시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483.6	4,483.6	1,122.9	3,360.7	-																																													
항동6가 1	대	4,483.6	4,483.6	1,122.9	3,360.7	지식경제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483.6	4,483.6	940.5	3,543.1	-																																													
항동6가 1	대	2,632.9	2,632.9	-	2,632.9	주식회사 케이티																																													
1-1	대	1,850.7	1,850.7	940.5	910.2	인천광역시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p>• 유산특성 : 근대건축(점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p> <p>•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p> <p>- 지정구역 : 인천우체국 건축물 외곽기준 지정구역 설정, 지정 이후 신축된 별관 추가지정</p> <p>- 보호구역 : 지정구역 지정 필지 보호구역 설정</p> <p>→ 학술연구결과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 이후 신축 건물의 지정구역 해제 검토 필요</p>	<p>• 지정구역 : 축소조정(학술연구 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구 인천우체국 별관 지정구역 해제)</p> <p>• 보호구역 : 현상유지(외곽경계)</p> <p>→ 「구 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방안」 계획에 따른 별관 및 수위실 철거 예정, 지정구역 해제를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p>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향동6가	1	대	2,632.9	2,632.9	-	2,632.9	(주)케이티
2		1-1	대	1,850.7	1,850.7	940.5	910.2	인천광역시
합계				4,483.6	4,483.6	940.5	3,543.1	-

2.2 남북동 조병수 가옥(문화유산자료)

■ 유산구역 조정방안

- 전통가옥 특성 고려, 영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체적인 관리를 위한 유산구역 통합(지정구역)
- 남북동 조병수 가옥은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점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 지정구역은 안채, 문간채 등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담장, 마당 등 건축물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단, 전통가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주변시설 등 공간적인 일체성의 보호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기존의 유산구역 범위 내에서 지정구역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체적인 관리체계를 조성하고자 함.

▼남북동 조병수 가옥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영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체적 관리필요</p> <p>인원광역시문화유산자료 제16호 남북동조병수가옥 남북동조병수가옥 인원광역시 중구 남북동 688</p> <p>범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건축지역</p> <p>축척 1:500</p>	<p>위원회(06.20) 의견 반영, 통합관리방안 마련 - 유산특성(전통가옥) 고려, 영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체적인 관리를 위한 유산구역 통합</p> <p>인원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인원광역시 중구 남북동 688</p> <p>범역 문화유산 건축지역</p> <p>축척 (A3) 1:500</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603</td> <td>1,603</td> <td>264.9</td> <td>1,338.10</td> <td>.</td> </tr> <tr> <td>남북동 688</td> <td>대</td> <td>1,603</td> <td>1,603</td> <td>264.9</td> <td>1,338.10</td> <td>조○○</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03	1,603	264.9	1,338.10	.	남북동 688	대	1,603	1,603	264.9	1,338.10	조○○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603</td> <td>1,603</td> <td>1,603</td> <td>-</td> <td>.</td> </tr> <tr> <td>남북동 688</td> <td>대</td> <td>1,603</td> <td>1,603</td> <td>1,603</td> <td>-</td> <td>조○○</td> </tr> </tbody> </table> <p>유산구역 범위 유지(지정구역 확대, 보호구역 축소)</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03	1,603	1,603	-	.	남북동 688	대	1,603	1,603	1,603	-	조○○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03	1,603	264.9	1,338.10	.																																						
남북동 688	대	1,603	1,603	264.9	1,338.10	조○○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603	1,603	1,603	-	.																																						
남북동 688	대	1,603	1,603	1,603	-	조○○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전통건축(점단위), 비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안채, 문간채 등 건축물 기준 구역설정 - 보호구역 : 건축물 주변 시설(담장, 마당 등) 기준 구역설정 →공간적 일체성 고려, 통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확대조정(당초 고시범위 내 확대조정) • 보호구역 : 축소조정 →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일체적 관리체계 조성 도모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남북동	868	대	1,603	1,603	1,603	-	조○○
합계				1,603	1,603	1,603	-	

3. 미추홀구

3.1 인천향교(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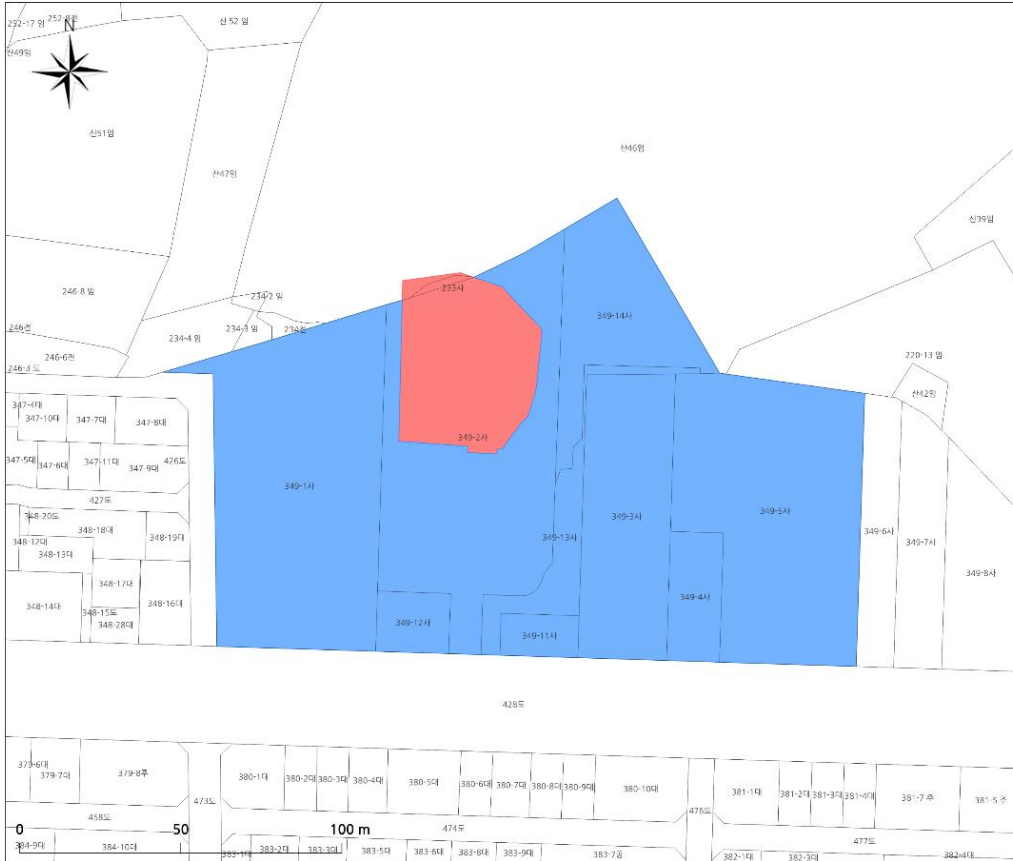
■ 유산구역 조정방안

- 기연구결과(2024) 반영, 유산의 역사적 가치 회복 및 일체적 관리 고려
 - 인천향교는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면단위 유산으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산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단, 기존에 시행한 「인천향교 원형고증학술연구(2022)」를 통하여 미포함된 담장경계가 확인되었고, 유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부지가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유산의 역사적 가치의 회복 및 인접해 있는 관련 시설의 일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산구역 확대가 필요함.

▼인천향교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2022) 확인된 측량성과 반영 필요 인천향교 원형고증학술연구(한울문화유산연구소)를 통해 미포함된 담장경계 추가확인, 유산구역 반영 필요 관리사무소의 일체적 관리도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반영, 구역 정합성(담장) 제고 보호구역의 일체적 관리도모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1,333.1</td> <td>21,333.1</td> <td>2,010.8</td> <td>19,322.3</td> <td>-</td> </tr> <tr> <td>문학동 349-1 외7필지</td> <td>-</td> <td>21,333.1</td> <td>21,333.1</td> <td>2,010.8</td> <td>19,322.3</td> <td>-</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1,333.1	21,333.1	2,010.8	19,322.3	-	문학동 349-1 외7필지	-	21,333.1	21,333.1	2,010.8	19,322.3	-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61,851.7</td> <td>21,735.6</td> <td>2,098.7</td> <td>19,636.9</td> <td>-</td> </tr> <tr> <td>문학동 349-1 외7필지</td> <td>-</td> <td>21,333.1</td> <td>21,333.1</td> <td>2,010.80</td> <td>19,322.3</td> <td>-</td> </tr> <tr> <td>산46</td> <td>임</td> <td>40,166</td> <td>49.9</td> <td>49.9</td> <td>-</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223</td> <td>사</td> <td>38</td> <td>38</td> <td>38</td> <td>-</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349-11</td> <td>사</td> <td>314.6</td> <td>314.6</td> <td>-</td> <td>314.6</td> <td>인천광역시</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유산구역 402.5㎡ 증가(지정 87.9㎡/보호 314.6㎡ 증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61,851.7	21,735.6	2,098.7	19,636.9	-	문학동 349-1 외7필지	-	21,333.1	21,333.1	2,010.80	19,322.3	-	산46	임	40,166	49.9	49.9	-	인천광역시	223	사	38	38	38	-	인천광역시	349-11	사	314.6	314.6	-	314.6	인천광역시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1,333.1	21,333.1	2,010.8	19,322.3	-																																																											
문학동 349-1 외7필지	-	21,333.1	21,333.1	2,010.8	19,322.3	-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61,851.7	21,735.6	2,098.7	19,636.9	-																																																											
문학동 349-1 외7필지	-	21,333.1	21,333.1	2,010.80	19,322.3	-																																																											
산46	임	40,166	49.9	49.9	-	인천광역시																																																											
223	사	38	38	38	-	인천광역시																																																											
349-11	사	314.6	314.6	-	314.6	인천광역시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특성 : 서원·향교(면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지정구역 : 인천향교 외곽 한식담장기준 지정구역 설정 보호구역 : 인천도호부 관아 재현시설 포함 보호구역 설정 →학술연구 결과반영, 역사적 가치회복 및 보존관리 필요 →인접 관련시설고려, 일체적 관리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구역 : 확대조정(지정구역 북측 한식담장 경계 추가) 보호구역 : 확대조정(보호구역 남측 관리사무소 필지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유산의 역사적 가치 회복 및 인접 역사문화자원과의 일체적 관리 강화 도모 ※ 지정구역확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일부 확대 ((당초) 272,720㎡→(조정)272,975㎡), 약 0.1% 증가) 																																																															

■ 유산구역 조정(안)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2 외

범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A3) 1:1,000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문학동	349-1	사	5,127	5,127		5,127	기획재정부
2		349-2	임	5,562.9	5,562.9	2,010.8	3,552.1	인천○○재단
3		349-3	사	2,428.1	2,438.1		2,438.1	인천광역시
4		349-4	사	658.7	658.7		658.7	인천광역시
5		349-5	사	4,513	4,513		4,513	인천광역시
6		349-12	사	423.2	423.2		423.2	인천광역시
7		349-13	사	755.7	755.7		755.7	인천광역시
8		349-14	사	1,854.5	1,854.5		1,854.5	인천광역시
9		산46	임	40,166	49.9	49.9	-	인천광역시
10		233	사	38	38	38	-	인천광역시
11		349-11	사	314.6	314.6	-	314.6	인천광역시
합계				61,841.7	21,735.6	2,098.7	19,636.9	

3.2 문학산성(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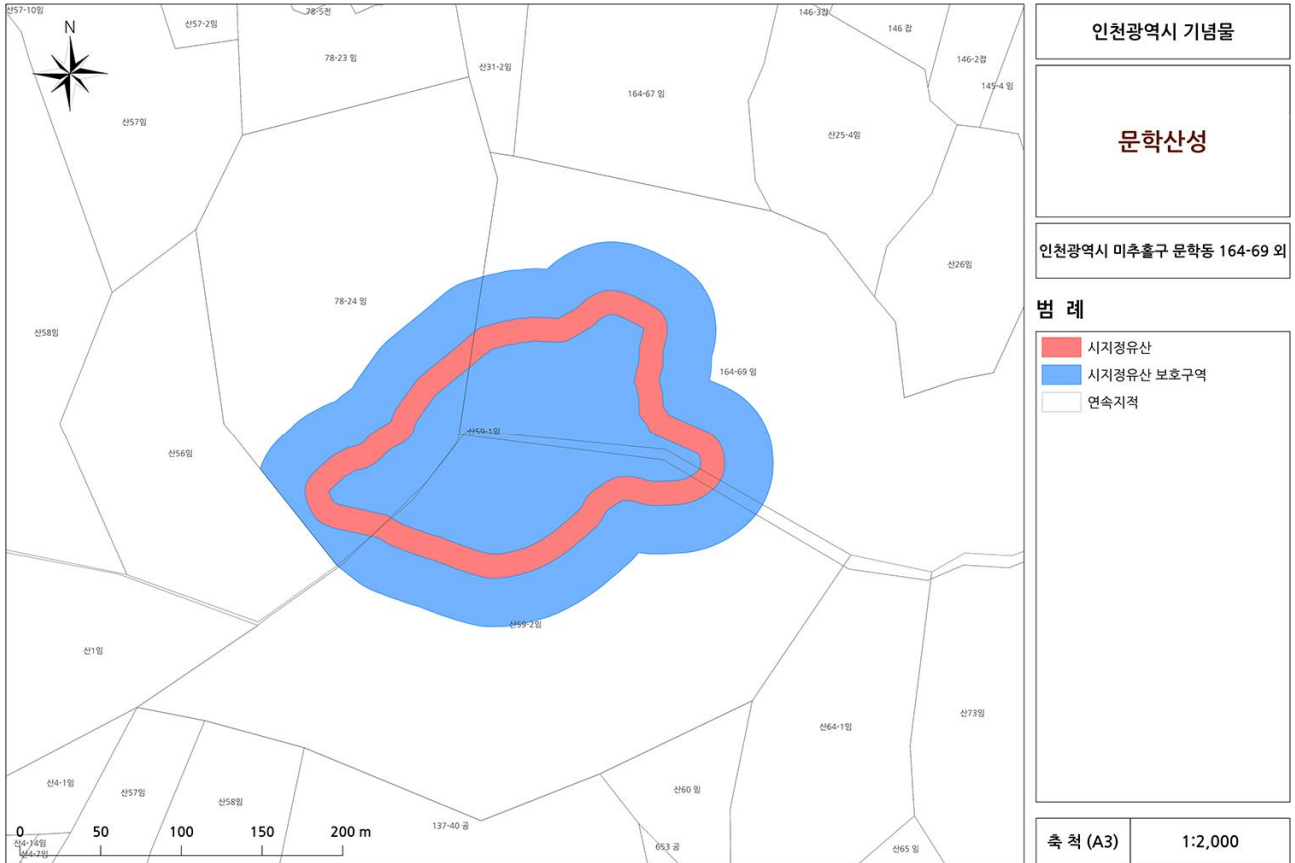
■ 유산구역 조정방안

- 학술연구 결과 존용, 유산구역 위치 재조정, 성벽 보호 고려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
 - 문학산성은 산지에 위치한 단독형 면단위 유산으로 유산구역은 보호구역만 설정되어 있음. 다만, 현재 고시된 유산구역과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여, 기존 학술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위치 조정이 필요함.
 - 이에, 기존 측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벽은 지정구역으로, 성 내부와 외부 반경 30m 이내의 보호구역을 설정함.
 - 특히, 지정구역은 성벽 하부기단의 보호를 위하여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외곽 10m까지 추가지정하였고, 보호구역은 사유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유지 내에서 설정하였음.

▼문학산성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산구역 명확성 제고 필요 - 유산의 관리 효율 제고를 위하여 명확한 위치조정 필요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0))</p>	<p>• 유산보호(성벽/하부기단) 고려, 지정구역 확대 →외향 30m 이내 보호구역 설정(사유지 제외)</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87,170</td> <td>87,170</td> <td>-</td> <td>87,170</td> <td>-</td> </tr> <tr> <td>문학동 산27-1</td> <td>임</td> <td>87,170</td> <td>87,170</td> <td>-</td> <td>87,170</td> <td>인천광역시</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7,170	87,170	-	87,170	-	문학동 산27-1	임	87,170	87,170	-	87,170	인천광역시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86,627</td> <td>51,006.5</td> <td>9,929.5</td> <td>41,077.0</td> <td>-</td> </tr> <tr> <td>남북동 688</td> <td>임</td> <td>87,170</td> <td>20,210.8</td> <td>3,733.5</td> <td>16,477.3</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학익동 78-24</td> <td>임</td> <td>39,401</td> <td>11,537.6</td> <td>2,760.9</td> <td>8,776.7</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연수동 산59-1</td> <td>임</td> <td>3</td> <td>3</td> <td>-</td> <td>3</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산59-2</td> <td>임</td> <td>59,898</td> <td>19,255.1</td> <td>3,435.1</td> <td>15,820</td> <td>인천광역시</td> </tr> <tr> <td colspan="7" style="background-color: yellow;">당초대비 유산구역 36,163.5m² 감소(지정 9,929.5m² 증가/ 보호 46,093m² 감소)</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86,627	51,006.5	9,929.5	41,077.0	-	남북동 688	임	87,170	20,210.8	3,733.5	16,477.3	인천광역시	학익동 78-24	임	39,401	11,537.6	2,760.9	8,776.7	인천광역시	연수동 산59-1	임	3	3	-	3	인천광역시	산59-2	임	59,898	19,255.1	3,435.1	15,820	인천광역시	당초대비 유산구역 36,163.5m ² 감소(지정 9,929.5m ² 증가/ 보호 46,093m ² 감소)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7,170	87,170	-	87,170	-																																																																		
문학동 산27-1	임	87,170	87,170	-	87,170	인천광역시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186,627	51,006.5	9,929.5	41,077.0	-																																																																		
남북동 688	임	87,170	20,210.8	3,733.5	16,477.3	인천광역시																																																																		
학익동 78-24	임	39,401	11,537.6	2,760.9	8,776.7	인천광역시																																																																		
연수동 산59-1	임	3	3	-	3	인천광역시																																																																		
산59-2	임	59,898	19,255.1	3,435.1	15,820	인천광역시																																																																		
당초대비 유산구역 36,163.5m ² 감소(지정 9,929.5m ² 증가/ 보호 46,093m ² 감소)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성(면단위), 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 미설정(보호구역만 설정) - 보호구역 : 성곽이 위치하고 있는 필지 중심 구역 설정 →학술연구결과에 따른 구역 재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재조정(성벽 하부기단보호고려) • 보호구역 : 재조정(지정구역 외향30m 범위 내 보호구역 설정(성벽내부 전체 보호구역 설정)) →사유지 편입 최소화 고려, 서측 사유지(산56)제외, 학술연구 결과, 서문지로 추정되나 과거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원지형 훼손(출토 유구 및 유물 없음) 																																																																						

■ 유산구역 조정(안)



인천광역시 기념물

문학산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외

범 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 척 (A3) 1:2,000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문학동	164-69	임	87,325.0	20,210.8	3,733.5	16,477.3	인천광역시
2	학익동	78-24	임	39,401.0	11,537.6	2,760.9	8,776.7	인천광역시
3	연수동	산59-2	임	59,898	19,255.1	3,435.1	15,820.0	인천광역시
4	연수동	산59-1	임	3.0	3.0	-	3.0	인천광역시
합계				186,627.0	51,006.5	9,929.5	41,077.0	

4. 연수구

4.1 원인재(유형문화유산)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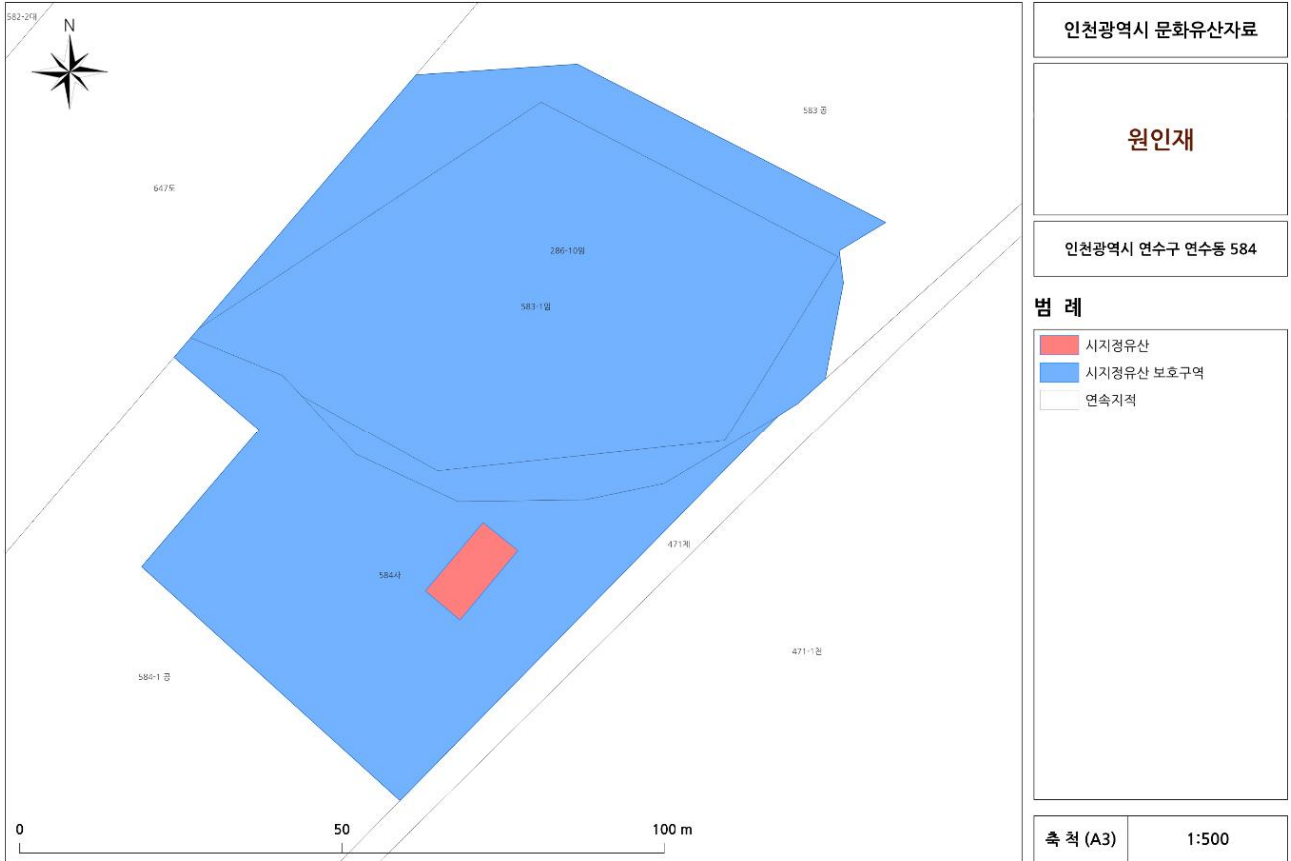
• 군집유산 일체적 관리 고려, 보호구역 추가지정

- 원인재는 도심에 위치한 단독형 점단위 유산으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산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단, 현재 고시된 유산구역은 원인재 경역의 일부만 지정되어있고, 원인재 북측의 연계자원인 이허검 묘역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군집유산의 일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 원인재는 기존 고시를 통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 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현상유지 가능함.

▼원인재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자문의견(2024) 반영, 원인재 및 연계 역사문화자원 일체적 관리 필요</p>	<p>• 연계유산 일체성 강화, 관리효율성 제고 도모 - 보호구역 추가지정</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2,645.7</td> <td>2,645.7</td> <td>97.6</td> <td>2,548.1</td> <td></td> </tr> <tr> <td>연수동 584</td> <td>사</td> <td>2,645.7</td> <td>2,645.7</td> <td>97.6</td> <td>2,548.1</td> <td>인천이씨 대종회</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645.7	2,645.7	97.6	2,548.1		연수동 584	사	2,645.7	2,645.7	97.6	2,548.1	인천이씨 대종회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7,434.60</td> <td>7,434.60</td> <td>97.6</td> <td>7,337</td> <td></td> </tr> <tr> <td>연수동 584</td> <td>사</td> <td>2,645.7</td> <td>2,645.7</td> <td>97.6</td> <td>2,548.1</td> <td>인천이씨 대종회</td> </tr> <tr> <td>286-10</td> <td>임</td> <td>1,416.9</td> <td>1,416.9</td> <td>-</td> <td>1,416.9</td> <td>기획재정부</td> </tr> <tr> <td>583-1</td> <td>임</td> <td>3,372</td> <td>3,372</td> <td>-</td> <td>3,372</td> <td>인천이씨 대종회</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4,788.9㎡증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434.60	7,434.60	97.6	7,337		연수동 584	사	2,645.7	2,645.7	97.6	2,548.1	인천이씨 대종회	286-10	임	1,416.9	1,416.9	-	1,416.9	기획재정부	583-1	임	3,372	3,372	-	3,372	인천이씨 대종회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2,645.7	2,645.7	97.6	2,548.1																																																					
연수동 584	사	2,645.7	2,645.7	97.6	2,548.1	인천이씨 대종회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7,434.60	7,434.60	97.6	7,337																																																					
연수동 584	사	2,645.7	2,645.7	97.6	2,548.1	인천이씨 대종회																																																				
286-10	임	1,416.9	1,416.9	-	1,416.9	기획재정부																																																				
583-1	임	3,372	3,372	-	3,372	인천이씨 대종회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사우(점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원인재(목조건축물) 최고돌출점기준 지정구역 설정 - 보호구역 : 원인재 주변 담장 내부 보호구역 설정 <p>→자문위원 의견(2024)반영, 원인재와 관련있는 인접 역사 문화자원(이허검묘역)의 일체적 관리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 • 보호구역 : 확대조정(보호구역 인접 2필지(286-10/583-1)) <p>→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한 인접유산과의 일체적 관리 강화 및 유산의 완충공간 확보 도모</p> <p>→추가 의견수렴결과, 소유주(종중/한국자산관리공사) 긍정적 의사 확인</p> <p>※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p>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연수동	584	사	2,645.7	2,645.7	97.6	2,548.1	인천○○○중회
2	연수동	286-10	임	1,416.9	1,416.9	-	1,416.9	기획재정부
3	연수동	583-1	임	3,372	3,372	-	3,372	인천○○○중회
합계				7,434.6	7,434.6	97.6	7,337	

5. 서구

5.1 류사늘 묘(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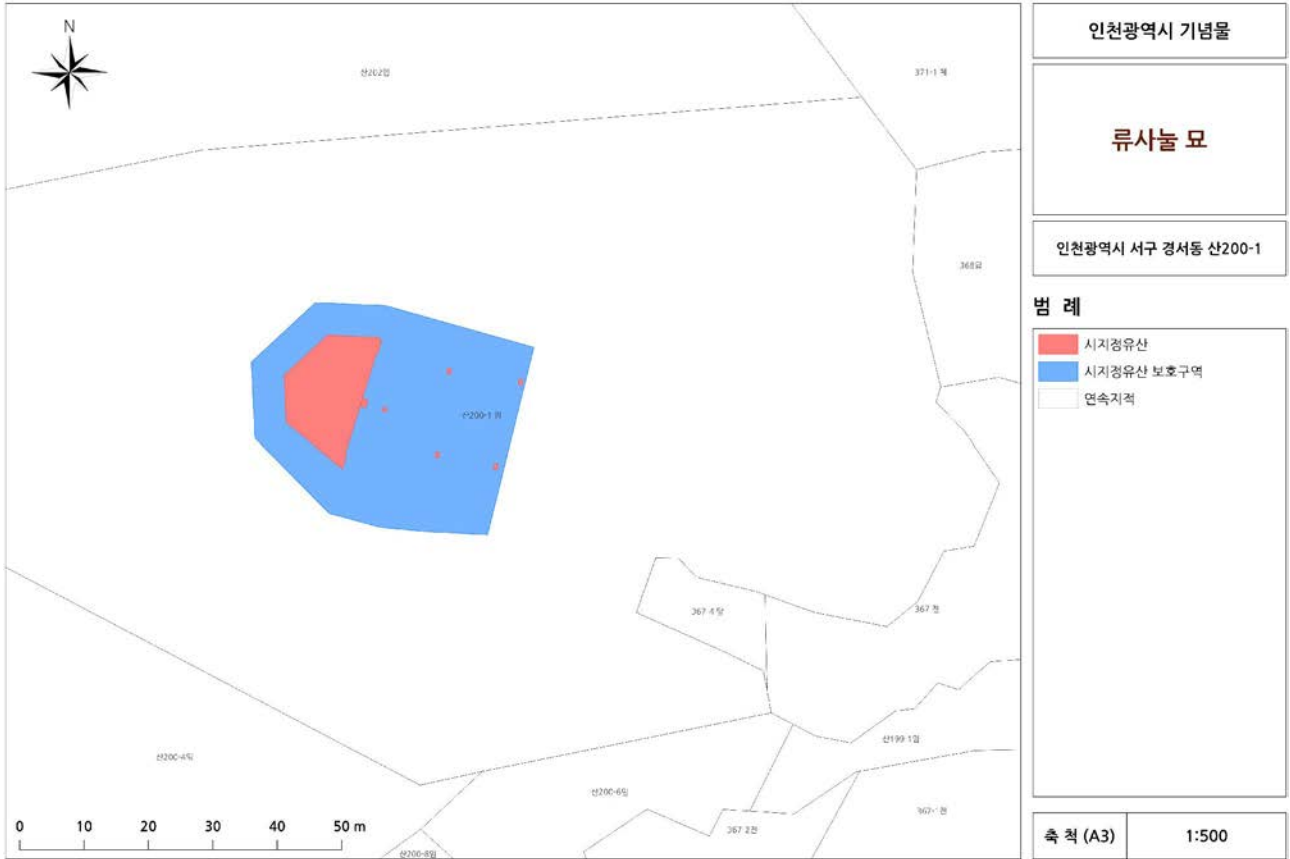
• 고시오류 수정을 통한 관리대상 명확화 및 업무효율 제고

- 류사늘 묘는 도심지에 인접한 산지에 위치한 면단위 유산으로, 봉분을 중심으로 한 지정구역과 묘역의 일부를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다만, 기존 지형도면 고시는 유산의 실제위치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추가 측량조사를 통해 묘역 경계를 기준으로 위치를 재조정하였음.
- 이후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소유자인 문화류씨문숙공파종중에서 기존의 유산구역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류사늘 묘 일원의 묘역 일부만 관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검토하였음.

▼류사늘 묘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p>• 측량성과 오류(2008) 확인, 유산구역 미스 매치, 재측량을 통한 정확한 위치 확인 필요</p> <p>표기개선 - 범례</p>	<p>• 주민 의견(09.10) 반영 - 류사늘 묘 외 다른 자손 묘의 유지보수 제한, 유산구역 확장 외 다른 관리방안 검토 요망</p>																																										
고시문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9,476</td> <td>1,257.6</td> <td>195.6</td> <td>1,062</td> <td></td> </tr> <tr> <td>경서동 산200-1</td> <td>-</td> <td>49,476</td> <td>1,257.6</td> <td>195.6</td> <td>1,062</td> <td>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476	1,257.6	195.6	1,062		경서동 산200-1	-	49,476	1,257.6	195.6	1,062	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	<p>(단위 : m²)</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49,476</td> <td>1,202.7</td> <td>195.6</td> <td>1,007.1</td> <td>-</td> </tr> <tr> <td>경서동 산200-1</td> <td>-</td> <td>49,476</td> <td>1,202.7</td> <td>195.6</td> <td>1,007.1</td> <td>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54.9m² 감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476	1,202.7	195.6	1,007.1	-	경서동 산200-1	-	49,476	1,202.7	195.6	1,007.1	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476	1,257.6	195.6	1,062																																							
경서동 산200-1	-	49,476	1,257.6	195.6	1,062	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49,476	1,202.7	195.6	1,007.1	-																																						
경서동 산200-1	-	49,476	1,202.7	195.6	1,007.1	문화류씨 문숙공파종중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능원묘(점단위), 도심에 위치한 독립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봉분 및 석물 등 관리대상 경계 기준 구역 설정 - 보호구역 : 지정구역 외곽경계기준 5m 이내 구역 설정 →고시오류(지정구역-묘역 위치 불일치) →관리대상과 완충공간의 구역 명확화를 통한 관리효율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위치 재조정(봉분 및 석물기준 지정구역 설정) • 보호구역 : 위치 재조정(묘역 경계기준 보호구역 설정) →당초 유산구역 면적과 유사한 범위 내 구역설정, 미포함된 묘역 일부는 허용기준을 통한 관리방안 검토 ※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경서동	산200-1	임	47,830	1,202.7	195.6	1,007.1	문화류씨 문숙공파 종회
합계			-	47,830	1,202.7	195.6	1,007.1	-

5.2 대곡동 고인돌군(기념물)

■ 유산구역 조정방안

• 필지변동사항 반영, 관리효율성 제고

- 대곡동 고인돌군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있고, 세부적으로 유산구역의 총면적은 8,628㎡로 지정되었음.
- 다만, 2008년 지형도면 고시 이후,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필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도 분리되었음.
- 이러한 입지여건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필지변동 사항을 반영함.

▼대곡동 고인돌군의 유산구역 조정방안

구분	당초고시(2008.08.18.)	조정안																																																																																											
고시도																																																																																													
고시문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8,628</td> <td>8,628</td> <td>254.7</td> <td>8,373.3</td> <td>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사동철의4인)</td> </tr> <tr> <td>대곡동 산123-1</td> <td>임</td> <td>8,628</td> <td>8,628</td> <td>254.7</td> <td>8,373.3</td> <td></td> </tr> </tbody> </table>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628	8,628	254.7	8,373.3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사동철의4인)	대곡동 산123-1	임	8,628	8,628	254.7	8,373.3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 <th>지목</th> <th>필지면적</th> <th>유산구역</th> <th>지정구역</th> <th>보호구역</th> <th>토지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8,725.5</td> <td>8,473.5</td> <td>254.7</td> <td>8,218.8</td> <td></td> </tr> <tr> <td>대곡동 147-1</td> <td>임</td> <td>5,007</td> <td>5,007</td> <td>254.7</td> <td>4,752.3</td> <td>평산신씨 공수종중</td> </tr> <tr> <td>147-2</td> <td>임</td> <td>410</td> <td>410</td> <td></td> <td>410</td> <td>(주)엘이씨 코퍼레이션</td> </tr> <tr> <td>147-3</td> <td>임</td> <td>564</td> <td>564</td> <td></td> <td>564</td> <td>(주)엘이씨 코퍼레이션</td> </tr> <tr> <td>147-4</td> <td>임</td> <td>1,478</td> <td>1,478</td> <td></td> <td>1,478</td> <td>평산신씨 공수종중</td> </tr> <tr> <td>147-5</td> <td>임</td> <td>173</td> <td>173</td> <td></td> <td>173</td> <td>(주)엘이씨 코퍼레이션</td> </tr> <tr> <td>147-8</td> <td>임</td> <td>113</td> <td>113</td> <td></td> <td>113</td> <td>(주)엘이씨 코퍼레이션</td> </tr> <tr> <td>169-8</td> <td>도로</td> <td>542.5</td> <td>360.4</td> <td></td> <td>360.4</td> <td>서구청</td> </tr> <tr> <td>169-9</td> <td>도로</td> <td>438</td> <td>368.1</td> <td></td> <td>368.1</td> <td>서구청</td> </tr> </tbody> </table> <p>당초대비 보호구역 154.5㎡ 감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p>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725.5	8,473.5	254.7	8,218.8		대곡동 147-1	임	5,007	5,007	254.7	4,752.3	평산신씨 공수종중	147-2	임	410	410		410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3	임	564	564		564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4	임	1,478	1,478		1,478	평산신씨 공수종중	147-5	임	173	173		173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8	임	113	113		113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69-8	도로	542.5	360.4		360.4	서구청	169-9	도로	438	368.1		368.1	서구청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628	8,628	254.7	8,373.3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사동철의4인)																																																																																							
대곡동 산123-1	임	8,628	8,628	254.7	8,373.3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합계	-	8,725.5	8,473.5	254.7	8,218.8																																																																																								
대곡동 147-1	임	5,007	5,007	254.7	4,752.3	평산신씨 공수종중																																																																																							
147-2	임	410	410		410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3	임	564	564		564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4	임	1,478	1,478		1,478	평산신씨 공수종중																																																																																							
147-5	임	173	173		173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47-8	임	113	113		113	(주)엘이씨 코퍼레이션																																																																																							
169-8	도로	542.5	360.4		360.4	서구청																																																																																							
169-9	도로	438	368.1		368.1	서구청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특성 : 고분군·지석묘(면단위), 도심에 위치한 군집형 문화유산 • 구역설정 : 지정구역+보호구역 - 지정구역 : 고인돌 3개소 중 2개소 지정구역 설정 - 보호구역 : 고인돌 출토 필지 전체 보호구역 설정 →보호구역의 필지변동사항을 반영한 정합성 제고 필요 →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지정구역 확대 필요(측량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 현상유지(측량조사를 통한 고인돌군 추가 지정필요 (170-1번지 뒷편)) • 보호구역 : 필지단위 조정(필지변동사항 반영) →관리대상 명확화 고려, 미지정 고인돌군 추가측량조사 필요 ※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존 범위 유지가능!!(문화유산법 제13조제4항) 																																																																																											

■ 유산구역 조정(안)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유산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1	대곡동	147-1	임	5,007	5,007	254.7	4,752.3	평산신씨○○ ○○○공소종중
2		147-2	임	410	410	-	410	(주)엘○○코퍼레이션
3		147-3	임	564	564	-	564	(주)엘○○코퍼레이션
4		147-4	임	1,478	1,478	-	1,478	평산신씨○○ ○○○공소종중
5		147-5	임	173	173	-	173	(주)엘○○코퍼레이션
6		147-8	임	113	113	-	113	(주)엘○○코퍼레이션
7		169-8	도로	542.5	360.4	-	360.4	서구청
8		169-9	도로	438	368.1	-	368.1	서구청
합계				8,725.5	8,473.5	254.7	8,218.8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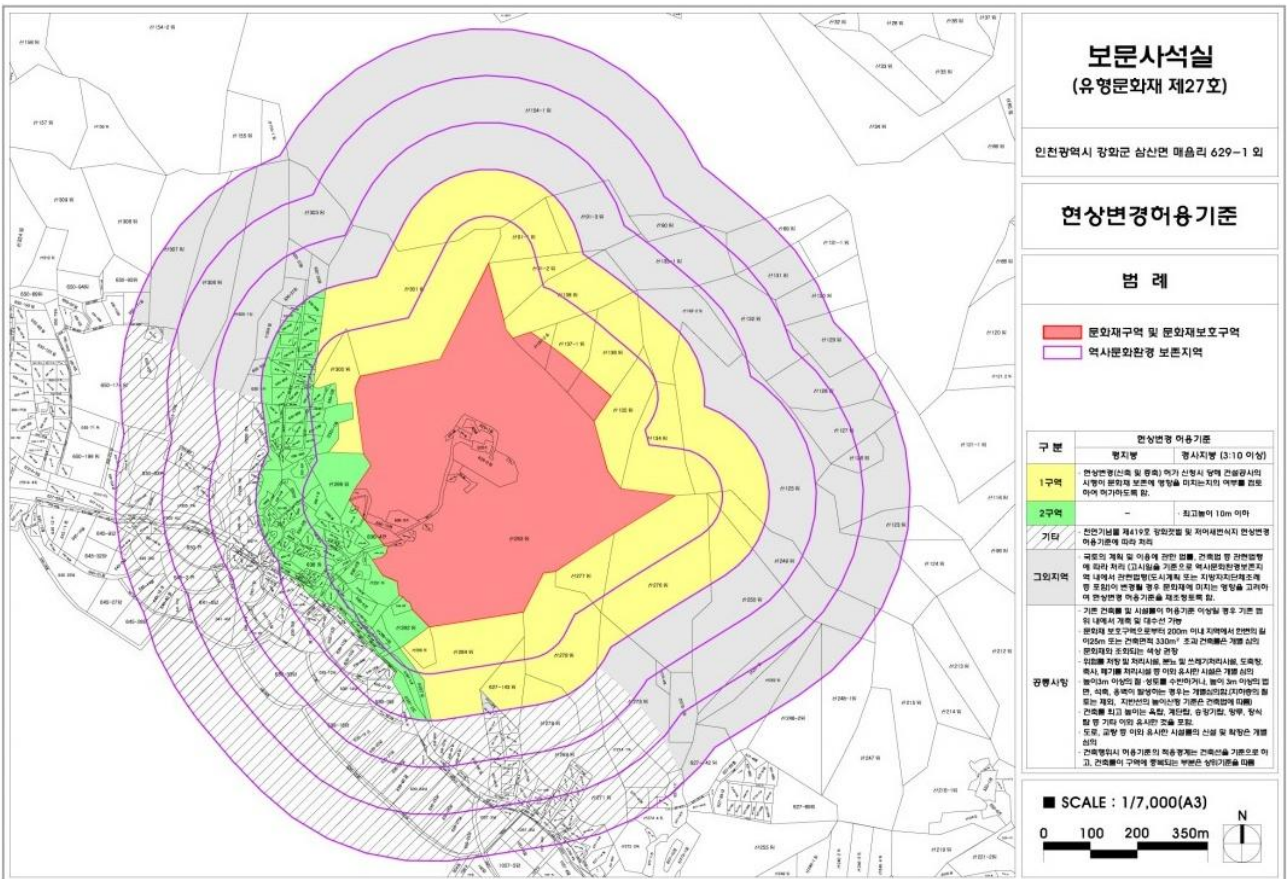
IV. 허용기준 조정안

(군·구별)

1. 강화군
2. 중구
3. 미추홀구
4. 남동구
5. 계양구
6.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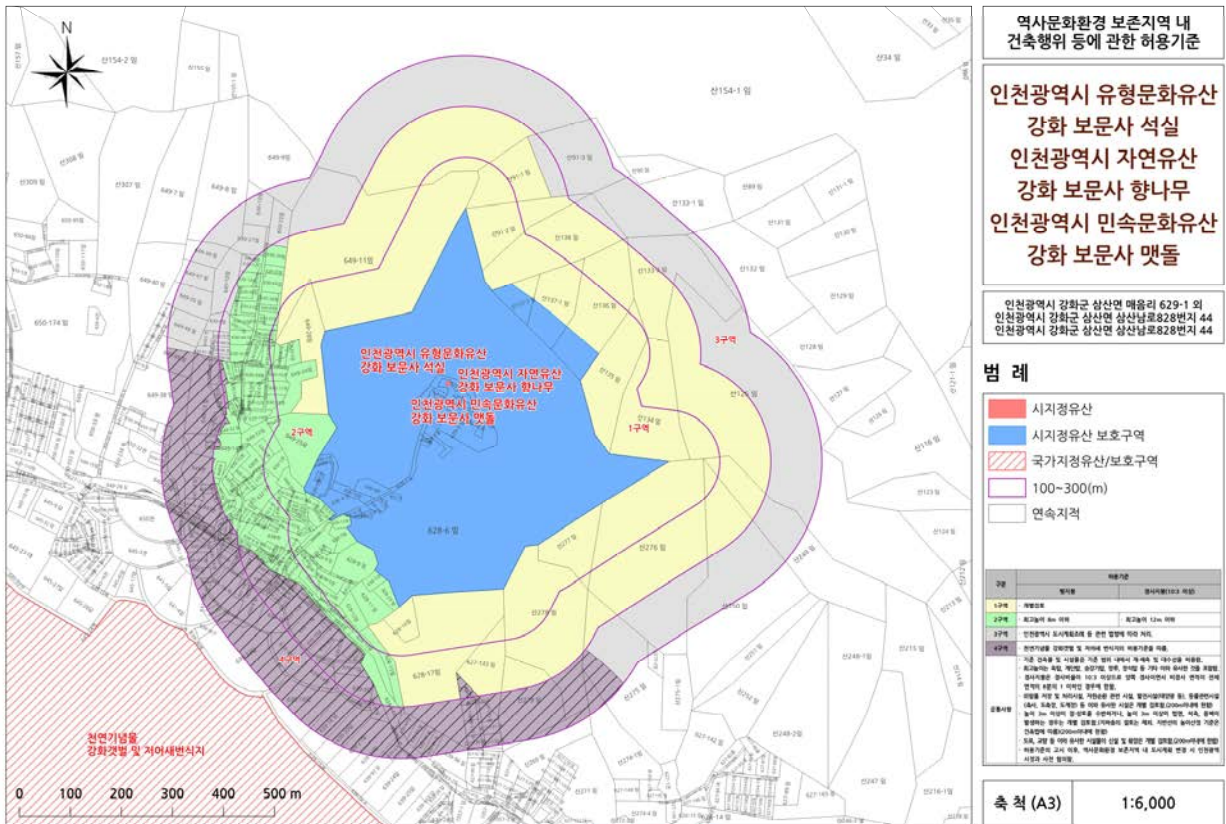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제419호 강화갯벌및 저어새번식지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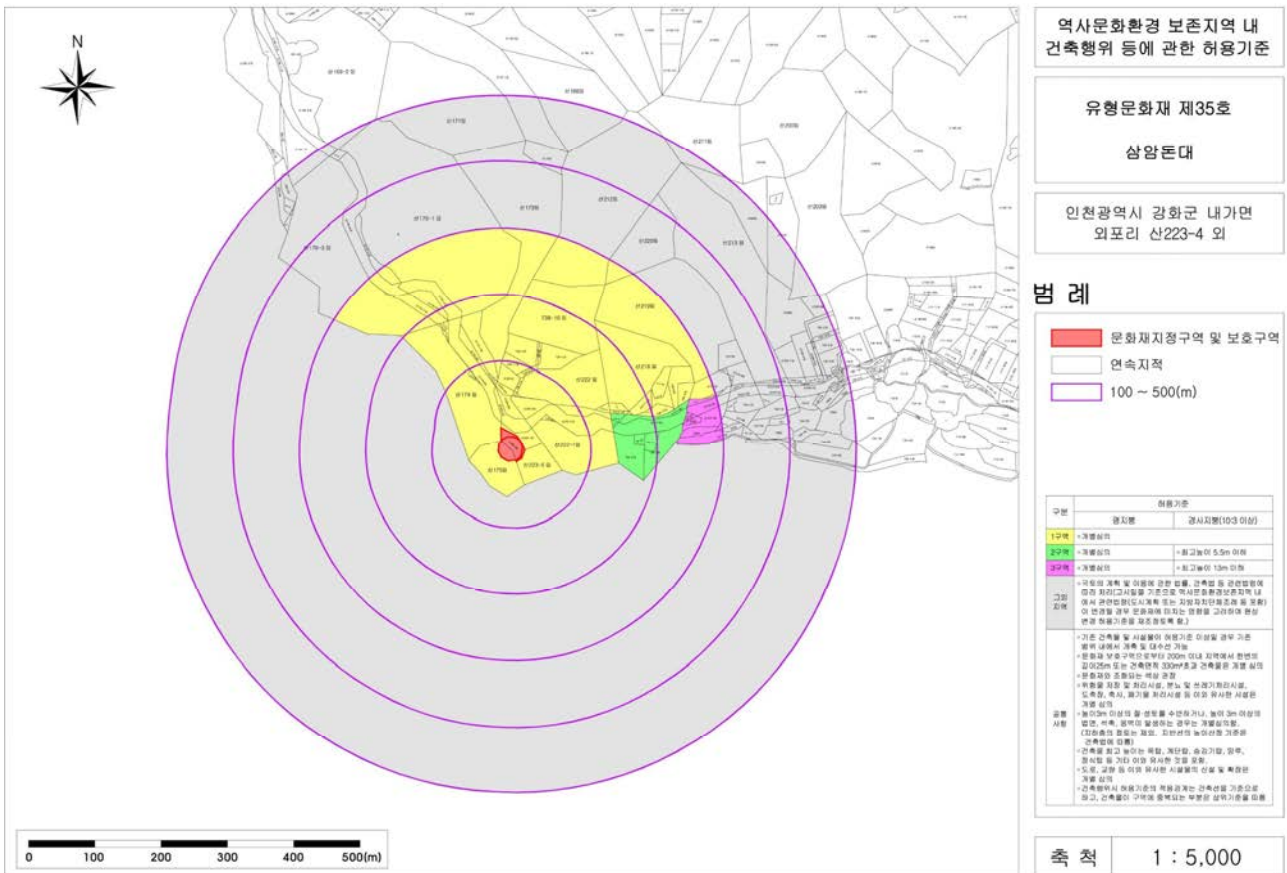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천연기념물 강화곶별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기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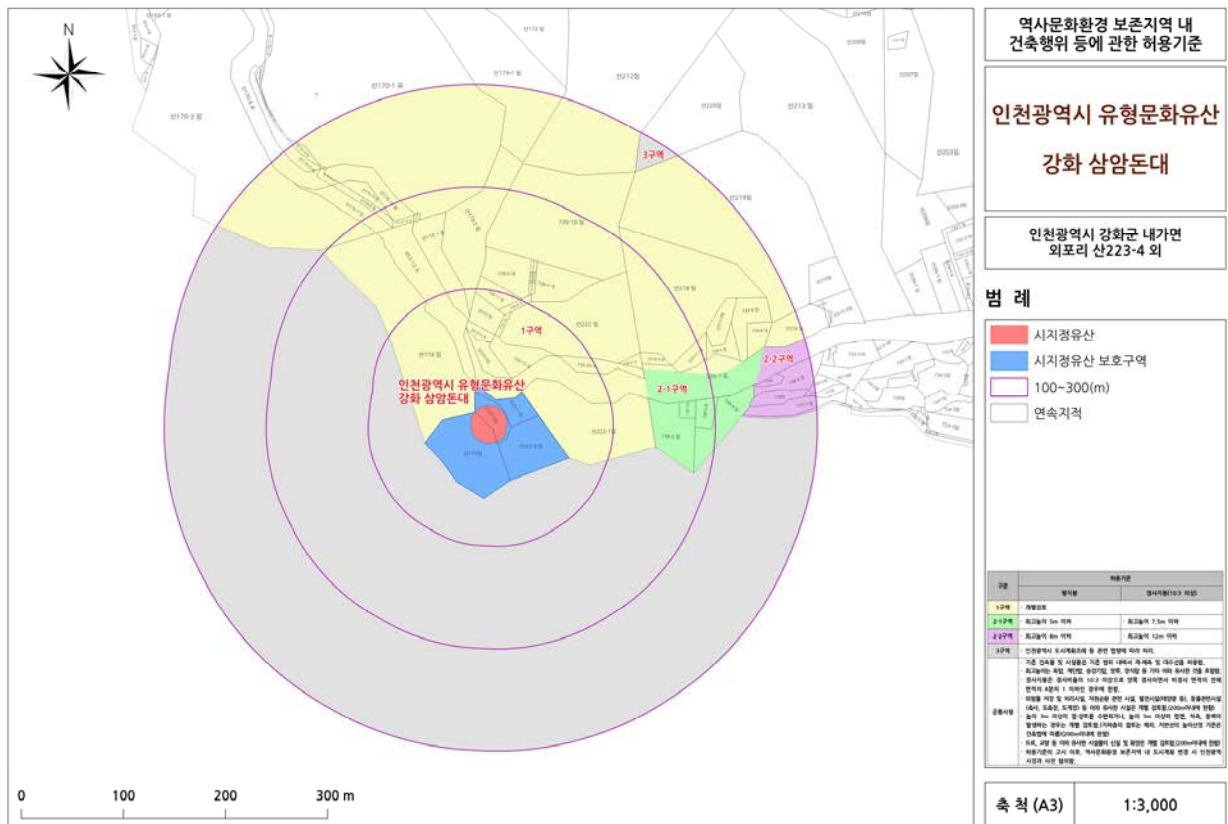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1.07.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5.5m 이하
3구역	○ 개별심의	
그외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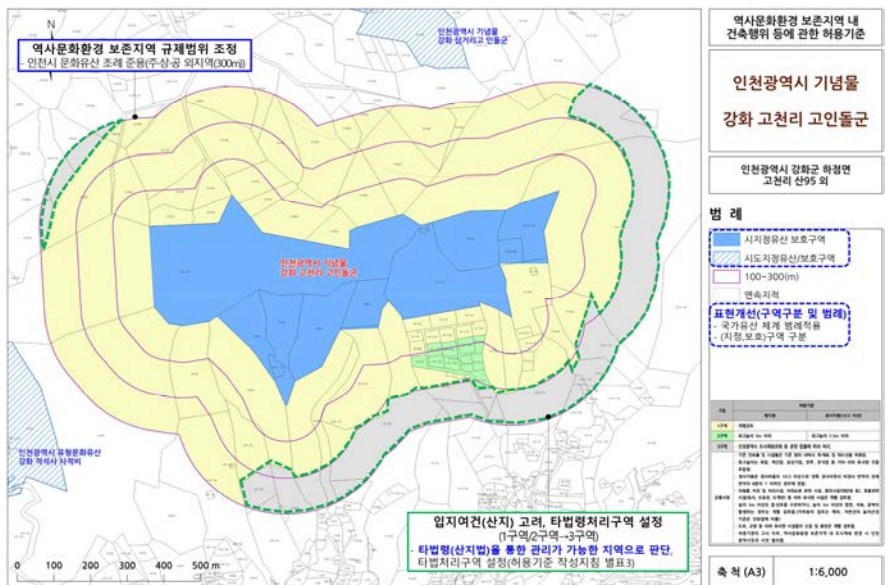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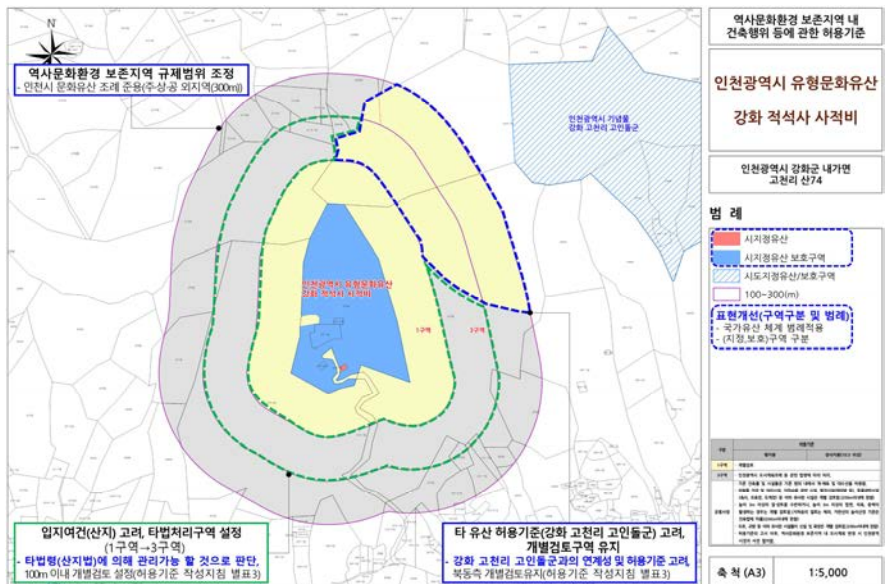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3. 강화 적석사 사적비 외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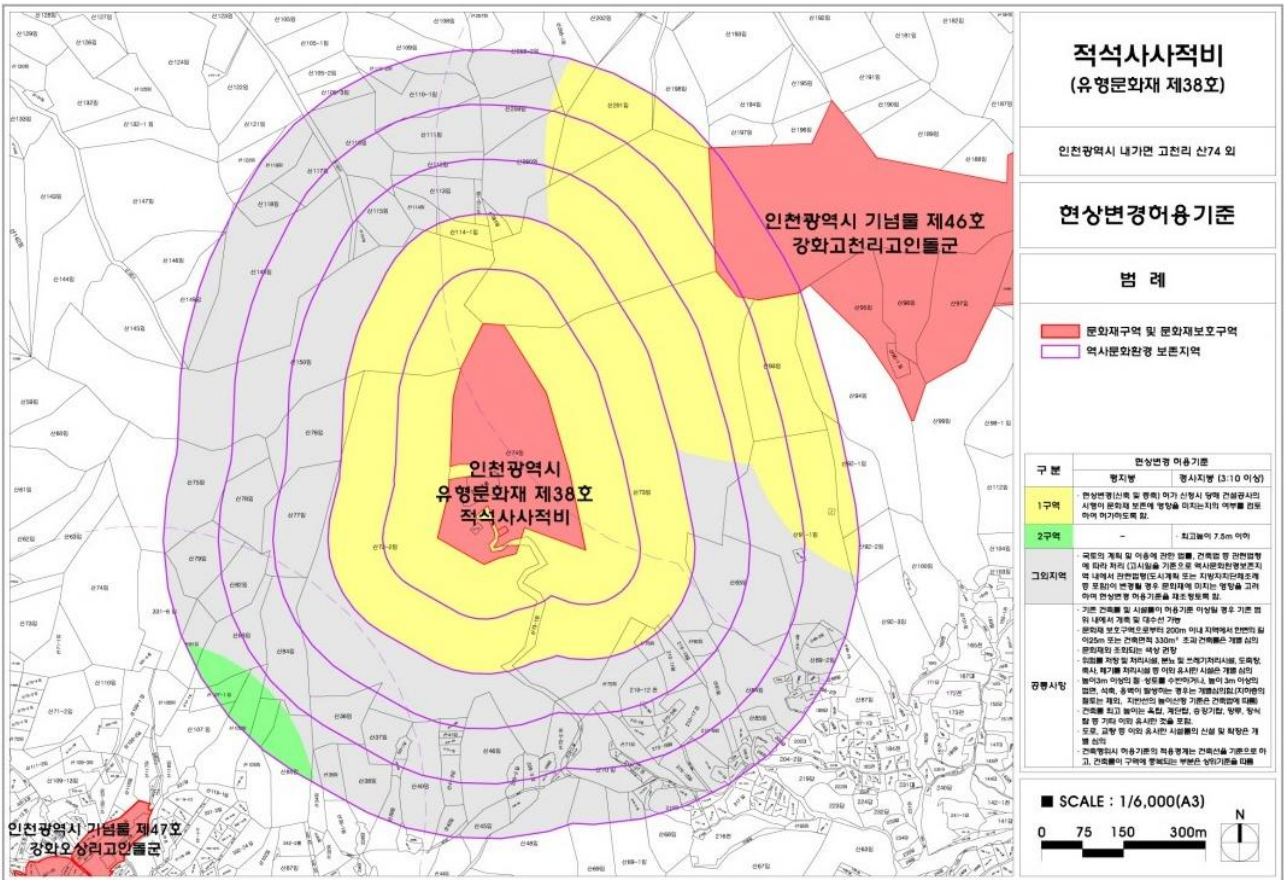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강화 적석사 사적비와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그리고 작년에 조정한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까지 인접해 있는 유산의 허용기준을 통합고시하여 일체적인 관리를 도모함. 적석사 사적비는 유산의 규모대비 넓은 보호구역이 완충공간으로서 활용가능하여 100m 이내로 개별검토구역을 조정하고, 북서측은 고천리 고인돌군과 연계성을 고려한 규제정도를 조정하고, 고천리 고인돌군 동측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m 이내로 규제정도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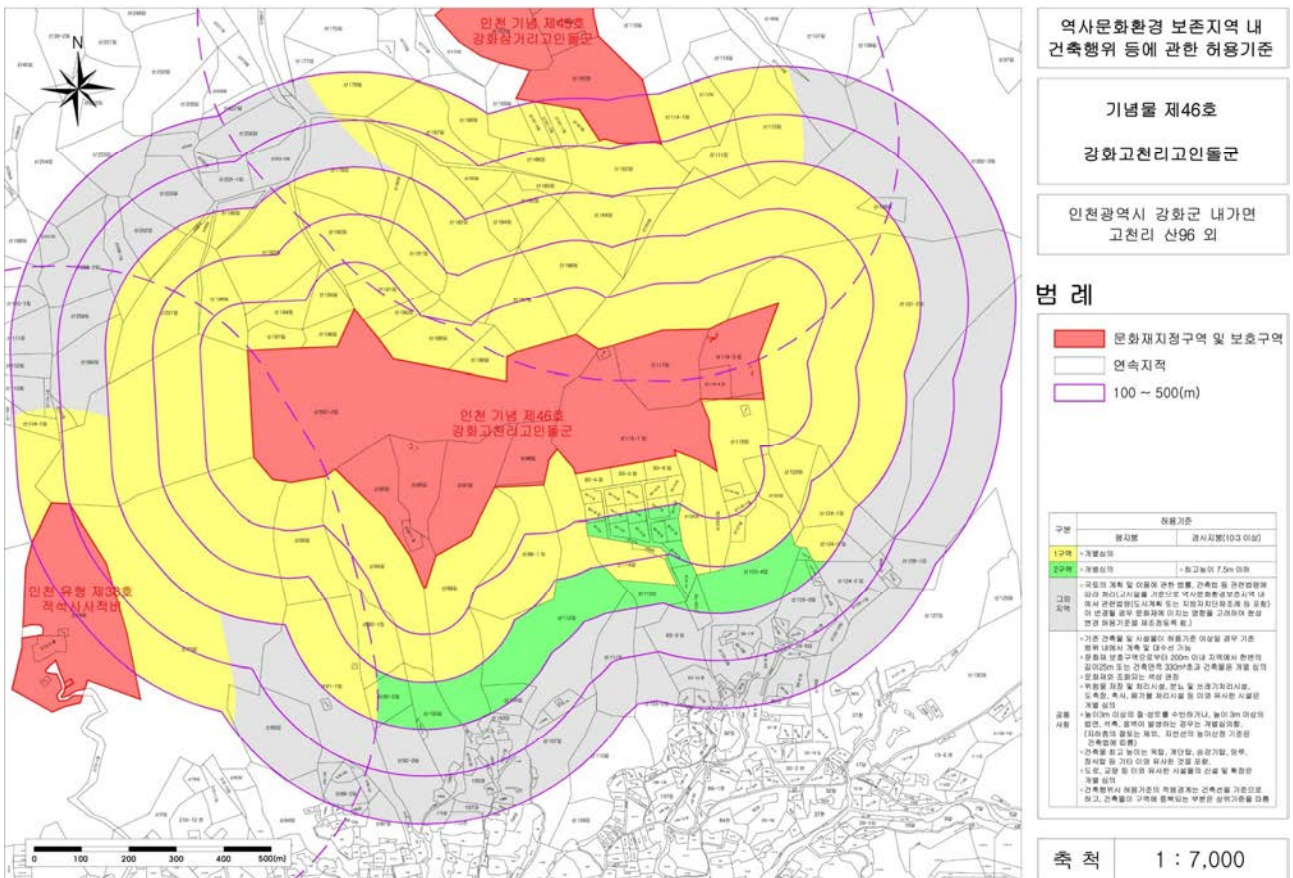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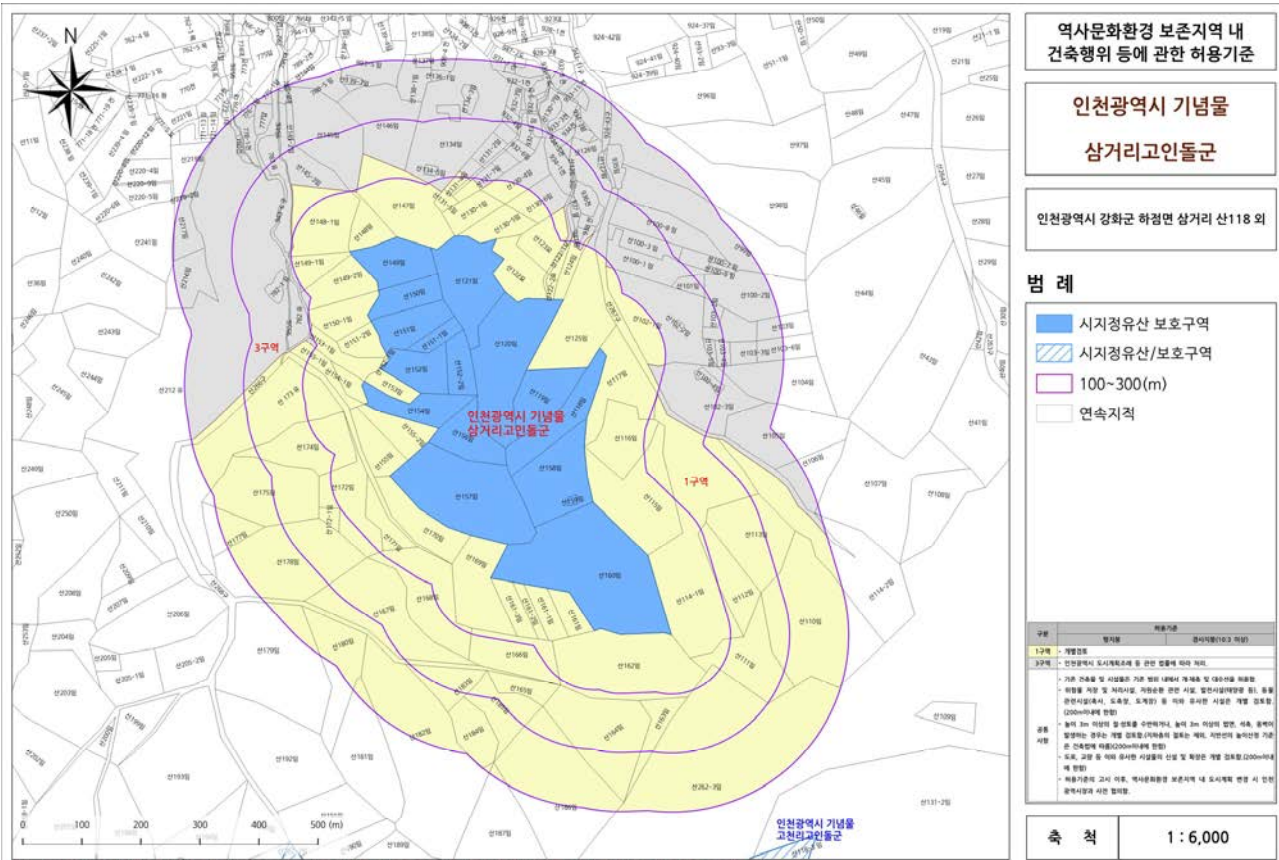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1.07.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제419호 강화갯벌및 저어새번식지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 시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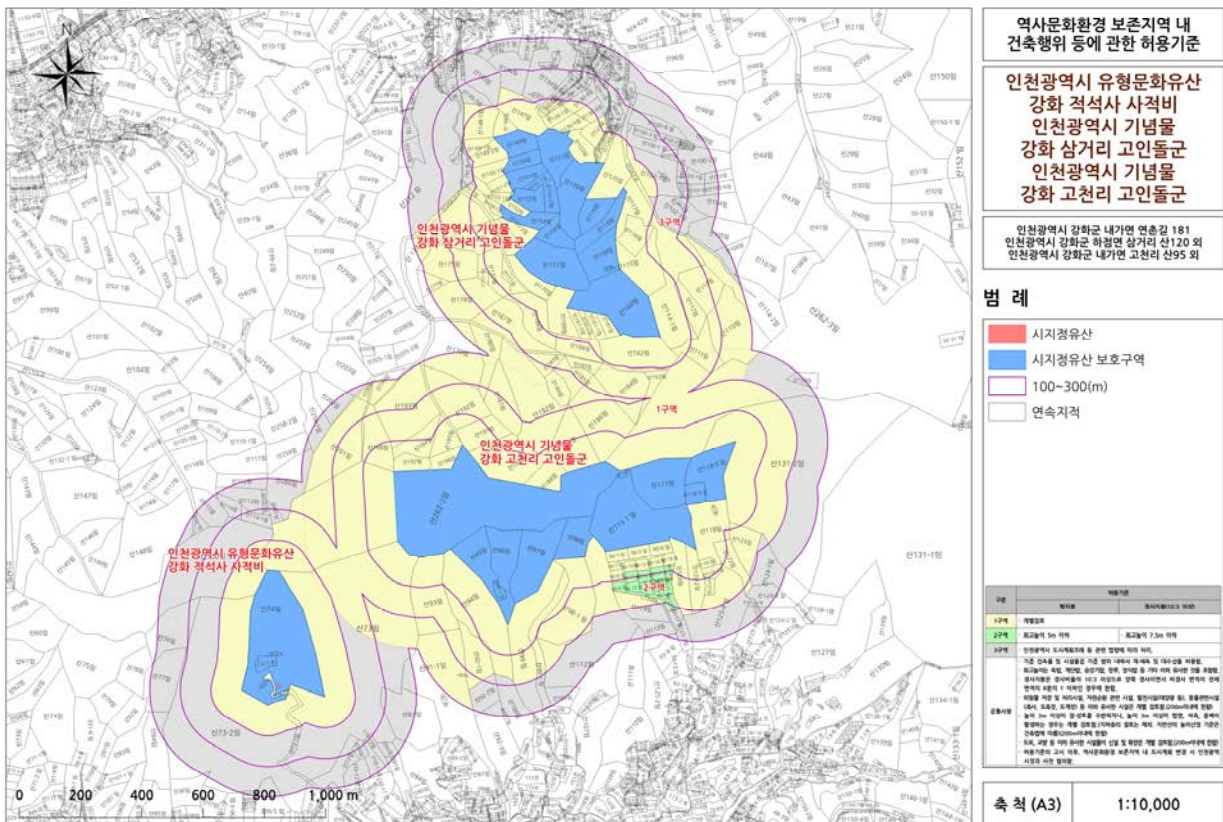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4.06.10.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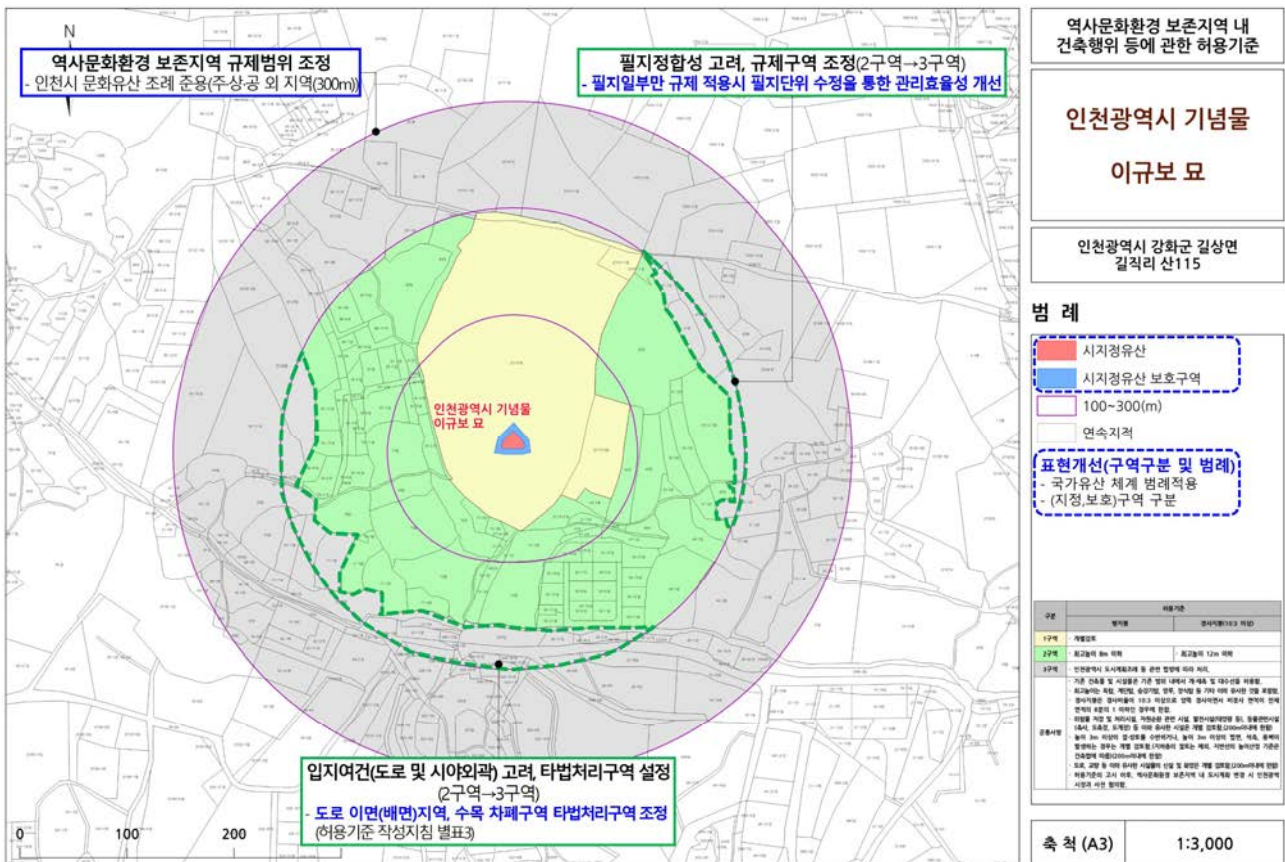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4 이규보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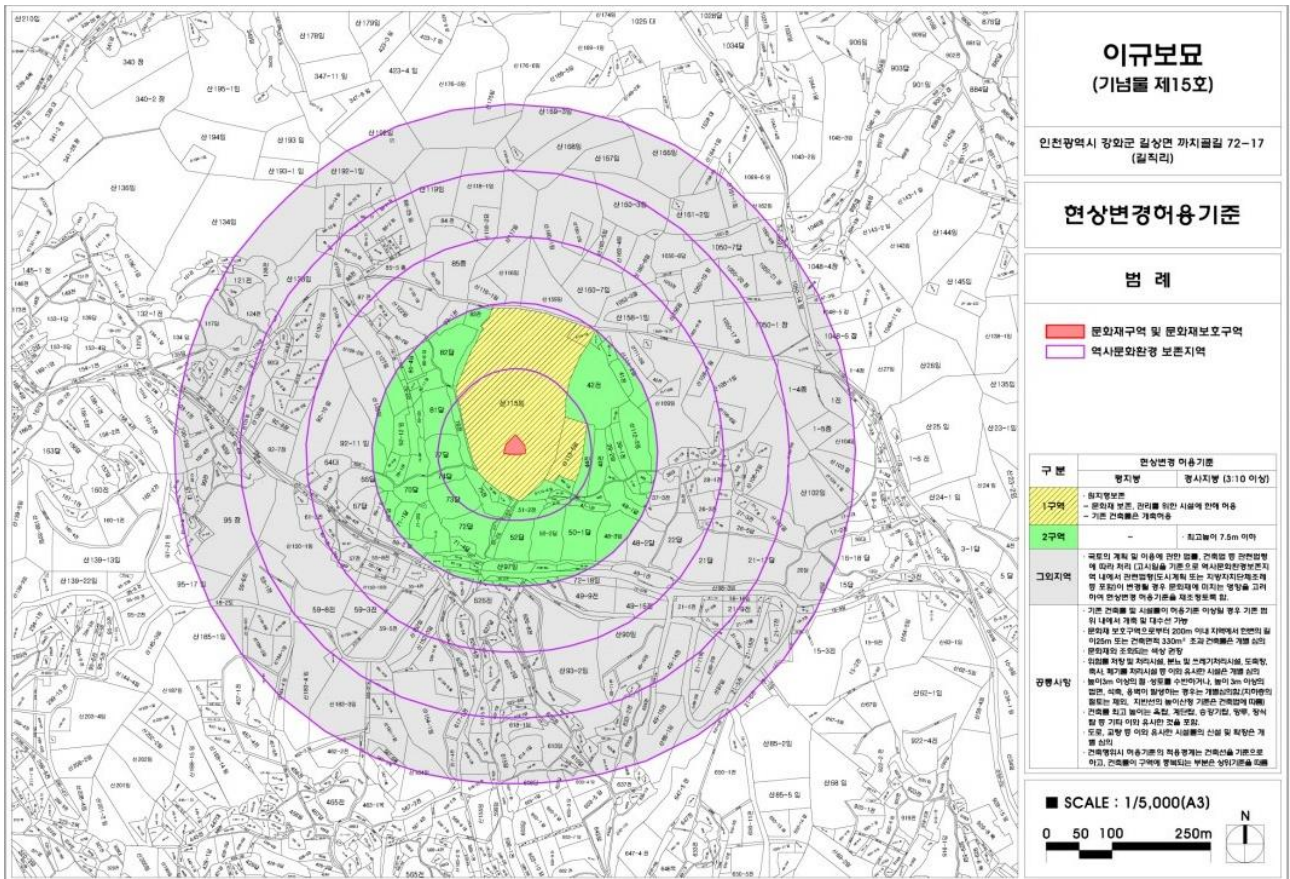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유산구역 남측으로 도로 이면지역 및 수목 차폐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이 적은 곳으로 작성지침에 따라 타법처리구역 설정 및 필지 일부만 규제받는 부분에 대한 필지단위 수정을 통하여 관리효율성 개선방향으로 기본방향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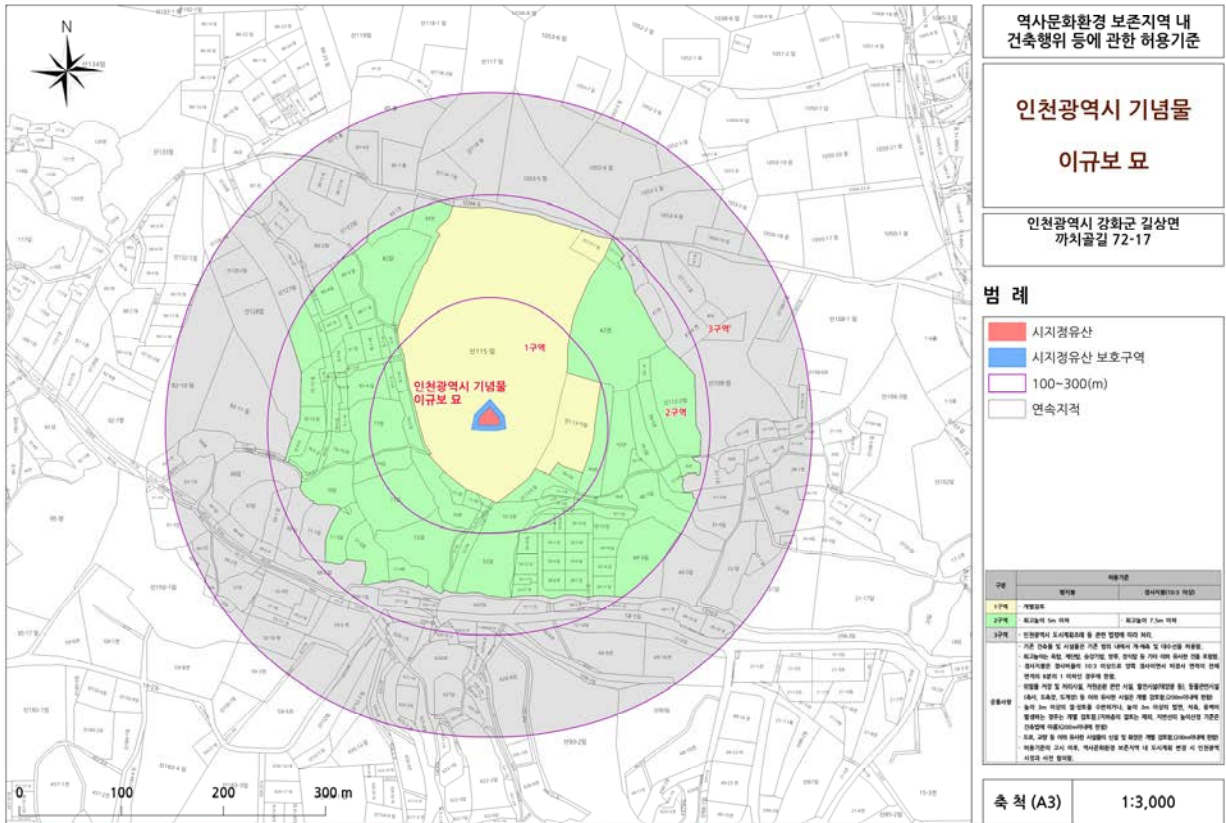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상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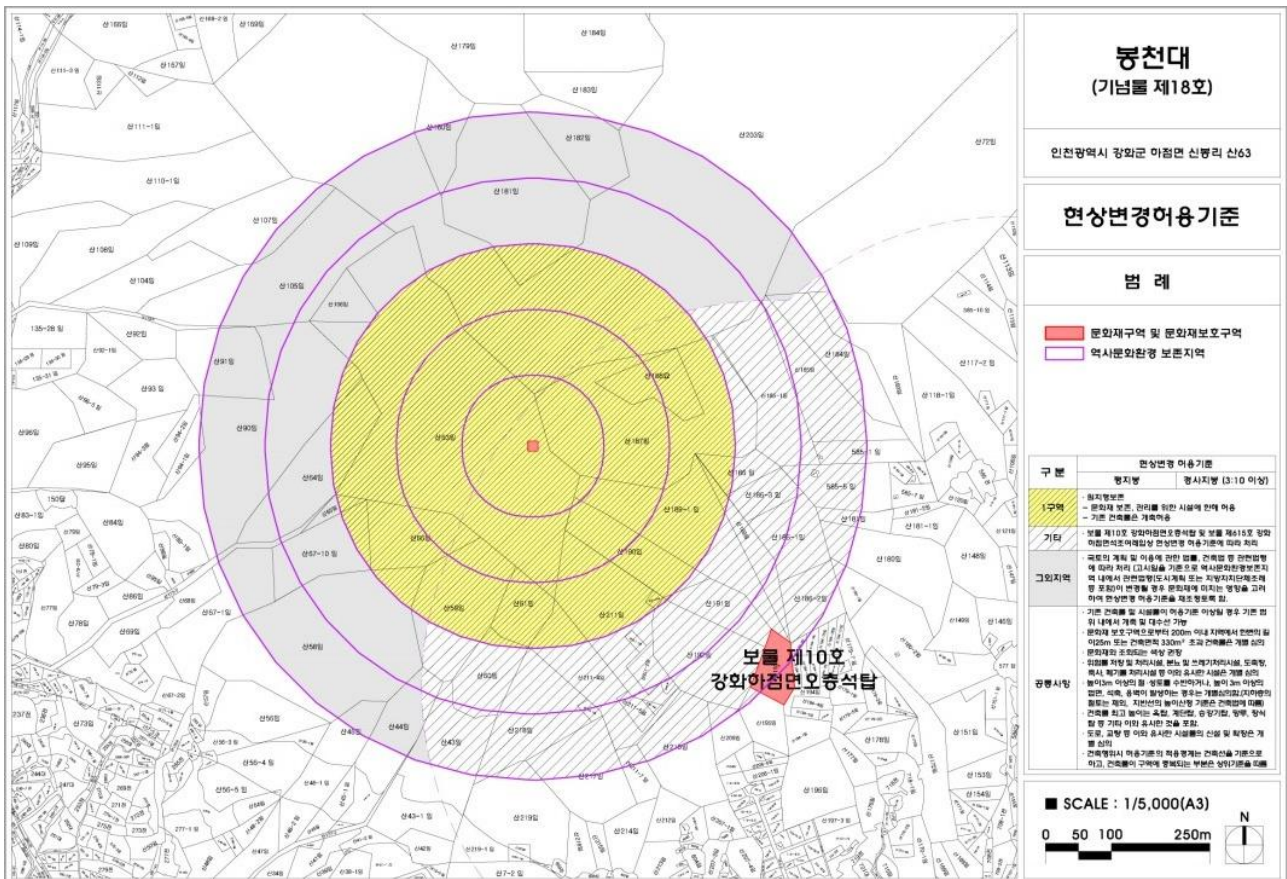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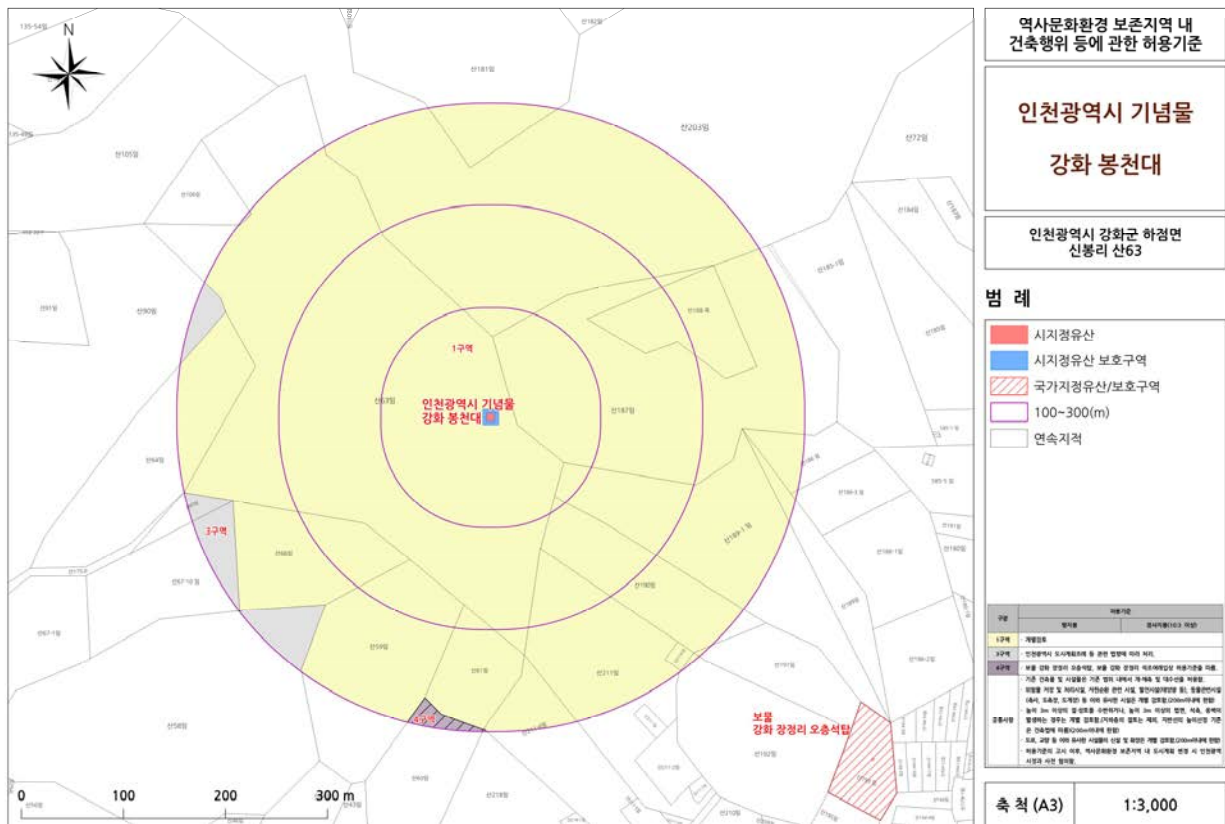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보물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및 보물 제615호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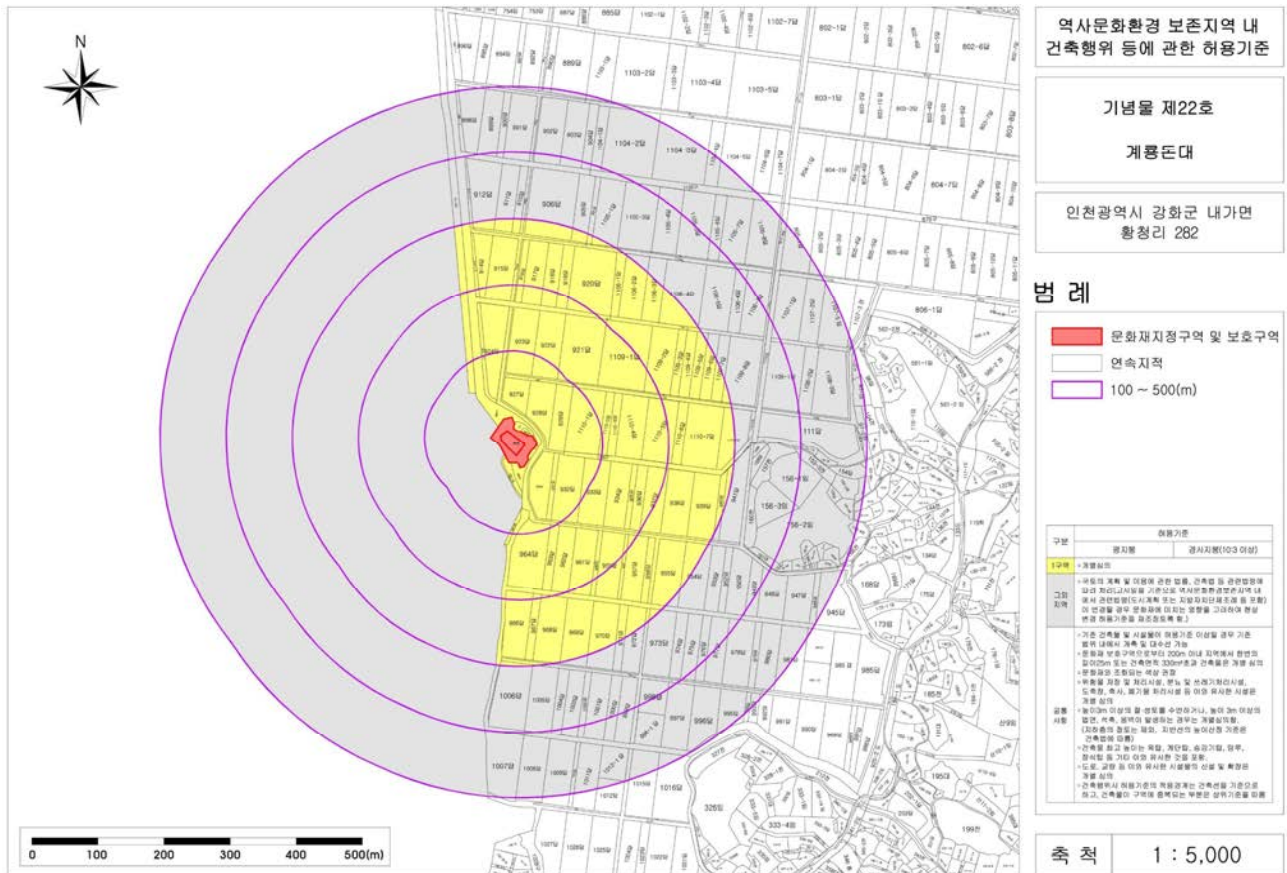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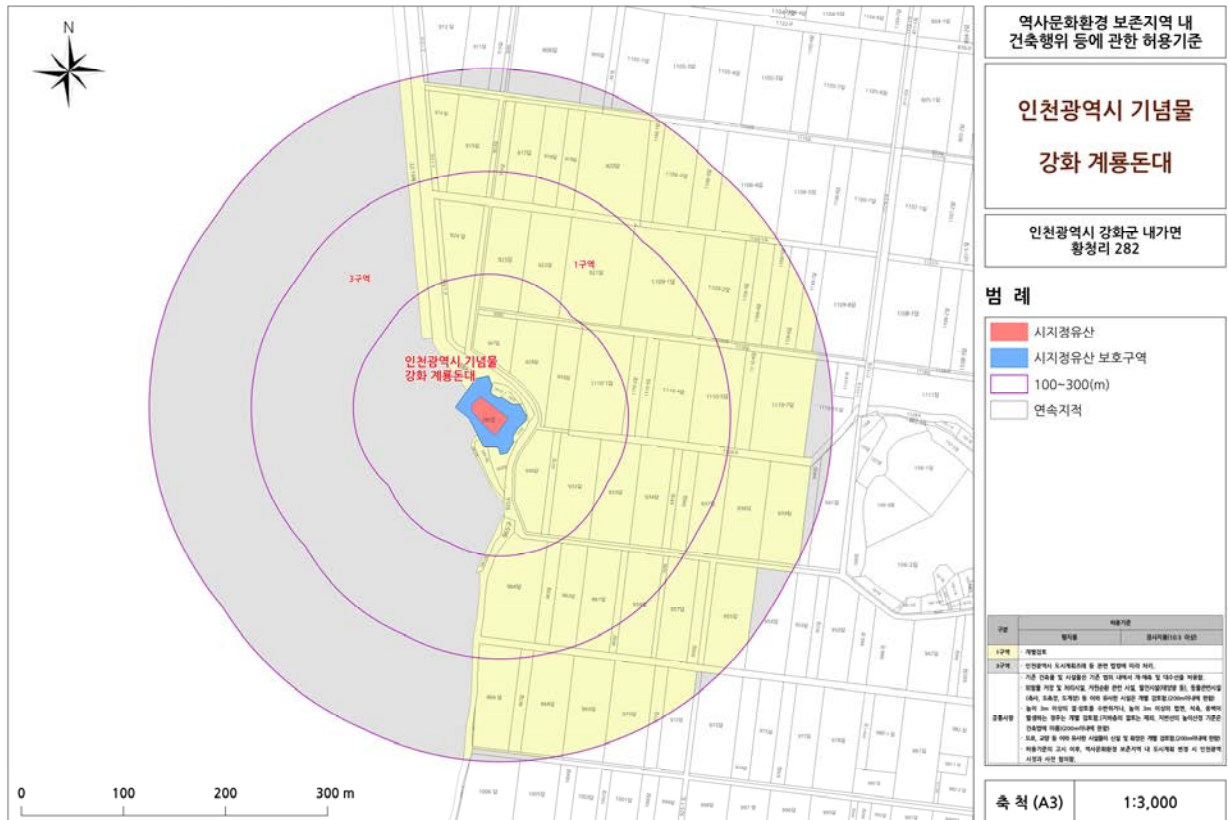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1.07.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심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철도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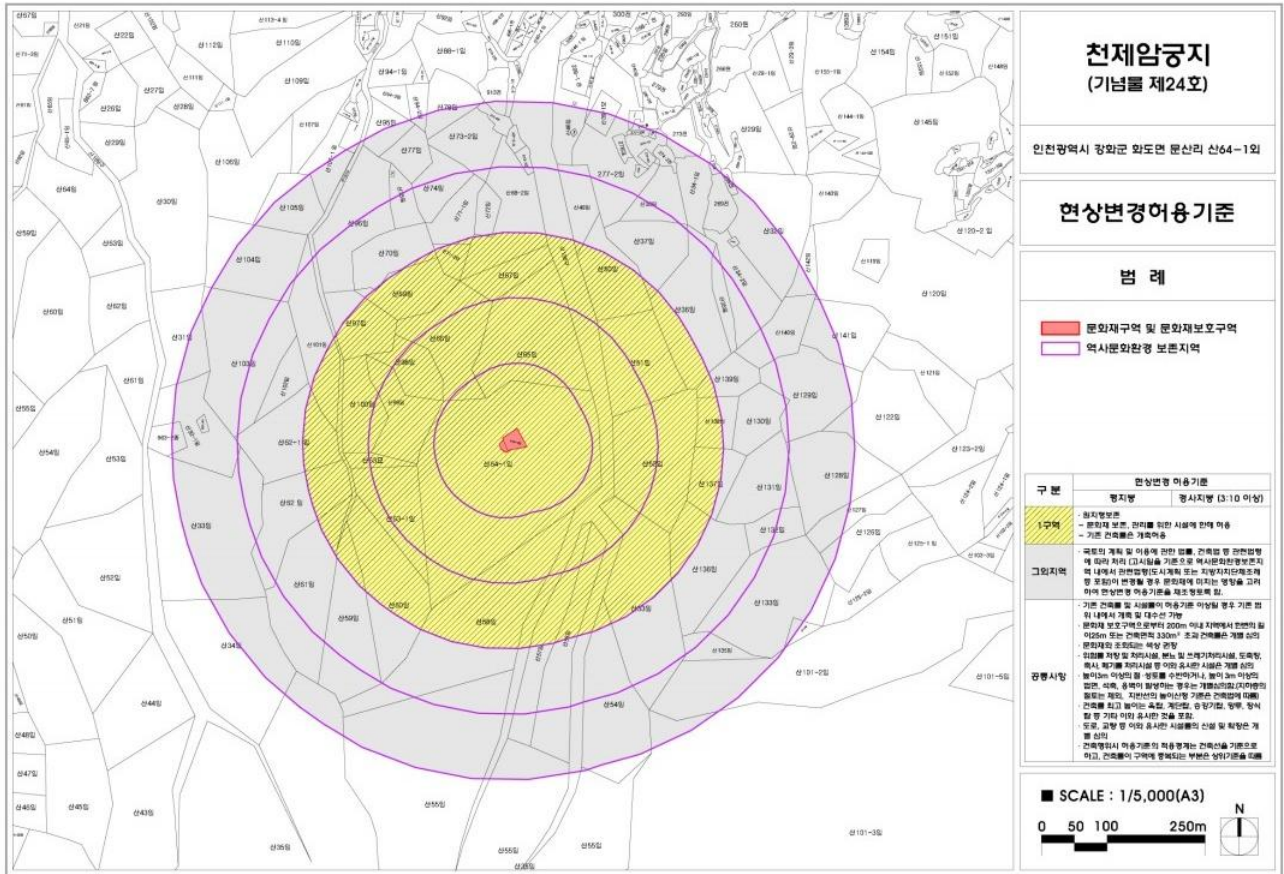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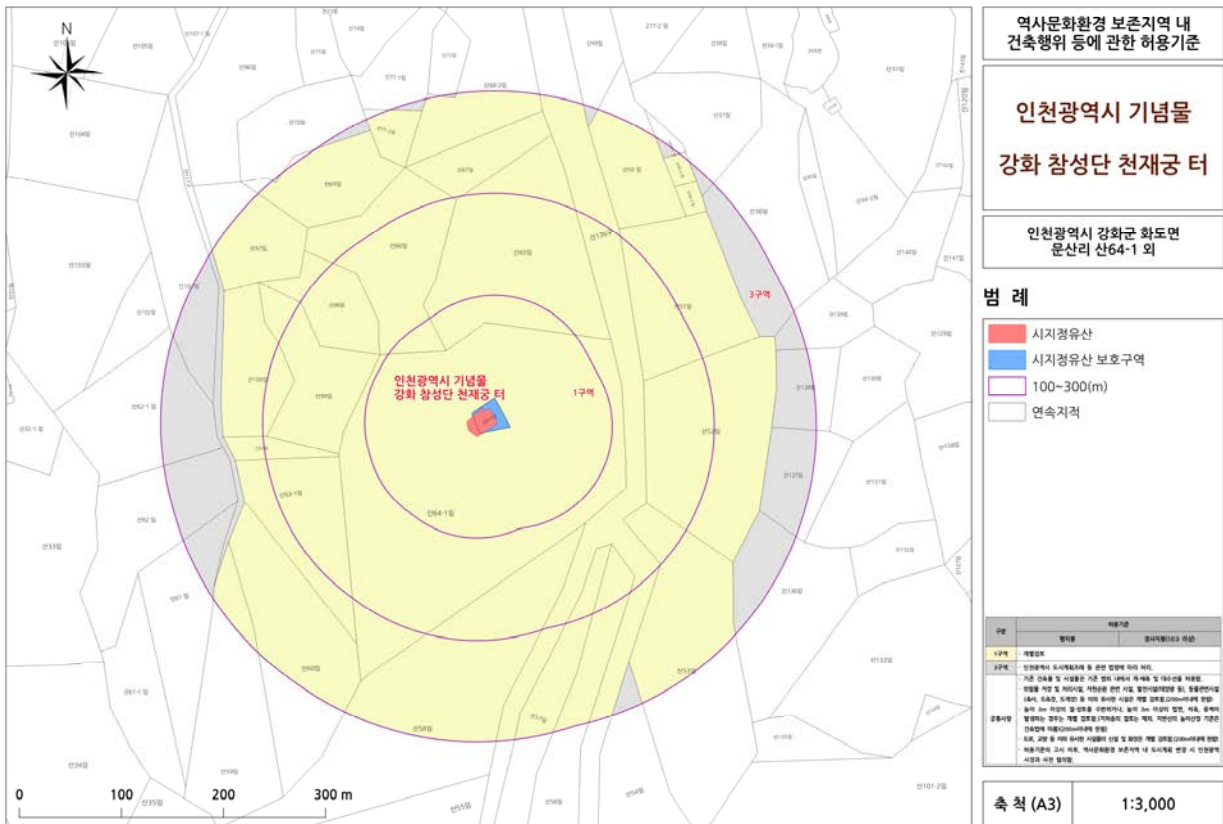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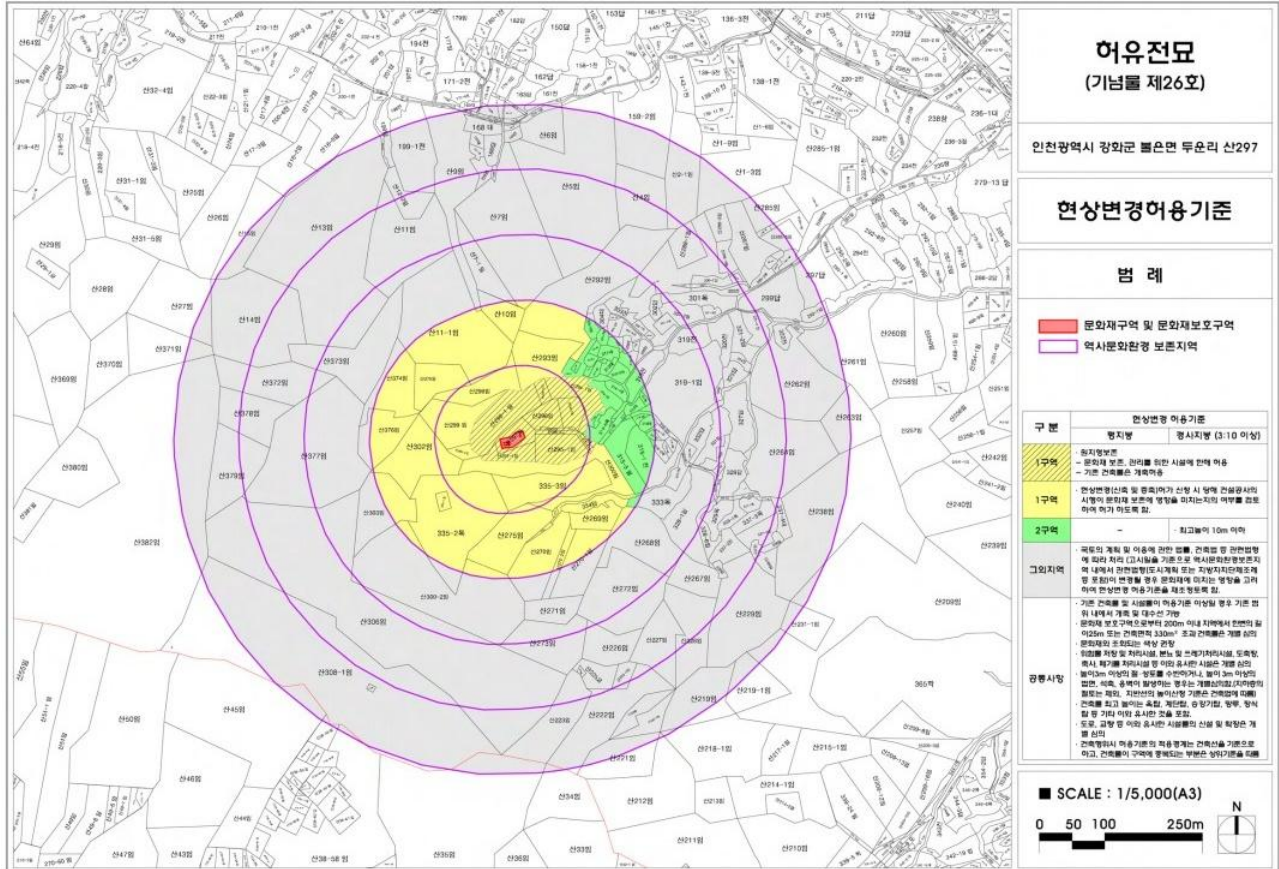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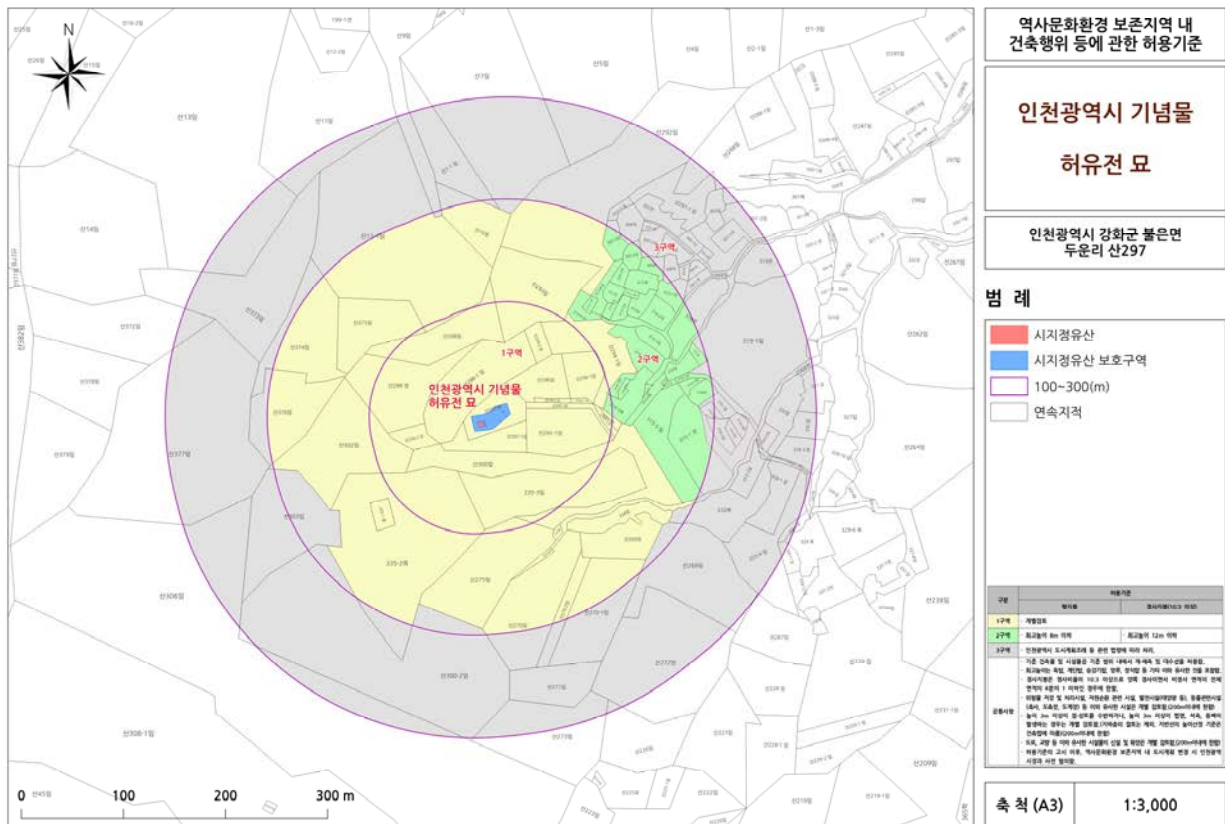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5.09.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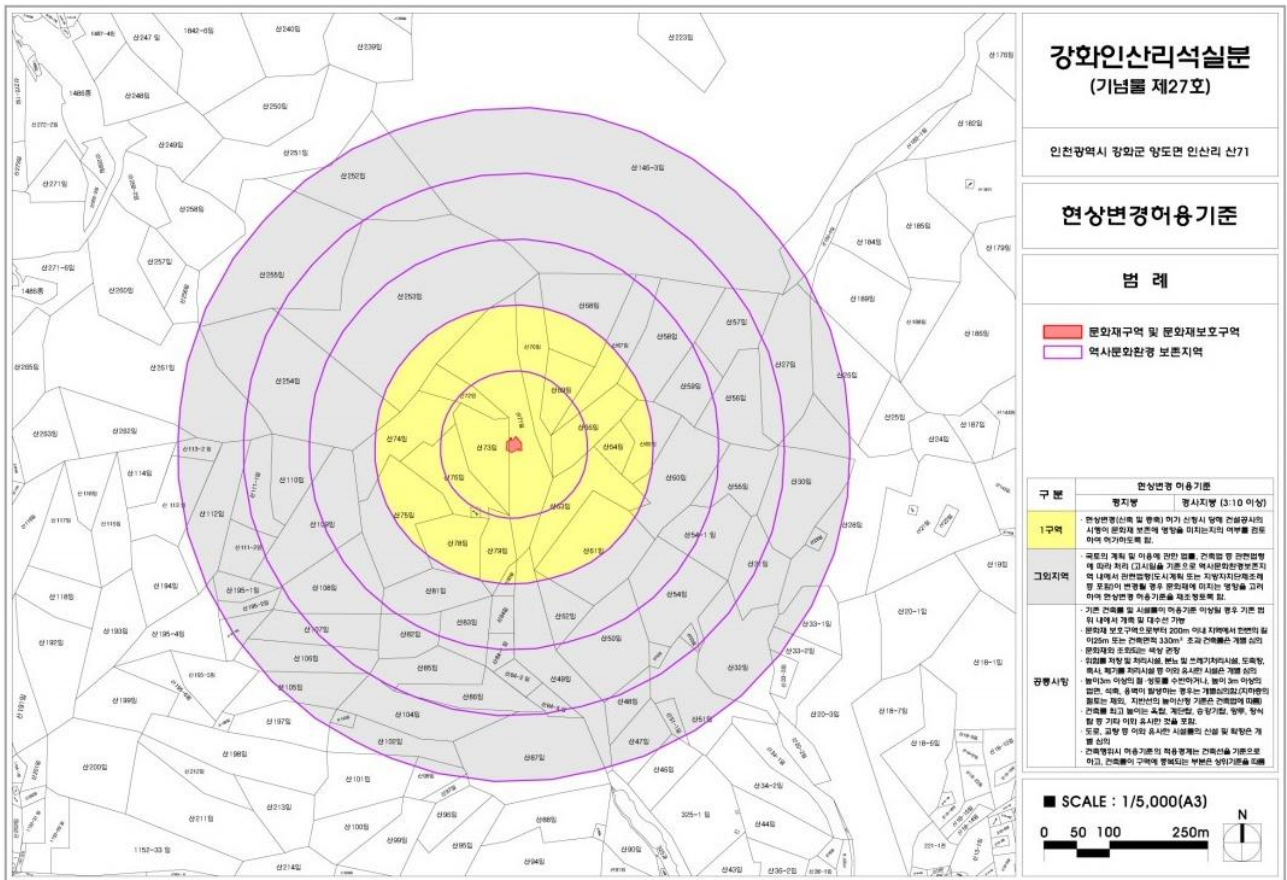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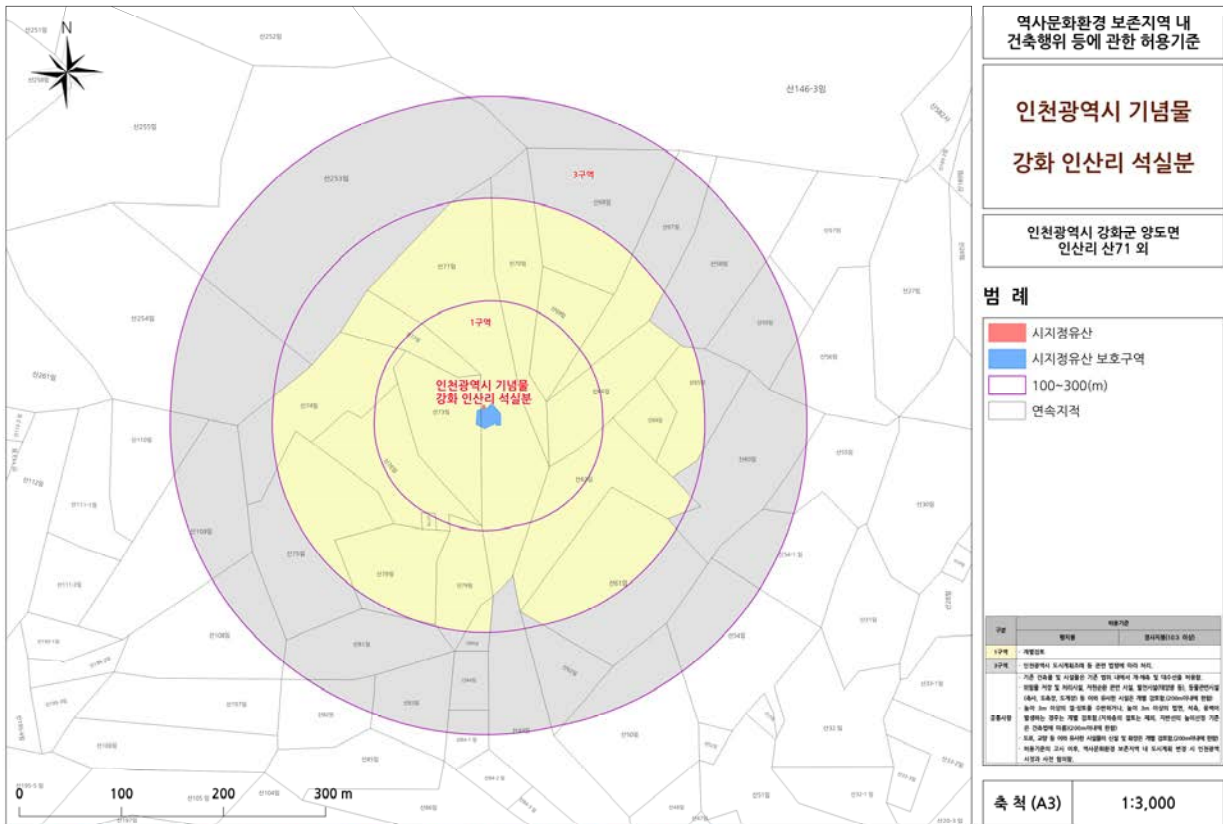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준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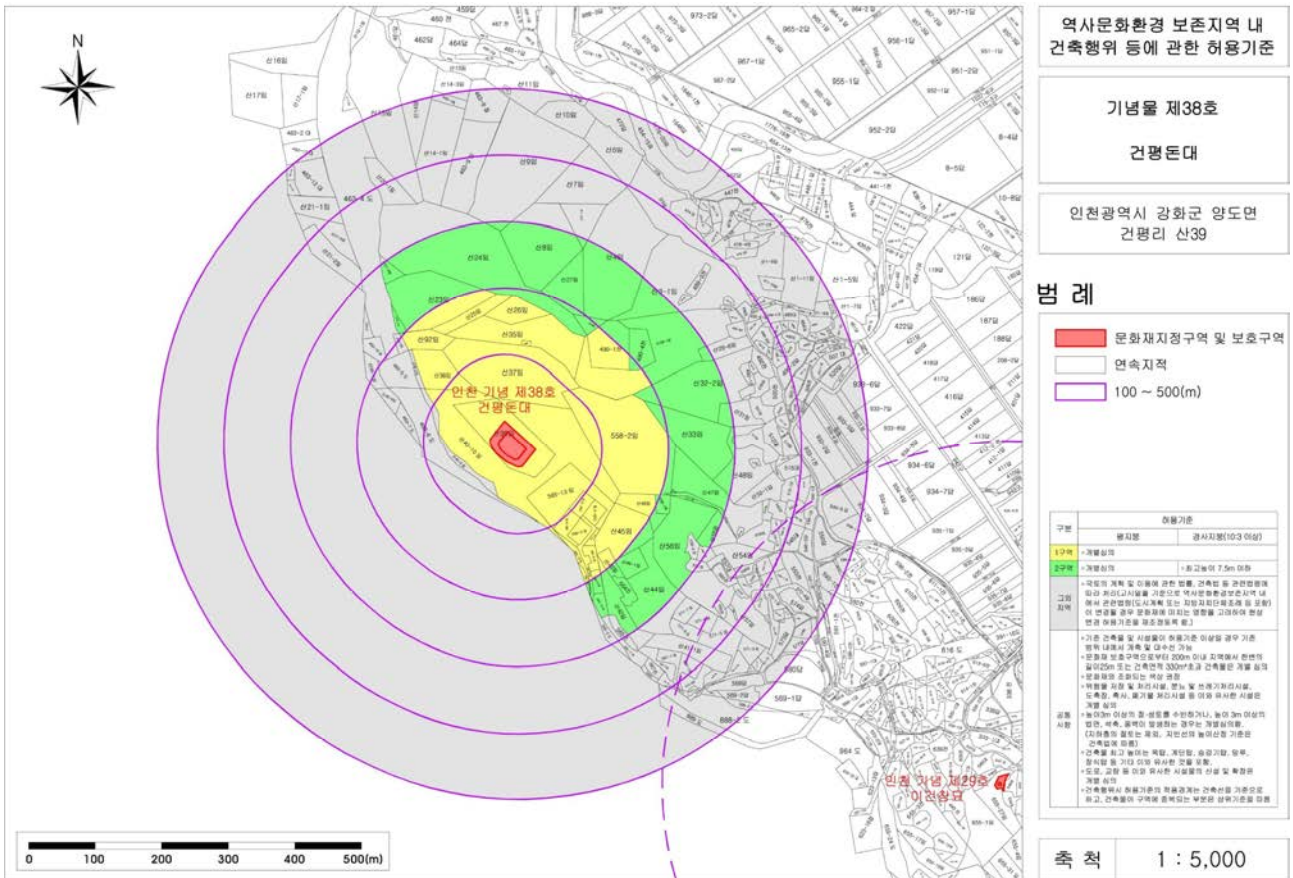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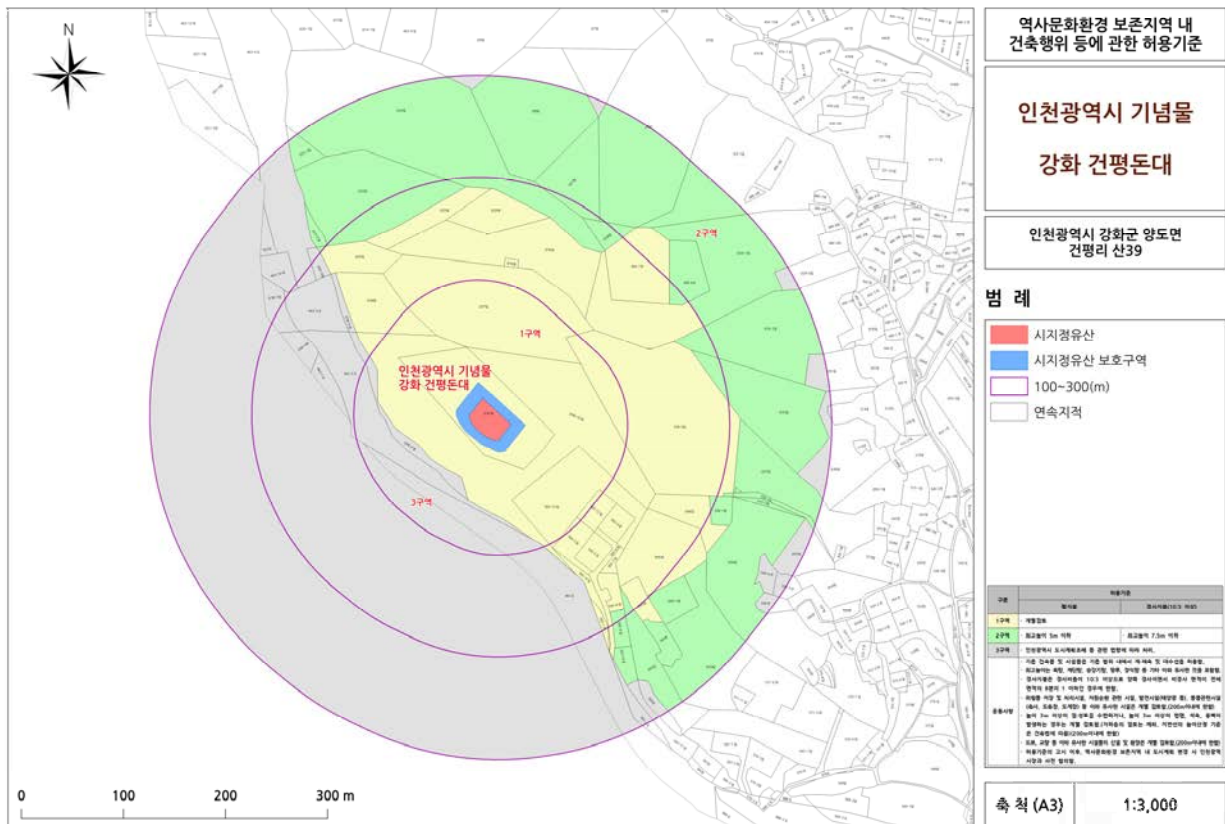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1.07.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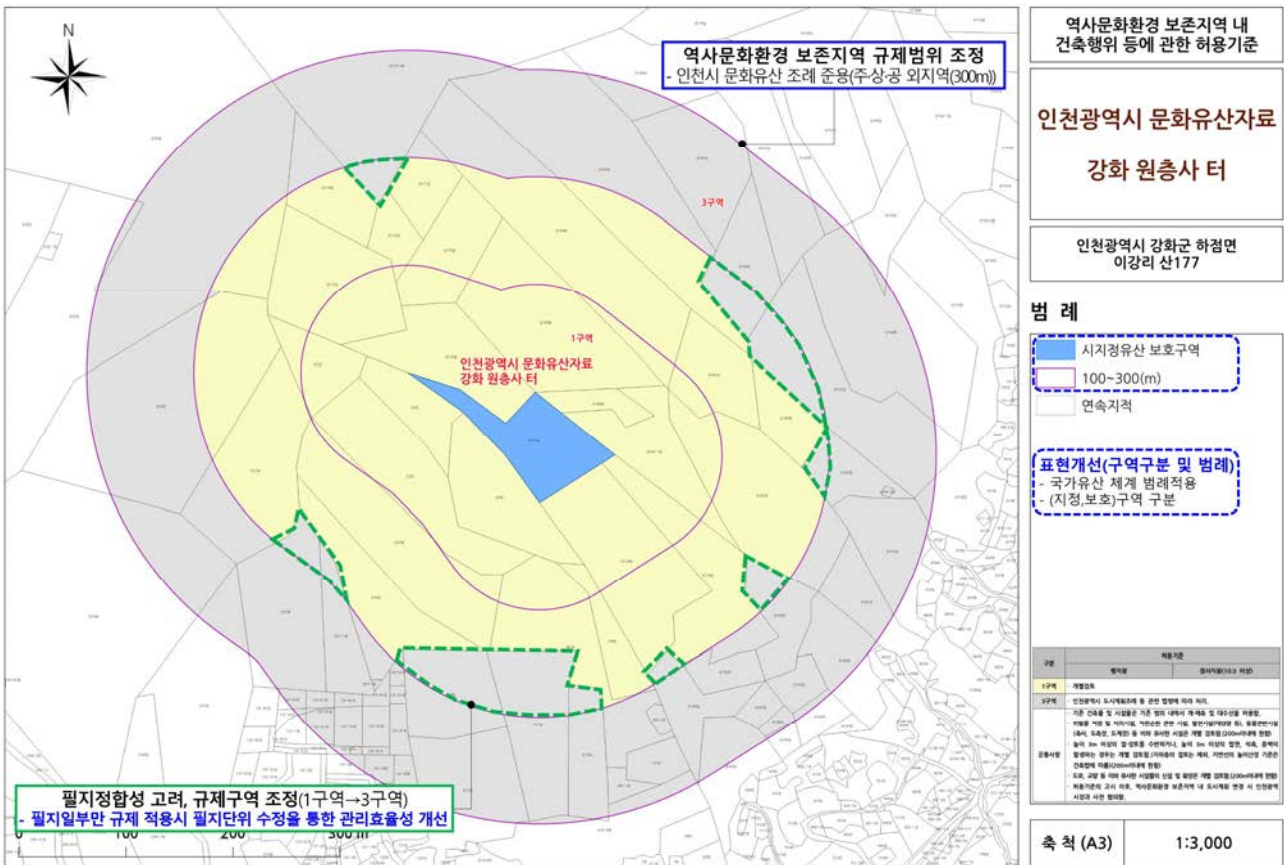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1 강화 원층사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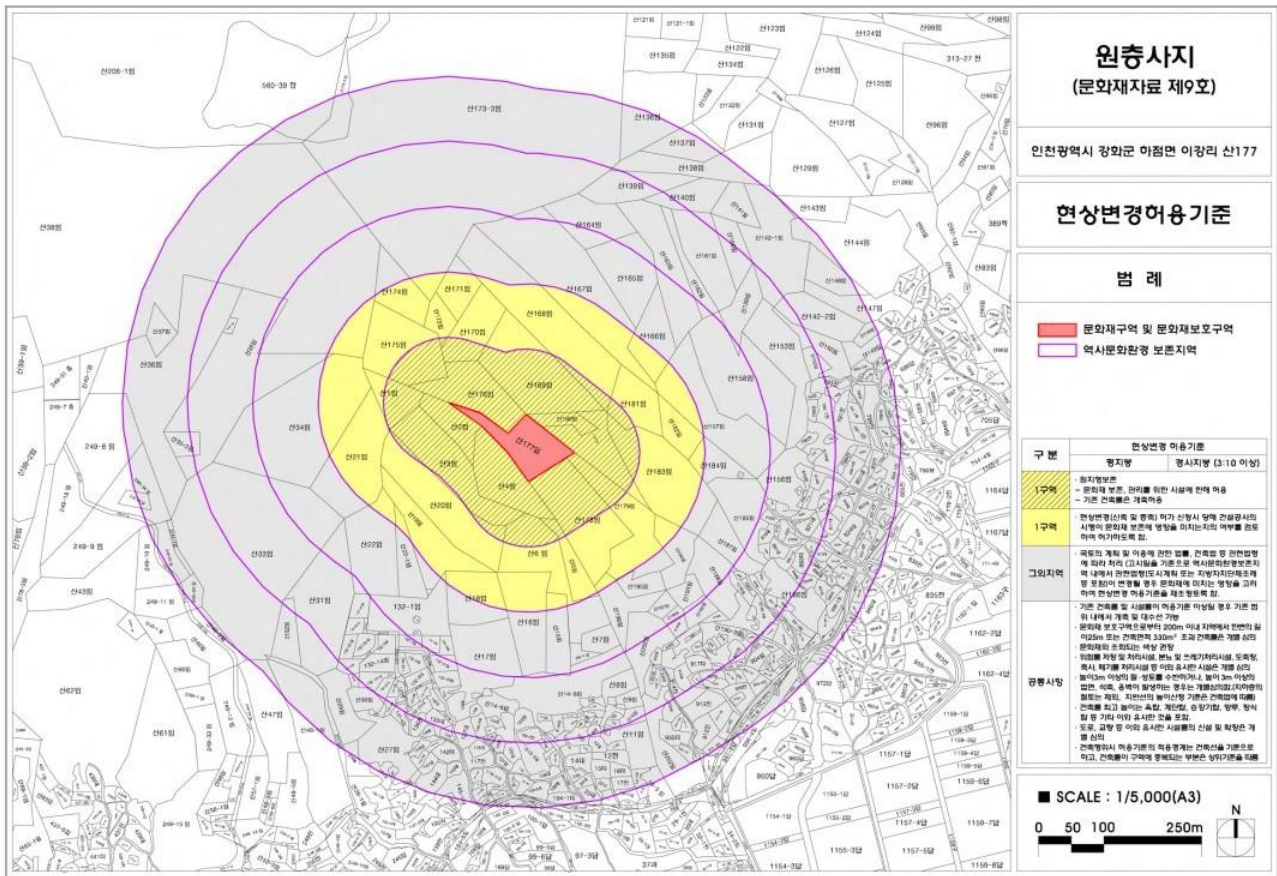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유산구역은 별립산 중턱에 위치하여 훼손의 여지가 적고, 장소성 및 일체성을 고려하여 기존 허용기준이 200m 이내로 작성된 것을 준용하여, 필지단위 수정을 통한 관리효율성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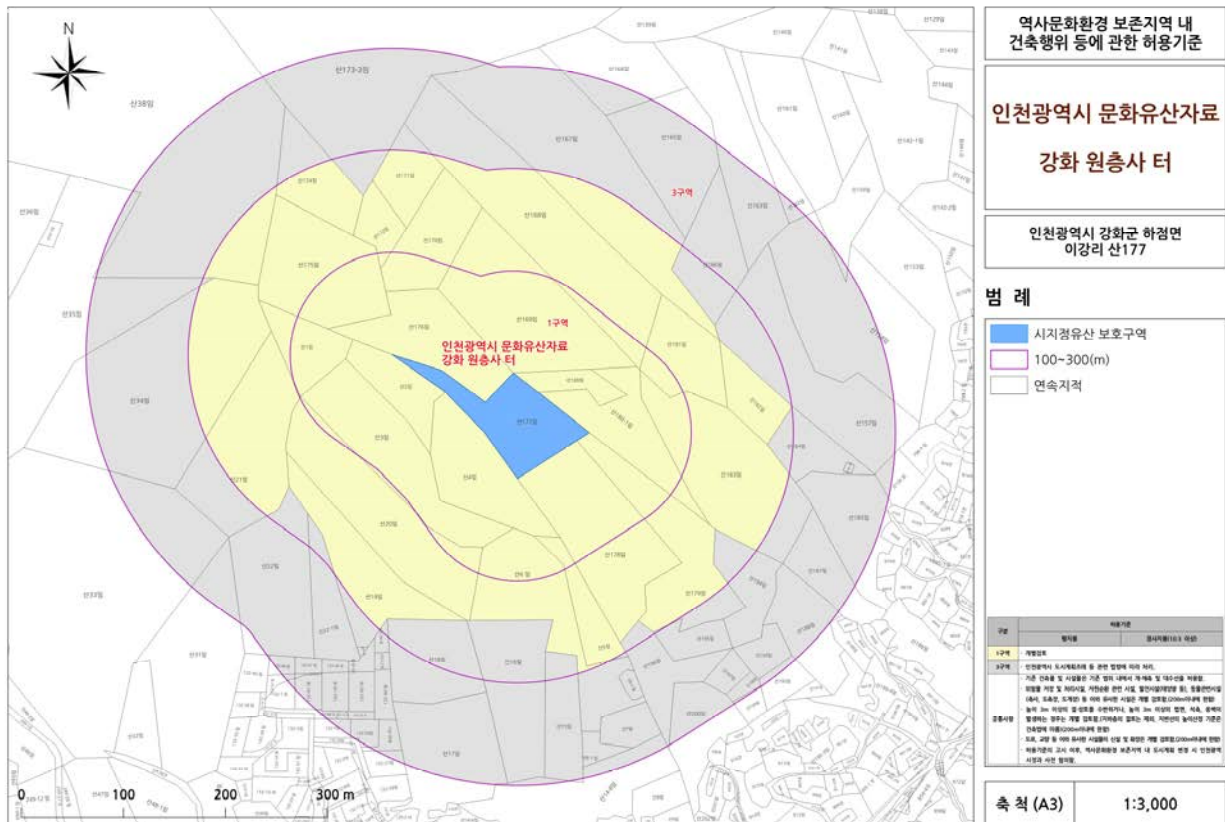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5.09.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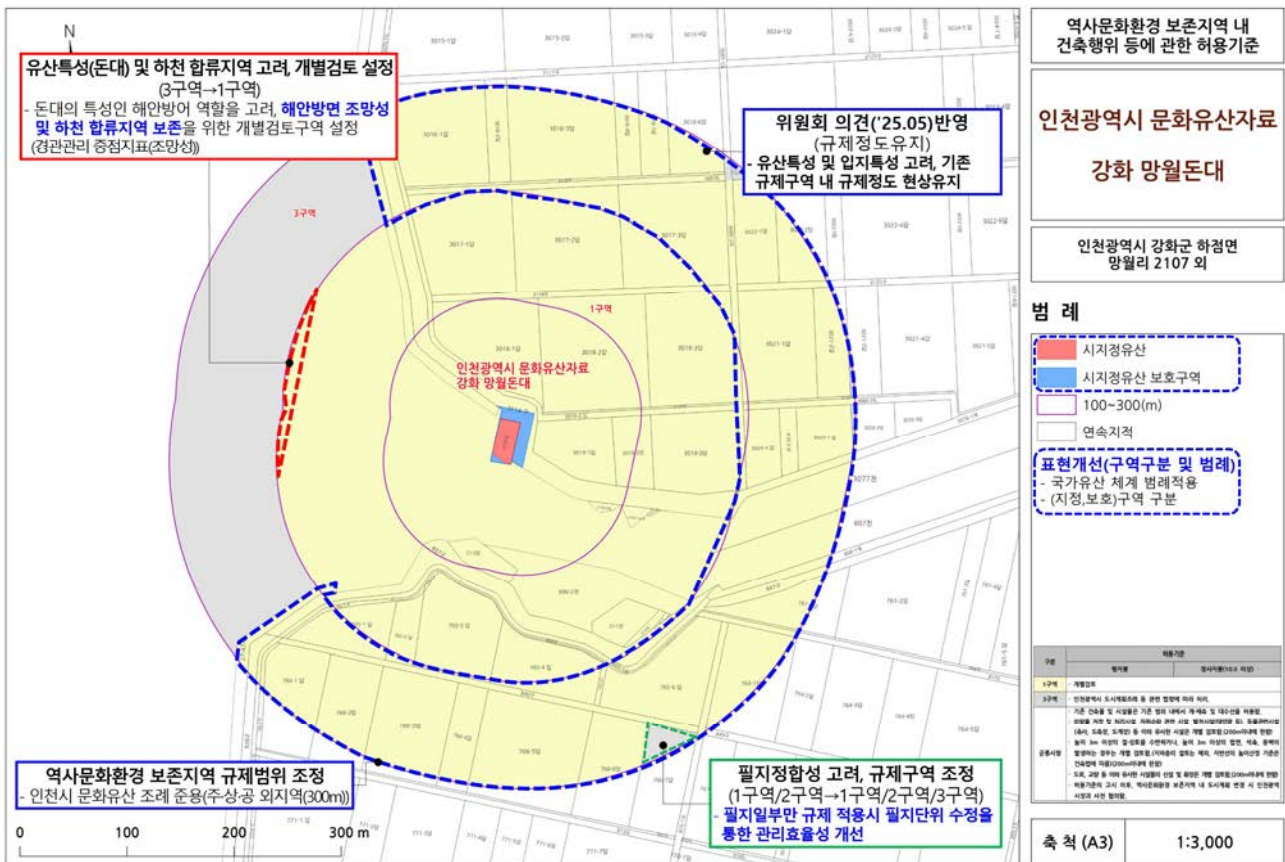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2 강화 망월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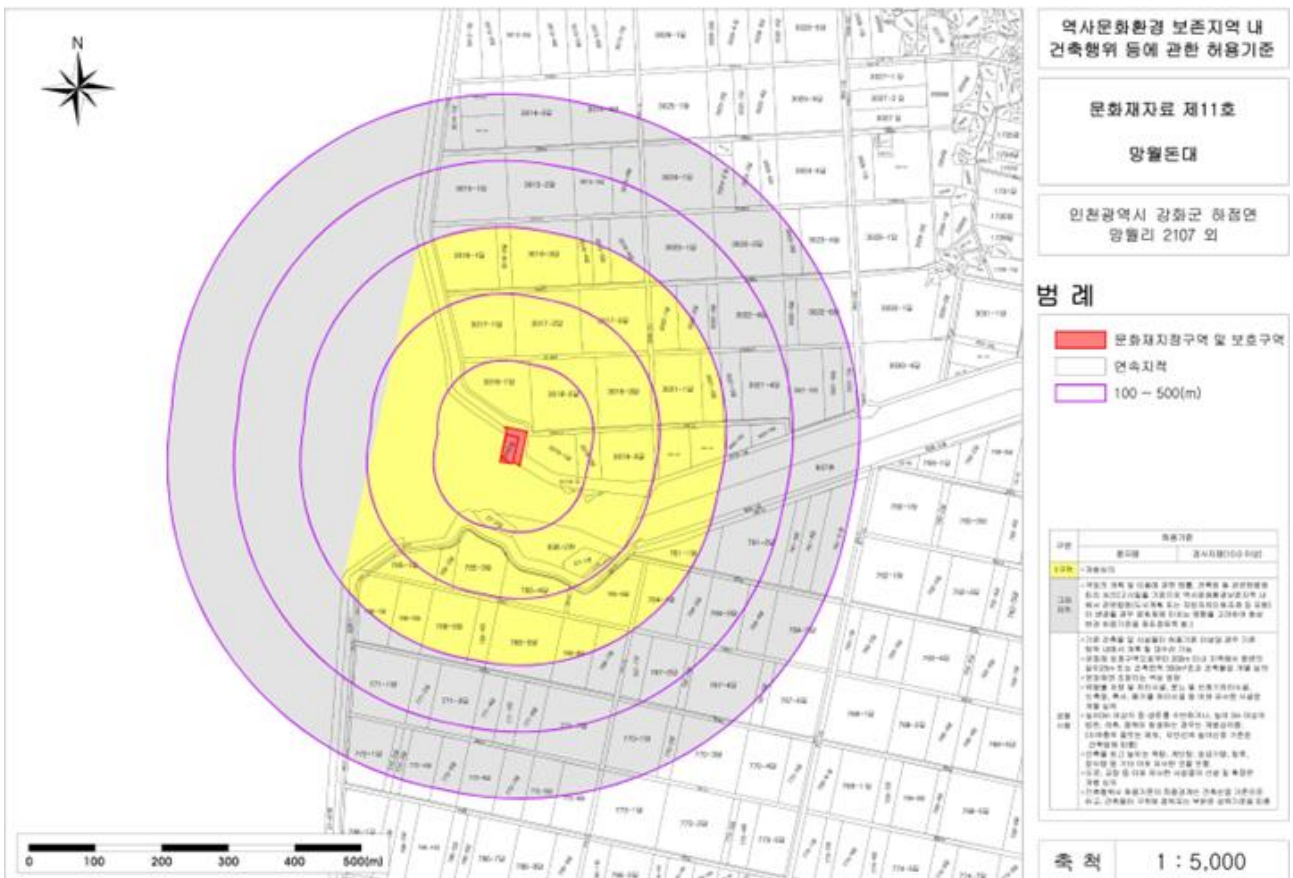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강화군 소재 돈대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조망성 및 주변 경관과의 일체적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어든 규제범위 조정과 더불어 일부 불합리한 필지를 일부 조정을 하여 필지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관리방안은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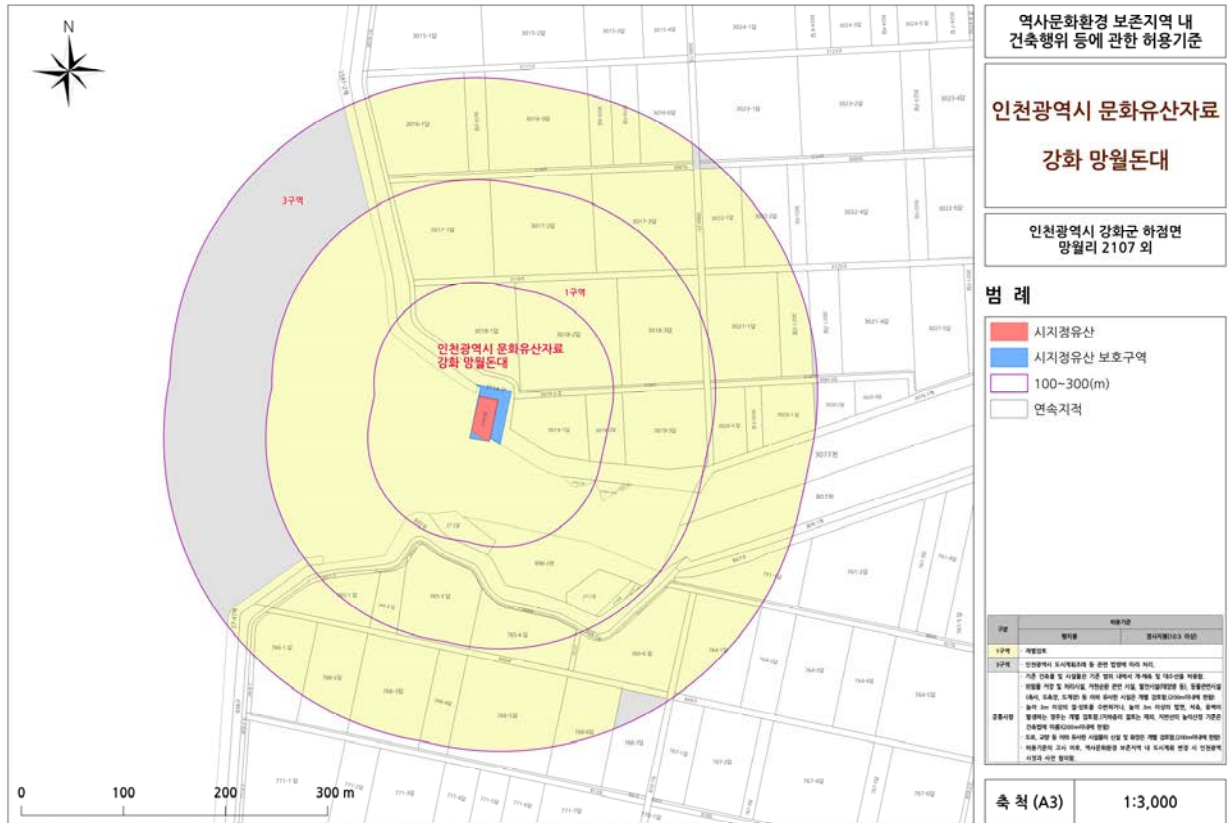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21.07.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 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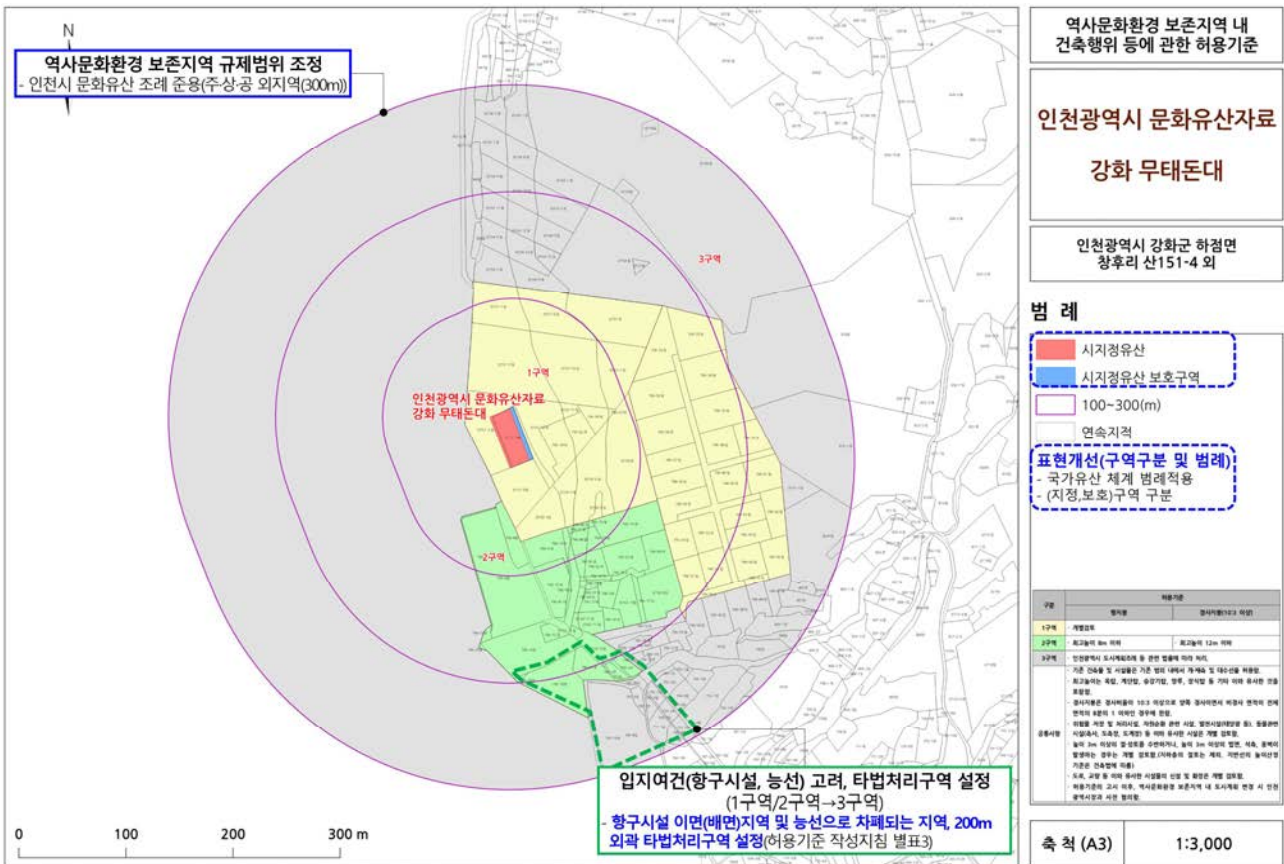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3 강화 무태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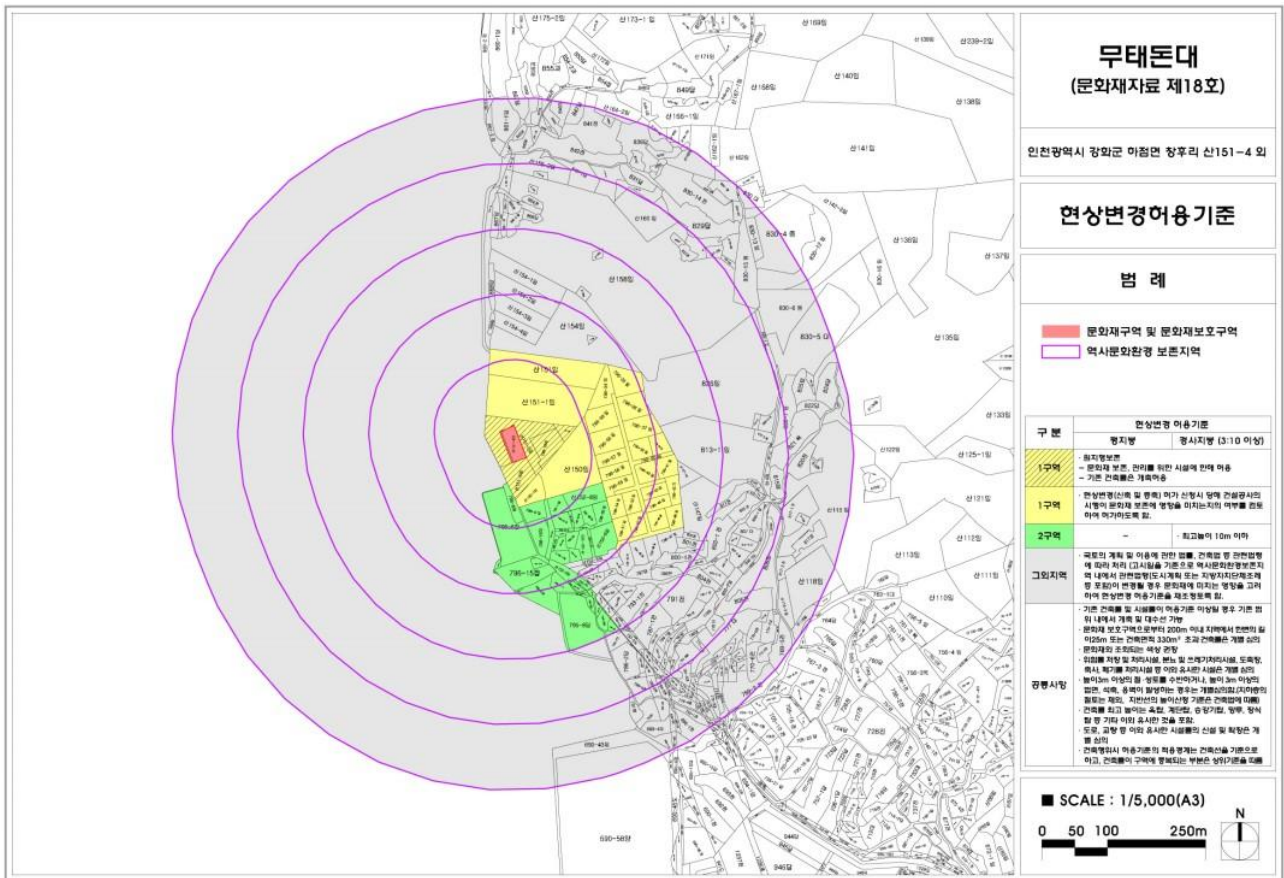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강화군 소재 돈대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조망성 및 주변 경관과의 일체적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어든 규제범위 조정과 더불어 일부 불합리한 필지를 일부 조정을 하여 필지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관리방안은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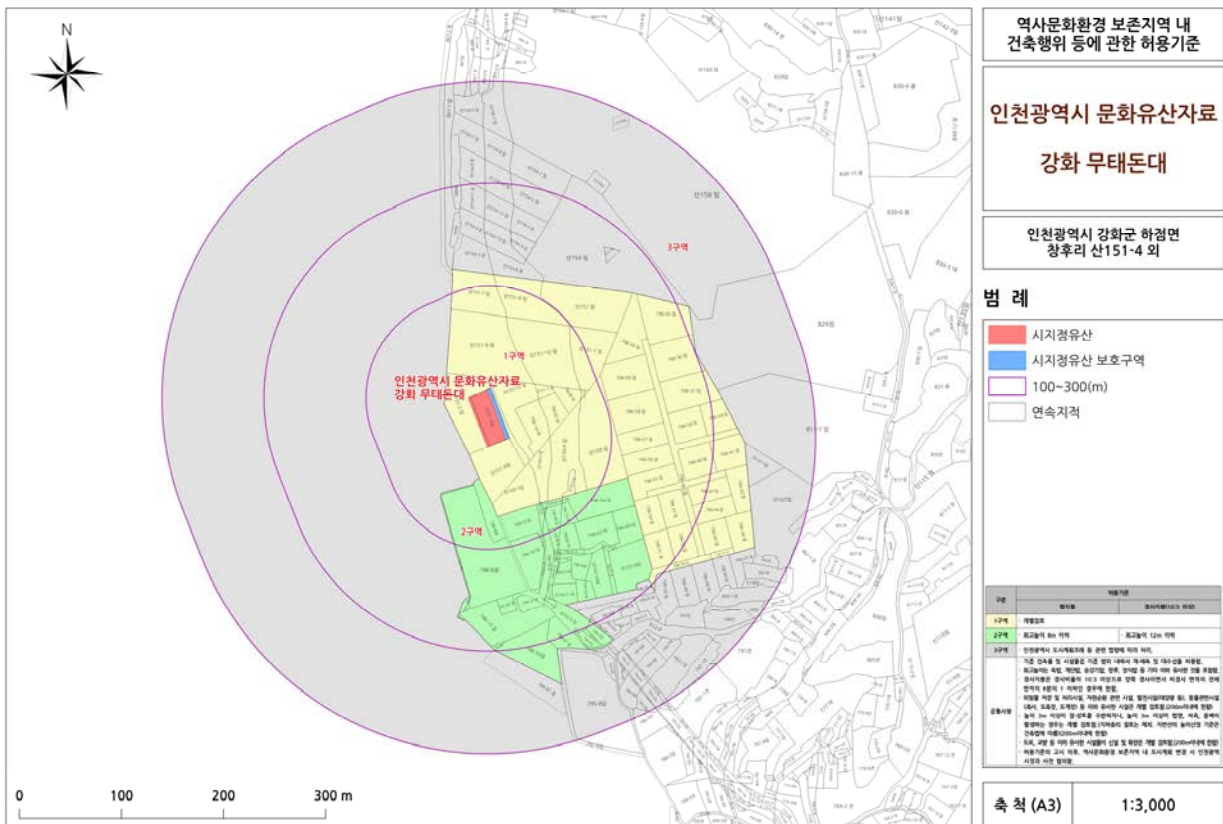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1구역	·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2구역	-	·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3m 이상의 철·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철도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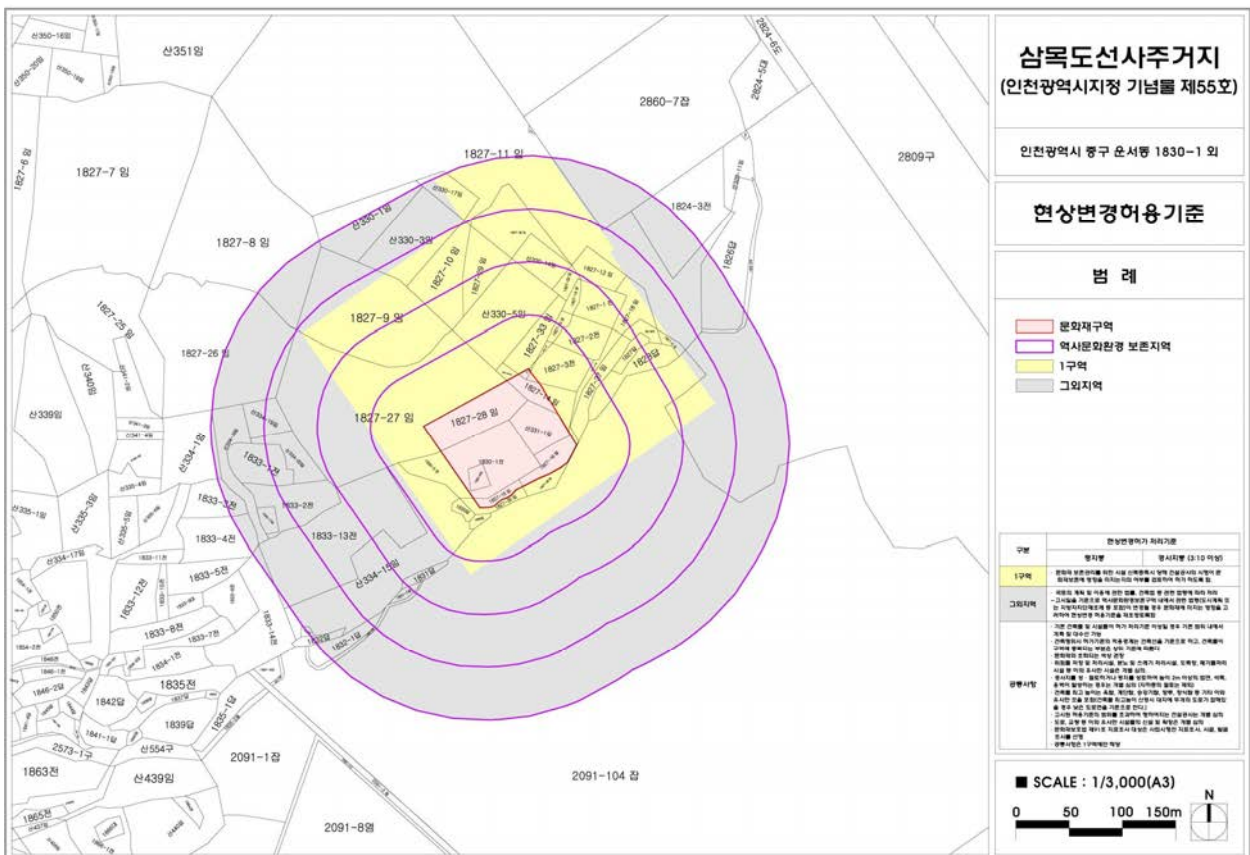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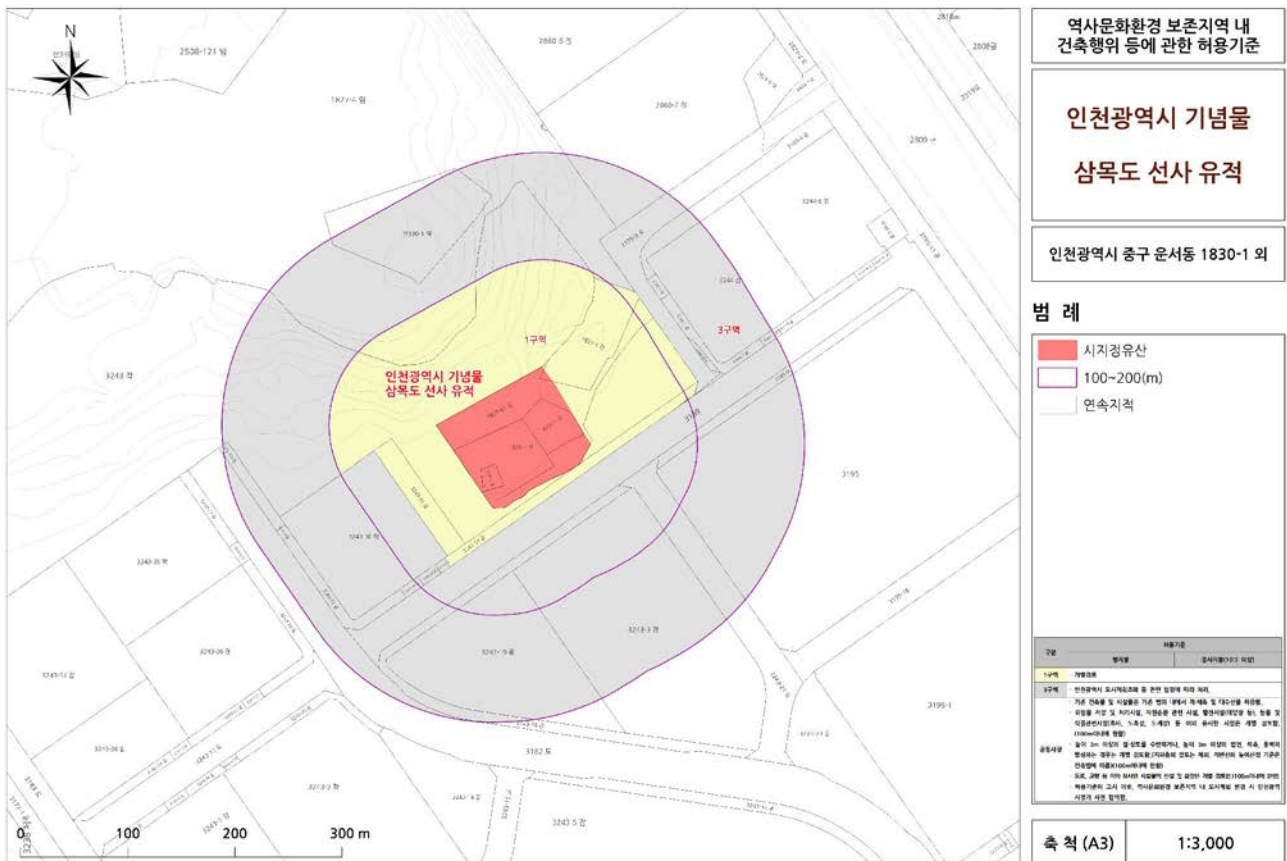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4.01.2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신축·증축 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포함(건폐율축물의 최고 높이 산정시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지표조사 대상은 사업시행전 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진행 공통사항은 1구역에만 해당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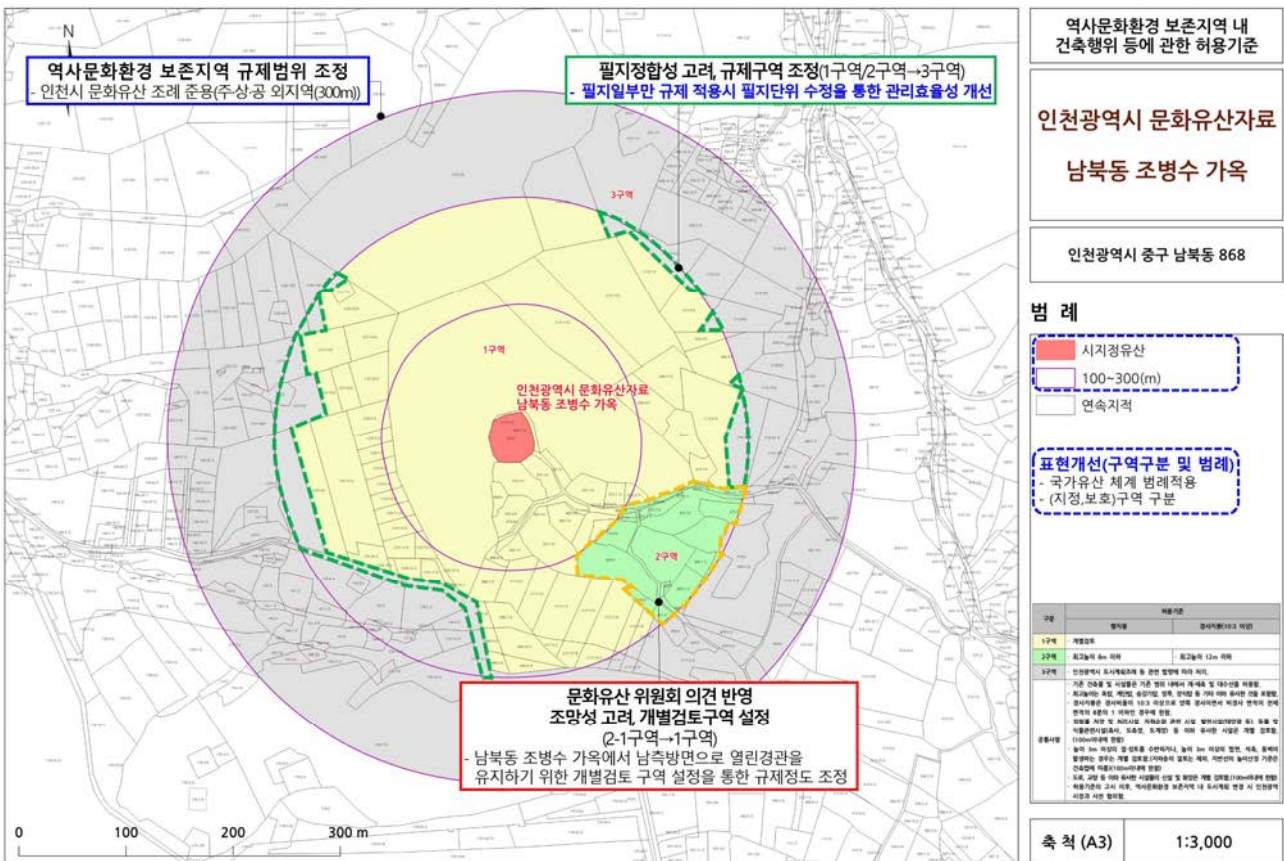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2.2 남북동 조병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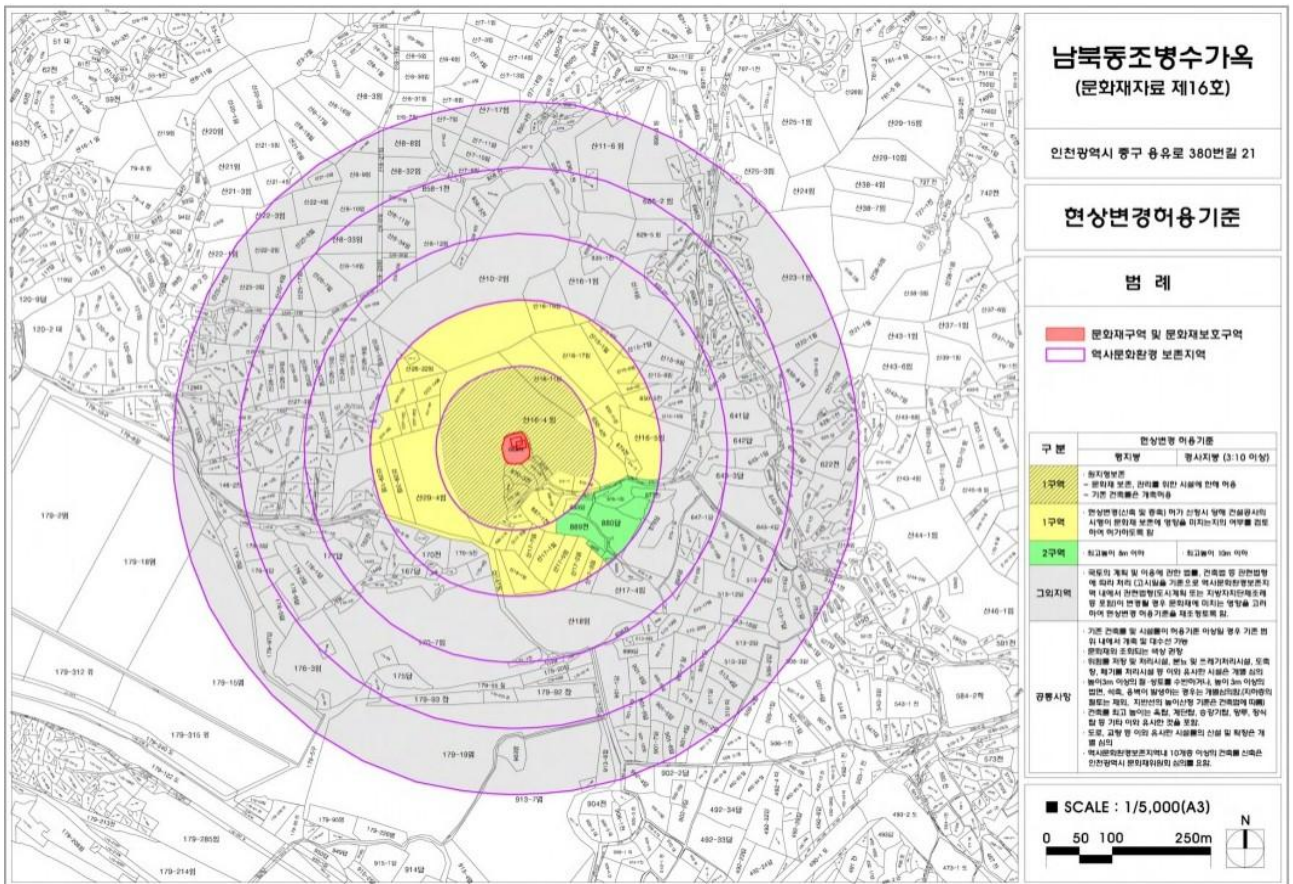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남북동 조병수 가옥은 기존 200m 부근으로 개별검토 구역이 설정되어 있던 유산으로, 비도심에 위치하고, 정면 조망성이 중요한 전통가옥으로 기존 남동측 200m 부근 고도제한구역을 문화유산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검토구역으로 전환, 유산의 조망성을 저해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개별검토구역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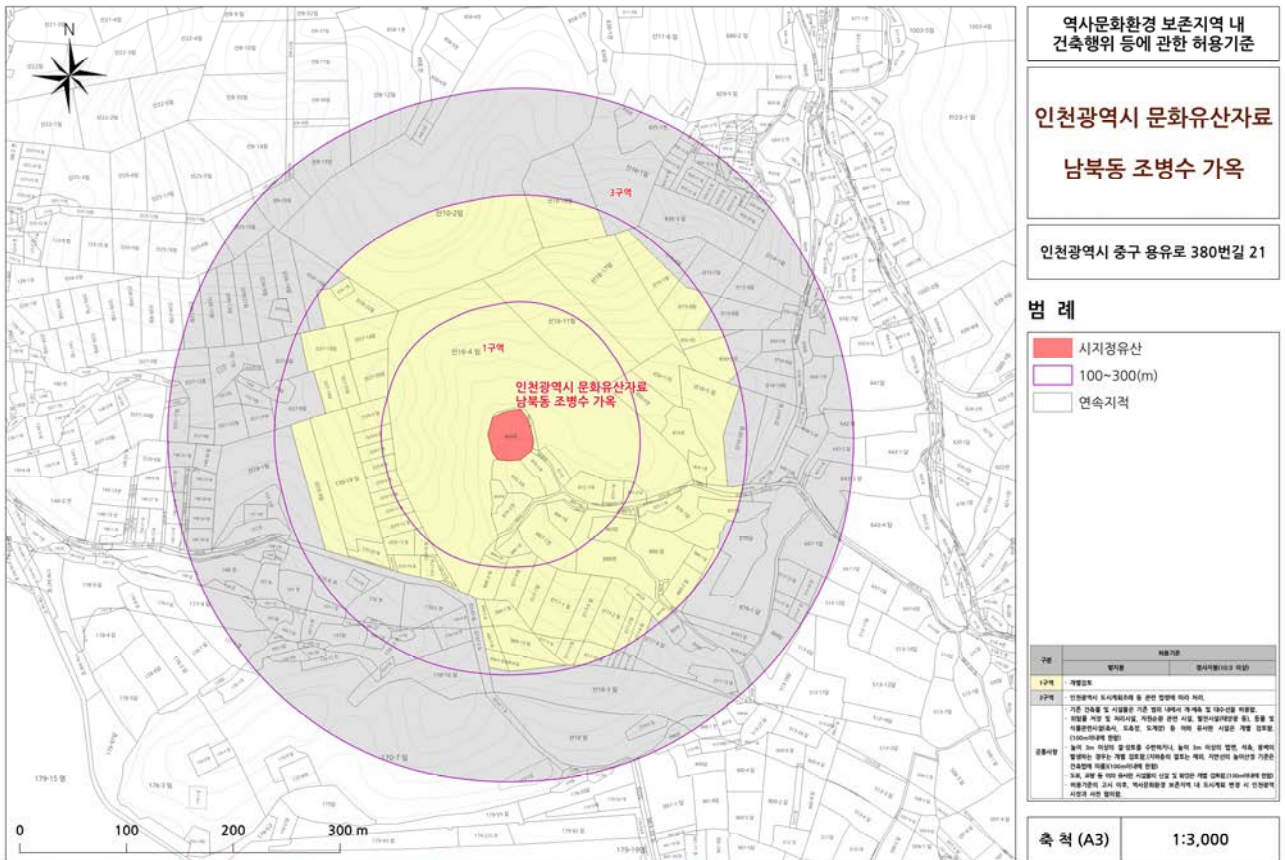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5.09.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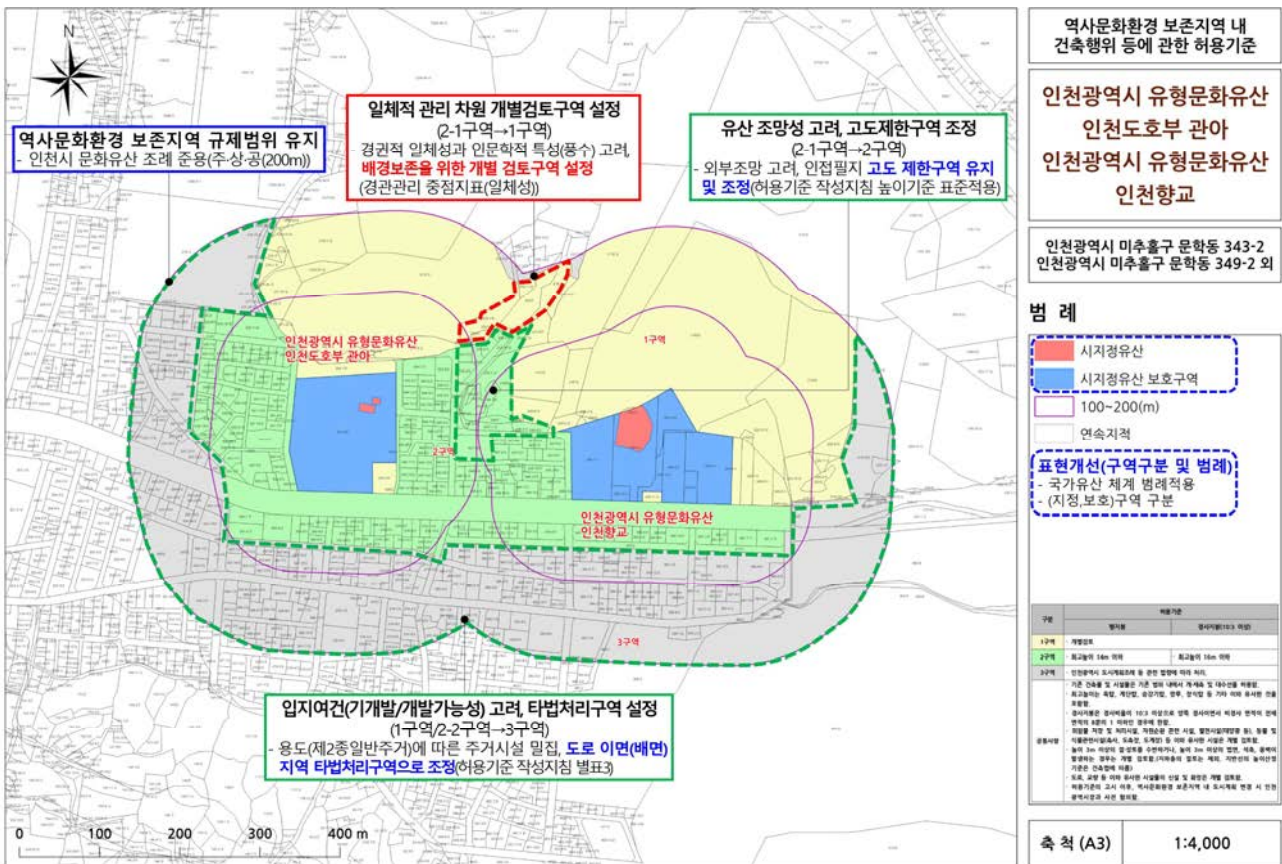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3. 미추홀구

3.1. 인천도호부 관아 외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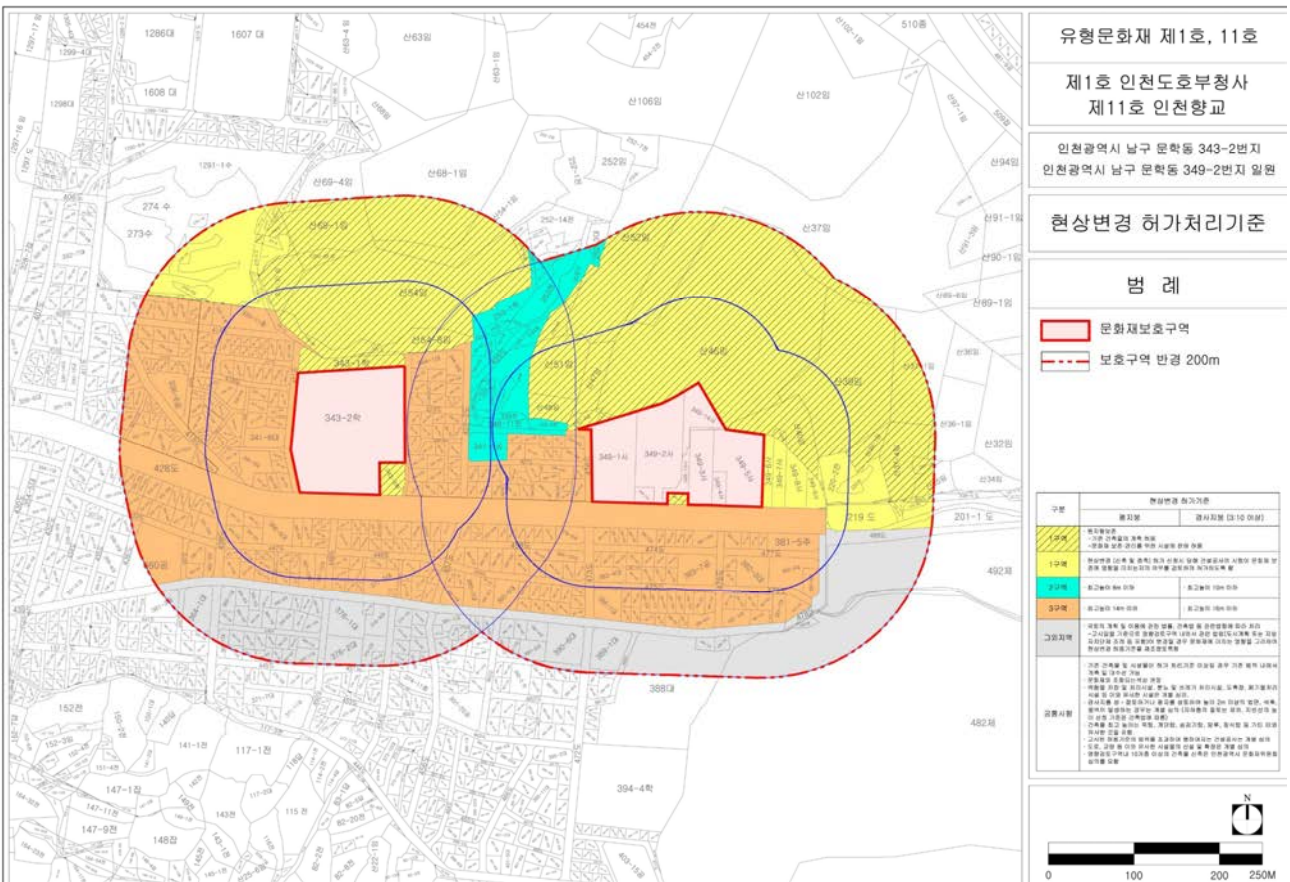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천향교 배후로 위치한 산지방면으로 경관적 일체성을 고려한 개별검토 구역 설정 및 남측으로 조망성을 고려한 고도제한구역 세부사항 유지, 남측과 서측방면 100m 외곽으로 기개발 정도 및 개발가능성이 높은 유산으로 인접한 도로를 기준을 필지단위 정리하여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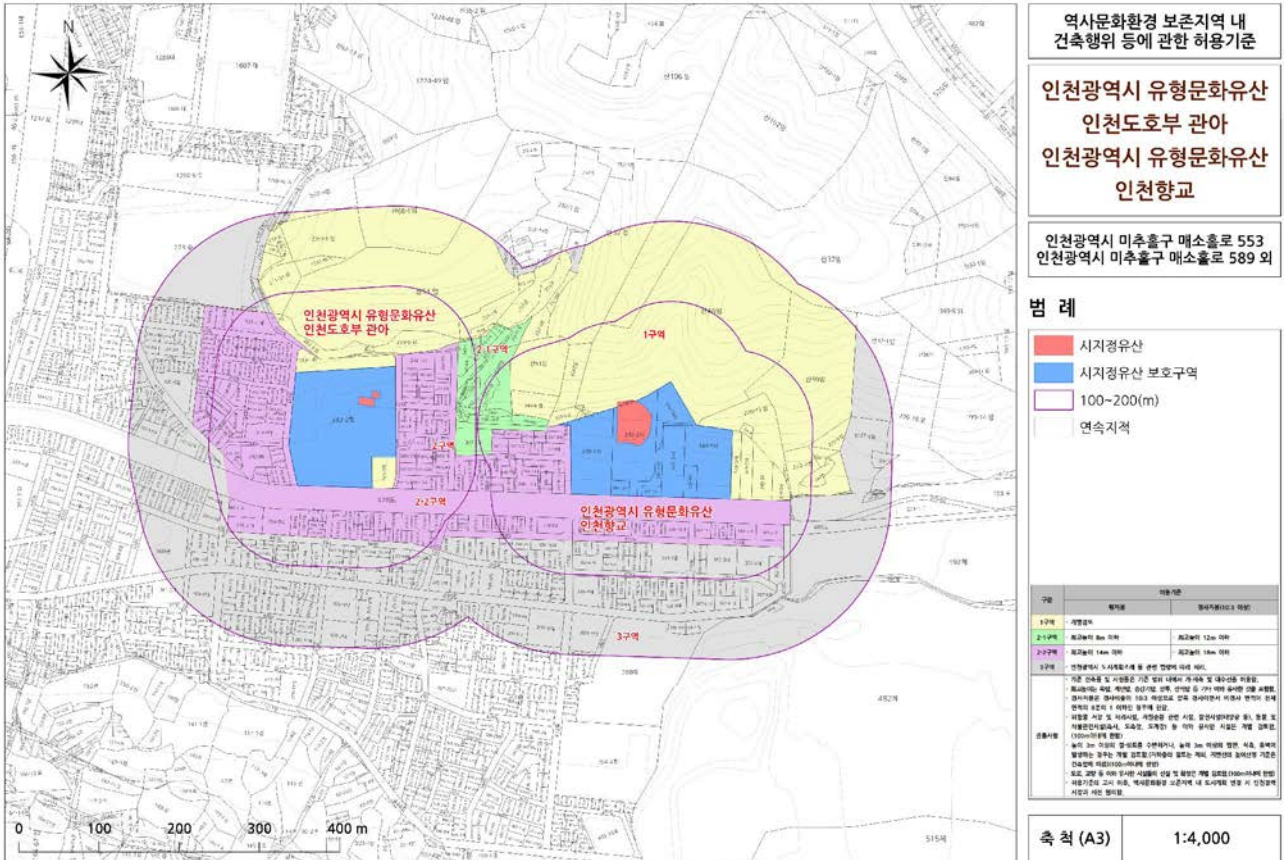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4.01.2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그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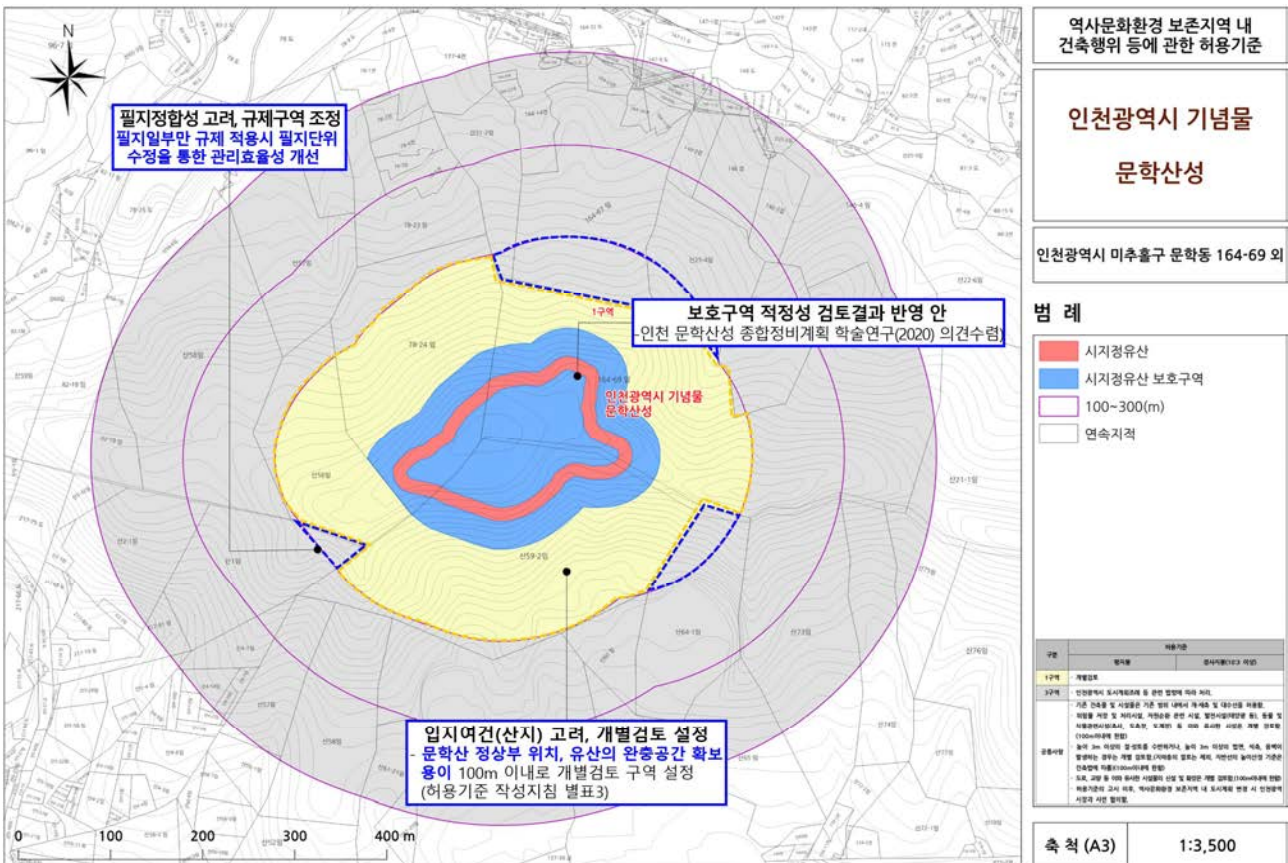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3.2 문학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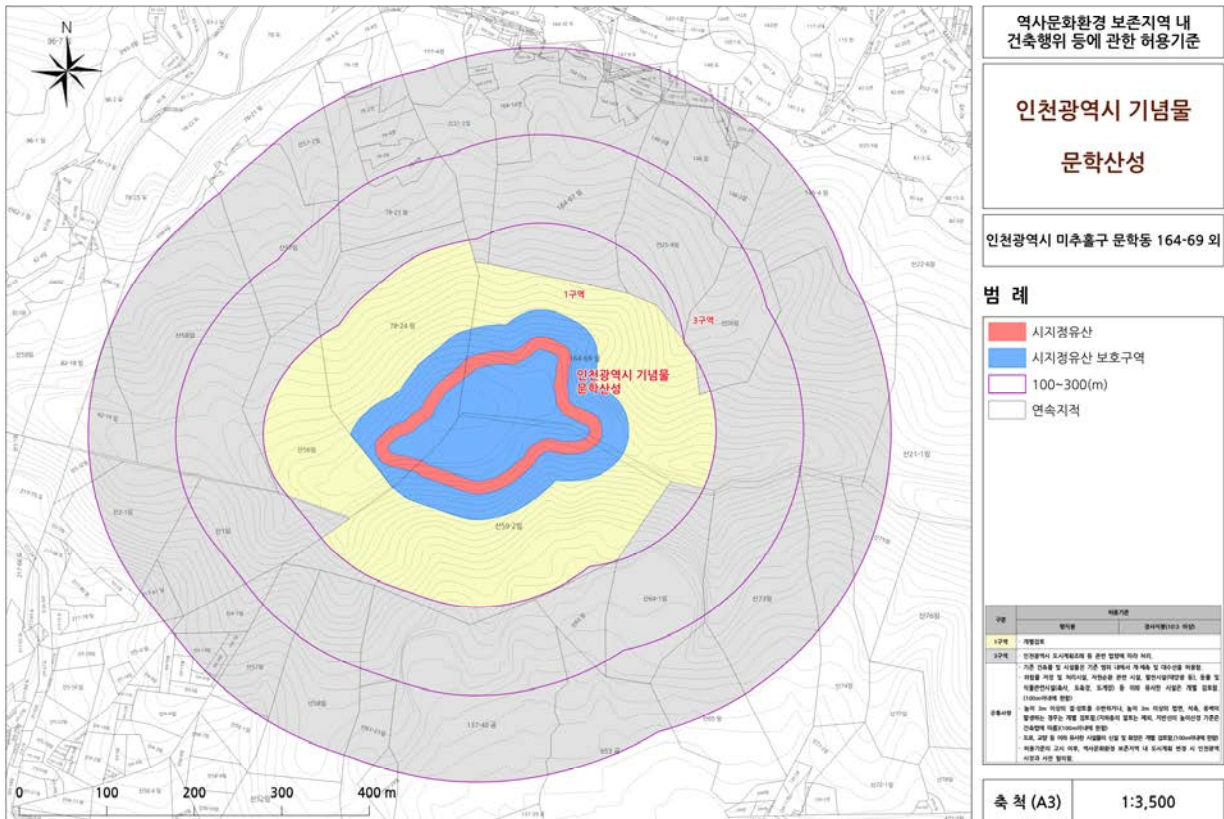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 결과를 반영한 보호구역 조정안 및 문학산 정상부에 위치한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위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타법령에 의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역으로, 보호구역의 100m 부근까지 개별검토구역 설정하여 완충공간을 설정하고 이외 타법처리구역으로 조정함.



■ 허용기준(신규고시, 2025.11.00.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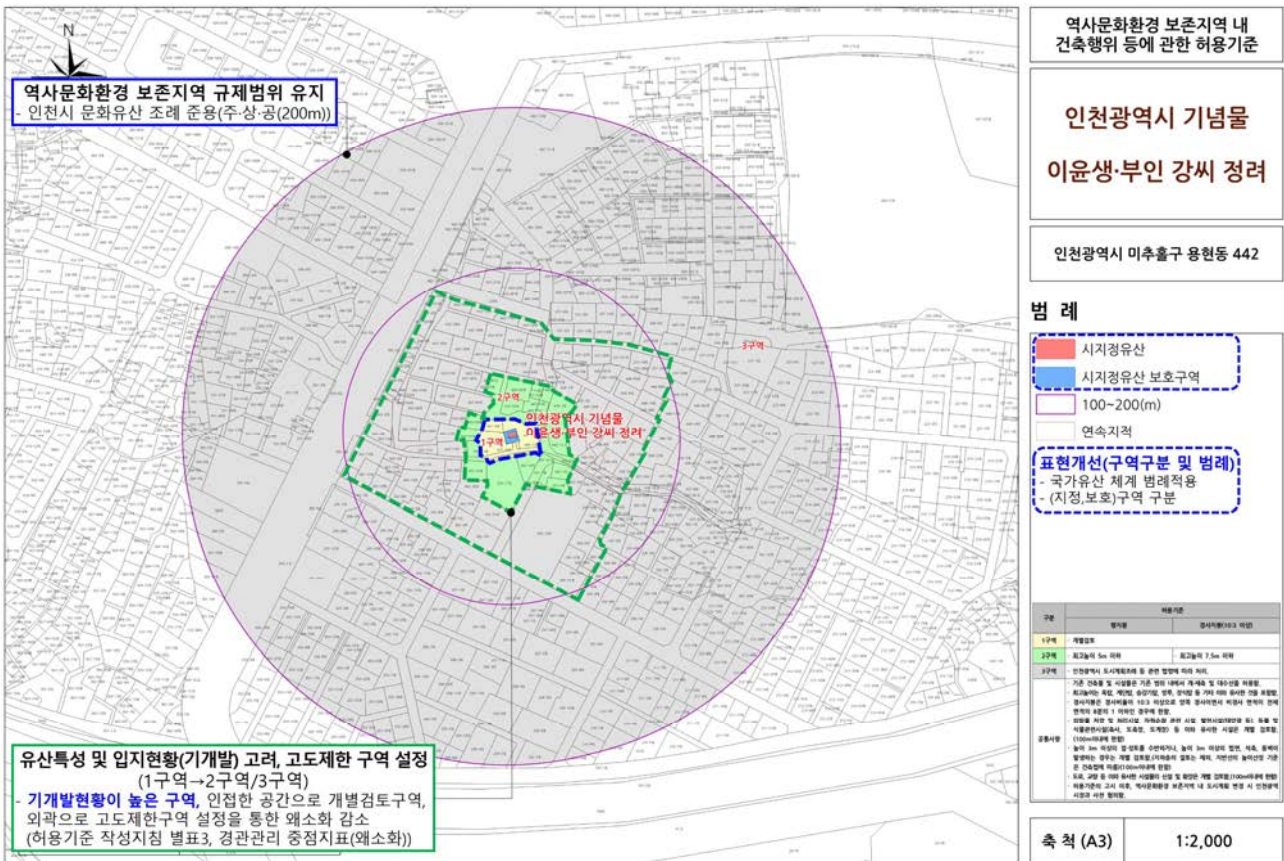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3.3 이운생·부인 강씨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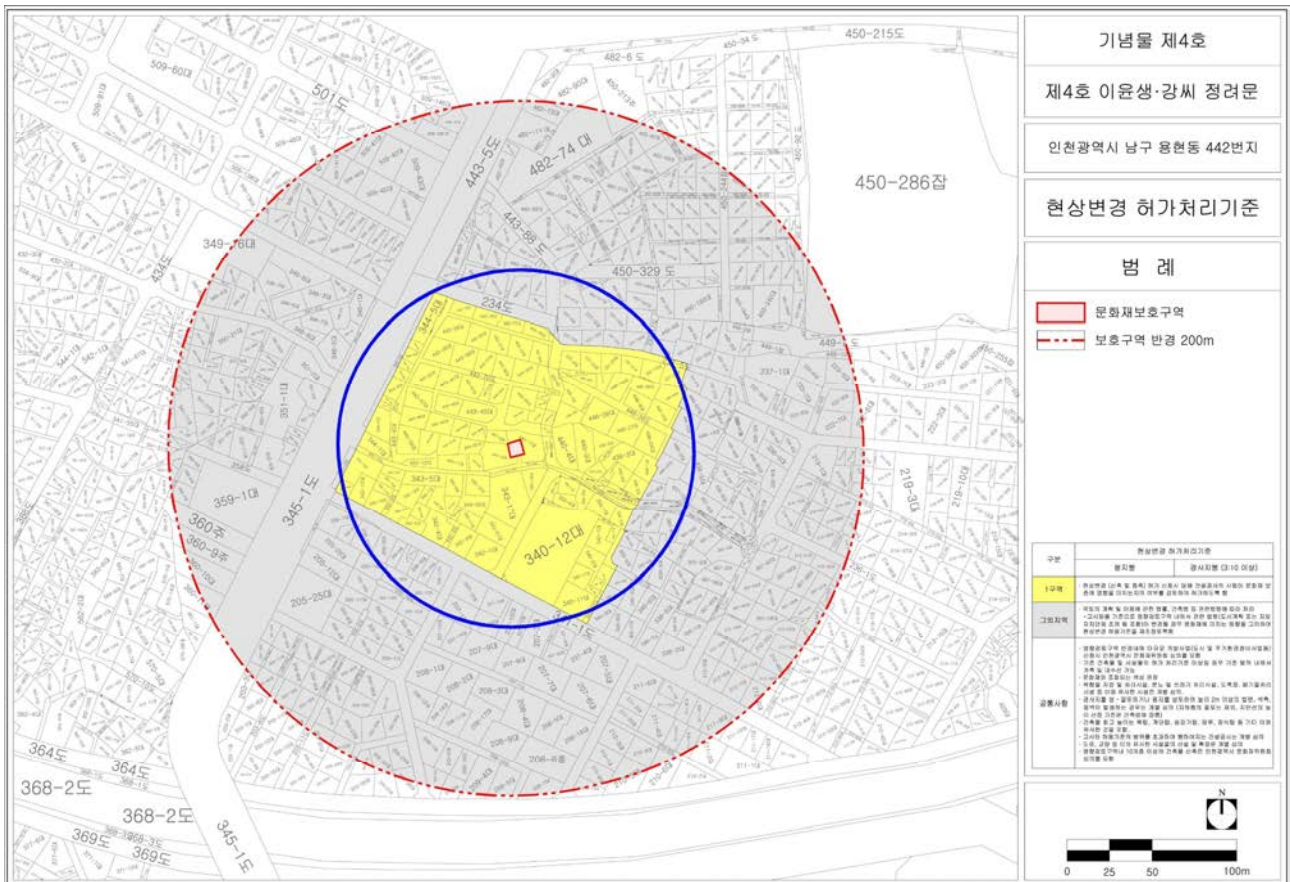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유산구역 주변으로 기개발정도가 높은 구역으로 최소한의 왜소화 및 장소성을 보호를 고려하여 인접한 필지를 중심으로 개별검토구역을 설정하고, 내외부 조망성을 고려하여 50m 이내로 고도제한구역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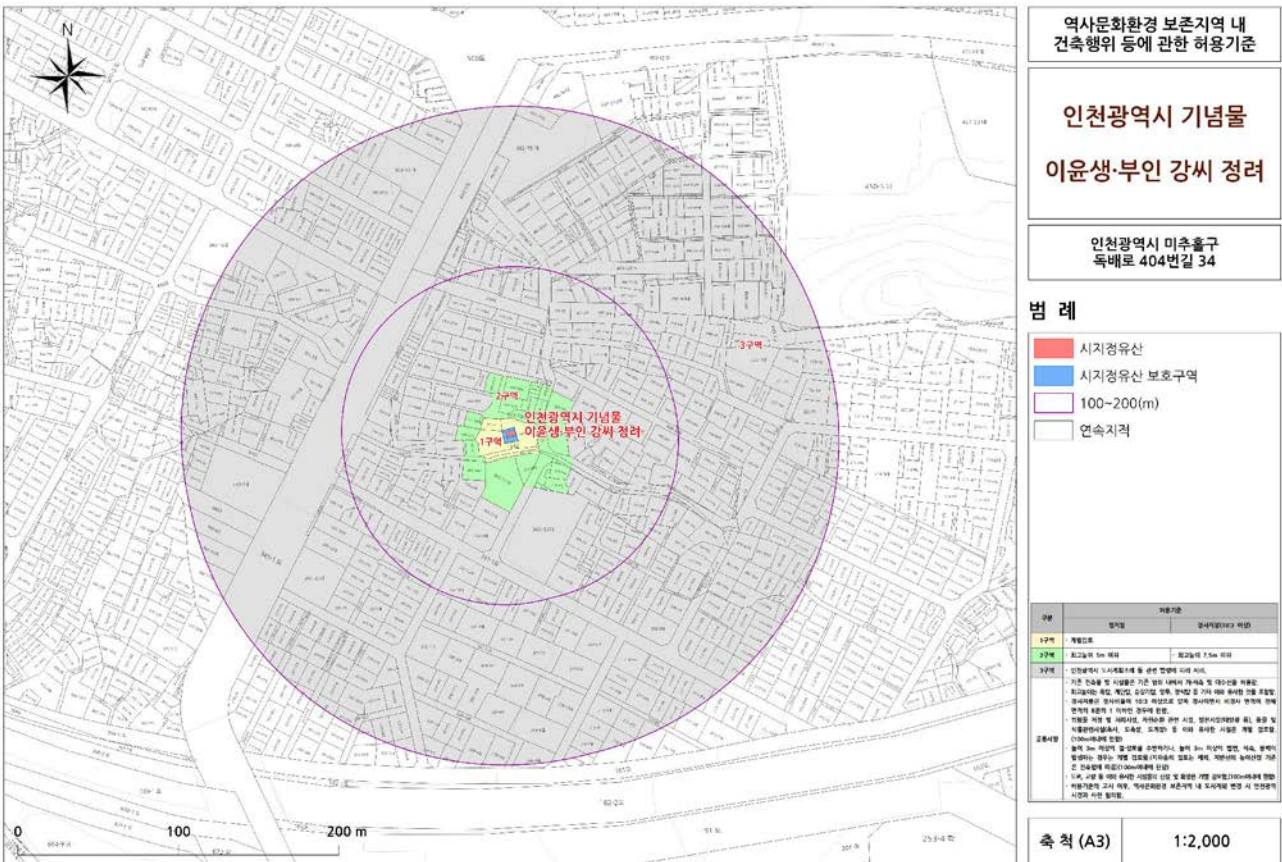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0.04.14.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결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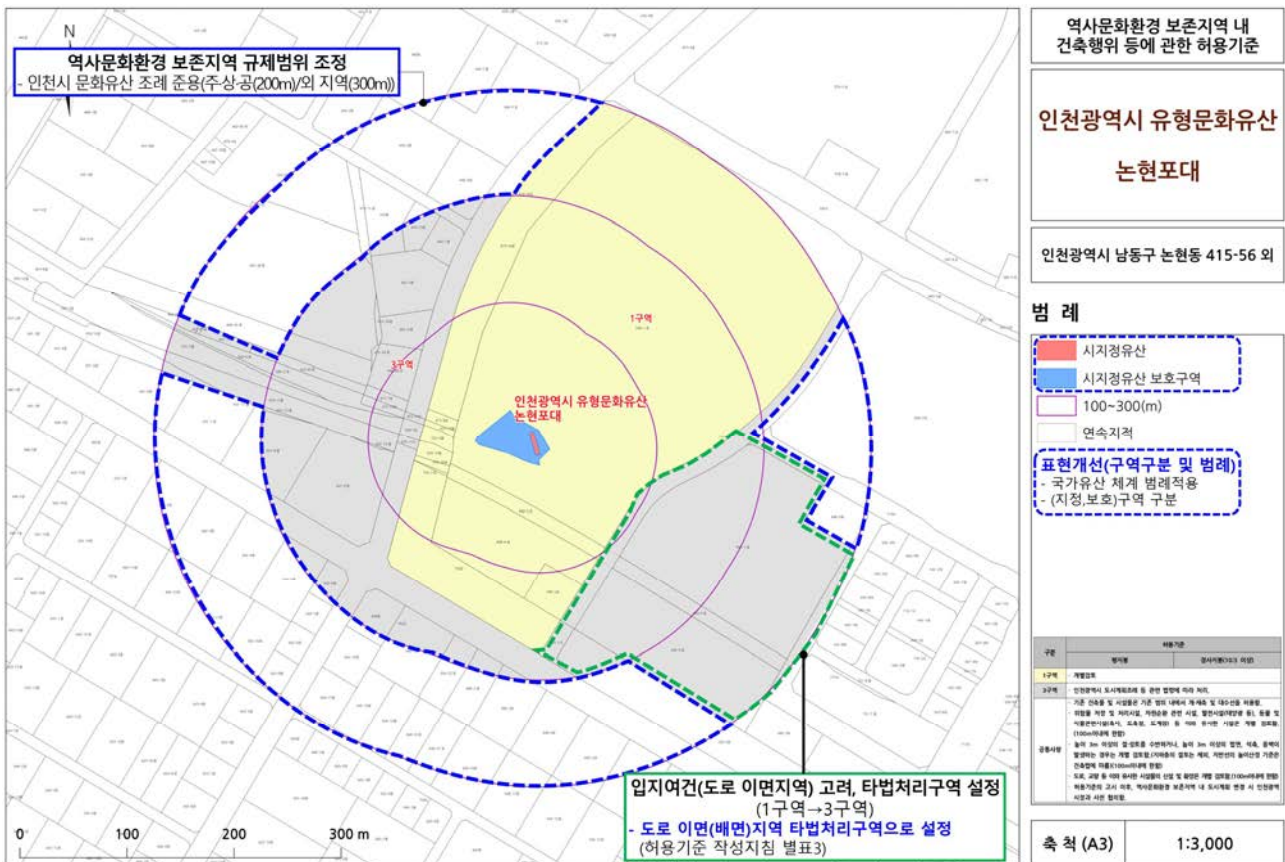


4. 남동구

4.1 논현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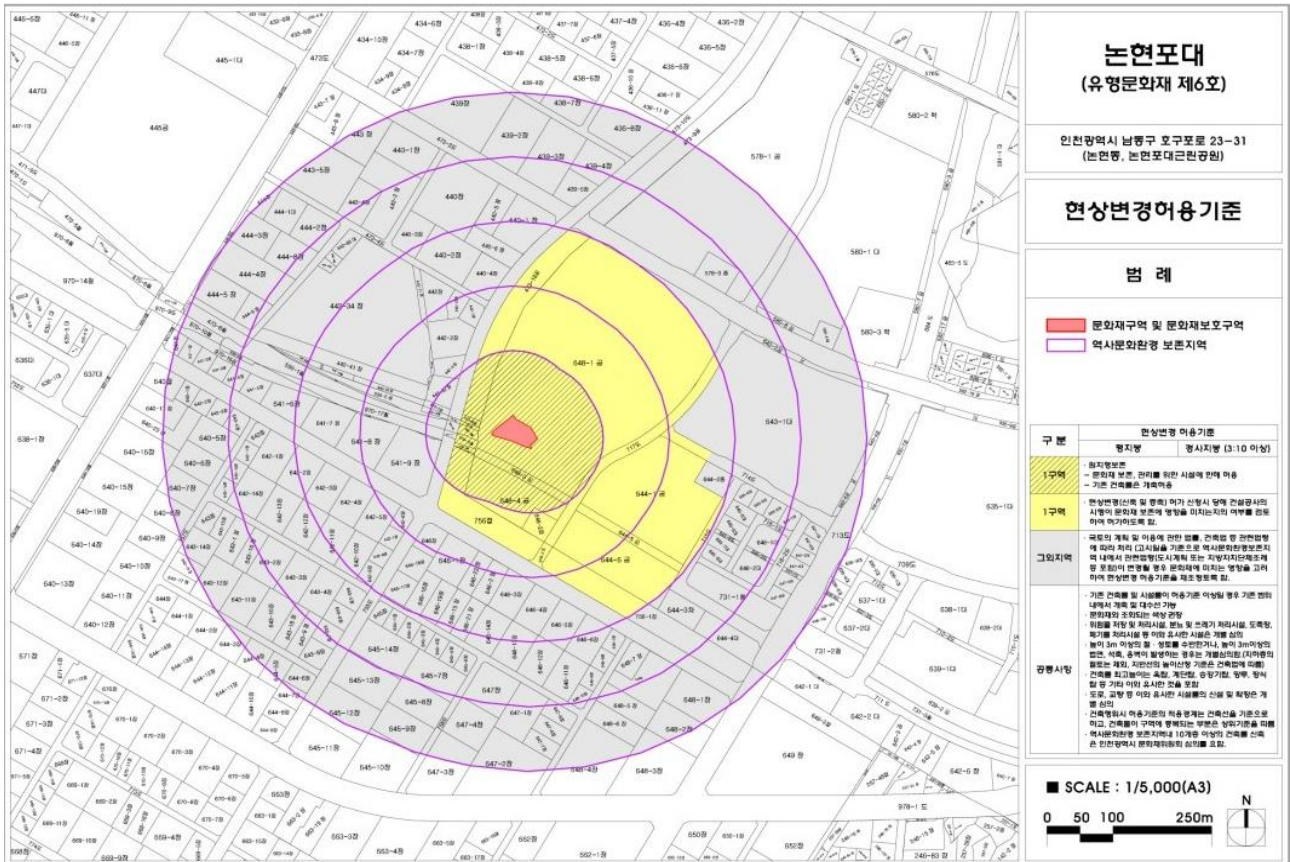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논현포대 주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개정된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조례를 준용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초과지역 제척 진행, 개별검토구역을 기존 동측에 위치한 공원지역은 유산구역에서 수목선들로 인해 차폐가 되고, 도로 이면지역에 위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유산구역이 포함된 공원 내로 개별검토구역을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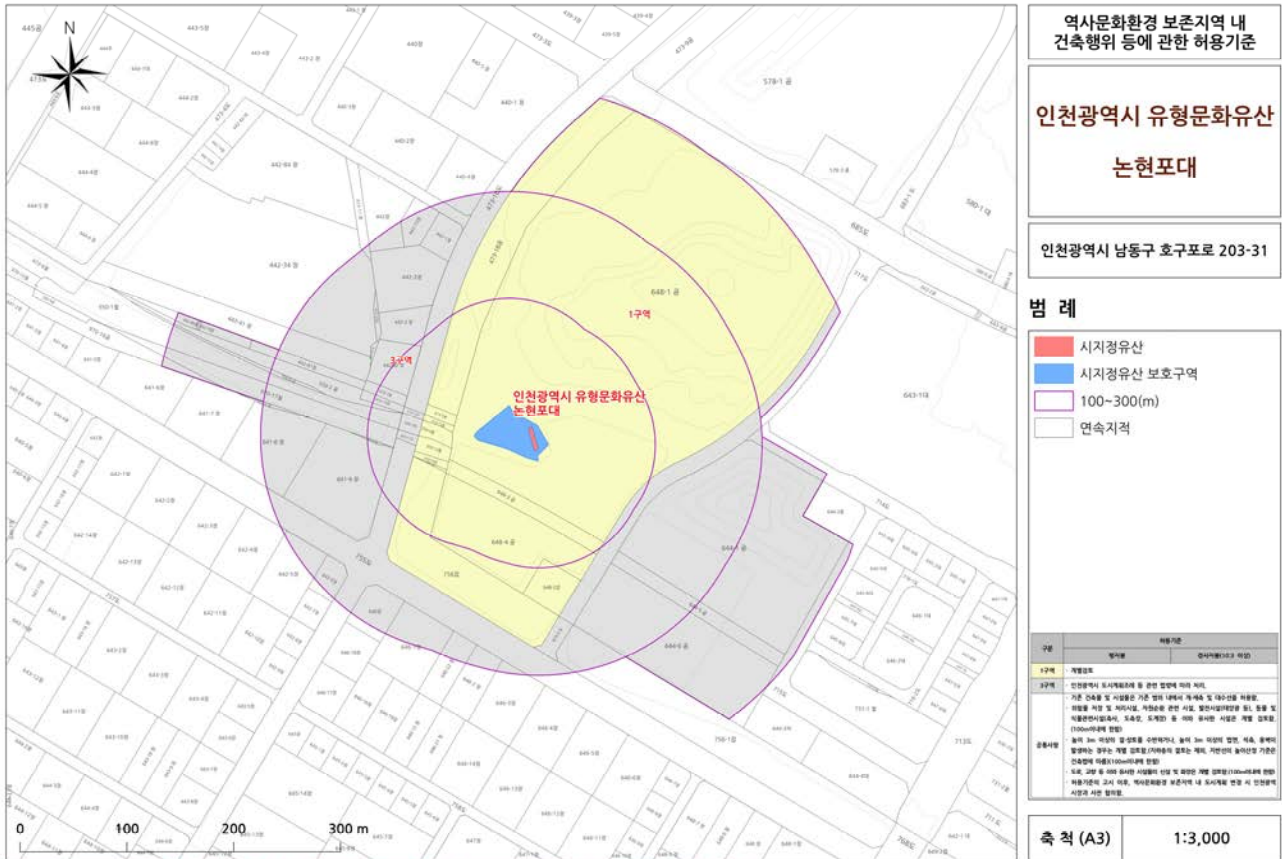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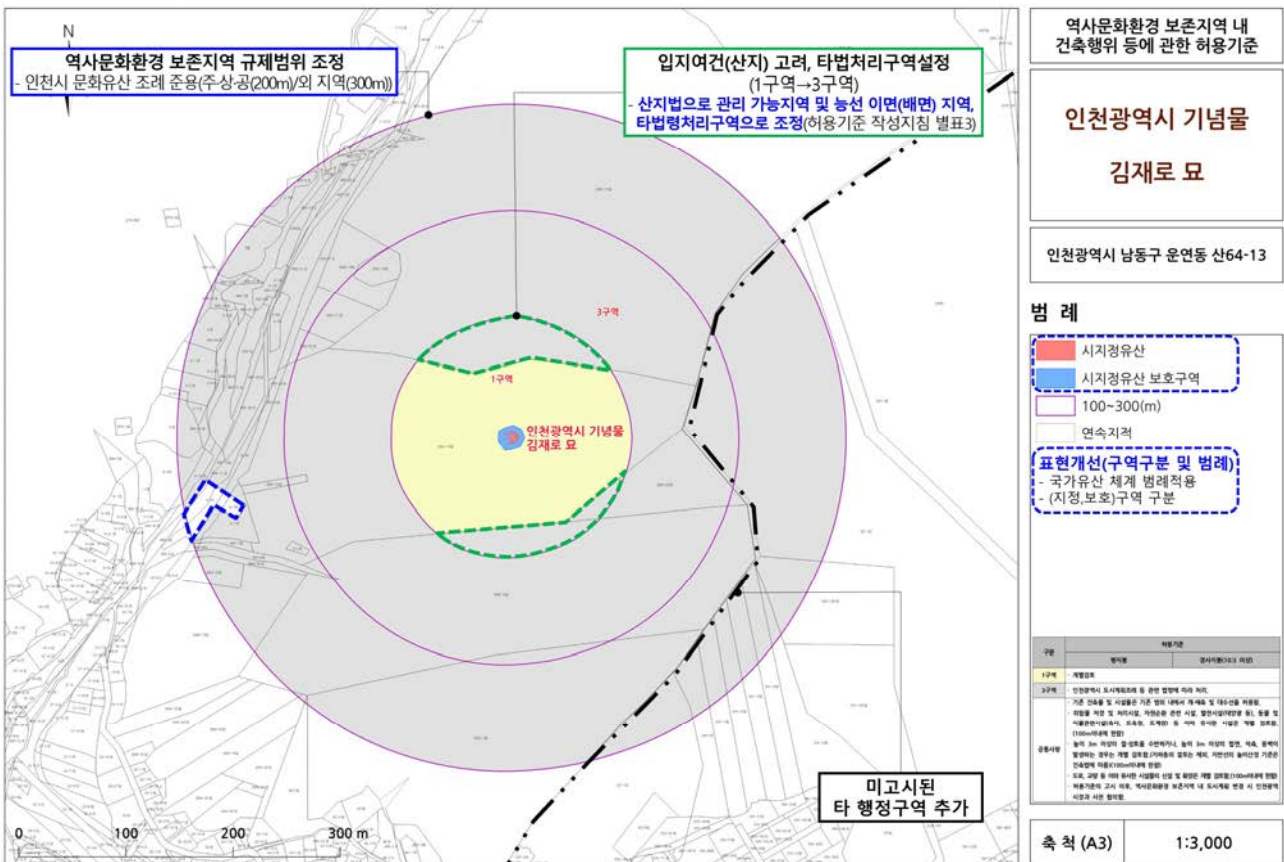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4.2 김재로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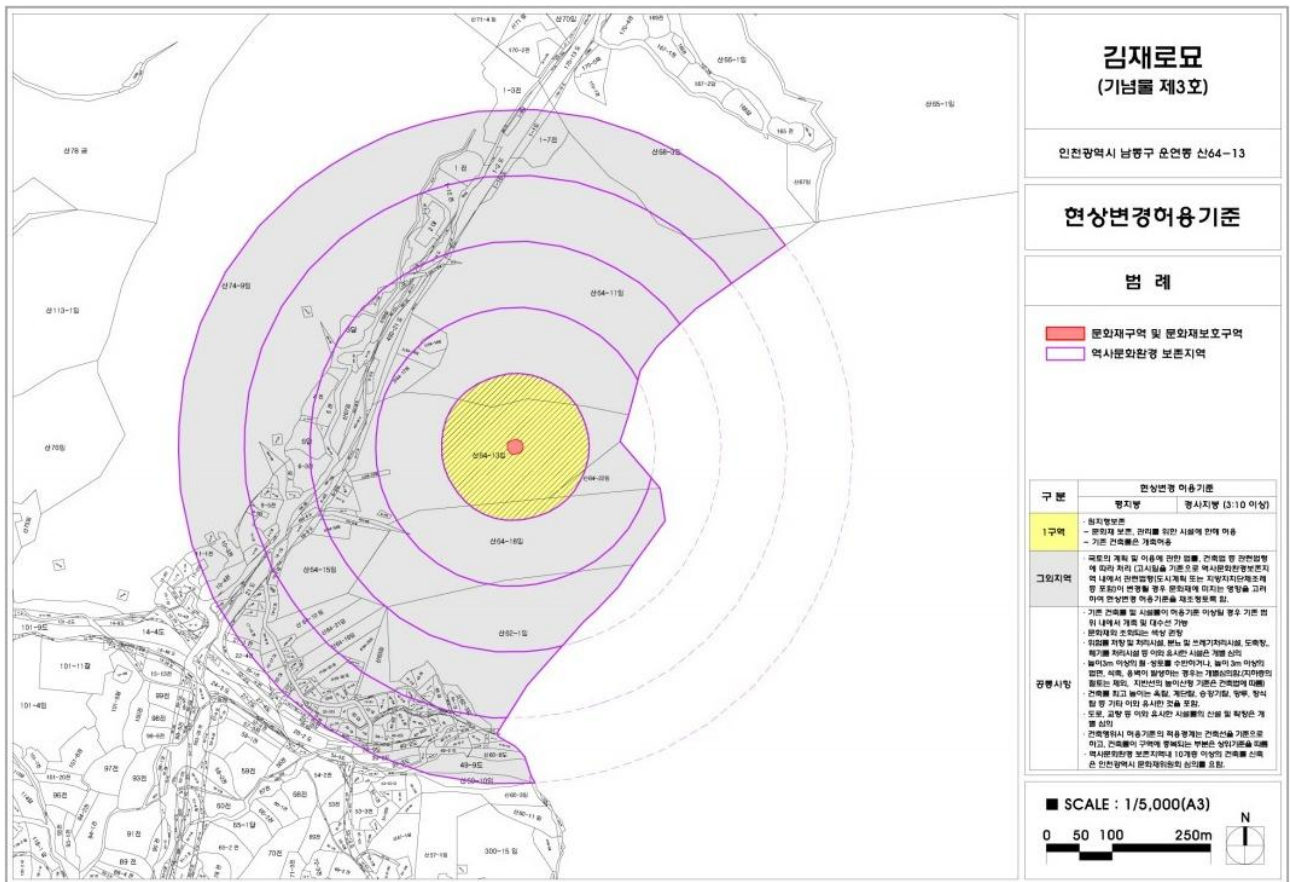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김재로 묘는 연락산 서측 중단부에 위치하여 주위로 산세가 있어 경관이 유지되고 서측으로 조망성 양호, 동측으로 기존 미고시되었던 타 행정구역(시흥시)부분으로 타법처리구역으로 추가하였고, 서측으로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위치하여 제척되었고 기존 100m 이내로 관리되고 있던 규제정도를 능선 이면지역이면서 산지법등을 통해 관리가 되는 지역에 위치하는 필지 일부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법처리구역으로 규제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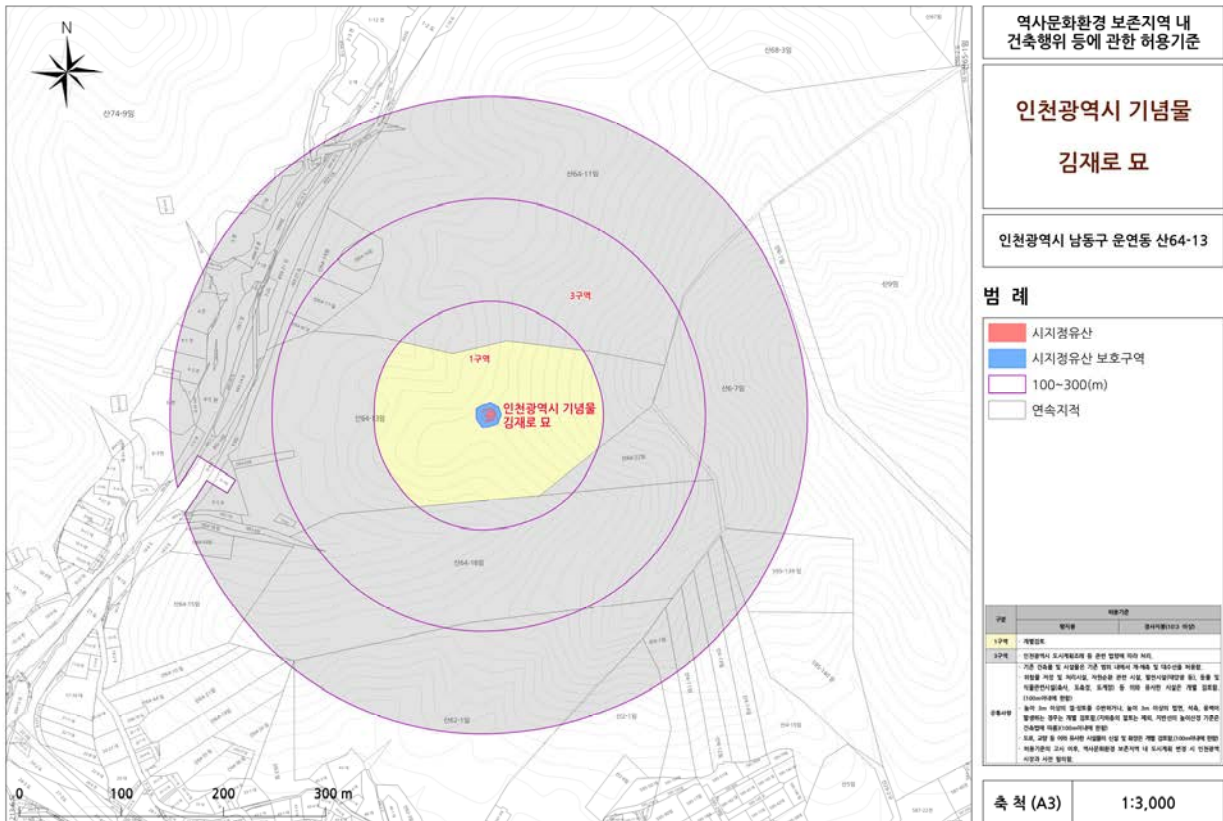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신규고시, 2025.11.00.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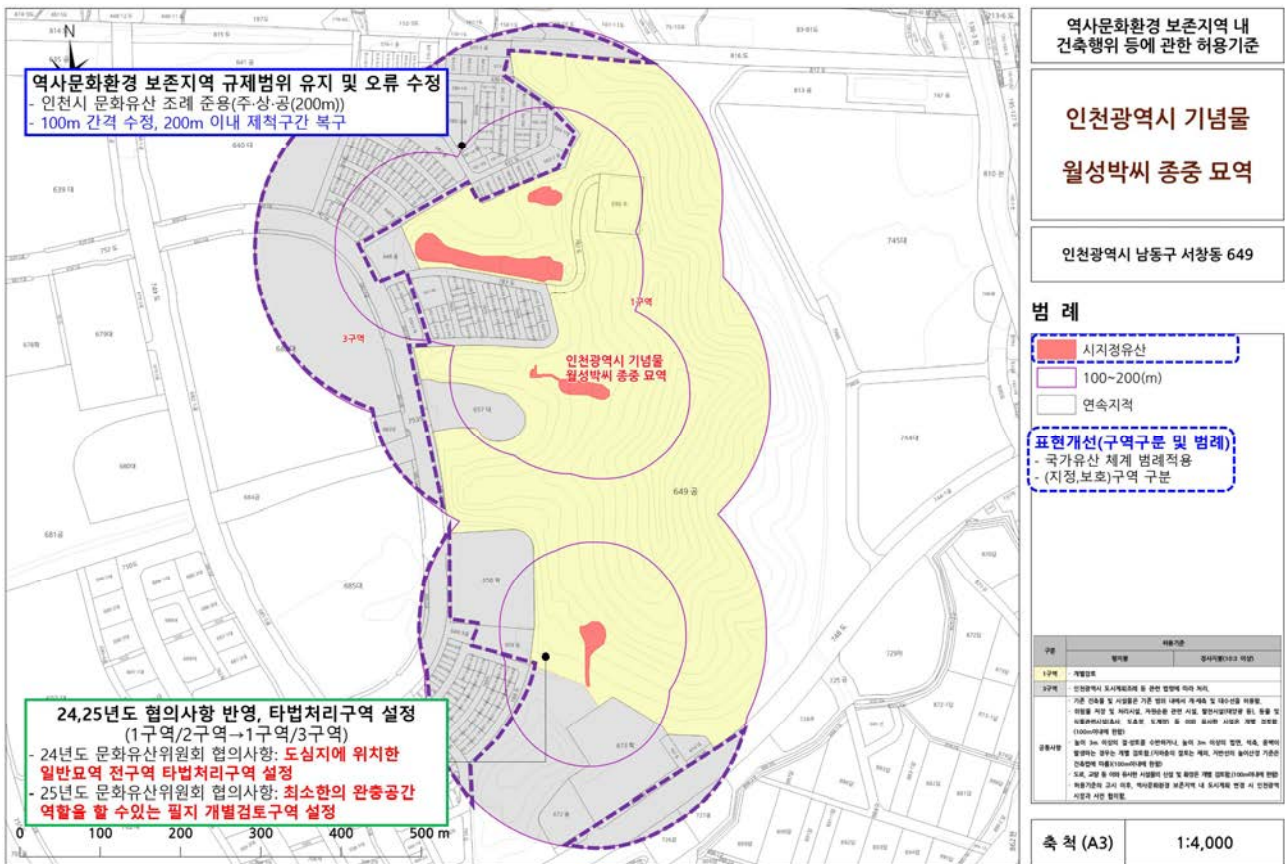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4.3. 월성박씨 종중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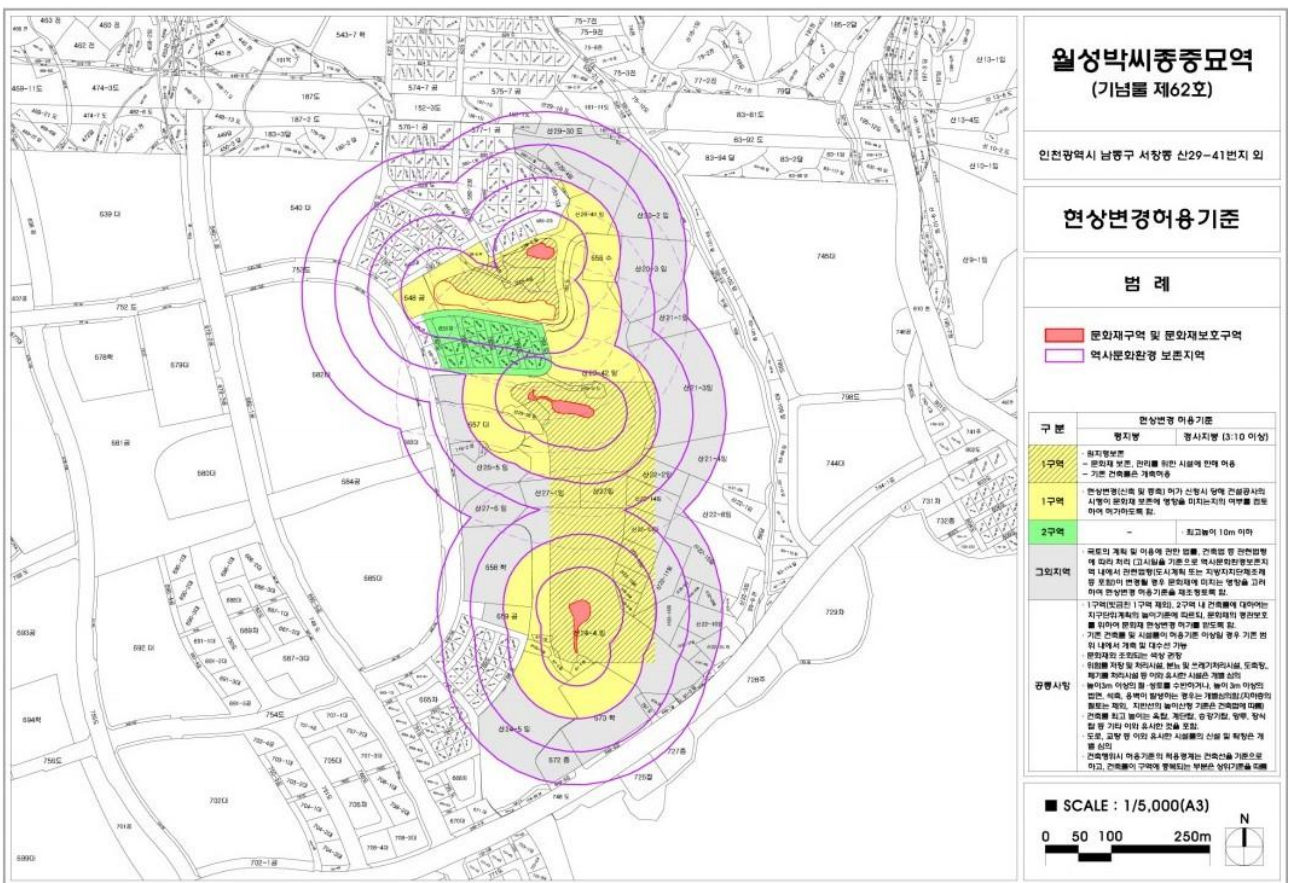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월성박씨 종중 묘역은 기존 200m에서 추가적인 제척지역이 있던 지역으로 200m 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오류를 수정하였고, 24년도, 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협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유산과 인접한 임야, 공원 등의 필지를 개별검토 구역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이외 지역은 타법처리구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함,



■ 허용기준(당초, 2014.01.2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1구역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 ○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빗금진 1구역 제외), 2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르되,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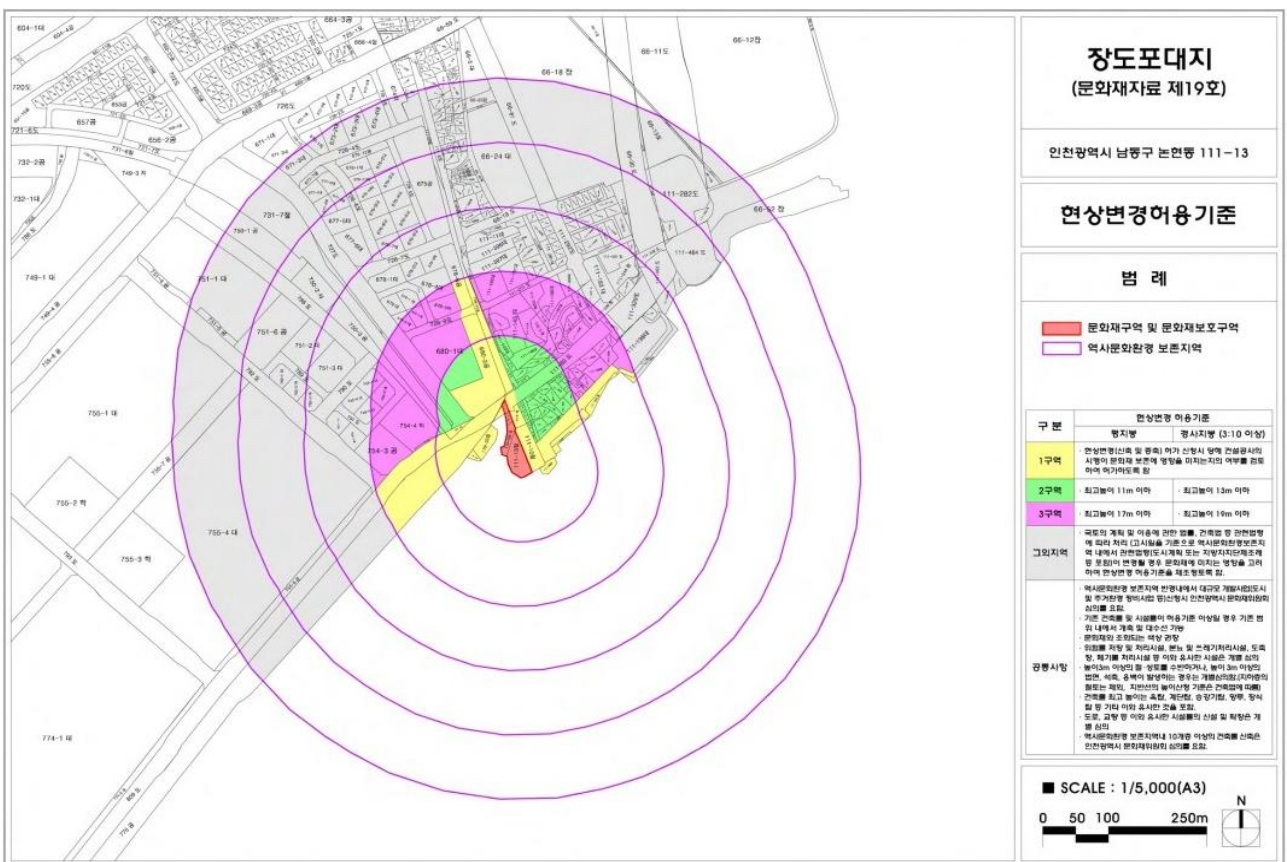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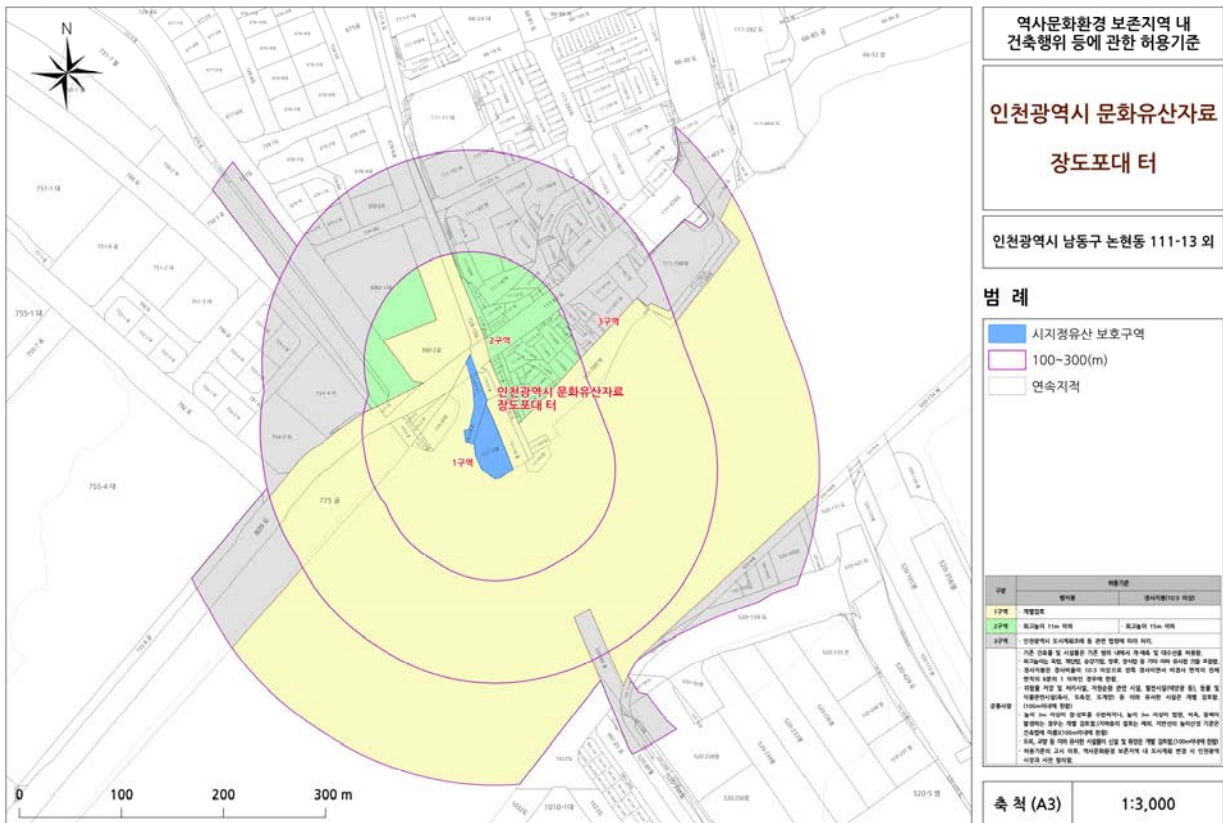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5.09.1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2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3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그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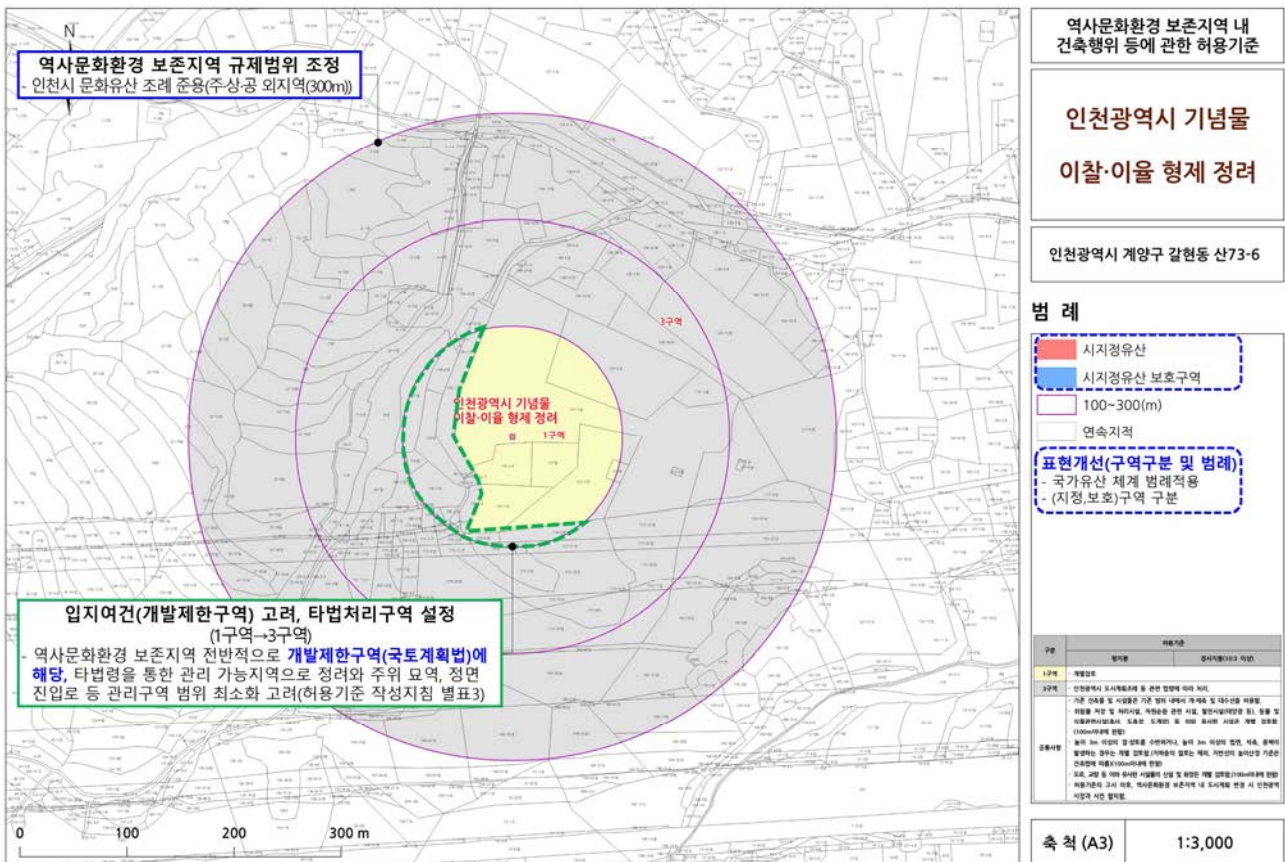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5. 계양구

5.1 이찰·이울 형제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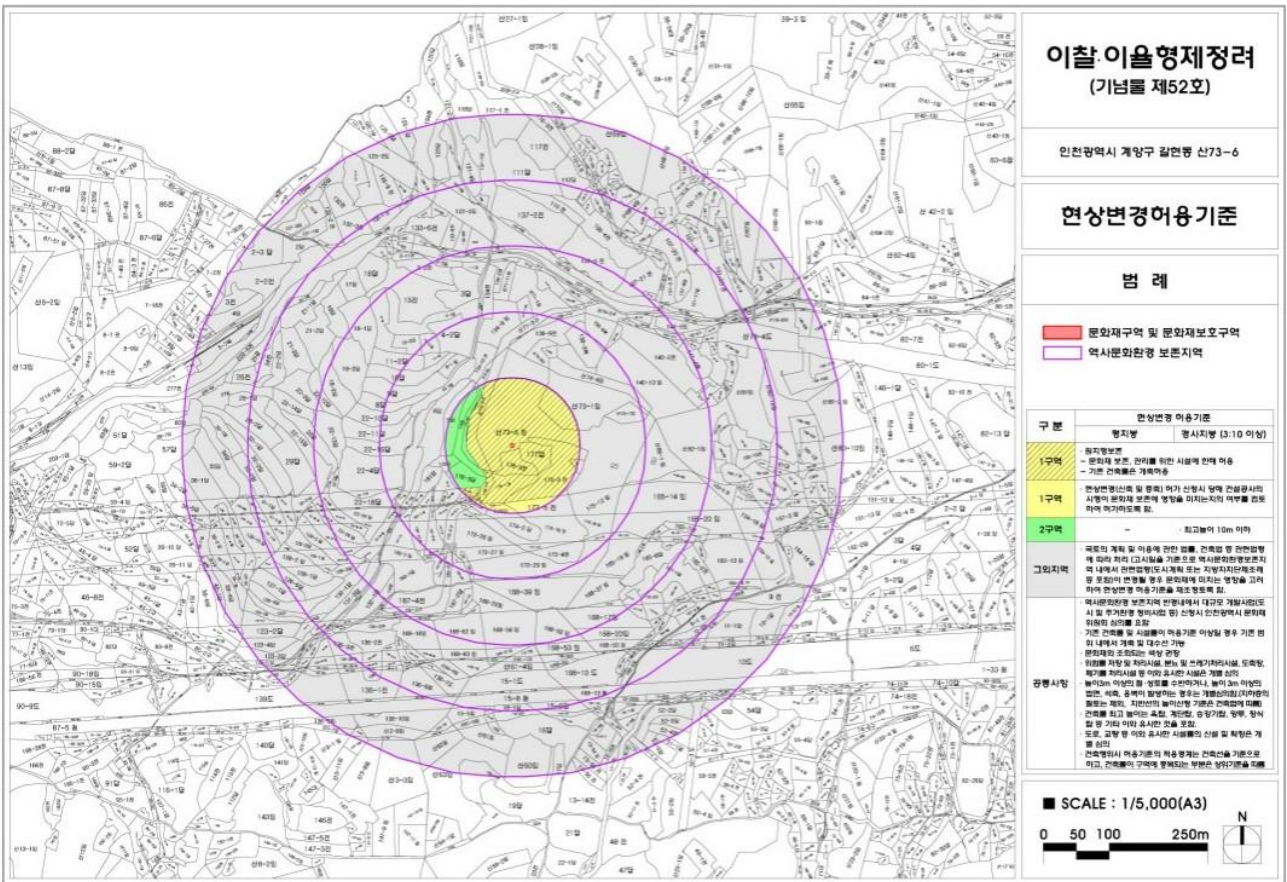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이찰·이울 형제 정려는 개발로 인해 현위치로 이전된 유산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며, 동측으로는 공항시설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타법령에 의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100m 이내에 최소한의 개별 검토구역은 유지하여 장소성 및 주변경관과의 일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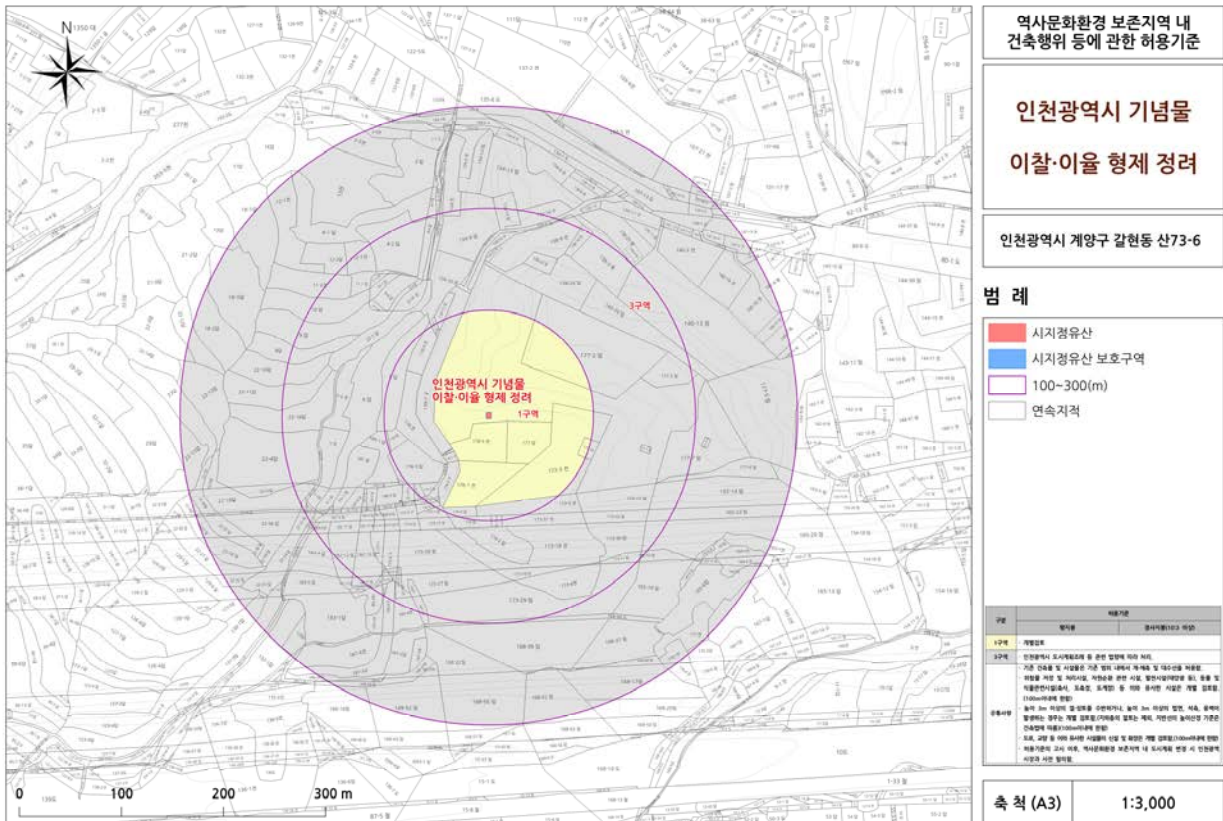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변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경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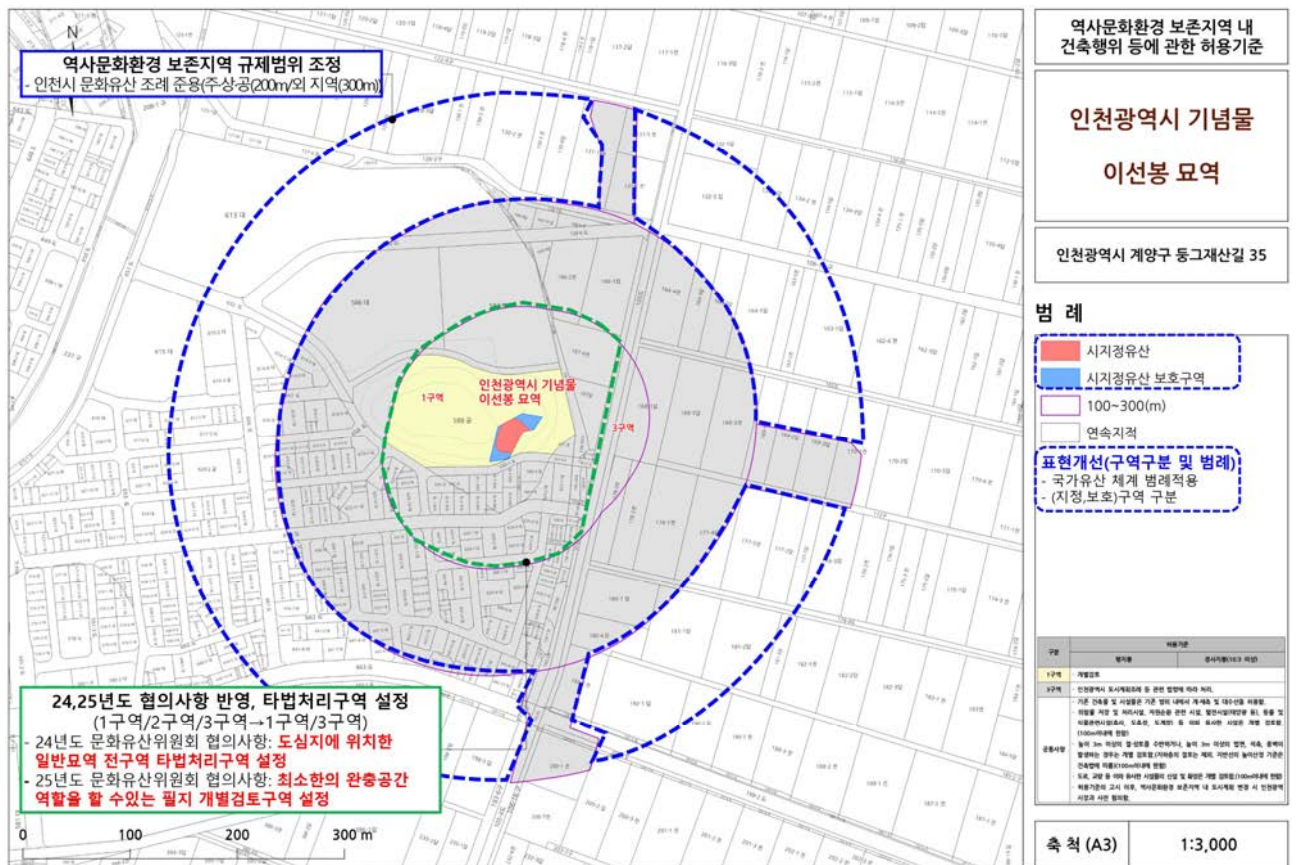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5.2 이선봉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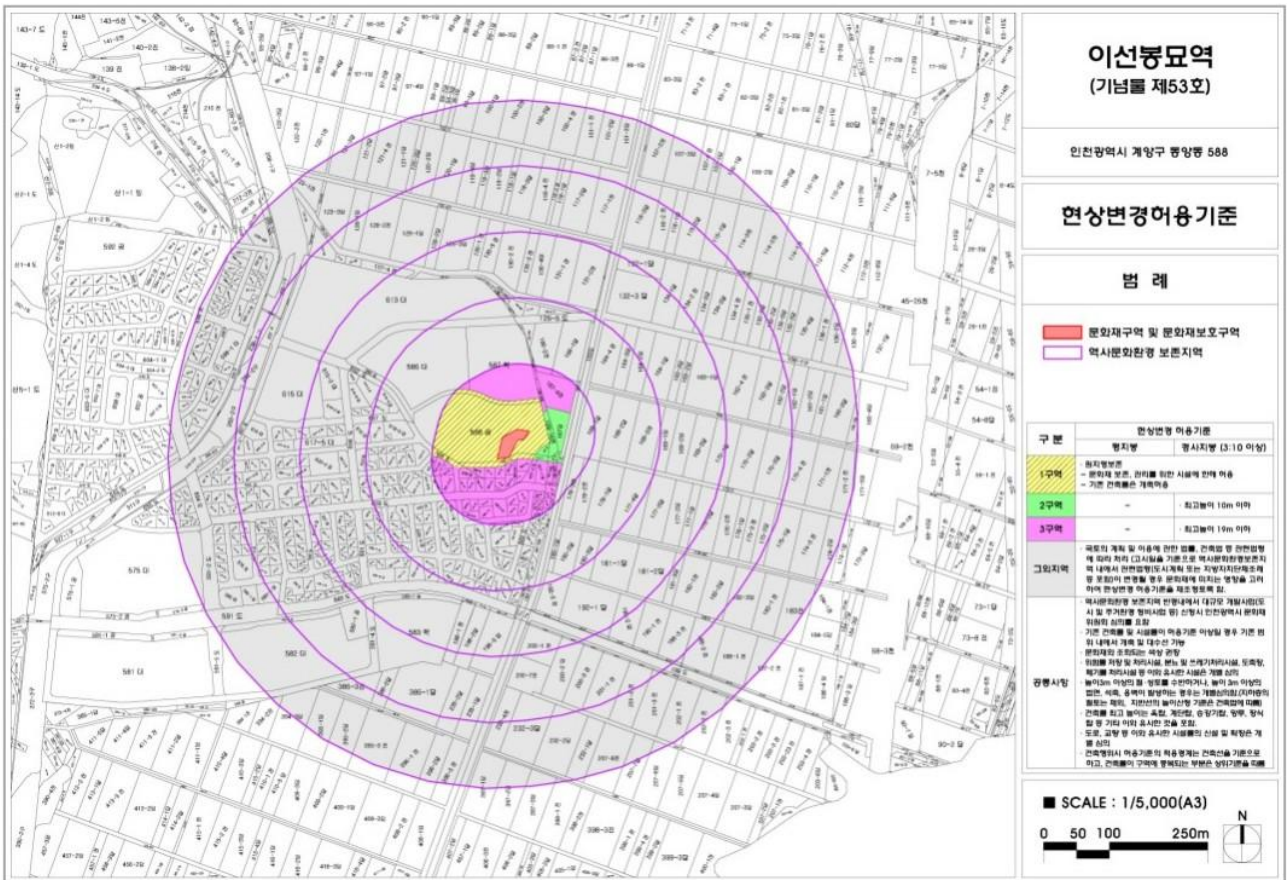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문화유산 조례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초과 지역 제척, 24년도, 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협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유산과 인접한 임야, 공원 등의 필지를 개별검토구역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이외 지역은 타법처리구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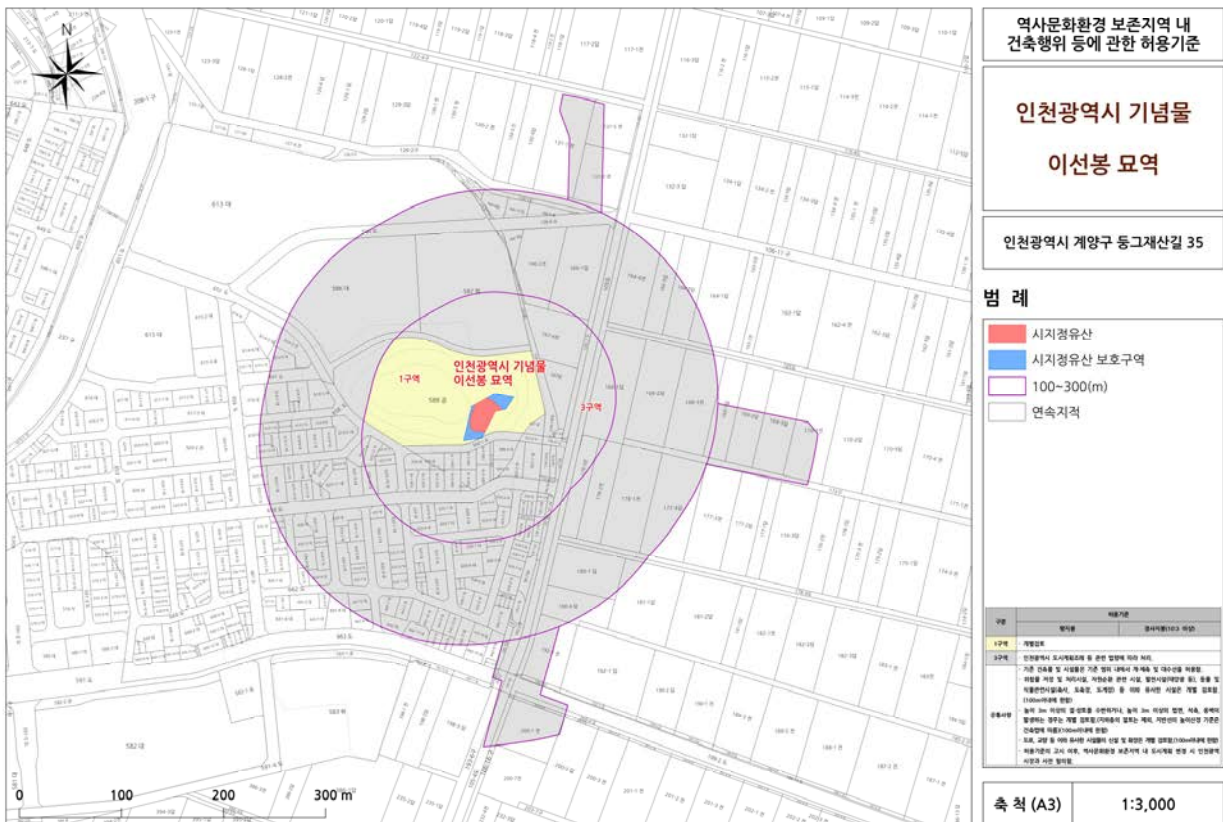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4.01.2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2구역	-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9m 이하
그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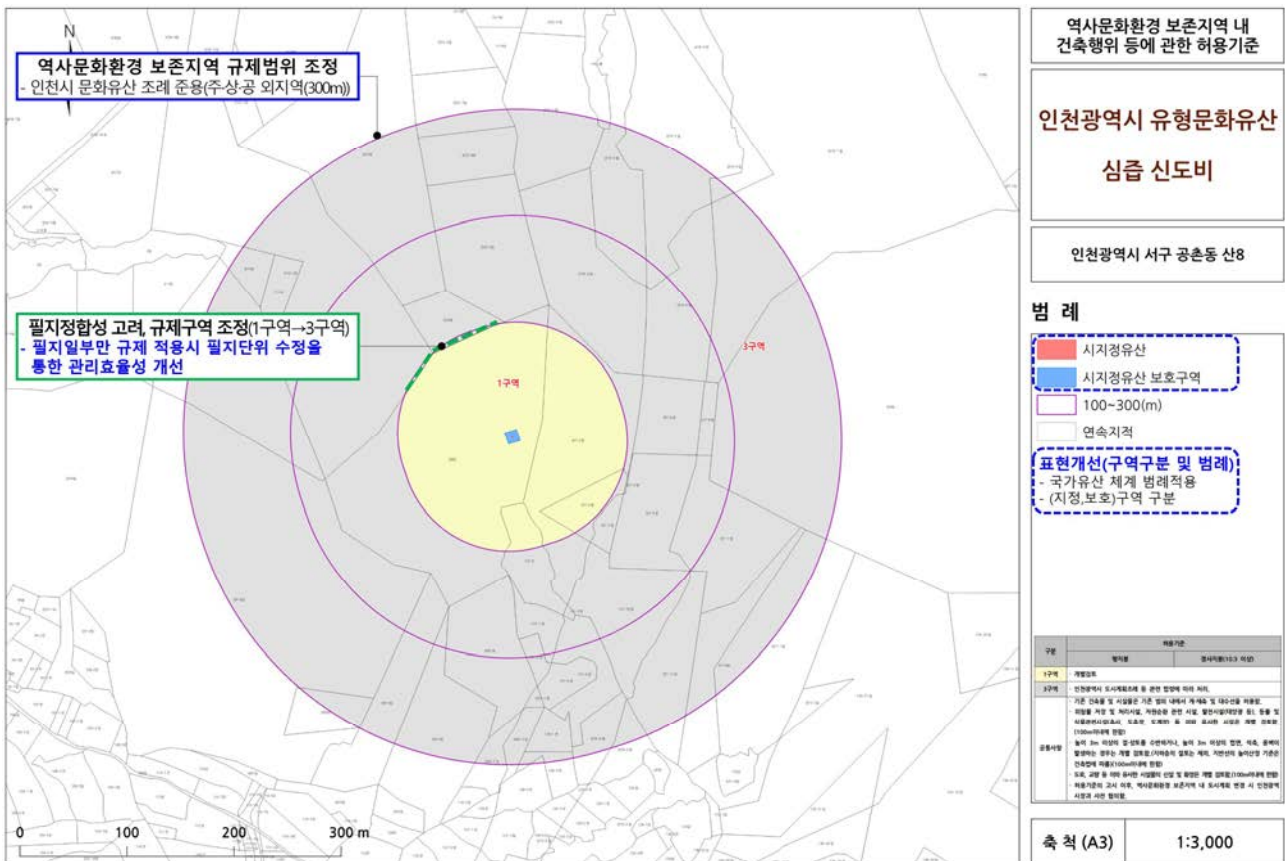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6. 서구

6.1 심층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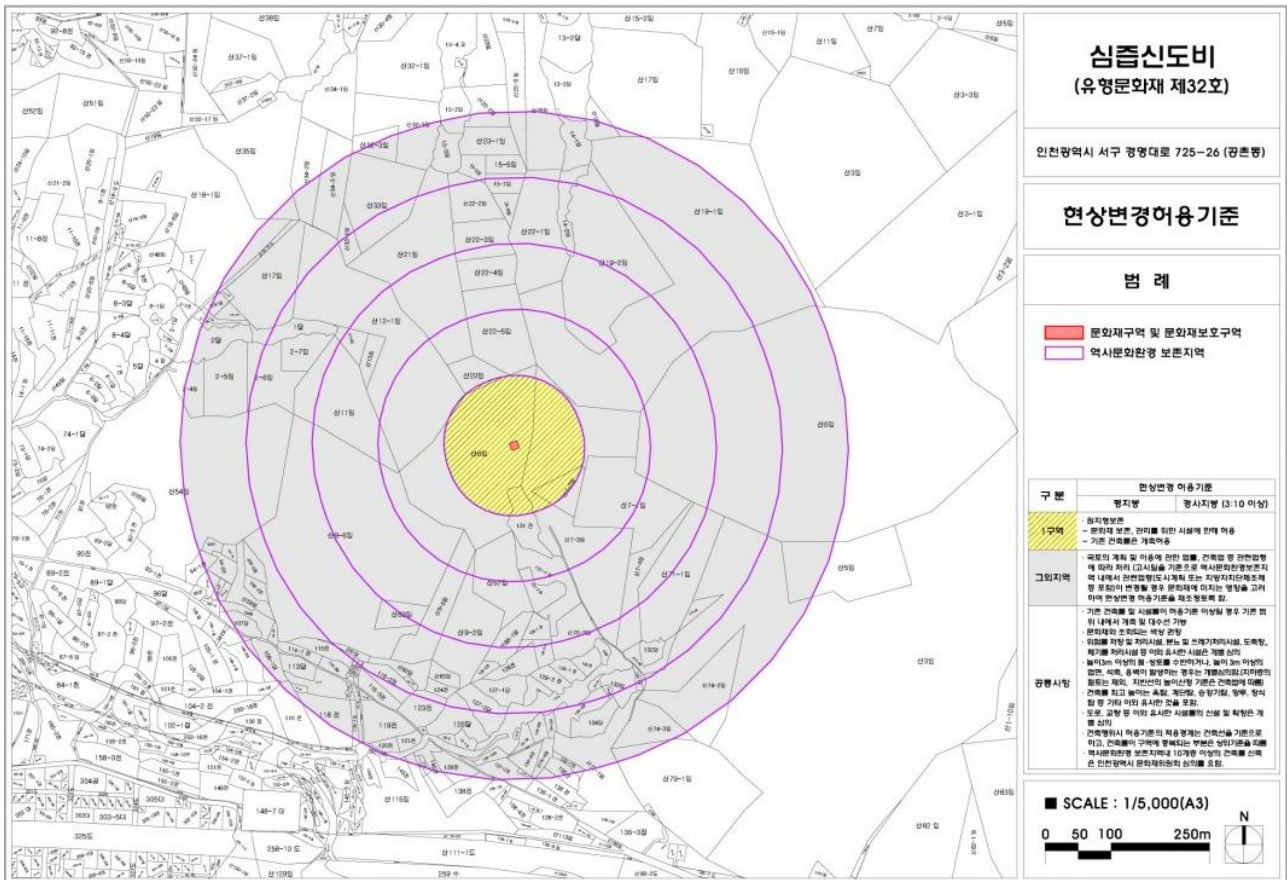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심층 신도비는 비도심에 위치한 점단위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허용기준 고시 상에서 100m 이내 최소한의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필지 적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필지를 타법처리구역으로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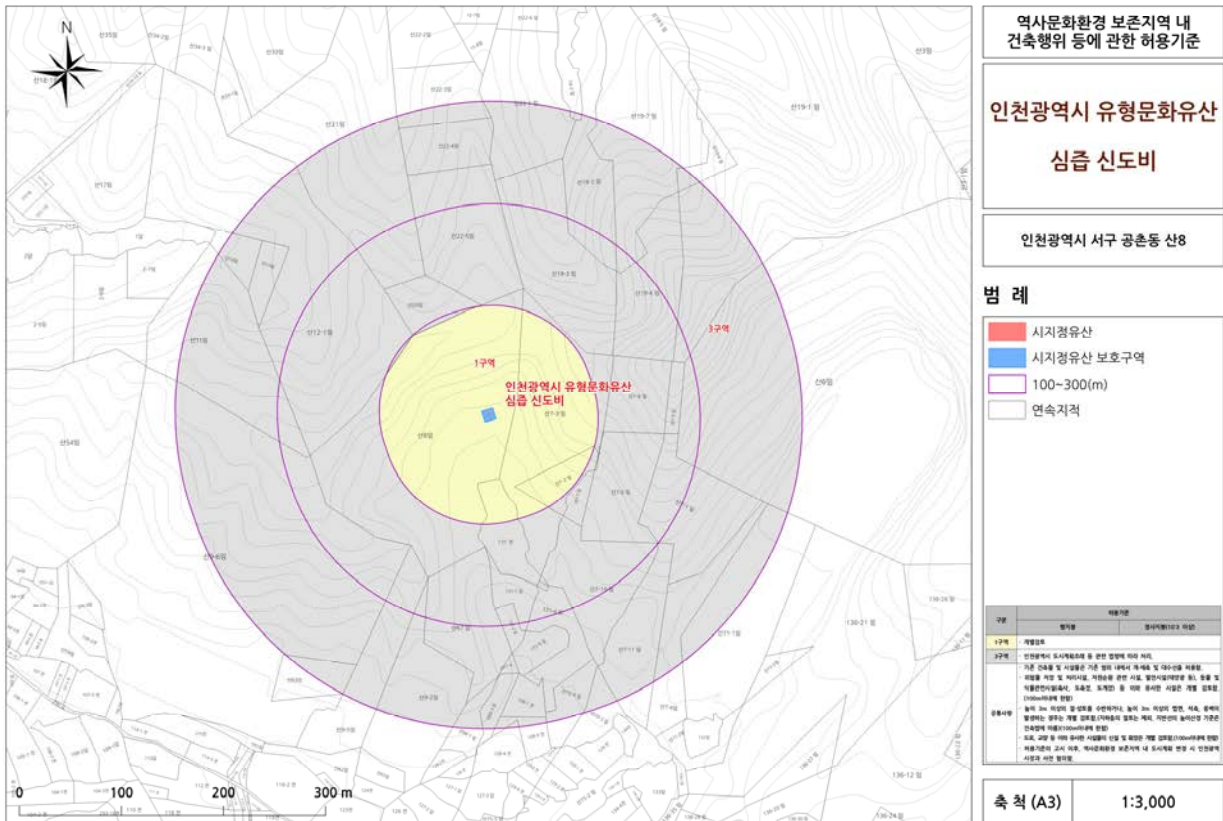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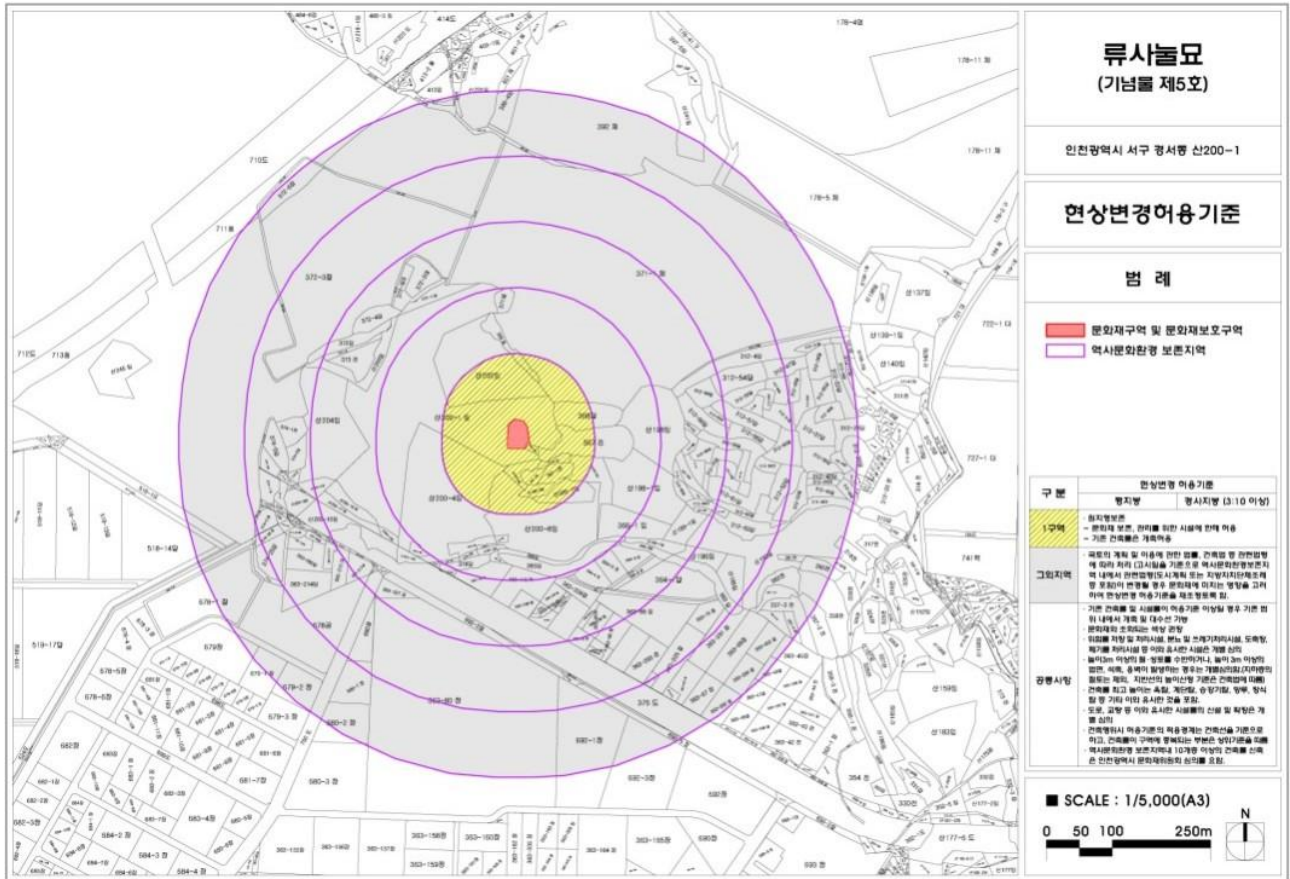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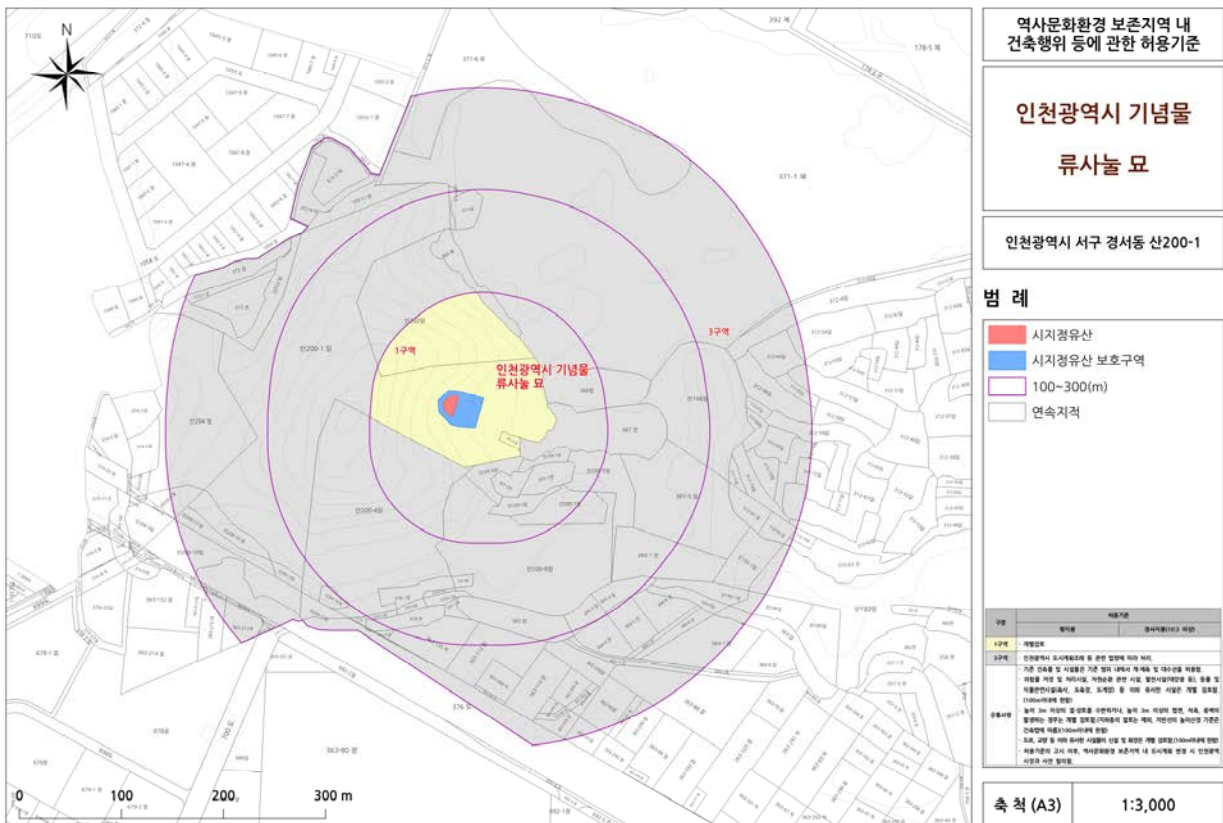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7.01.16.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결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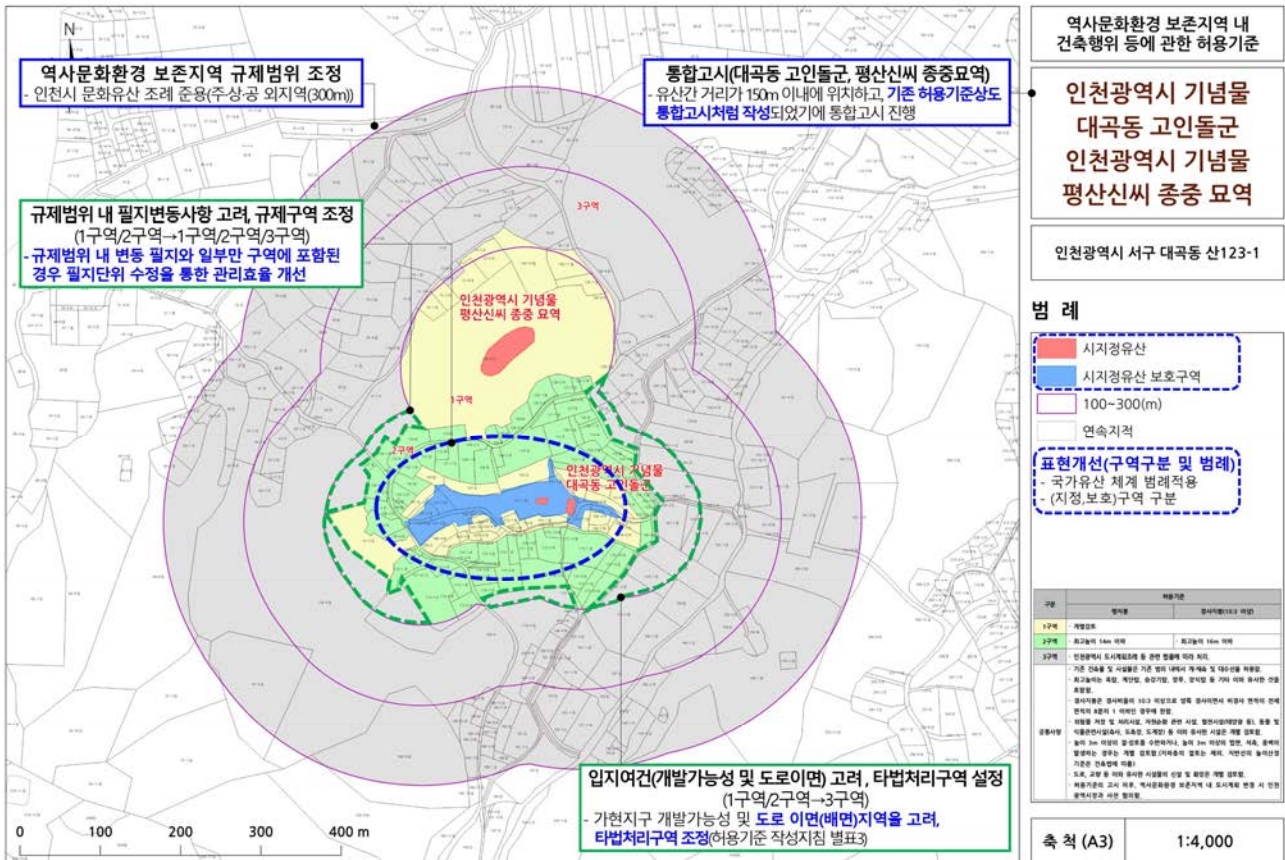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6.3 대곡동 고인돌군 외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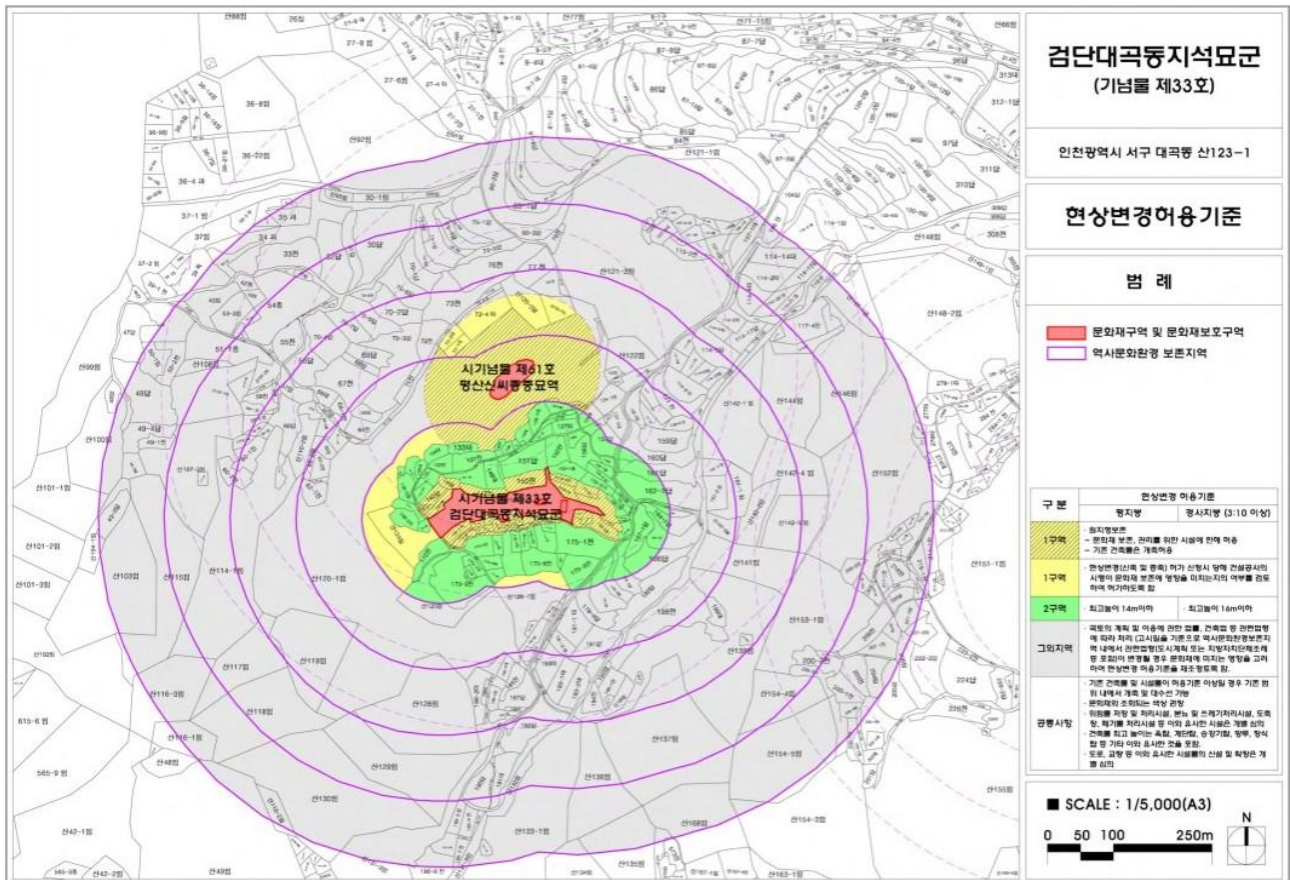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유산구역 주변으로 필지변동이 일어난 상황을 보호구역 적정성을 통해 반영된 유산구역중심으로 필지단위로 개별검토구역을 설정하고, 기존 고도제한구역을 도로 이내 필지 단위로 조정하여, 행정효율성 및 차후 개발가능성등을 고려한 기본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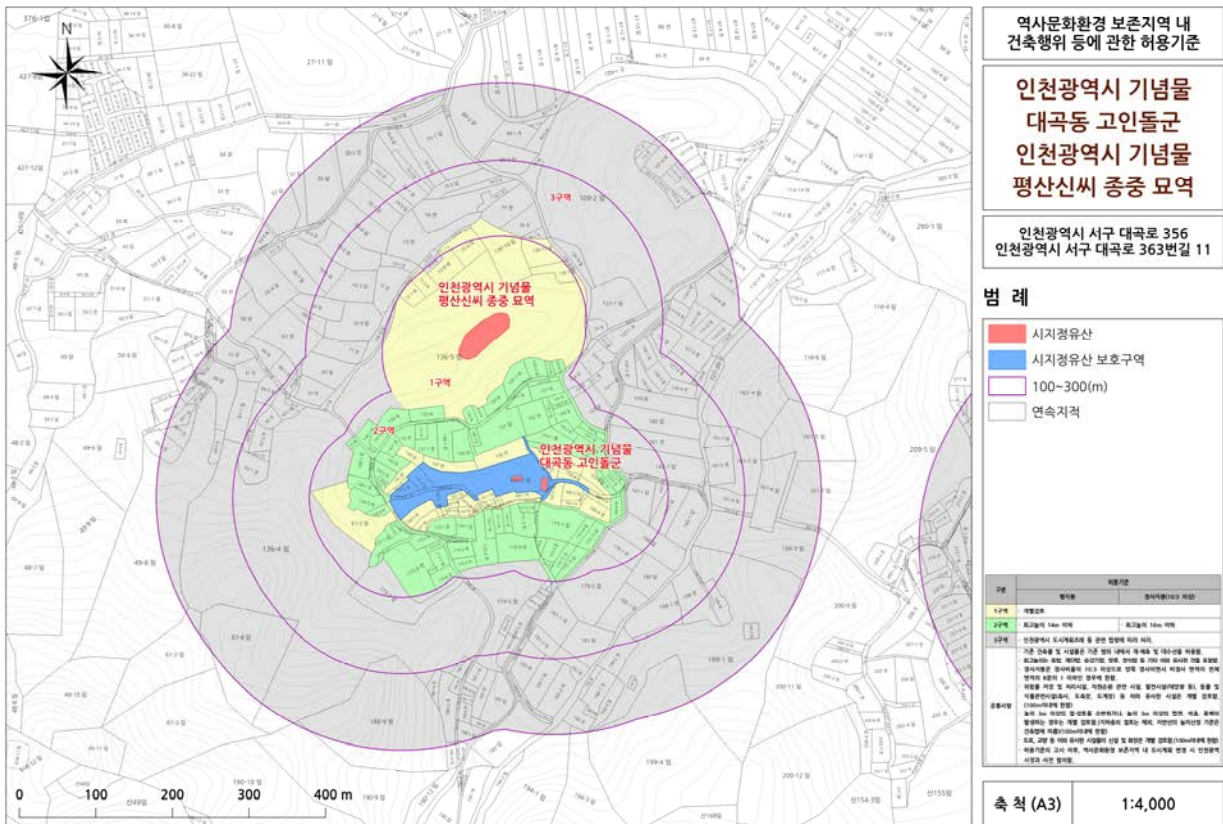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5.09.0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결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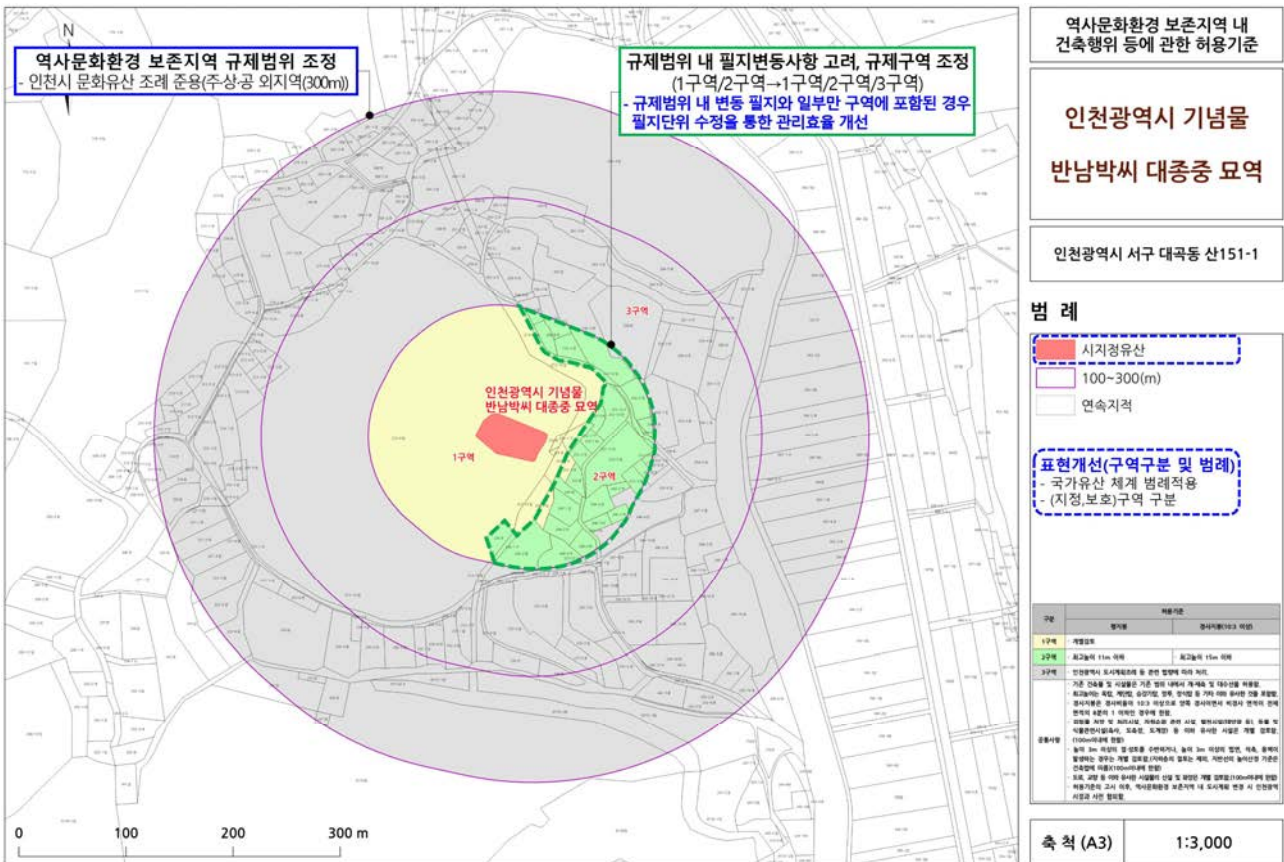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6.4.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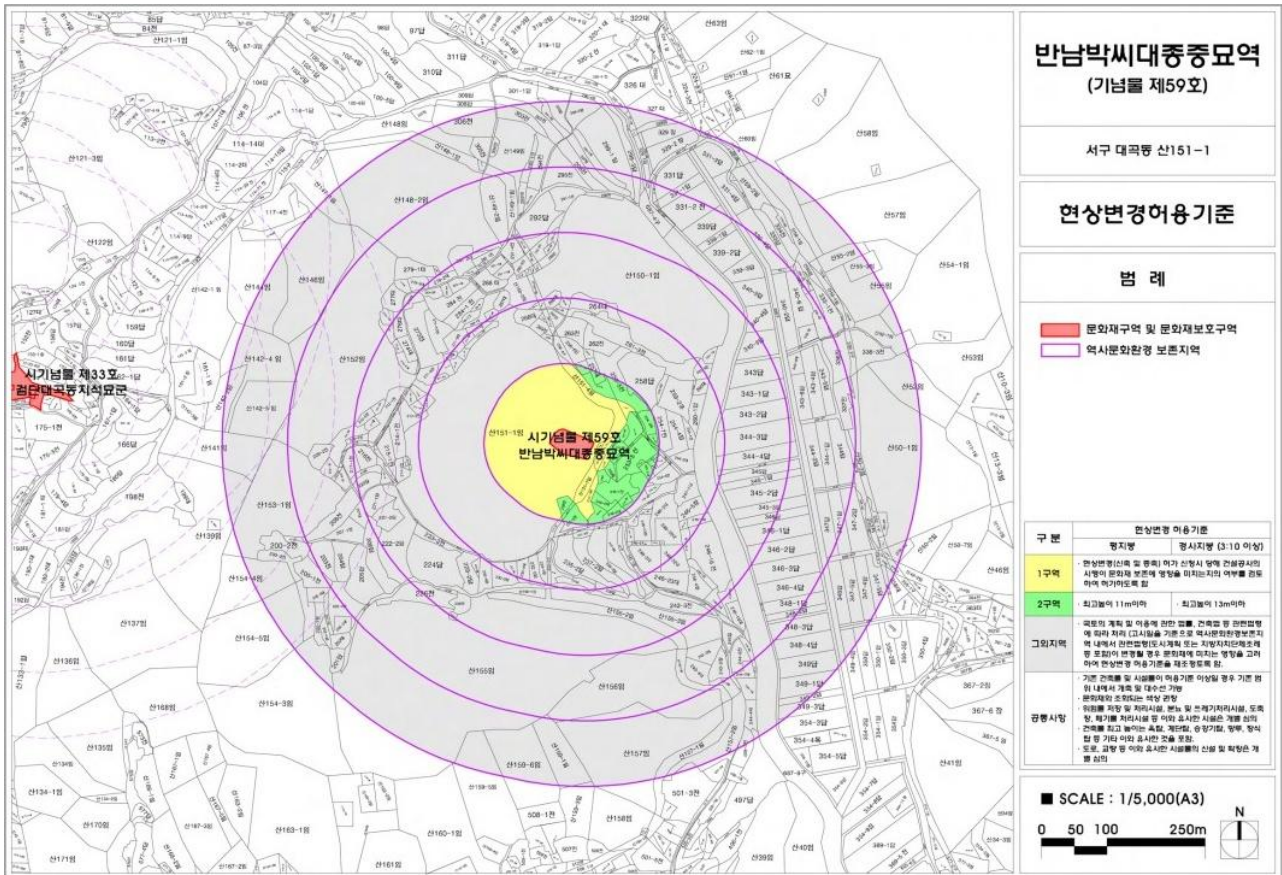
■ 기본방향 설정

- 유산구역 주변으로 기존 허용기준 자체가 100m 이내로 규제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100m 이내로 필지 변동사항 및 필지단위 수정을 통한 관리 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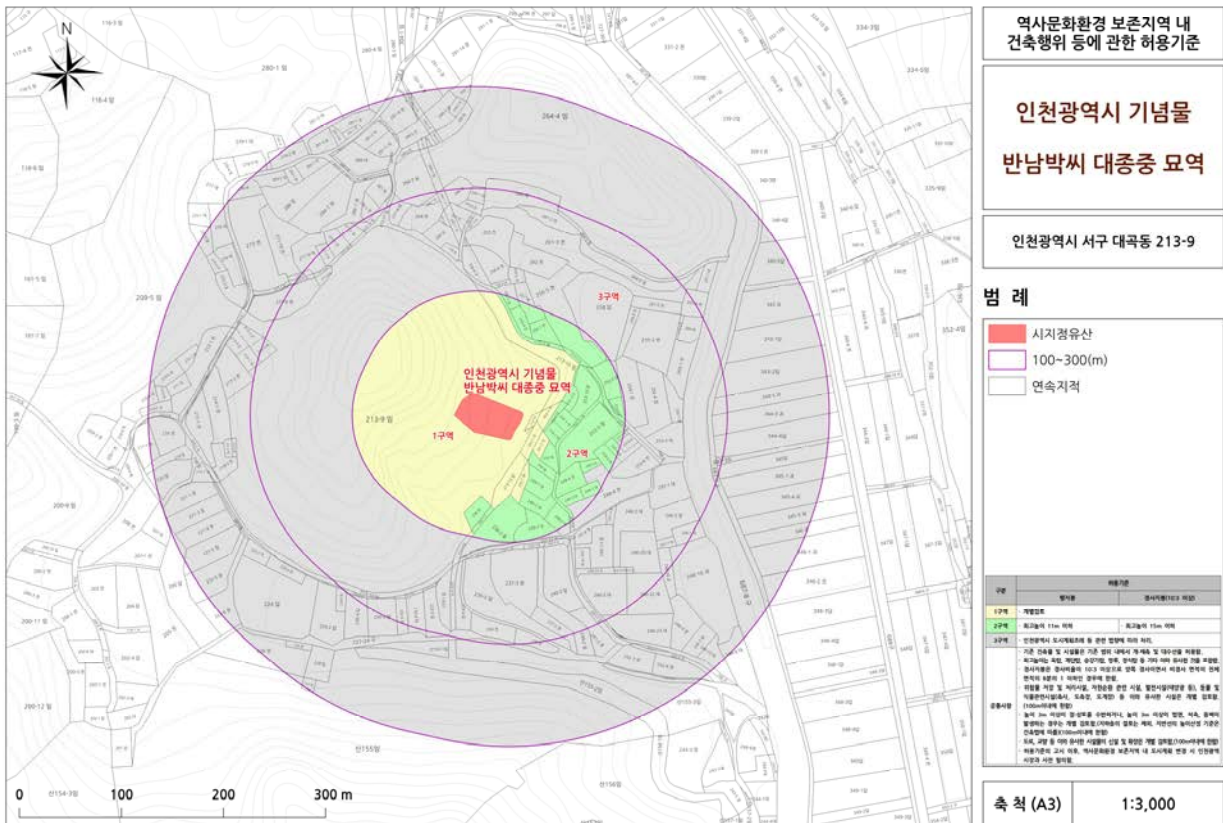
■ 허용기준(당초, 2014.01.27.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변경(신축 및 증축)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반경내에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내 10개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상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100m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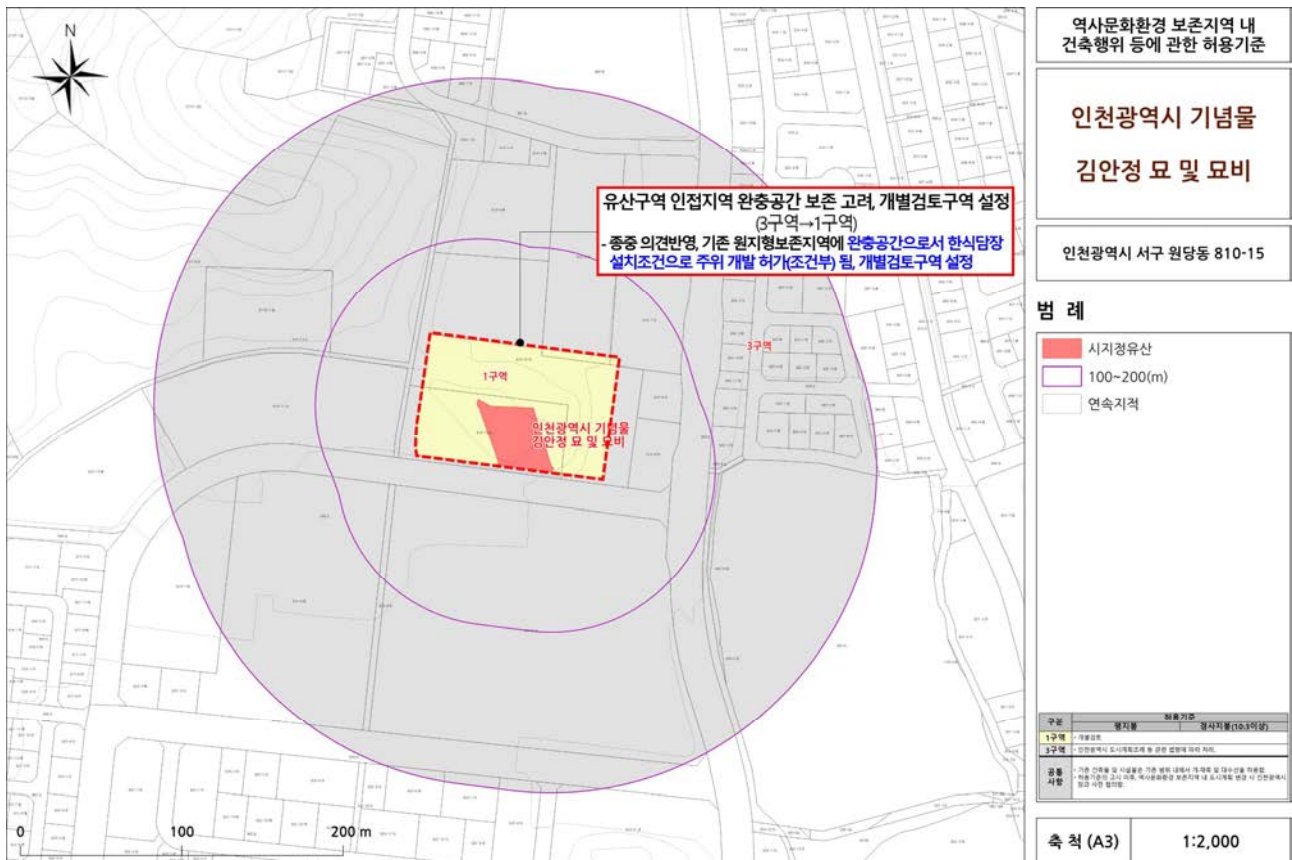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6.5. 김안정 묘 및 묘비(추가 조정)

● 종중의견 수렴

- 김안정 묘 및 묘비 관리자인 풍산 김씨 김포파 종중 측에서 요청한 기존 원지형보존 범위 내 1구역 유지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타법처리 구역으로 조정하였던 허용기준을 기존 원지형보존 범위 내 개별검토 구역으로 추가 조정함.



■ 허용기준(24년 조정, 2024.06.10.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시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조정, 2025.11.24. 고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V. 종합결론

1. 과업의 주요성과
2. 향후 정책제언

V

종합결론

1. 과업의 주요성과

■ ‘체계적인 보호환경 조성’, 유산의 가치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유산구역(지정+보호) 조정안 마련

- <진정성의 고려> 관리기준 준용, 현지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실시
- <합리성의 고려> 유산 가치특성 및 지역여건 변화 고려,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 <형평성의 고려> 다양한 의견수렴(관계전문가, 관계부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을 통한 현실적 대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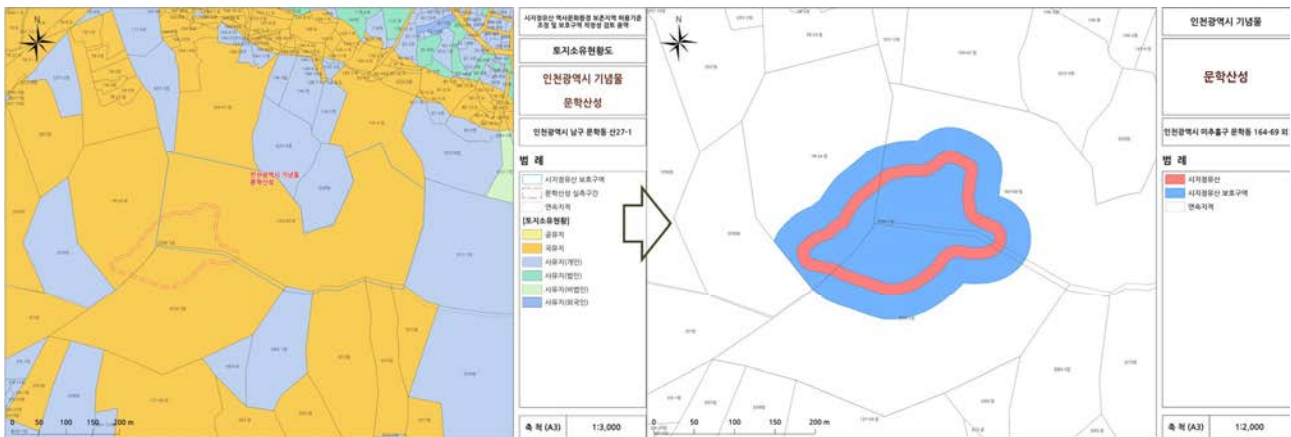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대상 목록

범례 : 축소▼/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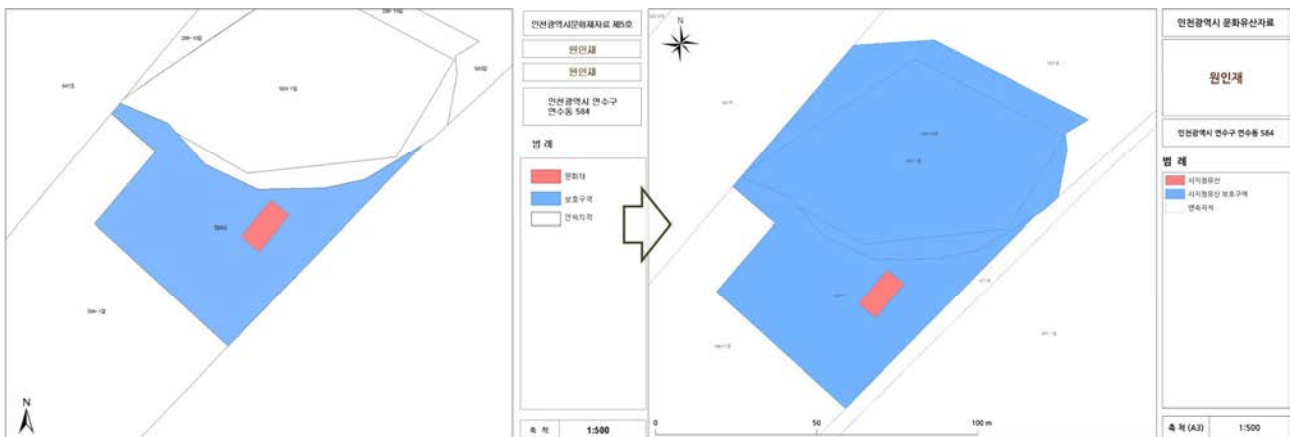
연번	종별	유산명칭	소재지	상세주소	조정사항	
					지정	보호
1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11	-	▲
2	기념물	강화 장곶돈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3 외	-	▲
3	기념물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	▼	▲
4	기념물	강화 용진진		강화군 선원면 자산리 215 외	▼	▲
5	기념물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외	-	▼
6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1 외	-	▼
7	유형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	▲
8	기념물	교동읍성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외	▲	▼
9	유형문화유산	강화 보문사 석실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외	-	▲
10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		강화군 내가면 연촌길 181	-	▲
11	기념물	강화 미루지돈대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70-2	▲	-
12	기념물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27-1 외	-	▼
13	기념물	이건창 묘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55-27	-	▼
14	기념물	황형 묘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	-
15	유형문화유산	강화유수부 이아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	▼
16	유형문화유산	구 인천우체국	중구	중구 제물량로 183	▼	▲
17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중구	중구 용유로 380번길 21	▲	▼
18	유형문화유산	인천향교	미추홀구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외	▲	▲
19	기념물	문학산성	미추홀구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외	▲	▼
20	문화유산자료	원인재	연수구	연수구 경원대로 322	-	▲
21	기념물	류사눌 묘	서구	서구 경서동 산200-1	-	▲
22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서구	서구 대곡로 356 외	-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유산구역(지정·보호) 면적비교(상 : 당초/하 : 조정(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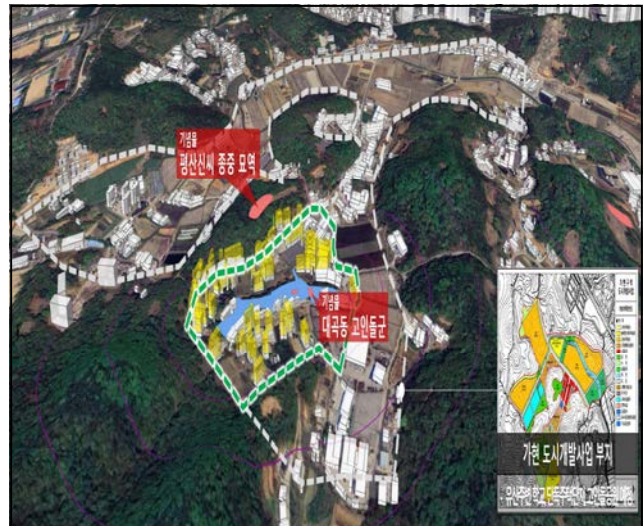
▲유산의 가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유산구역 조정예시(기념물 문학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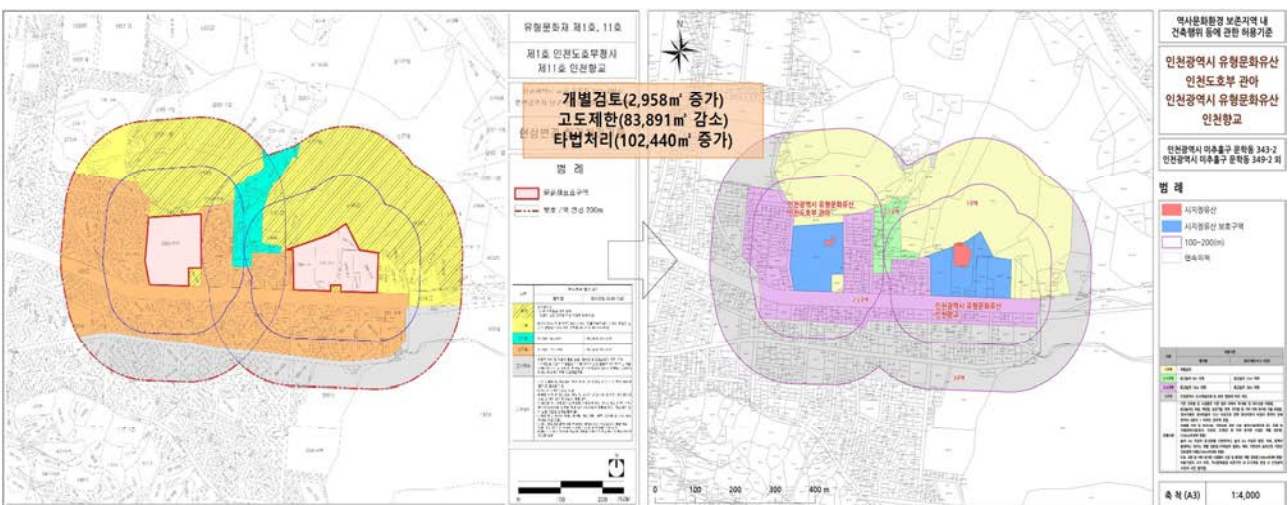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민관협력 우수예시(문화유산자료 원인재)

■ '선택과 집중'형 역사문화환경 관리 도모,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허용기준 조정

- <규제대상 조정> '시지정유산' 중심, 규제범위 조정(발주처 및 위원회 의견 적극 수용)
- <규제범위 조정> 조례 개정 및 단서조항 적용 등을 통한 정책 부합도 및 규제 정합성 제고
- <관리구역 조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역구분 명확성 제고



▲입지여건 분석예시(좌 : 남북동 조병수 가옥/우 : 대곡동 고인돌군)



▲규제 개선 사례(유형문화유산 인천도호부관아 외 1개소)

2. 정책제언

■ <문화유산 보존> 시지정유산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시지정유산 유산구역(지정+보호구역)에 대한 관리행정의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 체계 표준화 보완 필요
- 유산의 규모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강화 적석사사적비 등), 연혁 관리를 토대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보호구역 적정범위 재설정 방안 추가 검토 필요



▲첨단 모니터링(드론활용)사례

-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2020), 『명승 보존관리 첨단 모니터링 기법 매뉴얼』



▲국가유산 정기모니터링 사례

- 자료 : 국가유산청(2024), 『2024 사적 정기조사』, 강화 부근리지석묘

■ <관리효율 제고> 시지정유산 가치특성에 따른 종별 구분 보완 필요

- 돈대, 가옥 등 가치특성이 유사한 유산이 다른 종별(유형문화유산/기념물/문화유산자료 등)로 분류된 사례 확인
- 돈대(14개소) : 유형문화유산(3), 기념물(7), 문화유산자료(4)
- 가옥(4개소) : 유형문화유산(1), 기념물(1), 문화유산자료(2)
- 유산의 특성 고려, 종별 재구분을 통한 관리효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유형별 지정현황 목록(좌:돈대/우:가옥)

구분	돈대		가옥	
	종별	유산명칭	종별	유산명칭
1	유형문화유산	강화 삼암돈대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석 가옥
2	유형문화유산	강화 후애돈대	기념물	강화 이견창 생가
3	유형문화유산	강화 분오리돈대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4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문화유산자료	강화 철종 외가
5	기념물	강화 건평돈대		
6	기념물	강화 장곶돈대		
7	기념물	강화 망양돈대		
8	기념물	강화 굴암돈대		
9	기념물	강화 미루지돈대		
10	기념물	강화 북일곶돈대		
11	문화유산자료	강화 망월돈대		
12	문화유산자료	강화 무태돈대		
13	문화유산자료	강화 선수돈대		
14	문화유산자료	강화 화도돈대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유형별 지정현황(상:돈대/하:가옥)

■ <관리효율 제고> 시지정유산 가치특성에 따른 종별 구분 보완 필요

- 유산 업무 관련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지적, 민원, 건축, 도시, 소방, 안전, 관광, 홍보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특성 고려
- 유산 담당 부서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 데이터의 전산화 및 통합체계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공유 프로세스 마련
- 또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초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경관 변화 모니터링 필요



▲국가유산 관련 통합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좌: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우:「공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공간정보 현행화 용역」)

■ <관리역량 강화> 제도취지 및 변경사항(법령/지침) 등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이해증진 필요(행정/위원회/주민 등)

- 행정효율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련 행정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확대 필요
- 특히, 제도의 변화된 개념과 개정된 법률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주체(위원회, 행정 등)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필요



▲국가유산 현상변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좌 : 국가유산청 실무교육/우 : 광역자치단체 현상변경 담당자 실무교육)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발 행 : 2025년 11월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연 구 기 관 :

※ 본 보고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2025

